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7

Ⅱ. 사업별 검토 ····· 8

【일반회계】

<세 출> ····· 8

1. 기본경비 사업: 일용임금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필요 등 ····· 8

❖ 대통령경호처 ····· 12

Ⅰ. 개 관 ····· 12

1. 결산 개요 ····· 1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5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

Ⅱ. 사업별 검토 ····· 17

【일반회계】

<세 출> ····· 17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공무직 인건비 불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17

2. 공공요금및제세: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 20

❖ 국　　회 ····· 22

Ⅰ. 개　관 ····· 22

1. 결산 개요 ····· 2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

Ⅱ. 사업별 검토 ····· 28

【일반회계】

<세　출> ····· 28

1.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8
2. 위원회운영지원: 정책연구용역 연도말 계약체결 집중에 따른 과다 이월 개선 필요 ····· 31
3.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AI 서비스 활용성 제고 필요 ····· 33
4.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필요 ····· 37
5.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입법조사요구 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40

❖ 국가인권위원회 ····· 43

Ⅰ. 개 관 ····· 43

1. 결산 개요 ····· 4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6

Ⅱ. 사업별 검토 ····· 47

【일반회계】

<세 출> ····· 47

1.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 ㅋ 미흡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 47

2. 인권의 날 행사 사업: 연례적인 세목변경 등을 통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49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법 무 부 ····· 55

Ⅰ. 개 관 ····· 55

1. 결산 개요 ····· 5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0

Ⅱ. 사업별 검토 ····· 61

【일반회계】

<세 입> ····· 61

1.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 실적을 고려한 예산 계상 필요 등 ····· 61

<세 출> ····· 65

2.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손해금 이율액의 최소화 필요 ····· 65
3.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면밀한 시험장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67
4. 대한법률구조공단: 낙찰차액을 사용한 개발비 집행 부적정 ····· 70
5. 인천공항(T2)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 임차(신규): 준공 일정을 고려한 임차료 편성 필요 ····· 73
6. 마약수사: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75
7. 형사보상: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78

8.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 상용임금으로 비목 변경 검토 필요 ····· 81
9.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집행 주의 필요 ····· 83
10.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일정 지연 방지 필요 ····· 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 출> ····· 89
11.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개선 필요 ····· 89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92

❖ 법 제 처 ····· 94

Ⅰ. 개 관 ····· 94

1. 결산 개요 ····· 9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9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7

Ⅱ. 사업별 검토 ····· 98

1. 인건비(총액인건비):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 전용 주의 ····· 98
2. 법제교육: 교육과정 수요를 고려한 임차료 편성 필요 ····· 101
3.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설치: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104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107

❖ 감 사 원 ·····108

Ⅰ. 개 관 ····· 108

1. 결산 개요 ····· 10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11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1

Ⅱ. 사업별 검토 ····· 112

【총 괄】

1. 성과지표 : 감사활동의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등 ····· 112

【일반회계】

<세 출> ····· 116

2.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및 국내 여비의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필요 ····· 116

3. 감사활동경비 사업: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20

4. OASYS 구축·운영 사업: 하반기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 이월 재발 방지 필요 ····· 123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경쟁입찰을 통한 연구확대 필요 등 ····· 12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32

Ⅰ. 개 관 ····· 132

1. 결산 개요 ····· 13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35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 135

Ⅱ. 사업별 검토 ····· 136

【일반회계】

<세 출> ····· 136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신규):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수행 부적정 ····· 136

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필요 ····· 139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41

❖ 헌법재판소 ·····142

Ⅰ. 개 관 ····· 142

1. 결산 개요 ····· 14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45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5

Ⅱ. 사업별 검토 ····· 146

【일반회계】

<세 출> ····· 146

1. 인건비: 조속한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등 ····· 146

2. 국선대리인 보수 등: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 150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54

❖ 대 법 원 ····· 155

Ⅰ. 개 관 ····· 155

1. 결산 개요 ····· 15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60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1

Ⅱ. 사업별 검토 ····· 162

【일반회계】

<세 입> ····· 162

1. 징계부가금: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필요 ····· 162
2. 변상금: 미수납액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필요 ····· 165

<세 출> ····· 167

3. 국선변호료 지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167
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70
5.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전 총사업비 조정 변경 없이 내역 변경을 통한 관리용역비 집행 주의 ····· 173
6.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법정 통역 지원 언어의 사전 수요 파악으로 사업효과 제고 필요 ····· 176
7.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사업 일정 준수 필요 ····· 178
8.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임차대상 건물 선정 지연 등 사업준비 미흡 ····· 180

【등기특별회계】

<세　출> ····· 182

9. 일반회계 전출: 등기특별회계 재원확충 방안 마련 필요 ····· 18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　출> ····· 184

1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계약지연으로 인한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 184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 187

11.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한 임차료 증액의 부적정 ····· 187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91

정 무 위 원 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95

Ⅰ. 개 관 ····· 195

1. 결산 개요 ····· 19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9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00

Ⅱ. 사업별 검토 ····· 201

【총 괄】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예산의 우회적 사용 지양 필요 등 ····· 201
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처리기간 단축 필요 등 ····· 206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 215
4.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대외활동 관리 강화 필요 ····· 221

【일반회계】

<세 출> ····· 226

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기존 사업과 상이한 목적으로의 예산 집행 지양 필요 ····· 226
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등 ····· 229
7. 대테러센터 운영: 일반 국민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 232

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 실적 부진 등 ····· 235
9.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청년위원의 활동 기관 다양화 필요 ····· 239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운영 기한의 만성적인 연장 중단 필요 등 ····· 241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44

❖ 국가보훈부 ·····245

Ⅰ. 개 관 ····· 245

1. 결산 개요 ····· 24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50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51

Ⅱ. 사업별 검토 ····· 252

【총 괄】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 252

【일반회계】

<세 입> ····· 257

2.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 257

<세 출> ····· 260

3. 보상금: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 260

4. 생활조정수당: 지급 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64

5.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의 관리 강화 필요 ····· 267

6. 교통시설이용지원: 민간카드사 미지급금 문제 해결 필요 ····· 270

7. 보철구지급: 예산액의 과다 계상 지양 및 불용 규모 축소 필요 ····· 272

8.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지원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74

9. 보훈문화조성: 보훈교육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 등 ····· 277

10. 보훈기념행사: 행사 비용 지출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81

11. 참전기념행사: 사업계획의 현실화 등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 284

1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신규):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인한 집행 부진 ····· 288
13. 보훈정책개발: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관리 강화 필요 ····· 29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 293
14.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실제 LPG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293

【보훈기금】

<수 입> ····· 296
1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96
1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 제고 필요 ····· 299

<지 출> ····· 301
17. 보훈요양원 건립: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301
18.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보훈원 입주율 제고 등 ····· 305

【기 타】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309

❖ 공정거래위원회 ·····311

Ⅰ. 개 관 ····· 311

1. 결산 개요 ····· 31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1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14

Ⅱ. 사업별 검토 ····· 315

【일반회계】

<세 입> ····· 315

1.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세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 315

<세 출> ····· 325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집행부진 유의 필요 ····· 325

3. 포렌식 교육: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 ····· 329

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 333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전문관 보직 임용 개선 노력 제고 필요 ····· 337

❖ 금융위원회 ·····341

Ⅰ. 개 관 ····· 341

1. 결산 개요 ····· 34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4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7

Ⅱ. 사업별 검토 ····· 348

【일반회계】

<세 출> ····· 348

1. 핀테크 지원 사업: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필요 및 D-테스트베드 경쟁률 저하 문제 ····· 348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사업 종료 후 만기 미해지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신속한 출연금 정산 필요 ····· 354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효과 및 추계정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 360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햇살론15 사업의 보증부실 및 금융권 출연 등을 고려한 햇살론 체계 개편 검토 필요 ····· 366
5.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채무자 대리인·관계인 지원 사업의 실적 부진 부적정 ····· 372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 지연 문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 377
7.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384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재정투입 필요 등 ····· 390

【신용보증기금】

<수 입> ····· 396

9. 수입 총괄: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SPC 등으로부터의 배당금 및 처분이익 수입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 396

<지 출> ····· 401

10. 업무용건물 사업: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 401

11. 보증연계투자 사업: 보증연계투자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문제 ····· 40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계정)】

<지 출> ····· 409

12. 대위변제: 대위변제 계획액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전세 보증 및 PF 사업자 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409

13. 사업수수료: 사업수수료 계획액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415

14. 주신보·주연보 IT운영(정보화) 사업: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지양 ····· 41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 재고자산매각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지분 매각 계획 수립 필요 ····· 423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관련 부처협의 노력 제고 필요 ····· 428

❖ 국민권익위원회 ····· 432

Ⅰ. 개 관 ····· 432

1. 결산 개요 ····· 43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3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6

Ⅱ. 사업별 검토 ····· 437

【총 괄】

1.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437

【일반회계】

<세 출> ····· 441

2. 청렴권익민간협력: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예산 집행 부적정 ····· 441
3. 부패·고충제도개선: 장기간 미이행 과제의 신속 이행 필요 ····· 444
4.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 ····· 447
5.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청렴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 450
6. 행정심판운영: 법정 처리기간의 준수 필요 ····· 455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45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59

Ⅰ. 개 관 ····· 459

1. 결산 개요 ····· 45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6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63

Ⅱ. 사업별 검토 ····· 464

【일반회계】

<세 출> ····· 464

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 부진 ····· 464

2.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추진 지연 부적정 ····· 470

3.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사업 추진 지연 부적정 ····· 474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방식의 개선 필요 ····· 478

국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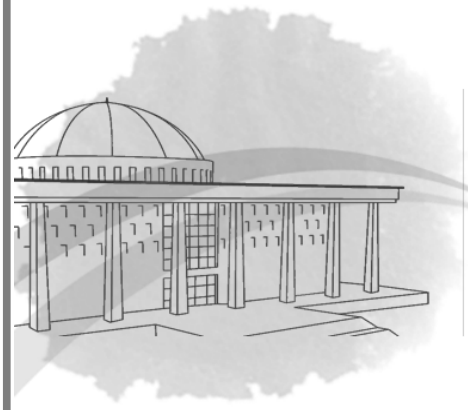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억 9,000만원(198.7%)이 많은 8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224.9%)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97	297	273	△24	297	297	887	590	614
총수입	297	297	273	△24	297	297	887	590	614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3억 1,800만원(△10.0%)이 적은 92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100만원(2.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8,523	98,523	90,943	△7,580	103,102	103,102	92,784	△10,318	1,841
총지출	98,523	98,523	90,943	△7,580	103,102	103,102	92,784	△10,318	1,84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으로, 8억 9,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억 8,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9%)되고,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97	297	-	297	897	887	10	-
합 계	297	297	-	297	897	887	10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31억 200만원으로, 이 중 927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0%)되고 103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3,102	103,102	-	±535	-	103,102	92,784	-	10,318
합 계	103,102	103,102	-	±535	-	103,102	92,784	-	10,318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자산은 전년 대비 22억 4,300만원이 감소한 7,896억 4,8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12억 5,1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6,400만원 감소한 9억 9,200만원으로 유동부채와 장기충당부채가 각각 9,500만원, 3억 7,0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7,886억 5,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16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14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9,648	791,891	(2,243)	(0.3%)
		유동자산	317	846	(529)	(62.5%)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787,720	787,788	(68)	(0.0%)
		무형자산	1,510	2,761	(1,251)	(45.3%)
		기타비유동자산	101	496	(395)	(79.6%)
	부 채		992	1,456	(464)	(31.9%)
		유동부채	4	99	(95)	(96.0%)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987	1,357	(370)	(27.3%)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		788,656	790,435	(1,779)	(0.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1,675	98,535	3,140	3.2%
	재정운영순원가		101,466	98,301	3,165	3.2%
	재정운영결과		101,466	98,301	3,165	3.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2024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2개 프로그램, 8개 세부사업에서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본경비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일용임금'은 최근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매년 증액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실적 및 구체적 활용계획 등 실수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기본경비 사업: 일용임금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필요 등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5억 5,700만원 중 197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4%)되고, 18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21,557	21,557	-	-	21,557	19,707	-	1,850	21,740
인건비	3,708	3,708	-	△15	3,694	3,019	-	674	3,698
일용임금	341	341	-	-	341	70	-	271	24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기본경비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일용임금'은 최근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매년 증액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실적 및 구체적 활용계획 등 실수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기본경비(1011-200)(총무비서관실)

‘일용임금’ 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각종 행사지원, 기록물관리, 통·번역 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서 2024년 예산현액 3억 4,100만원 중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5%)되고, 2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3년간 일용임금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집행률)		불용액
2022년	315	219	(69.5%)	96
2023년	331	78	(23.5%)	253
2024년	341	70	(20.5%)	27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러한 일용임금 집행 부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일용임금 집행률은 2022년 69.5%, 2023년 23.5%, 2024년 20.5%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소폭이긴 하나 매년 상승하고 있어 최근 집행실적이나 실수요에 기반하여 적정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용임금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주된 원인은 각종 업무지원 수요가 예산 편성시 계획한 만큼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및 국가안보실은 최근 집행실적과 구체적인 인원 활용계획 등 실수요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용임금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기본경비 내 전용과 세목조정이 적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본경비’ 사업에서 ㉠ 다른 세목 예산으로 전용한 후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세목 예산으로부터 전용을 받은 사례, ㉡ 최근 과다한 전용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세목 예산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용이 반복된 사례 등이 보이나, 각각 적절한 전용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4월 12일 고용부담금(320-09)의 여유재원 4,100만원을 포상금(310-03)으로 전용(감)하였으나, 2024년 12월 24일에는 도리어 고용부담금(320-09) 재원 부족으로 상용임금(110-03)에서 1,500만원을 전용(증)하였는데, 이는 당초 각 세목 예산의 예산집행추이를 적절히 예측하여 전용재원과 규모를 정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도 기본경비-고용부담금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4.12.	기본경비 (1011-200)	**고용부담금 (320-09)**	41	기본경비 (1011-200)	포상금 (310-03)	사업량 증가
	12.24.		상용임금 (110-03)	15		**고용부담금 (320-09)**	사업량 증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한편,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은 당초 4억 2,6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73%에 해당하는 3억 1,100만원을 전용(및 세목조정)받아 예산현액이 7억 3,700원이 되었으며, 이 중 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러한 국외업무여비로의 과도한 전용(증)은 2023년에 이어 되풀이된 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세목 예산의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므로, 향후 지양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10.22.	기본경비 (1011-200)	임차료 (210-07)	190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사업량 증가
			관리용역비 (210-15)				
세목조정	9.11.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121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사업량 조정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최근 3년간 기본경비–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2년	253	△13	240	214	26	84.6
2023년	276	426	702	702	-	254.3
2024년	426	311	737	617	120	173.0

자료: 대통령비서실

참고로,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을 요구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011-200)	주의
	지적 사항	○ 기본경비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국외업무여비(220-02),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등의 충당을 위해 총 14개 비목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10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8억 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이 있었음 - 특히 대통령 국외 순방 시 사전 업무협의 및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인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당초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용과 세목조정을 통해 4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00만원을 집행함 ○ 최근 5년간 기본경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용 및 세목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의 등의 예산 변경은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00만원(5.1%)이 많은 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원(8.8%)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7	67	514	447	532	532	559	27	45
총수입	67	67	514	447	532	532	559	27	45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0억 8,400만원(△5.3%)이 적은 1270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600만원(6.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6,322	116,322	119,806	3,484	134,096	134,096	127,012	△7,084	7,206
총지출	116,322	116,322	119,806	3,484	134,096	134,096	127,012	△7,084	7,20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3,200만원으로, 5억 5,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억 5,9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5.1%)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32	532	-	532	559	559	-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97억 6,500만원으로, 이 중 1,270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9%)되고 2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5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34,096	134,096	5,669	-	-	139,765	127,012	231	12,522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년 대비 117억 5,700만원이 증가한 7,819억 3,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7,784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7,7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 감소한 1,100만원으로 유동부채 7억 3,5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4억 9,200만원이 증가한 7,819억 1,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311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306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2,9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1,930	770,173	11,757	1.5
		유동자산	107	126	△19	△15.1
		투자자산	361	361	0	0
		일반유형자산	778,460	766,583	11,877	1.5
		무형자산	2,958	3,061	△103	△3.4
		기타비유동자산	43	43	0	0
	부 채		11	746	△735	△98.5
		유동부채	11	746	△735	△98.5
		장기차입부채	0	0	0	0
		장기충당부채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자산		781,919	769,427	12,492	1.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31,187	121,137	10,050	8.3
	재정운영순원가		130,629	119,900	10,729	8.9
	재정운영결과		130,629	119,900	10,729	8.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직 대통령, 주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보장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함. 빠르게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경호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4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통령경호처 공무직 정원이 2023년 증원된 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관련 예산 불용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인원 채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 교육훈련시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후 경호행사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경과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공무직 인건비 불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4억 7,900만원 중 54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7%)되고, 10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479	6,479	-	-	6,479	5,423	-	1,056	6,582
인건비	3,737	3,737	-	-	3,737	3,056	-	681	3,879
민간이전	727	727	-	-	727	546	-	181	69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 상용임금과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으로서, 2024년 예산현액 37억 3,700만원 중 30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8%)되고 6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기획관리관실)

내역사업인 **'민간이전'**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 등을 위한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예산현액 7억 2,700만원 중 5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1%)되고 1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 공무직 정원이 2023년 증원된 후 인원이 그만큼 충원되지 않아 관련 예산 불용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인원 채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대통령경호처 기본경비 중 상용임금 예산현액 36억 7,000만원 중 29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8,100만원이 불용(불용률 18.6%)되었고, 고용부담금 예산현액 7억 2,700만원 중 5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100만원이 불용(불용률 24.9%)되었음.

[최근 4년간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비율)
2021년	3,183	2,915	268 (8.4%)	614	580	34 (5.5%)
2022년	3,234	3,140	94 (2.9%)	623	551	72 (11.6%)
2023년	3,612	3,226	386 (10.7%)	705	580	125 (17.7%)
2024년	3,670	2,989	681 (18.6%)	727	546	181 (24.9%)

자료: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은 주로 환경미화, 조리, 시설물관리, 운전, 조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호처 공무직 인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무직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되지 않으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 5차례 공고를 하고 공무직 채용을 하였으나, 응시자 부족과 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2022년 12월 공무직 정원이 98명에서 108명으로 증원[3]되면서 2023년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되었으나, 실제 인원은 이에 상응하여 충원되지 않으면서[4]

3) 2022년 12월 당시 전직 대통령 사면 후 경호 소요 증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직제상 정원을 6.5% 증원(693명→738명)하고 공무직 정원도 98명에서 108명으로 증원하였음.

인건비 예산 불용 규모가 커졌고, 2024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이므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직 정원 증원 후 인력 미충원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인건비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한편, 2024년 경호처 인건비(1001-101) 예산 616억 6,800만원 중 97.1%가 집행되는 등 경호인력은 직제 증원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공공요금및제세: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공공요금및제세’ 사업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2억 9,600만원 중 19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60.1%)되고 13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경호처 주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526	11,526	-	-	11,526	9,637	-	1,889	11,379
공공요금및제세	3,296	3,296	-	-	3,296	1,981	-	1,315	2,35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 교육훈련시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후 경호행사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경과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나,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은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2.2배인 3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60.1%인 19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39.9%인 13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5)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기획관리관실)

[최근 4년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불용액
2021	1,321	△10	1,311	1,036	78.4%	275
2022	1,229	107	1,336	1,335	108.6%	1
2023	1,499	320	1,819	1,748	116.6%	71
2024	3,296	-	3,296	1,981	60.1%	1,315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관련 교육훈련시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따라 2024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후 동 계획이 장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024년 해당 시설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함.

즉,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후 용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실내·외 교육시설과 외부 훈련시설을 편입하여 경호 교육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2024년 예산에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2024년 경호행사일정·교육훈련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변경하였다는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호행사일정이나 교육훈련일정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으나, 연간 활용할 교육훈련시설과 시설별 구체적 용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시설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 해당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단계에서의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억 8,200만원(△15.7%)이 적은 36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00만원(13.8%)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총수입	4,196	4,196	3,218	△978	4,345	4,345	3,663	△682	445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48억 1,600만원(△7.1%)이 적은 7,12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6,600만원(2.5%)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총지출	730,563	730,563	695,771	△34,792	767,653	767,653	712,837	△54,816	17,06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3억 4,500만원으로, 46억 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억 6,300만원이 수납(수납률 79.5%)되고 9억 3,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345	4,345	-	4,345	4,608	3,663	932	13
합 계	4,345	4,345	-	4,345	4,608	3,663	932	13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769억 7,500만원으로, 이 중 7,128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7%)되고 262억 3,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9억 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67,653	767,653	9,322	△3,017 3,017	-	776,975	712,837	26,237	37,901
합 계	767,653	767,653	9,322	△3,017 3,017	-	776,975	712,837	26,237	37,90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회 자산은 전년 대비 213억 9,400만원이 감소한 5조 9,788억 5,9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 234억 6,8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3억 4,200만원 감소한 476억 6,4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34억 4,800만원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00억 5,200만원이 감소한 5조 9,311억 9,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000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 4,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978,859	6,000,253	(21,394)	(0.4%)
		유동자산	4,902	3,678	1,224	33.3%
		투자자산	1,133	816	317	38.8%
		일반유형자산	5,895,831	5,919,299	(23,468)	(0.4%)
		무형자산	76,809	76,299	510	0.7%
		기타비유동자산	184	160	24	15.0%
	부 채		47,664	49,006	(1,342)	(2.7%)
		유동부채	17,643	15,537	2,106	13.6%
		장기차입부채	30,007	33,455	(3,448)	(10.3%)
		장기충당부채	14	14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5,931,195	5,951,247	(20,052)	(0.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00,011	282,792	17,219	6.1%
	재정운영순원가		790,800	757,256	33,544	4.4%
	재정운영결과		790,800	757,256	33,544	4.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회 회계는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94개의 세부사업에서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역량 강화를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연례적으로 높지 않았고 2024년에는 더욱 하락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경비가 각 의원실의 정책개발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상 개선소요를 발굴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내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연례적으로 12월 중 계약체결이 과도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연도말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집중에 따른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회도서관은 시스템(포털)별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자료에 대한 AI 번역서비스가 특정 시스템(포털)에서만 제공되고 다른 시스템(포털)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AI 서비스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비용추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답기간을 단축하여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이나, 최근 입법조사요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위한 세미나·토론회·공청회·간담회 등 개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6억 2,900만원 중 53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7%)되고 23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입법 및 정책개발	7,639	7,639	-	△10	7,629	5,318	-	2,311	7,60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연례적으로 높지 않았고 2024년에는 더욱 하락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경비가 각 의원실의 정책개발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상 개선소요를 발굴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운영지원과)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이 60~70%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예산현액 76억 2,900만원 중 53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023년(75.3%)보다 감소한 69.7%에 그쳤음.

[최근 5년간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8,337	5,937	-	100 △100	5,937	4,317	72.7	-	1,620
2021	7,681	7,681	-	-	7,681	4,959	64.6	-	2,722
2022	7,651	6,609	-	△10	6,599	4,792	72.6	-	1,807
2023	7,639	7,639	-	△46	7,593	5,716	75.3	-	1,877
2024	7,639	7,639	-	△10	7,629	5,318	69.7	-	2,311

자료: 국회사무처

동 사업은 세미나·간담회 개최, 소규모 연구용역 등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세미나 활동이 제한되었던 측면도 있으나, 2023년·2024년 집행률도 7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이 필요해 보임.

국회사무처는 각 의원실의 입법·정책 개발 경비를 두 차례 나누어 배정(기본 70%, 추가 30%)하되, 추가배정 시에는 기본배정 경비를 충분히 사용한 의원실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의원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과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이와 같은 배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함.

또한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에는 상·하반기 의원 구성이 달라지고, 상반기에는 선거의 영향, 하반기에는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동 사업 집행의 제한요인으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어 보임.

다만 동 사업은 국회의원 선거 유무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 사업경비가 각 의원실의 입법·정책 개발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상 개선소요를 발굴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3)]

3) 국회사무처는 ① 2024년 연구용역 비용 상한을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공동연구 발주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한 결과 연구용역비 집행률이 2023년 63.4%에서 2024년 74.9%로 제고되었고, ② 제21대 국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 잔액을 제22대 국회에 추가배정하였으며, ③ 2025년 1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안내자료’ 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개진하였다고 함. 또한, ④ 2025년부터는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여야협치 지원예산)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향후 입법 및 정책 개발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에도 동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하고 있다고 함.

2. 위원회운영지원: 정책연구용역 연도말 계약체결 집중에 따른 과다 이월 개선 필요

가. 개 요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예결산 및 법안심사에 필요한 검토보고, 간담회 지원, 위원회회의·소위원회 개최, 세미나 및 인사청문회 지원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7억 9,300만원 중 113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8%)되고, 3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0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위원회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위원회운영지원	13,128	13,128	2,729	625 △688	15,793	11,342	372	4,079	11,62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내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연례적으로 12월 중 계약체결이 과도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국회사무처는 연도말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집중에 따른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산, 법안 심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비율이 매년 약 70~80%에 달하고 있고, 2024년에도 정책연구용역 36건 중 31건(86.1%)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4) 일반회계-위원회운영지원(1032-300~321)(운영지원과)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지원'-정책연구용역 이월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구용역 건수	36	35	30	28	36
차년도 이월 건수 (비율)	30 (83.3%)	27 (77.1%)	20 (66.7%)	22 (78.6%)	31 (86.1%)

자료: 국회사무처

2024년에는 총 36건 중 29건의 연구용역계약이 12월에 체결되면서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국회사무처는 2024년 전반기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제22대국회 개원 후에는 위원회 구성 지연 및 현안업무 등으로 용역과제 및 수탁자 선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2024년도 '위원회운영지원'-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시점 현황]

(단위: 건, %)

정책연구용역 계약시점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 비율)		계
2020년	3	-	-	-	8	2	23	(63.9%)	36
2021년	2	1	3	1	2	9	17	(48.6%)	35
2022년	1	4	2	-	-	5	18	(60%)	30
2023년	2	-	2	1	4	-	19	(67.9%)	28
2024년	-	3	-	-	3	1	29	(80.6%)	36

자료: 국회사무처

다만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시점을 살펴보면, 매년 12월에 체결되는 계약이 연간 계약의 약 50%를 상회하고 있는 등 연도말 계약체결 집중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 계약 상당수를 연말에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함.

국회사무처는 각 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연간 계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도말에 연구용역계약 체결이 집중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AI 서비스 활용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및 의회법률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1,3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도서관운영	31,451	31,451	-	-	31,451	27,535	3,400	516	28,996
의회·법률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713	713	-	-	713	711	-	2	64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회도서관은 「의회법률정보포털」을 통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등과 함께 팩트북, Data+ 등 국회도서관 발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국회도서관은 2023년 2월부터 「국가전략정보포털」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국내외 주요기관의 보고서를 국가별·주제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가전략 뉴스레터, 이슈 인포그래픽, 전문가 칼럼, 국가전략 세미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5) 일반회계-전자도서관운영(3035-500)(정보관리국)

나. 검토의견

국회도서관은 시스템(포털)별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자료에 대한 AI 번역서비스가 특정 시스템(포털)에서만 제공되고 다른 시스템(포털)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AI 서비스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도서관은 '2024년 국가전략정보포털시스템 개발사업'[6]을 통해 'AI기반 지능형 요약·번역서비스 다변화 개발' 작업을 진행하여, 주요 외국어 보고서에 대한 AI 번역과 AI 요약 DB[7]를 구축하고, 국회 관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국가전략정보포털 외국어보고서 AI 번역·요약 DB 구축현황]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AI 요약	871	1,708	1,003
AI 번역	988	782	854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 관계자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통해 주요 외국어 보고서를 검색하면 보고서 전문에 대한 AI 번역을 함께 볼 수 있고, 100자 요약, 핵심 키워드 요약, 보고서 형식 요약, 핵심질문·답변 요약 등 다양한 형식의 AI 요약정보를 통해 주요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다만 동 서비스는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만 구현되므로 의회법률정보포털(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AI번역 없이 보고서 원문만 제공되고 있음.

6)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진행하였고, 소요예산은 1억 1,800만원이며, 도서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2억 6,000만원),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개발(1억 3,900만원)과 함께 통합발주되었음(총 5억 1,700만원).

7) 국회도서관에서는 현재는 AI 요약과 AI 번역에 대해 검수한 후 DB를 구축하여 이를 기초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향후 AI 성능이 개선되면 (DB 구축 없이) 실시간 AI 요약·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함.

[국가전략정보포털 및 의회법률정보포털에서 외국어 보고서 검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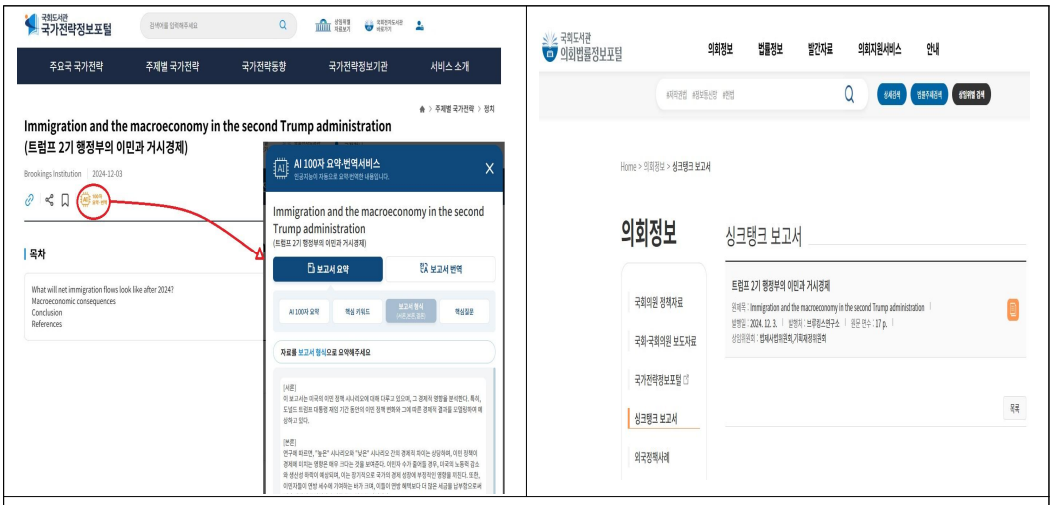

주) 브루킹스연구소가 2024.12.3. 발행한 「Immigration and the macroeconomy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보고서를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검색하면 팝업창을 통해 AI 요약 또는 AI 번역이 제공되는 반면(좌측 화면), <의회법률정보포털>(싱크탱크 보고서 탭)에서 검색하면 외국어 보고서 원문만 제공됨(우측 화면).

이는 국회도서관이 각 시스템(포털)별로 AI서비스를 개발·운영함에 따라 그 효과가 시스템(포털) 내로 제한[8]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AI서비스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 시스템(포털)은 각각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시스템(포털)의 자료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분리 운영에 따른 지나친 비효율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주요 시스템(포털)별로 다양한 종류의 AI서비스 구축·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9] 유사한 서비스를 위해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AI 서비스를 시스템(포털)별로 구현함에 따라 그 효과가 시스템(포털) 내로 제한되는 다른 사례로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일부 (국내)보고서에 대하여 제공하는 'AI 100자 요약 서비스' 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3년 4월 발간한 「중국 시진핑 3기 국내외 정치분석: 2023년 양회와 시진핑 시대 전략」 보고서를 <국회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하면 AI 요약을 볼 수 있으나,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검색하면 AI 요약을 볼 수 없는 것임.

9) 참고로, 국회도서관 AI 관련 예산은 2024년 총 166억 6,100만원, 2025년 총 141억 1,200만원이며,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 시스템(포털)별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시스템(포털)	내역사업	비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내용
AI의정분석 서비스 아르고스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 구축·운영	210-02	86	140	소셜 및 뉴스 데이터 사용료
		260-01	408	400	아르고스 시스템 고도화 일반연구비
국회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운영	210-02	-	50	인공지능 API 사용료
		260-01	621	500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일반연구비
	전자도서관DB 구축	260-01	11,402	11,372	전자도서관DB 구축 일반연구비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의회·법률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10-02	-	109	인공지능 API 사용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의회·법률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60-01	118	282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연구비
국회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보인프라 구축·운영	210-07	526	759	GPU 서버 도입 임차료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10-02	100	-	API 사용료
		260-01	3,100	500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일반연구비
		430-01	300	-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회도서관 인프라 구축
계			16,661	14,112	

자료: 국회도서관

4.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필요

가. 개 요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사업은 재정수반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재정지출 및 수입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추계 및 전망, 조세정책 · 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5,700만원 중 6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5%)되고,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의회·법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3,486	3,486	234	-	3,720	3,082	263	375	3,287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	700	700	57	-	757	632	84	40	65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비용추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답기간을 단축하여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안 비용추계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변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재정소요를 사전에 점검하여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79조의2[11)]에 따라 예산상 ·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나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0) 일반회계-예산정책처운영관리(4031-300)(기획관리관)

1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의안비용추계 회답실적은 6,301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2,779건의 2배가 넘고 2023년 5,036건보다도 25% 증가하였으며, 평균 회답기간은 2019년 9.8일에서 2023년 17.8일, 2024년 23.7일로 늘어났음.[12)]

이에 따라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에 따른 회답기한 준수율[13)]은 2019년 80.2%에서 2023년 62.6%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도 62.2%로 저조하였음.

[최근 7년간 의안비용추계 회답건수 및 회답기간]

(단위: 건, 일,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답 수(건)	3,179	2,779	4,645	4,910	4,009	5,036	6,301
회답기간(일)	12.5	9.8	11.6	11.4	13.9	17.8*	23.7*
기한 준수율(%)	72.2	80.2	72.6	73.0	70.7	62.6	62.2

주)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2023.7.4.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이 회답기간에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충실히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있음. 또한 '2024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법안비용추계 적시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음.

[2024년 법안비용추계 만족도조사 결과]

(단위: 점)

설문대상	절차의 편리성	부서와의 소통	보고서 내용	보고서의 적시성	전반적 만족도
국회의원	-	-	79.0	**76.1**	77.6
보좌진	78.8	78.2	78.5	**74.0**	7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로,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12) 다만,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부서인 추계세제분석실의 정원(실장, 심의관 포함 38인)은 2017년 7월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임.

13)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국회예산정책처 내규)
제6조(회답방법 등) ③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회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받은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회답기한은 10일로 한다. <개정 2023.7.6.>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2)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 확보	ㅇ [지적사항] 2023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 회답기간 준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평균 회답소요일수도 전년대비 늘어나, 전반적으로 회답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음. 의안 비용추계가 지연될 경우 의안 심사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어려워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매년 의안비용추계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회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2024년 의안비용추계 접수 건수는 5,966건(12.19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임에도, 회답기한 준수율은 65.4%로 전년(62.7%) 대비 2.7%p 개선되었음. * 비용추계 접수: (2023) 5,033건 → (2024) 5,966건 (18.5% 증가) * 회답기한주) 준수율: (2023) 62.7% → (2024) 65.4% (+2.7%p) 주) 회답기한: 추계서·미첨부사유서 30일, 미대상사유서 10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ㅇ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회답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추계 사례를 분석하고, 비용추계 기초자료 및 단가정보 등 필요한 DB를 지속 구축·현행화하고 있음.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 완료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비용추계 사례 분석과 기초자료·단가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 및 현행화 등을 통해 2024년 회답 준수율[14](65.4%)이 전년(62.7%) 대비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조치 완료 보고하였으나, 2024년 평균 회답기간(23.7일)은 전년(17.8일)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임.[15]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안비용추계 회답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용추계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이는 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한 값으로서 앞서 소개한 2024년 연간 회답준수율(62.2%)와 차이가 있음.

15)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회답기간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2023년 7월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공휴일 및 토요일이 회답기간에 산입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함. 참고로, 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여 회답기간을 재산출할 경우 2023년 평균 회답기간은 21.6일이 된다고 함.

5.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입법조사요구 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9%)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2,262	2,262	-	-	2,262	2,151	-	111	2.441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 운영경비	441	441	-	△11	430	395	-	35	47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에 대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이나, 최근 입법조사요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부 내 지원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회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는「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제1호[17]에서 규정하는 기관

16) 일반회계-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기획관리관)

17)「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의 기본적·핵심적 직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입법조사요구 건수가 2017년 8,273건, 2019년 6,209건, 2022년 5,016건, 2024년 4,58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	5,623	6,540	8,273	6,946	6,209	5,600	5,625	5,016	4,741	4,589
회답	5,746	6,293	8,365	6,994	6,273	5,384	5,763	5,071	4,822	4,336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4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만족도는 최근 오히려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18] 서비스 이용빈도 설문에서 26.1%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회답서비스 존재를 모름”(55.4%), “외부 DB로 손쉽게 직접 조사·검색 가능”(13.4%) 등의 사유가 제시되었음.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이용빈도 및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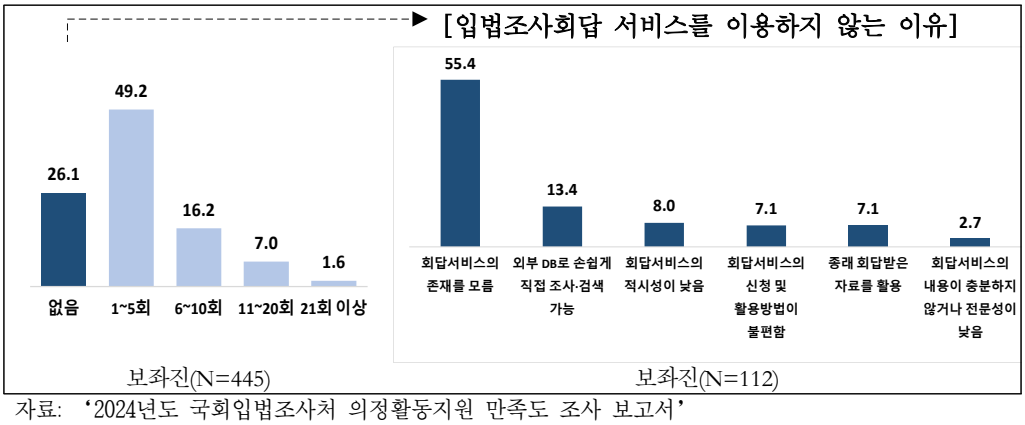

자료: ‘2024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조사회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존재를 인지하지 못 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외부 DB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입법조사회답 내용의 차별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18)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2018년 국회의원 66.5점, 보좌진 63.4점에서 매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국회의원 74.2점, 보좌진 74.2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회답의 유용성, 전문성 등 세부항목에서도 “만족” 또는 “보통” 응답율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오나, 다만, 회답서비스 적시성 항목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법부의 관점이 담긴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제공하고, 조사회답한 내용이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입법조사회답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100만원(77.8%)이 많은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54.8%)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7	27	31	4	27	27	48	21	17
총수입	27	27	31	4	27	27	48	21	17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억 6,900만원(△4.3%)이 적은 395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0.4%)이 증가함.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1,013	41,013	39,371	△1,642	41,303	41,303	39,534	△1,769	163
총지출	41,013	41,013	39,371	△1,642	41,303	41,303	39,534	△1,769	16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5.7%)되고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7	27	-	27	56	48	8	-
합 계	27	27	-	27	56	48	8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6억 8,700만원으로, 이 중 395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21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1,303	41,303	384	±391	-	41,687	39,534	-	2,154
합 계	41,303	41,303	384	±391	-	41,687	39,534	-	2,15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6,500만원이 증가한 250억 5,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억 300만원, 무형자산이 4억 7,500만원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6억 4,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순원가는 437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36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2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5,059	22,894	2,165	9.5
		유동자산	65	168	△103	△61.3
		투자자산	27	21	6	28.6
		일반유형자산	20,144	17,498	2,646	15.1
		무형자산	1,898	2,373	△475	△20.0
		기타비유동자산	2,925	2,834	91	3.2
	부 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5,059	22,894	2,165	9.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3,744	43,115	629	1.5
	재정운영순원가		43,695	42,663	1,032	2.4
	재정운영결과		43,695	42,663	1,032	2.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2024년도 업무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고, 총 17개 세부사업에서 인권의식 증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취약분야 인권개선,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국제교류협력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은 2024년 화상채팅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관리 및 사전 검토가 미흡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권의 날 행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 미흡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가. 개　요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은 효율적인 전화상담 관리를 위한 시스템(CTI :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과 장애인 등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900만원 중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9.4%)되고, 2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423	423	-	-	423	163	-	260	160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309	309	-	-	309	60	-	249	79
자산취득비(430-01)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230	230	-	-	230	-	-	23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동 사업에는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인권상담조정센터)

나.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화상채팅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전 검토 및 사업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온라인 실시간 화상·상담시스템 구축 및 SNS(카카오톡) 연계를 통한 상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상담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 예산에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음.[3)]

그런데 2024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가 전액 불용되어 당초 계획한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변경에 따라 계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었고, 이후 조달청 계약 의뢰 과정에서 계약 방식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4)] 연도 내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024년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당초 계획	추진 경과
ㅇ 입찰 공고 : 8월 중 ㅇ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8월~9월 초 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9월 초~11월 초 ㅇ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안정화 : 11월 중순 ㅇ 검수 및 사업 종료 : 11월 말	ㅇ (인권위) 사업계획안 위원장 결재 : 9. 5. ㅇ (인권위) 조달청 계약 의뢰 : 9. 11. ㅇ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 요청 : 9. 12. ㅇ (인권위) 구매의뢰 반려 요청 : 10. 8. ㅇ (조달청) 조달요청서 반려 및 재요청 : 10. 1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이 무산되고 편성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재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 참고로 현재 언어·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은 전문상담위원(수어 인권상담)의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4) (당초 계획)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낙찰자 선정 방법: 물품적격심사) → (조달청 요청) 2단계 경쟁입찰

2. 인권의 날 행사 사업: 연례적인 세목변경 등을 통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

가. 개 요

'인권의 날 행사' 사업은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인권상 수여를 비롯한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100만원 중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1%)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인권의 날 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권의식 증진	780	780	-	±36	780	757	-	23	680
인권의 날 행사	40	40	-	21	61	58	-	3	4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인권의 날 행사 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4,00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규모로 계획되어 왔음.

[2024년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 편성내역]

○ 인권의 날 행사: 4,000만원
- 인권선언 관련 영상 제작 및 행사대행 용역비 2,000만원,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금 1,200만원, 다과 및 기념품 제작 500만원, 임차료 300만원

5) 일반회계-인권의식 증진(1031-300)(정책교육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매년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동 행사 개최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년	40	40	-	20	60	56	-	4	140.0
2023년	40	40	-	20	60	60	-	-	150.0
2024년	40	40	-	21	61	58	-	3	145.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에는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비용 마련 등을 위해 2,1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고, 2023년에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념행사 통번역 비용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전용하고 다른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을 변경절차 없이 조정하여 사진전 및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해 지출하였음.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행사 관련 전용 및 세목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전용 ('22.12.30.)	기관운영 기본경비	임차료 (210-07)	3	인권의식 증진	일반수용비 (210-01)	기념행사 통번역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전용 ('23.8.30.)	취약분야 인권개선	일반수용비 (210-01)	20	인권의식 증진	일반용역비 (210-14)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 예산 부족
세목변경 ('24.8.8.)	인권의식 증진	일반수용비 (210-01)	20	인권의식 증진	일반용역비 (210-14)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비용 마련
세목변경 ('24.12.18.)	인권의식 증진	일반수용비 (210-01)	1	인권의식 증진	임차료 (210-07)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임차료 마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위해 매년 세목변경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제도개선 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	5	-	5
예비비	-	-	-	-	-	-	-
합계	-	-	-	-	5	-	5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해 모두 조치완료(조치율 100%) 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	5	100.0	-
예비비	-	-	-	-
합계	5	5	100.0	-

법제사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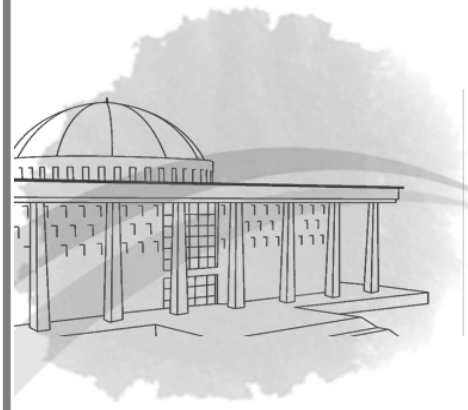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법무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969억 500만원(12.4%)이 많은 1조 5,915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000만원(△0.4%)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10,649	1,410,649	1,591,479	180,830	1,389,745	1,389,745	1,585,982	196,237	△5,497
기 금	4,342	4,342	6,692	2,350	4,931	4,931	5,599	668	△1,093
총수입	1,414,991	1,414,991	1,598,171	183,180	1,394,676	1,394,676	1,591,581	196,905	△6,590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96억 7,700만원(△0.9%)이 적은 4조 3,24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7억 7,900만원(3.1%)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148,364	4,148,364	4,111,155	△37,209	4,275,346	4,275,346	4,238,558	△36,788	127,403
기 금	82,721	82,721	80,389	△2,332	88,654	88,654	85,765	△2,889	5,376
총지출	4,231,085	4,231,085	4,191,544	△39,540	4,364,000	4,364,000	4,324,323	△39,677	132,77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4,454억 5,900만원으로, 1조 6,626억 6,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6,456억 1,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0%)되고 170억 5,100만원은 미수납되어 2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324,930	1,324,930	-	1,324,930	1,531,021	1,514,352	16,667	2
교도작업 특별회계	120,529	120,529	-	120,529	131,648	131,264	384	-
합 계	1,445,459	1,445,459	-	1,445,459	1,662,669	1,645,616	17,051	2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4,279억 200만원으로, 이 중 4조 3,741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00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436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293,578	4,293,578	12345	416	345	4,306,684	4,255,881	10,071	40,732
교도작업 특별회계	120,529	120,529	689	-	-	121,218	118,297	22	2,899
합 계	4,414,107	4,414,107	13,034	416	345	4,427,902	4,374,179	10,093	43,63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370억 5,400만원으로, 1,433억 6,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24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고 9억 5,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7,054	137,054	143,361	142,412	950	-
합 계	137,054	137,054	143,361	142,412	950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370억 5,400만원으로, 이 중 1,424억 1,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3.9%)되고 28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7,054	137,054	-	137,054	142,412	-	2,897
합 계	137,054	137,054	-	137,054	142,412	-	2,89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법무부 자산은 전년 대비 1,528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조 1,414억 7,4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588억 8,600만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944억 3,800만원 증가한 2,084억 9,000만원으로,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67억 9,2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충당부채가 781억 8,500만원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230억 4,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8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2조 9,329억 8,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법무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6,237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4억 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7,310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6억 6,7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141,474	12,988,650	152,824	1.2
		유동자산	171,221	265,020	△93,799	△35.4
		투자자산	14,500	12,000	2,500	20.8
		일반유형자산	12,681,382	12,522,496	158,886	1.3
		무형자산	227,691	103,722	123,969	119.5
		기타비유동자산	46,680	85,412	△38,732	△45.3
	부 채		208,490	114,052	94,438	82.8
		유동부채	51,159	28,114	23,045	82.0
		장기차입부채	14,165	20,957	△6,792	△32.4
		장기충당부채	143,166	64,981	78,185	120.3
	순자산		12,932,984	12,874,597	58,387	0.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623,709	1,396,248	227,461	16.3
	재정운영순원가		4,731,023	4,400,517	330,506	7.5
	재정운영결과		4,731,022	4,400,355	330,667	7.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의 2개 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61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95억원이 예탁되었고,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465억원과 이자 20억원을 회수하였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25억원, 이자 0.4억원이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무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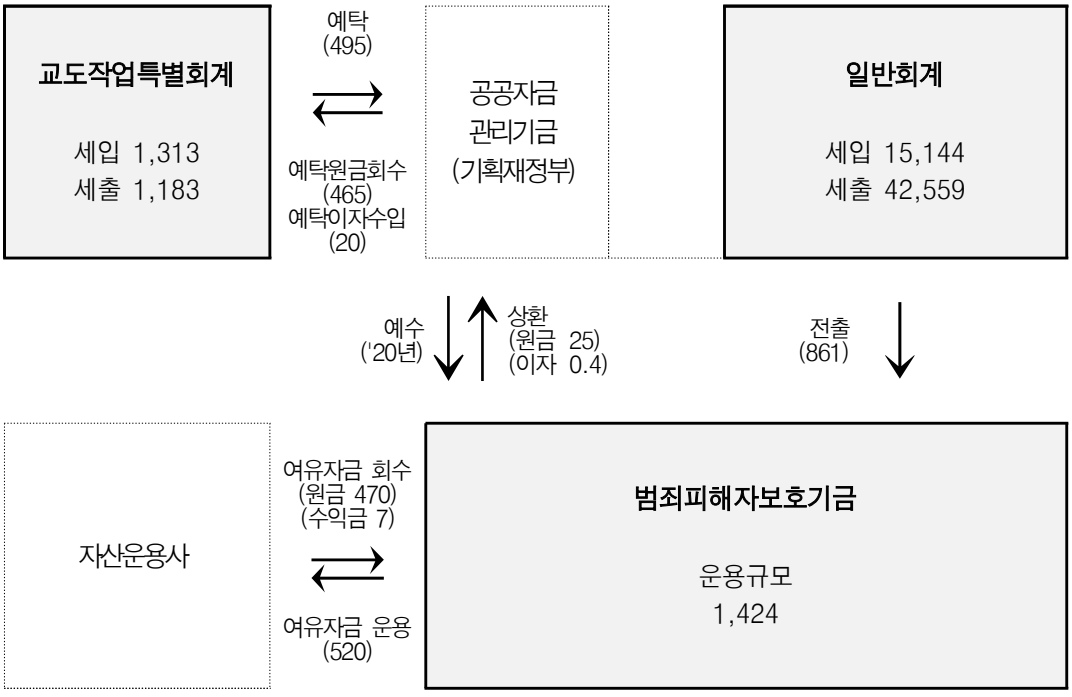

주) 총계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비전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한 법질서 확립, 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 합리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안전과 사회통합 실현, 능동적·적극적 인권 옹호를 통한 복지 인권 강화,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총 136개 세부사업을 집행함.

2024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에 있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지연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수사자료 인쇄비와 수사요원 집합교육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안을 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국회의 사전 의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부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동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 실적을 고려한 예산 계상 필요 등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 는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20만원),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5만원),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전자여행허가제(K-ETA) 1만원 등)의 수입을 수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239억 2,5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2)]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22,061	22,061	23,925	23,925	-	-	100	32,42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부항목별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법조시험응시, 자격승인심사	808	762	800	796	800	787	800	793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등	238	239	222	248	222	290	222	318
출입전자민원	**3,570**	**8,217**	**4,427**	**9,724**	**4,427**	**13,800**	**4,427**	**13,135**
한미자동심사	20	3	14	9	14	22	14	35
전자여행허가제(K-ETA)	**-**	**515**	**12,800**	**19,417**	**44,660**	**22,471**	**16,598**	**9,643**
합　계	4,636	9,736	18,263	30,194	50,123	37,370	22,061	23,924

자료: 법무부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첫째, 출입전자민원 수수료는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2배 이상 수납액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관련 세입예산을 매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수납액 추이 및 수납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출입전자민원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자·거소지 변경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지난 4년간 수납실적이 예산액 대비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 세입을 전년도와 매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는 문제가 있음.

출입전자민원 수수료 중 전자사증 수수료는 체류기간 및 입국 횟수에 따라 비자발급 수수료[3]가 달라지는데, 2023년부터 수납액의 급증하였으나 세입예산은 그대로 편성한 문제가 있음.

또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따른 온라인 전자민원 수수료의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21년 2.3배에서 2024년 2.8배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산액은 2022년부터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출입국전자민원 수수료 예산액 및 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출입전자민원		3,570	8,217	4,427	9,724	4,427	13,800	4,427	13,135
	전자사증 수수료[1]	-	-	40	81	40	939	40	839
	온라인 전자민원 수수료[2]	3,570	8,217	4,387	9,643	4,387	12,861	4,387	12,296

주 1) 전자사증 수수료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한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 수수료임

2) 온라인 전자민원 수수료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근무처 변경 허가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임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수준으로 산출하여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설명임.

3) 전자사증 수수료 단가(비자발급 신청에 따른 기본 수수료, 미국 달러 기준)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40달러,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는 60달러,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70달러,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90달러 등임.

그러나 지난 4년간 출입전자민원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2배 이상 수납되고 있으므로, 출입전자민원 수수료 예산 편성 시 수납 실적 및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K-ETA)[4] 한시 면제로 인하여 수수료 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입국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정책이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시 면제 연장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2024년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22개 일부 국가의 입국자에 대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1,697만 명[5]으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94.9%까지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입국자 수 상위 10개국 현황: 2023~2024년]

2023년			2024년		
순위	국가	입국자 수(명)	순위	국가	입국자 수(명)
1	일본	2,345,679	1	중국	4,883,269
2	중국	2,212,966	2	일본	3,258,742
3	미국	1,172,266	3	대만	1,496,000
4	대만	978,311	4	미국	1,416,233
5	베트남	504,347	5	베트남	596,462
6	홍콩	400,305	6	홍콩	567,638
7	태국	391,285	7	필리핀	531,099
8	필리핀	356,046	8	싱가포르	376,489
9	싱가포르	348,736	9	인도네시아	339,037
10	말레이시아	261,103	10	태국	338,713
합계		8,971,044	합계		13,803,682

주) 음영색은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22개 국가·지역(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국)임. 22개국은 미국(괌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임.

자료: 법무부

4)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 입국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출해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5)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입국자는 16,968,203명으로 2023년 11,500,883명 대비 47.5% 증가함.

또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목적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는데,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의 국민은 한국을 방문할 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는 등 사전 심사절차가 생략되어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음.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수납액은 한시 면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던 2022년 194억 1,700만원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선언'[6]등으로 각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2023년에는 수납액이 224억 7,100만원으로 30억 5,400만원 증가하였다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정책 시행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된 2024년에는 수수료 수납액이 전년 대비 128억 2,800만원 감소하여 96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음.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예산액 및 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전자여행허가제(K-ETA)	-	515	12,800	19,417	44,660	22,471	16,598	9,643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2023년 이후 방한 관광객 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에 대하여 지속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세입 감소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취지인 사전 입국심사 실시로 불법체류자·입국 거부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의 유용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정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7]

6)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일상적 유행) 선언(2023. 5. 11.)이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독감처럼 일상적으로 관리 가능한 풍토병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선언을 계기로 입국 제한과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방한 관광산업의 본격적 회복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7) 2025년 6월 현재 법무부는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정책을 연장 적용하고 있음.

〈세　출〉

2.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손해금 이월액의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77억 4,300만원 중 1,077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음.[8)]

[2024년 국가배상금 지급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배상금 지급	100,000	100,000	-	7,743	107,743	107,743	-	-	131,76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에 있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지연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5조[9)]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10)]에

8) 일반회계-국가배상금 지급(1031-301)(법무실)

9)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따라 연 5~12%의 이율로 발생하고 있는 데, 지연손해금의 종류로는 국가 전부패소·국가 일부패소 및 과거사 사건으로 구분되어짐.

[지연손해금의 이율]

구분	주요 내용
국가 전부패소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때부터 완제일까지는 12%
국가 일부패소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는 5%, 그때부터 완제일까지는 12%
과거사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부터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는 5%, 그때부터 완제일까지는 12%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 9,300만원, 2024년은 137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남.

[지연손해금 지급 현황(2022~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이월액(지급건수)	지연손해금 이월액 지급일
2022	21,397	149(14건)	2023. 1.
2023	15,293	36(9건)	2024. 1.
2024	13,768	171(23건)	2025. 1.
합 계	50,458	356(46건)	

자료: 법무부

이러한 지연손해금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 법무부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국가배상금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예산 부족에 따른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게 됨.

또한 지연손해금 이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면밀한 시험장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1억 9,700만원 중 51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4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사업	5,197	5,197	-	-	5,197	5,111	-	86	5,28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CBT 도입에 따른 시험 관련 경비 편성에 있어, 시험장 인프라 및 장비 구매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결과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결정(2022년 7월 발표)에 따라 시험주관기관인 법무부는 2024년 1월에 첫 시행하는 CBT 방식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2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10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음.

11) 일반회계-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법무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방식 변경에 있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함에 따라 CBT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시험 운영상의 오류 가능성 대비 및 CBT 시험 환경 마련 등 제반 환경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수기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시험 응시생들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기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CBT 시험 방식 변경에 대비하여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2024년 변호사시험 CBT 도입 예산 편성이 미흡하게 마련되어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CBT 방식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항목은 답안지저장용 USB 구입비,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중증장애인용 노트북 구입비 및 비상발전 차량 임차료임.

[2024년 변호사시험 CBT 도입과 관련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산 출 내 역	예산액 (A)	결산액 (B)	집행률 (B/A)
노트북 임차	74,500원x4,000대	298	333	111.7
시행・운영기술지원비	9,026,600원x25개교x2명	451	430	95.3
전산감독관 수당	570,000원x150실x2명	171	225	131.6
전산장애 대응 인건비	570,000원x150실x1명	86	68	79.1
답안저장용 USB 구입	**35,000원x2,100개**	**74**	**-**	**-**
비상발전 차량 임차	**4,000,000원x25개교x1대**	**100**	**32**	**32**
중증장애인용 노트북	**146,000원x25개교x2대**	**7**	**1**	**14.3**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인건비	**570,000원x25개교x1실x2명**	**29**	**4**	**13.8**
합 계		1,215	1,093	90

자료: 법무부

답안저장용 USB 구입의 경우, 답안을 별도의 USB에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USB 구입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시험 시에는 기존에 보유한 USB를 활용하는 등으로 구입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그리고 중증장애인용 노트북 임차료와 장애인 시험실 감독관 인건비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인원 수 및 응시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하여 모든 시험장(25개교)에 노트북 및 감독관을 배치하는 비용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이 각각 14.3%, 13.8%로 저조한 결과로 나타남.[12)]

또한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차량을 각 시험장에 1대씩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수의 시험장 건물에 비상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발전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비상발전 차량 임차료로 3,200만원만 집행되었음.[13)]

이와 같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CBT 도입에 따른 시험 관련 경비 편성에 있어 시험장 인프라 및 장비 구매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신규 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법무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관련 장비인 노트북 임차 및 감독관 배치에 관련하여 2024년도 CBT 변호사시험이 첫 시행으로서 학교별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향후 학교별 장애인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응사자의 형평성 보장을 유지하는 측면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3) 법무부는 시험장 건물의 노후화로 비상발전 차량 시설 임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시험 운영을 위해 비상발전 차량 임차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대한법률구조공단: 낙찰차액을 사용한 개발비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법교육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28억 9,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4]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률구조	64,817	64,817	-	-	64,817	64,815	-	2	67,337
대한법률구조공단	62,897	62,897	-	-	62,897	62,897	-	-	65,370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4,239	4,239	-	-	4,239	4,239	-	-	8,83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관계기관 간 시스템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15]

나. 검토의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일반회계-법률구조(1131-300)(인권국)

15)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간은 2024. 7. ~ 2025. 12.(1년 6개월) 이며, 구축비는 130억 7,300만원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4년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개발비 16억 500만원, H/W 및 S/W 장비비 24억 1,400만원, 감리비 2억 2,000만원 등 4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용역비(개발비 및 장비비) 40억 4,300만원, 감리용역비 1억 9,600만원 등 4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2028년	합계
예산	108	4,239	8,834	3,600	16,781
	〈ISP수립〉	〈구축비〉 - 개발비 및 장비비 4,019 - 감리비 220	〈 구축비 〉 - 개발비 2,737 - 장비비 5,877 - 감리비 220	〈 유지보수 〉	
결산	108	4,239			1,408
	〈ISP 수립〉	〈구축비〉 - 개발비 및 장비비 4,043 - 감리비 196			

주)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계약액은 106억 3,900만원임(계약일 2024. 7. 31.)

자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24~2025년 시스템 감리용역 발주액은 4억 4,000만원이었으나 계약액은 3억 5,200만원이며, 2024년분의 경우 발주액은 2억 5,578만원 중 계약액은 1억 9,578만원으로 6,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계약현황]

(단위: 천원)

입찰을 위한 발주금액(2024. 9.)		계약금액(2024. 10.)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55,784	184,216	195,781	156,219
440,000		352,000	
- 적정감리비 산정을 위해 조달청 감리용역 수주 상위업체 및 공공사업 감리업체 5개 기관 견적 평균(438,108천원)에 기초하여 발주금액 440,000천원 산정		- 감리용역 입찰 결과 최종적으로 352,000천원 계약 체결 - 향후 개발용역 과업변경(내용 추가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증액소요가 있어 2025년 감리용역 과업변경을 통해 추가 지출 예정	

자료: 법무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여야 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4년 10월 감리용역 계약 후에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사용한 문제가 있음.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감리용역	256	196	60	데이터베이스 개발비 60

자료: 특허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감리비 낙찰차액 6,000만원은 당초 2025년에 실시할 예정인 데이터 분석 작업 중 일부 작업분을 2024년 11~12월로 앞당겨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출액이라는 점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6)]

16)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96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천공항(T2)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 임차(신규): 준공 일정을 고려한 임차료 편성 필요

가. 개 요

'인천공항(T2)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 임차' 사업은 출입국 소속기관(45개)에 대한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시설관리 및 임차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6,600만원 중 7,1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 인천공항(T2) 출입국 심사장 등 임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51,419	51,419	-	412	51,831	50,658	0	1,173	55,163
	인천공항(T2) 출입국 심사장 등 임차	866	866	-	-	866	71	-	795	86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의 준공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입국 업무용 공간 임차료를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임차대상 건물의 준공 일정 및 사용일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4년 인천공항 내 출입국 업무을 위한 출입국 심사장 및 출국대기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 에 따른 업무용 공간 840㎡을 임차할 계획을 세우고 임차료 8억 6,600만원(2024. 1.~12.,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18]

17) 일반회계-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1232-30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8) 출입국 심사장 및 사무실 임차료 산출근거는 2024년도 행안부 청사수급 면적 847㎡ × 1,022,000원 = 865,634,000원이며, 적용단가 1,022,000원은 2023년도 인천공항 1㎡ 기준 표준임대단가(VAT 포함)임.

해당 확장사업은 11월말에 준공되었고 확장 지역의 운영 개시일은 12월 3일부터로 임차료 집행액은 약 1개월분인 7,100만원(2024. 12. 3~31)에 불과하였음.

[인천공항(T2)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 임차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임차 대상	면적(㎡)	단가(원)	연임차액	예산액	집행액
신규 입국장 업무시설	149	1,043,900	156	예산 편성근거 847㎡×1,022천원	2024. 12. 3.부터 T2 4단계 확장 지역 운영 개시됨에 따라 약 1개월(12.3.~12.31.)의 임차료만 납부
신규 출국장 업무시설	92	1,075,217	99		
신규 출국대기실	599	1,075,217	644		
합계	840	-	899	866	71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2024년 1월부터 T2 신규 확장 구역 출입국심사장 및 출국대기실을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준공 지연으로 심사장 및 대기실 사용개시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임차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T2 신규 확장 구역 공사가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19] 공사진행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1년분 임차료 예산을 전액 편성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건축물의 확장 등 공사가 수반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의 예산 편성 시 해당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 개요]

(배 경) 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등을 통해 인천공항 여객 처리능력을 연간 1억 명 이상으로 확대
(기 간) '17. 11. ~ '24. 12. (준공이후 서편 심사장 확장, ~ '25. 12.)
(내 용)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2합동청사 증축,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확장 등

【인천공항 4단계 조감도】

1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공사를 시작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공정률은 2023년 5월말 기준 73%로, 2024년 10월 개장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밝힘.('봉황 내려앉은 듯' 6년만에 모습 드러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023. 6. 6., 경향신문).

6. 마약수사: 실제 집행가능성과 소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마약수사' 사업은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7억 700만원 중 76억원이 집행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 마약수사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약수사	8,204	8,204	-	△497	7,707	7,600	-	107	9,584
마약사범 수사	7,902	7,902	-	△497	7,405	7,298	-	107	9,176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	138	138	-	-	138	138	-	-	138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164	164	-	-	164	164	-	-	2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수사자료 인쇄비·수사요원 집합교육비 등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안을 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마약수사 사업은 지난 4년간 예산 규모가 2021년 48억 7,600만원에서 2024년 82억 400만원으로 33억 2,800만원이 증가(증가율 68.3%)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 규모도 2021년 8억 1,700만원에서 2024년 11억 7,100만원으로 3억 5,400만원(증가율 43.3%) 증가하였음.

20) 일반회계-마약수사(1335-304)(검찰국)

특히 2024년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산은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 5억 4,600만원의 두배가 넘는 1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8억 700만원(집행률 69%)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마약수사 사업 예결산 집행 현황: 2021~2024년]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마약수사 사업	4,876	4,190	4,319	4,261	4,857	4,839	8,204	7,600
일반수용비	817	988	620	622	546	325	1,171	807

자료: 법무부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약사범수사 관련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발간, 국내외 자료구입비 및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은 집행액이 전무하였고, 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 마약류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 및 마약수사사례·범죄정보 제작의 예산 등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세부항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산출근거
1.마약사범수사 관련	**117,264**	**25,850**	**22.0**	
가.인쇄비	25,600	22,000	85.9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2,600**	-	-	100부*13,000원*2종
- 마약류사범 범죄백서 발간	23,000	22,000	95.7	1,000부*23,000원
나. 자료구입비	**8,410**	-	-	
- 국내자료	5,800	-	-	10종*10,000원*58청
- 국외자료	2,610	-	-	3종*15,000원*58청
다. 기타(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 등)	**83,254**	**3,850**	**4.6**	
2.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	**30,000**	**1,856**	**6.2**	100명*150,000원*2회
3.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사업	82,756	82,756	100	
4.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27,900	32,844	117.7	
5.마약류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	**166,000**	**13,731**	**8.3**	
6.마약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체력단력지원	30,000	13,035	43.5	
7.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440,000	345,000	78.4	
8.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67,000	13,200	**19.7**	
9.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199,160	65,253	**32.8**	
10.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	**8,800**	-	-	
합 계	**1,168,800**	**593,525**	**50.8**	

자료: 법무부

특히 마약사범수사와 관련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자료 구입비는 예산 편성에 있어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마약 홍보 등을 위하여 편성한 항목으로, 예산액 1,101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또한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에도 마약수사 관련 신규 책자 발간 물량의 적정성을 지적받아 마약수사 사례 제작의 경우 정부안 9,6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약범죄정보 제작에서는 정부안 2억 7,800만원에서 7,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이들 항목도 집행이 부진하였음.[21]

마약수사 사례 제작 예산은 국회 감액에도 불구하고 예산 6,700만원 중 1,320만원(집행률 19.7%)을 집행하였고, 마약범죄정보 제작 예산은 1억 9,916만원 중 6,525만원(집행률 32.8%)을 집행하는 데 그쳤음.

따라서 법무부는 마약수사사업의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을 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실 소요와 무관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1) 2024년 마약수사사례 제작 및 마약범죄정보 제작에 정부 예산안으로 각각 9,600만원,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기별 우수사례 발굴의 한계와 각 지역별 수사실무 협의체의 마약범죄정보 등을 발간할 목적임에도 6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시 1억 8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음.

7. 형사보상: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형사보상' 사업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72억 2,500만원 중 772억 1,900만원(집행률 100%)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 형사보상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형사보상	40,000	40,000	-	37,225	77,225	77,219	-	6	42,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2024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액 400억원의 93%인 372억 2,500만원을 이·전용(증)하여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및 수사과정 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형사보상금으로의 이·전용(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최근 4년간(2021~2024년) 형사보상금 지급 증가로 인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607억 9,000만원을 이·전용(증)하여 예산액 1,6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20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최근 지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2) 일반회계-형사보상(1337-302)(검찰국)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0,000	40,000	4,390	44,390	44,387	111.0	100.0	3
2022	40,000	40,000	2,323	42,323	42,323	105.8	100.0	-
2023	40,000	40,000	16,852	56,852	56,851	142.1	100.0	-
2024	40,000	40,000	37,225	77,225	77,219	193.0	100.0	6
합계	160,000	160,000	60,790	220,790	220,780	-	-	9

자료: 법무부

2024년도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전용(증)한 76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 건수 및 금액은 18건, 313억 4,300만원, 전용 건수 및 금액은 58건, 58억 8,200만원으로 나타남.

이・전용(감)한 금액 중 가장 크게 감액된 사업은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의 303억 7,000만원이며, 형사부 등 수사지원 17억 4,000만원, 검찰청 시설운영 13억 2,500만원,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2억 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감)한 주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세목	금액
자체이용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30,370
자체전용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03(상용임금), 310-04(기타보전금) 320-09(고용부담금), 430-01(자산취득비)	1,740
자체전용	검찰청 시설운영	110-03(상용임금), 320-09(고용부담금) 420-04(감리비), 440-00(무형자산)	1,325
자체전용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110-03(상용임금), 210-01(일반수용비) 210-09(시설장비유지비), 430-01(자산취득비)	1,210
자체이용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110-04(일용임금), 210-06(일・숙직비) 210-12(복리후생비)	765
자체전용	마약수사	210-01(일반수용비), 210-07(임차료) 430-01(자산취득비)	497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지급 건수 3,505건 중 63%인 2,207건(보상금 75억 7,100만원)이 무죄에 따른 비용보상이며, 재심사건 무죄 건수가 990건(보상금 592억 700만원)[23], 구속사건 무죄 건수가 252건(89억 8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23) 형사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 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재심사건 무죄에 대한 피고인 보상으로서 주로 과거사 사건(5.18 민주화운동 등)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2019~2024]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고인 보상	구속사건 무죄	건수	310	351	229	232	246	252
		지급액	7,785	10,800	9,224	7,604	6,319	8,908
	재심사건 무죄	건수	1,742	1,561	1,074	626	590	990
		지급액	27,382	25,065	28,621	28,130	43,684	59,207
피의자보상		건수	25	14	53	57	44	56
		지급액	326	256	1,494	1,163	969	1,532
무죄비용보상		건수	2,180	2,454	2,058	2,068	2,076	2,207
		지급액	4,645	5,786	5,049	5,427	5,880	7,571
합계		건수	4,257	4,380	3,414	2,983	2,956	3,505
		지급액	40,138	41,907	44,387	42,323	56,851	77,218

자료: 법무부

가장 많은 보상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무죄비용보상은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수준으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무죄 판결 사건 중 약 10%가 검사의 과오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24)]

특히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하여 형사보상금 지급액 증가와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하고,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25)]

따라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및 수사과정 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형사보상금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있음.

24)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2019~2024년

(단위: 건수,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정대상 사건수	8,028	7,647	7,319	7,827	7,419	7,805
검사과오 인정 사건 수	897	776	905	758	707	788
과오 인정 비율	11.2	10.1	12.4	9.7	9.5	10.1

자료: 법무부

25)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하여 ① 형사보증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 시 예비비를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②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를 하였음.

8.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 상용임금으로 비목 변경 검토 필요

가. 개 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사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법무부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5,700만원 중 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4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무실 기본경비	754	754	-	△16	738	551	3,175	188	767
일용임금	457	457	-	△14	443	281	-	162	45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보수 지급에 있어 예산 비목을 임시직에 보수를 지급하는 ‘일용임금’ 비목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상용임금’ 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기관[27]으로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변호사 32명을 채용하여 소송수행·법률구조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음.

---

26) 일반회계-법무실 기본경비(총액)(7011-201)

27)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 계획 및 실적: 2021~2024년]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선발	29	28	31	29	31	30	32	32	26
예산	459,500		476,904		534,779		513,815		507,107
결산	445,250		425,483		410,681		312,446[1)]		-

주)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간의 차이 발생
(2025년 기준 월 1인당 일용임금 237.5만원, 고용부담금 26.6만원 편성)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지급하는 보수의 편성을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비목인 일용임금(110-04)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①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근로가 아닌 교육의 성격이 강한 수련 인력으로 상용임금 적용대상인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지위가 구분되고, ② 고용 유지 기간이 짧고 순환적 성격이 강하여 고용의 지속성 및 업무의 연속성 등 상용임금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③ 예산 항목을 일용임금으로 편성함으로 탄력적 예산운용이 가능하고, 급여지급 방식이 단순하고 예산반영 및 조정이 유연하여 실질적 단기 근무자에게 적합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6개월) 상시적인 업무인 법률사무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상용임금(110-03)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28)]

2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50
상용임금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9.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집행 주의 필요

가. 개 요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는 국제법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등 경상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0억 7,200만원 중 70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4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272	272	-	6,800	7,072	7,055	-	17	36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이용은 반드시 국회의 사전 의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부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동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4년 국제분쟁(ISDS)사건의 중재행정비용과 미지급으로 연체된 법률자문비용[30]의 지급을 위하여 4개 사업(검찰청 운영,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치료감호소운영, 교도소 운영)의 인건비(보수) 68억원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전용(증)하여 중재행정비용과 법률자문비용을 지급하였음.

29) 일반회계-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국제법무국)

30)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사건 상대방의 공세수준 심화, 심리기일 집중 등으로 2024년 국제중재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에서 각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독촉, 국내외 정부대리로펌의 법률자문비용 지급 독촉이 심화되으며, 중재비용의 미지급 시 중재절차 중단 및 중단에 따른 지연 등 책임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대외 신인도 저하 및 중재판정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쳐 ISDS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제법무국 기본경비로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8.)	검찰청운영 인건비 (7002-101)	보수 (110-01)	1,00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일반 수용비 (210-01)	ISDS 사건 중재행정비용 및 미지급 연체 법률자문비용 지급을 위해 일부금액 승인전용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 (7002-100)	보수 (110-01)	500			
	치료감호소 운영 인건비 (7002-106)	보수 (110-01)	300			
전용 (2024.12.)	교도소운영 인건비 (7002-103)	보수 (110-01)	5,00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일반 수용비 (210-01)	ISDS 사건 미지급 연체 법률자문비용 지급을 위해 일부금액 승인전용

자료: 법무부

그런데 국제중재 비용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 에서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기본경비가 아니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였어야 함.

아울러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 은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음.

그러나 법무부는 이용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의 납부기한이 촉박하며, 연체시 초래되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중재절차 중단 등을 막기 위해 국제법무국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 68억원을 집행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이용은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있어, 반드시 국회의 사전 의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부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동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에서 지출한 중재행정 및 법률자문 비용 집행내역]

지급일자	내역	금액(원)
2024. 8. 23.	중재행정비용	241,647,000
2024. 8. 23.	법률자문비용	349,860,940
2024. 8. 23.	중재행정비용	406,014,350
2024. 8. 23.	법률자문비용	75,274,940
2024. 8. 23.	중재행정비용	376,435,110
2024. 10. 17.	중재행정비용 관련 부가세	10,000,000
2024. 10. 17.	중재행정비용 관련 부가세	24,164,700
2024. 10. 17.	중재행정비용 관련 부가세	37,643,511
2024. 10. 17.	중재행정비용 관련 부가세	40,601,435
2024. 12. 20.	법률자문비용	710,472,220
2024. 12. 20.	법률자문비용	389,602,710
2024. 12. 20.	법률자문비용	145,122,670
2024. 12. 23.	법률자문비용	337,845,970
2024. 12. 23.	법률자문비용	353,316,260
2024. 12. 23.	법률자문비용	1,920,090,190
2024. 12. 23.	법률자문비용	782,469,820
2024. 12. 24.	법률자문비용	389,860,460
2024. 12. 26.	법률자문비용	170,276,700
2024. 12. 26.	법률자문비용	39,300,910
합계		6,799,999,896

자료: 법무부

10.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일정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확충으로 법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8억 4,000만원 중 88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31억 7,500만원이 이월되어 17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4년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0,843	10,843	2,997	-	13,840	8,873	3,175	1,791	4,141
서울여자소년 분류심사원 리모델링	3,625	3,625	17	-	3,625	689	2,799	137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191	191	-	-	191	-	-	191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서울여자소년 분류심사원 리모델링 공사' 와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 수행에 있어 내진보강공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1) 일반회계-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기획조정실)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은 (구)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여성위탁소년 전용 생활·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 7월 내진성능평가와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2024년 1월부터 12월 초까지 수행하였음.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동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설계용역을 동시에 착수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함.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내진보강공사 결과에 따라 본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2024년에 편성된 공사비 36억 4,200만원 중 27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정률에 따라 편성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도 각각 3,400만원, 900만원이 이월되었음.[32)]

[2024년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3 집행액	2024년			집행금액	이월금액	불용금액
			이월	예산	현액Ⓐ			
ㅇ 공 사 비	3,578	-	-	3,578	3,578	689	2,756	133
ㅇ 기본설계비	62	42	-	-	-	-	-	-
ㅇ 실시설계비	92	88	17	-	17	17	-	-
ㅇ 감 리 비	38	-	-	38	38	-	34	4
ㅇ 시설부대비	9	-	-	9	9	-	9	-
합 계	3,779	130	17	3,625	3,642	706	2,799	137

자료: 법무부

한편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사업도 2024년 기본설계에 앞서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하게 되어 설계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중지하고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7년에 공사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32)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설계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착수(2023. 7.) →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 완료(2023. 12.) → 사업규모 조정 검토 및 선행공사 발주 준비(2024. 6.) → 선행공사[석면해체 및 내진보강공사] 착공(2024. 7.) → 선행공사[석면해체 및 내진보강공사] 완료(완료일 :2024. 12. 9.)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계약일 :2024. 12. 17.) → 2025. 11. 공사 준공 예정

이에 따라 2024년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의 기본설계비 8,7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400만원 등 1억 9,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음.

[2024년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집행금액	이월금액	불용금액
		예산	현액Ⓐ			
ㅇ 공 사 비	1,176	-	-	-	-	-
ㅇ 기본설계비	87	87	87	-	-	87
ㅇ 실시설계비	104	104	104	-	-	104
ㅇ 감 리 비	13	-	-	-	-	-
ㅇ 시설부대비	4	-	-	-	-	-
합 계	1,384	191	191	-	-	191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내진성능평가와 설계용역을 동시에 착수하기 보다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로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 반영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사 절차를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렇듯 법무부는 '서울여자소년 분류심사원 리모델링 공사' 와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있어 내진보강공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의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유사사업 추진에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 출>

11.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개선 필요

가. 개 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사업은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4억 4,000만원 중 34억 2,400만원이 집행되고 1,600만원을 불용되었음.[33)]

[2024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500	3,440	-	-	3,440	3,424	-	16	3,4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횡령 및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60개소)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제도임.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합의점을 제안·설득 등 조정활동을 수행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송치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됨.

33) 범죄피해자보호기금-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1135-301)(인권국)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형사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피해사건의 조정이라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위원의 법률적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자격요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2021년 60,217건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4년 68,220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조정 의뢰 건수 중 약 85%를 처리하고 조정성립률은 60% 정도를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형사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2021~2024년)]

(단위 : 건, %)

구분	의뢰건수	처리건수	성립건수	불성립건수	성립률
2021	60,217	50,173	28,550	20,636	56.9
2022	70,878	59,969	36,719	22,070	61.2
2023	69,528	59,243	36,935	21,078	62.3
2024	68,220	58,268	36,860	20,278	63.3

자료: 법무부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폭행 및 상해 등 폭력범죄 사건(약 32%)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약 30%)이 대부분임.

형사조정을 수행하는 형사조정위원은 2024년 기준 2,531명[34]이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하고 검찰청별로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2~3명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통하여 실제적인 피해 변제와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함.

34) 형사조정위원은 2022년에는 2,628명, 2023년에는 2,528명이었음.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3항[35]에 따르면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8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도 법률적 전문성과 덕망을 파악할 수 있는 학력·경력·자격증 및 조정교육 이수 등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한 문제가 있음.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조정위원 선발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에 대한 신뢰성·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사건의 조정이라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위원의 법률적인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자격요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법무부에 대해 시정요구 88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건·주의 21건·제도개선 6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	20	65	2	87
예비비	-	-	-	1	-	-	1
합계	-	-	4	21	65	2	88

법무부는 시정요구사항 88건에 대해 6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2.7%)하고 24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7	63	72.4	24
예비비	1	1	100.0	-
합계	88	64	72.7	24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법무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법무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31) 법무부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실시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가급적 인구 밀집 지역 및 학생 통행이 빈번한 지역은 흉악범죄자가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2)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를 국회가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3)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33)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34)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법무부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이행을 지원한다.

법제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00만원(100%)이 많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25%)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4	4	-	-	3	3	△1
총수입	-	-	4	4	-	-	3	3	△1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억 2,800만원(△2.5%)이 적은 442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800만원(3.9%)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3,728	43,728	42,622	△1,106	45,418	45,418	44,290	△1,128	1,668
총지출	43,728	43,728	42,622	△1,106	45,418	45,418	44,290	△1,128	1,66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된 3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되었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3	3	-	-
합 계	-	-	-	-	3	3	-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4억 1,800만원으로, 이 중 442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11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5,418	45,418	-	±250	-	45,418	44,290	-	1,128
합 계	45,418	45,418	-	±250	-	45,418	44,290	-	1,128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법제처 자산은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소한 22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 5억원, 일반유형자산 3억원, 무형자산 4억 4,300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투자자산 5,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임.

부채는 전년 대비 유동부채 100만원이 증가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226억 4,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법제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8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8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2,650	22,887	△237	△1.0%
		유동자산	1	501	△500	△99.8%
		투자자산	119	64	55	85.9%
		일반유형자산	14,135	14,435	△300	△2.1%
		무형자산	7,442	7,885	△443	△5.6%
		기타비유동자산	952	2	950	47,500%
	부 채		1	-	1	-
		유동부채	1	-	1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2,649	22,887	△238	△1.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8,185	43,506	4,679	10.8%
	재정운영순원가		48,166	43,448	4,718	10.9%
	재정운영결과		48,166	43,448	4,718	10.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법제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법제처는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지방시대 실현 지원, 법령서비스 혁신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3개 세부사업에서 정부 주요정책의 입법 총괄·지원, 법령정보제공, 법제정비, 행정법제 혁신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총액인건비로 전용(증)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인건비(총액인건비):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 전용 주의

가. 개 요

'인건비' 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7억 6,400만원 중 227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22,612	22,612	-	152	22,764	22,736	-	28	23,780
	보수	22,144	22,144	-	142	22,286	22,269	-	17	23,224
	기타직 보수	292	292	-	47	339	336	-	3	375
	연가보상비	176	176	-	△37	139	131	-	8	18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총액인건비로 전용(중)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세부사업: 인건비(1001-100)(운영지원과)

2024년 법제처는 보수 부족으로 인건비 및 타 사업에서 1억 4,200만원을 전용(증)하였는데, 이 중 9,150만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인 일반사업(법령정보제공 등 6개 세부사업)의 상용임금에서 전용(증)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인건비 이·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1.4.)	인건비(1001-100)	110-01	47	인건비(1001-100)	110-02
전용 (2024.12.17.)	인건비(1001-100)	110-05	37	인건비(1001-100)	110-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011-200)	110-03	23		
		110-04	37.5		
	법령정보제공(1031-300)	**110-03**	**2**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110-03**	**7.5**		
	법령심사지원(1032-300)	**110-03**	**28.5**		
	법제정비(1032-301)	**110-03**	**41**		
	법제업무정보화추진(1033-500)	**110-03**	**3**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110-03**	**7**		
		110-04	**2.5**		

자료: 법제처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3)]

3)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자료: 「2024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행정안전부)

또한 동 지침에서는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24년 인건비 예산 부족은 호봉 상승분 및 처우개선율 적용 등 자연 증가분으로 인한 것이며, 총액인건비 사업 내에서 해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에서 총액인건비로의 전용을 실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예: 사업비, 기타 운영경비, 예비비 등)에서 총액인건비로의 증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사업인 법령심사지원 사업 등에서 인건비(보수)로의 전용을 통한 집행은 총액인건비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법제처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법제교육: 교육과정 수요를 고려한 임차료 편성 필요

가. 개 요

'법제교육' 사업은 공무원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2010. 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10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법제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제교육	1,318	1,318	-	△21	1,297	1,052	-	245	1,538
임차료	307	307	-	△43	264	46	-	217	35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제 교육과정의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24년 임차료 3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음. 임차료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임차료 1,600만원, 법제교육센터 장비 임차료 300만원, 강의실 임차료 2억 2,040만원 및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6,7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2024년 실제 임차료 집행실적은 법제업무 담당자과정 1,231만원, 장비 797만원, 강의실 300만원 및 셔틀버스 운행 2,284만원 등 총 4,612만원에 불과하였음.

4) 일반회계-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법제지원국)

강의실 임차료 2억 1,74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강의실 이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변경이 2024년 10월 말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2024년 예산 편성 시 고려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5)]

그러나 2024년 편성 예산액 6,720만원 중 집행액은 2,284만원(집행률 34%)에 불과했던 셔틀버스 임차료의 경우,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 시기(개원일 2024. 11. 4.)를 고려해 볼 때 서울-안면도, 세종-안면도 등 2개의 노선을 각각 40일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참석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편성으로 볼 수 있음.[6)]

[2024년 법제교육사업 임차료 예결산 세부내역]

집행목적	편성금액	산출근거	집행금액	집행 세부내역
법제업무 담당자 과정 임차료	1,600만원	800만원×2회	1,231만원	중앙・공공: 637만원×1회 지방 · 교육청: 594만원×1회
법제교육센터 장비 임차료	300만원	300만원×1회	797만원	빔 프로젝터: 502만원 냉난방기: 296만원
강의실 임차료	2억 2,040만원	2.9만원×7,600명	300만원	교육과정 강의실 임차:[1)] 300만원×1회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6,720만원	(80만원+88만원) ×40일	2,284만원	84.6만원×27일
합계	3억 660만원		4,612만원	

주)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2024. 11. 4.) 전에 시범운영한 교육과정(법제처-울산, 대구 · 경북, 부산 교육연수원 기관연계과정, 2024. 10. 21. ~ 10. 25.)에 대한 시설 임차료임.
자료: 법제처

따라서 법제처는 향후 법제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임차료 편성을 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2024년 8월말 기획재정부는 수요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법제처가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에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2024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제처간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사용협약 체결)

6) 법제교육원 교육과정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된 교육 참가 인원은 375명이나 실제 참가인원은 274명으로 계획인원과 참석인원간의 차이가 101명으로 나타남.

[2024년 법제교육사업 셔틀버스 운행 세부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과정명	참가인원		운영경로	임차료
		계획	실적		
1	제30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15	12	세종↔태안	660
2	기관연계과정(법제처-울산, 대구 · 경북, 부산 교육연수원)	30	48	오송↔태안	3,300
3	통합법제과정	30	15	서울↔태안	1,936
4	행정법 일반과정	30	26	태안→서울	935
5	행정법 실무핵심과정	30	15	오송↔태안	1,320
				태안 내 (현장체험)	715
6	제1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종합과정	30	18	오송↔태안	1,760
				태안 내 (현장체험)	660
7	헌법과 법령입안과정	30	18	태안→오송	660
				태안 내 (현장체험)	660
8	행정법 기초과정	30	25	오송→태안	660
				태안→오송	770
				태안 내 (현장체험)	1,320
9	제2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종합과정	30	18	태안→오송	715
				태안 내 (현장체험)	660
10	사례로 배우는 행정법 과정	30	20	오송↔태안	1,320
11	기관연계과정(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30	23	서울↔태안	1,980
12	제2기 행정법 실무 핵심과정	30	14	오송↔태안	1,430
				태안 내 (현장체험)	660
13	법령정보화과정	30	22	태안→오송	715
합 계		375	274		22,836

자료: 법제처

3.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설치: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은 신기술 도입 등 법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법제의 혁신을 기획·총괄하고 관련 국정과제 입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 법령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동 기획단의 담당 사업은 행정법제 혁신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4,700만원 중 6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6%)되고 7,800만원은 불용되었음.[7)]

[2024년도 행정법제 혁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행정법제 혁신	747	747	-	-	747	669	-	78	4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미래법제혁신기획단' (2024. 1. 1. 신설,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 12. 29 제정)은 미래 신기술 및 법제 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2024. 1. 1. 폐지)으로부터 이어 받은 행정기본법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음.[8)]

동 기획단의 2024년 주요 추진 업무로는 ① 현행 법령상 기술수준 중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정비과제에 대한 관계 기관 수요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②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및 자동적 처분 도입 촉진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③ 법령상 제출·보관 등의 의무가 있는 '원본'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한 28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있음.

7) 일반회계-행정법제 혁신(1032-302)(법제정책국)

8) 2025. 6. 현재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은 팀장 1인, 부서원 6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법제처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의 정규 하부조직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직제 등의 법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인 임시조직의 설치를 기관 운영의 자율권 내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임시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결재를 받거나 훈령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설치됨.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은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59호, 2023. 12. 29. 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9년에 설치되어 2023년에 폐지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의 후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미래법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9)]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국무총리훈령 제859호, 2023. 12. 29., 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제처에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법제도 개선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래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법제도 혁신 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추진
4. 규제혁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5.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행정법제도 개선 추진
6.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8. 그 밖에 미래법제 혁신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런데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업무를 보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행정기본법」 관련 업무로 기존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업무를 이어받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제도 개선 계획수립, 조사·연구, 혁신체계 구축 및 규제혁신 등은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등 기존 정규조직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9) 법제처는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설치·운영하기 전에도 '행정법제혁신추진단' (2019 ~ 2023)을 훈령으로 설치·운영하여 「행정기본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정부조직관리계획은 임시조직 존속기간 경과 시 해당 기능을 정규조직에 이관하고 임시조직에서 계속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직제상 상시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0)]

따라서 법제처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의 업무 수행 범위 등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안전부의 '임시조직 설치·운영 지침' 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간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 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 1회 연장 가능)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함.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법제처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10	-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10	-	12

법제처는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12	100	-
예비비	-	-	-	-
합계	12	12	100	-

감사원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00만원(3.6%)이 많은 7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원(5.7%)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39	639	731	92	745	745	772	27	41
총수입	639	639	731	92	745	745	772	27	41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4억 5,000만원(△3.7%)이 적은 1,407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5,500만원(6.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7,381	137,381	132,762	△4,619	146,167	146,167	140,717	△5,450	7,955
총지출	137,381	137,381	132,762	△4,619	146,167	146,167	140,717	△5,450	7,955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억 4,500만원으로, 7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7,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745	745	-	745	775	772	-	3
합 계	745	745	-	745	775	772	-	3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73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407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26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46,167	146,167	1,168	1,411 △1,411	-	147,335	140,717	2,659	3,959
합 계	146,167	146,167	1,168	1,411 △1,411	-	147,335	140,717	2,659	3,95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감사원 자산은 전년 대비 78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11억 2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 22억 1,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억 4,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유동자산 75억 7,300만원, 일반유형자산 28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700만원 증가한 16억 2,0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4,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7억 7,000만원 증가한 2,394억 8,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감사원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50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50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7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감사원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41,102	233,285	7,817	3.4
		유동자산	8,505	932	7,573	812.6
		일반유형자산	227,481	224,677	2,804	1.2
		무형자산	5,115	7,330	△2,215	△30.2
		기타비유동자산	1	346	△345	△99.7
	부 채		1,620	1,573	47	3.0
		유동부채	11	10	1	10.0
		장기충당부채	1,609	1,563	46	2.9
	순자산		239,482	231,712	7,770	3.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0,999	146,693	4,306	2.9
	재정운영순원가		150,856	146,469	4,387	3.0
	재정운영결과		150,856	146,469	4,387	3.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성과감사·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고, 기관정기감사를 활성화하여 기관의 핵심업무와 조직 운영상의 취약점을 진단,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국회 논의사항 및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는 감사사항을 발굴·실시하여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24년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감사원은 2024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목표 미달성의 원인이 해당 성과지표로 측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의 사전컨설팅 개최 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내역변경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내역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소요를 지침에 근거하여 면밀히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금액이 대부분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성과지표 : 감사활동의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등

가. 개　요

감사원이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2]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총 2개 중 1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1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1	-	1
		100.0%	50.0%	-	50.0%

자료: 감사원

구체적인 지표 수치를 살펴보면, 초과달성한 지표는 ‘공직비리 적발 실적’으로 2024년 850점 목표치 대비 1,105점을 달성하였으나, 미달성 지표인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2024년 목표치 3조 2,500억원 대비 1조 9,556억원을 달성하여 달성률이 60.2%임.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4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억원)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목표	32,500
		실적	19,556
		달성률(%)	60.2
공직비리 적발 실적 (점)	∑(신분상조치 인원수×가중치)	목표	850
		실적	1,105
		달성률(%)	130.0

자료: 감사원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감사결과 조치금액(변상판정 금액, 추징・회수・보전 금액, 환급・추급 금액)과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2024년 달성치 1조 9,556억원은 변상판정 7억원, 추징・회수・보전 357억원, 환급・추급 2억원과 기대효과금액 1조 9,190억원의 합임.[3)]

[2024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달성치의 세부현황]

(단위: 억원)

경제적 성과				
계	변상판정	추징 · 회수 · 보전	환급 · 추급	기대효과 금액
19,556	7	357	2	19,190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첫째, 감사원은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경제적 성과의 목표 미달성에 대하여, ① 2024년에는 재정지출이 아닌 재정관리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운영하였고, ② 재난 및 사고가 빈번하였던 2024년에는 국민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태원 참사, 산사태, 산불, 기후위기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③ 2024년 실시한 재정지출 감사 중 검토 및 처리에

3) 감사원은 기대효과 금액 1조 9,190억원의 세부 내역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시행되지 못한 감사로 인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 산정식 중 '기대효과 금액' 인데, '기대효과 금액' 의 세부항목인 예산절감, 수입증대, 국민편익, 지출합리화, 재산증가로는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효과나 국민안전 관련 감사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음.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정의와 분류기준]

구 분		정 의
조치금액		변상판정 · 시정요구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하여 직접 추징 · 회수 · 보전 또는 환급 · 추급하도록 조치한 금액
기대효과금액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한 직접적 처분요구는 아니나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로 인해 공공에 미치는 금전적 효과금액(감사결과 시행 후 5년 이내 발생할 효과)
	예산절감	정책실패 ·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 비경제적 ·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개선,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금액
	수입증대	세원의 발굴 · 확충, 매각금액의 증가,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국민편익	공공서비스의 양적 · 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의 감소 등으로 부담이 감소하게 된 금액
	지출합리화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가능하게 된 금액
	재산증가	법률관계의 변경(권리 · 의무 조정)을 통한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공적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금액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하고,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의 취지에 맞추어 감사활동의 성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감사원은「국가재정법」제16조의 취지에 따라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성과금액의 세부내역별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제16조는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투명한 예산과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러한 투명한 예산과정 공개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도 공개함으로써 평가 및 환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감사원은 기대효과 금액 1조 9,190억원의 세부 내역 공개 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대효과 금액에는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이 감소한 부분,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예산 절감액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짐.

따라서 감사원은「국가재정법」제16조의 취지에 따라 기대효과 금액으로 산정한 성과금액의 세부내역별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및 국내여비의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적극행정 지원' 사업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200만원 중 2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적극행정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적극행정 지원	263	263	-	39	302	218	53	31	335

이 사업은 2024년 8월 9일에 감사활동경비 세부사업의 국내여비 3,972만원을 내역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음.[5)]

[2024년 내역변경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내역변경 (2024.8.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39	적극행정 지원 (1131-304)	국내여비 (220-01)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

자료: 감사원

4) 일반회계-적극행정 지원(1131-304)(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5)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감사활동경비(1131-303)와 이 사업 적극행정지원(1131-304)는 단위사업이 감사활동경비(1131)로 동일함.

그러나 이 사업 국내여비는 2024년 본예산 5,700만원과 내역변경을 통해 증액된 3,972만원을 합한 9,672만원의 예산현액 중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국내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					
57	57	39	96	67	29	106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개최 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내역변경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내역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소요를 지침에 근거하여 면밀히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금액이 대부분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2024년 1월에 적극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적극행정지원과를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및 사전컨설팅담당관으로 조직을 2개로 개편하였고,[6] 2024년 연 3회 기준으로 편성된 사전컨설팅을 연 6회로 확대하면서, 하반기 여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내역변경을 통해 3,972만원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2024년 하반기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컨설팅 사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컨설팅 출장 일수를 내역 변경 당시(8월) 계획보다 50%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설명함.[7]

[사전컨설팅 관련 2024년 연중 계획변경 현황]

시기	내용
예산안 편성 당시	사전컨설팅 연 3회 계획
2024년 1월	적극행정지원과가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및 사전컨설팅담당관으로 분과
2024년 상반기 중	사전컨설팅 연 6회로 변경
2024년 8월 9일	국내여비 3,972만원 증액
2024년 하반기	공공주택 건설사업 컨설팅 이슈로 이 사업 사전컨설팅 출장 50% 감축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6) 개편 이전에는 적극행정지원과 13명이 이 사업 국내여비를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2개과 총 19명이 이 사업 국내여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7) 러-우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함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사업 차질과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 컨설팅'에 국토부 PF조정委와 감사원의 이 사업 사전컨설팅이 활용됨.

한편, 내역변경(증)된 예산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사전컨설팅 2회, 현장컨설팅 2회, 사전컨설팅 콘테스트 예비심사 및 사전컨설팅 현장확인 목적으로 증액되었고, 지방 대상 컨설팅 단가도 2024년 본예산 당시 11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비해 2만원이 증액된 단가로 계획되었는데, 편성 단가에 대하여 감사원은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평균하여 계획하였다는 입장임.[8)]

[내역변경(증)된 금액 대상 세부계획]

(단위: 천원)

구분		단가	횟수 등	여비금액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2회)	수도권	70,000원	10인*20일*30%	4,200
	지방	130,000원	10인*20일*70%	18,200
	소계			22,400
현장컨설팅 (2회)	지방	130,000원	1인*4일	520
	소계			520
사전컨설팅 콘테스트 예비심사	수도권	70,000원	10인*5일*30%	1,050
	지방	130,000원	10인*5일*70%	4,550
	소계			5,600
사전컨설팅 현장 확인	수도권	70,000원	2인*50일*30%	2,100
	지방	130,000원	2인*50일*70%	9,100
	소계			11,200
합계				39,720

자료: 감사원

내역변경은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2024년 예산편성 당시 계획된 사전컨설팅 횟수를 연중 확대하였다가 다시 축소하는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증액 예산의 70% 이상이 불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11만원으로 반영된 지방 대상 컨설팅을 내역변경 시 13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

8) <2024년 본예산 편성액 기준 국내여비 5,700만원 계획>

(단위: 천원)

구분		단가	횟수 등	여비금액
사전컨설팅 처리 및 모범사례 발굴	서울	20,000원	12인*23일	5,520
	수도권	70,000원	12인*24일	20,160
	지방	110,000원	12인*24일	31,680
	단수조정			-360
	계			57,000

자료: 감사원

성 세부지침」에 규정된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단가에 기초하여 지방 출장 시 소요되는 평균 여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9)10)]

따라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향후에는 개최 월을 정례화 하는 등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내역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소요를 지침에 근거하여 면밀히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금액이 대부분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국내여비 1일 단가표는 2023년 3월 2일 개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고 이하 금액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

[국내여비 단가표]

(단위: 원)

구분	제1호	제2호
일비	25,000	25,000
식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 (상한액: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은 70,000)
운임	실비	실비

10) 지방에 5일 출장 시 통상 소요되는 평균 여비는 약 11만 2,000원(56만원/5일) 수준임. 다만, 감사원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여비는 계획변경 당시 편성된 단가인 13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분	계	월요일 (출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복귀)
계	560,000	140,000	115,000	115,000	115,000	75,000
일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식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운임	50,000	25,000	-	-	-	25,000
숙박비	260,000	65,000	65,000	65,000	65,000	-

자료: 감사원

3. 감사활동경비 사업: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4억 5,600만원 중 157억 3,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4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감사활동경비	16,938	16,938	123	26 △631	16,456	15,733	98	625	13,75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감사원은 이 사업을 통해「감사원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기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12][13] 동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14]

---

11) 일반회계-감사활동경비(1131-303)(기획조정실)

12)「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3) 2024년 재심의 청구 처리와 관련된 예산은 국내여비(220-01목) 1,000만원임.

14)「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았는데, 재심의 청구 처리가 여전히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된 재심의 중 「감사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처리된 건은 10% 내외이며, 2024년에는 58건이 처리되었으나 그 중 3건만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처리기한은 405일로서 법정기한인 2개월을 과도하게 초과하였음.

[2020~2024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연 도	전체 처리 건수	기한 준수 처리 건수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처리 건수		평균 처리기간
			2개월~1년	1년 초과	
2020	48 (100.0)	5 (10.4)	36	7	213
			43 (89.6)		
2021	46 (100.0)	4 (8.7)	18	24	294
			42 (91.3)		
2022	22 (100.0)	2 (9.1)	9	11	325
			20 (90.9)		
2023	56 (100.0)	2 (3.6)	15	39	475
			54 (96.4)		
2024	58 (100.0)	3 (5.2)	29	26	405
			55 (94.8)		

자료: 감사원

또한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으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

[2023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19)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ㅇ [지적사항]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2개월 이내)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를 기록함 ㅇ [시정요구사항]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고,[15] 이는 위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기 이전의 조치로서 2024년에는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16]

특히, 2024년에는 재심의 처리가 완료된 총 58건 중 51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에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가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2020~2024년 재심의 처리가 완료된 건의 결과 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 완료된 건수(A)			
		인용건수	기각건수	각하 및 취하 건수
2020년	48	9	24	15
2021년	46	1	38	7
2022년	22	0	20	2
2023년	56	10	45	1
2024년	58	7	47	4

자료: 감사원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의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 외의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재심의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란 「감사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심의 관계자 등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심의 관계자의 감사원 출석 부담을 경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사전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임.

16)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각 사건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사항 처리안이 심의안 내용과 동일한 경우 심의안 결재와 중복되는 결정문에 대한 사무처 결재를 생략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2025.5.)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를 통하여 기대되는 예상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OASYS 구축·운영 사업: 하반기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 이월 재발 방지 필요

가. 개 요

'OASYS 구축·운영' 사업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으로 구성된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7억 9,900만원 중 94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1%)되고 24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OASYS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15,865	15,865	55	△23	15,897	12,508	2,424	965	16,111
	OASYS 구축·운영	12,822	12,822	-	△23	12,799	9,481	2,424	894	12,854

이월금 24억 2,400만원은 전액 OASYS 구축·운영 내역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연구비 9,800만원과 자산취득비 23억 2,6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된 것임.

[차년도 이월액의 발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비목	계약금액 (A)	2024년 집행금액 (B)	사고이월 금액 (A-B)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자산취득비	7,024	4,905	2,119
디지털포렌식 증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구매 사업		207	-	207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일반연구비	326	228	98
합계		7,557	5,133	2,424

자료: 감사원

17) 일반회계-전산운영경비(정보화)(1134-309)(디지털감사국)

나. 검토의견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감사원은 보안성 검토 등 외부 협의가 필요한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일정 지연으로 예산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월금이 발생한 계약 건의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 4월 26일까지이고, 이를 위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2025년 4월 30일까지임.

[차년도 이월액의 발생 계약 건의 입찰공고 및 유찰 시점]

계약명	계약기간	조달청 계약 의뢰	입찰공고	유찰		기술평가
				시점	사유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2024.8.29.~ 2025.4.26.	2024.5.7.	2024.6.10.	해당사항 없음		2024.7.30.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024.12.17.~ 2025.4.30.	2024.11.15.	2024.11.26.	2024.12.9.	단독 입찰	2024.12.11.

자료: 감사원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당초 2024년 4~5월 입찰공고를 통해 5~6월에 기술평가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체결 전 사업효과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및 보안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4년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로 인하여 설계 완료 시점도 2024년 12월로 순연되었으며, 이와 연계된 감리용역 계약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또한 일정이 조정되어 2024년 12월 17일에 체결됨.

이 사업은 국가기관 최초로 업무망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이용하여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하고 원내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서,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일자	추진 내용
2024.1~3.	▪ 관련 사업자 등을 통한 시장 조사 수행 후 제안요청서 작성
2024.3.	**▪ 다양한 기술 경쟁으로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참여지원(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
2024.4~5.	**▪ 업무망 VDI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관련 국정원 보안성 검토 (수차례 대면회의 실시)**
2024.5~7.	▪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KT 컨소시엄) 선정
2024.8.	▪ KT 컨소시엄과 기술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2024.8~12.	▪ 업무 분석, 현장실사 및 설계
2024.9.~2025.4.	▪ 자재발주 및 시공/시스템 구매/장비 설치 및 구축
2025.5.12.	▪ 사업 완료(준공)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타부처 사례가 없는 무선통신 적용과 업무망 VDI를 통한 논리적 망분리 등 감사원 정보화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더욱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였고, 이에 2024년도 1월부터 국정원 보안성 검토 절차를 준비하였으나 국정원의 일정에 따라 수차례 대면회의를 실시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감사원은 보안성 검토 등 외부 협의가 필요한 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주요 용역 간 연동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경쟁입찰을 통한 연구확대 필요 등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감사원에 대해 시정요구 2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2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1	9	2	-	22
예비비	-	-	-	-	-	-	-
합계	-	-	11	9	2	-	22

감사원은 시정요구사항 22건에 대해 22건 전부를 조치완료(조치율 10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2	22	100.0	-
예비비	-	-	-	-
합계	22	22	100.0	-

나. 검토의견

첫째,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한 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이 가능한 용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감사활동경비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6)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감사원은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시정)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감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앞으로 경쟁입찰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그러나 2024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목)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상세 계약체결 내역을 살펴보면,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2건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의 4)에 근거하여 특수한 지식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4건으로 나타남.[18]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들 계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증 연구,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능을 활용한 감사접근방법 및 해외 감사사례 연구,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 및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계획 수립 실태 분석인데, 이들 연구는 감사활동과 연관지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수한 지식에 포섭될 여지는 있어 보임.

그러나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일반연구 용역은 감사사항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비교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활동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보다 일반경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상세 계약체결 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2분류)	591,0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1분류)	583,000	수의계약(나라장터)	유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도전·혁신성 실증연구	48,95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개선 기초자료 연구	35,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강원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적정성 검토 연구	14,85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	21,5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능을 활용한 감사접근방법 및 해외 감사사례 연구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미국의 재난관리책임자 채용제도 분석	1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계획 수립 실태 분석	4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특수한 지식
정부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20,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2,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7,000	수의계약(자체수의)	저가

자료: 감사원

둘째, 감사원은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25년도 국내여비 예산을 감액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2024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져 관성화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감사활동경비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4)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시정)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은 전년 59억 4,299만원 대비 13억 4,486만원이 감액된 45억 9,81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향후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러나 2024년에도 감사활동경비 세부사업의 국내여비에서 다른 비목 또는 다른 세부사업으로 조정된 금액이 5억 1,400만원이고, 이는 2022년 3억원, 2023년 2억 5,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이처럼 반복되는 국내여비 이·전용 집행은 여비 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감사원은 2025년 감사활동경비 세부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을 13억 4,486만원 감액하였으나, 2022~2024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져 관성화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감사활동경비 국내여비 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4.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3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수용비 (210-01)
			5		임차료 (210-07)
			32		국외업무여비 (220-02)
세목조정 (2024.5.1.)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25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외교육여비 (220-03)
세목조정 (2024.7.1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외교육여비 (220-03)
내역변경 (2024.8.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39	적극행정 지원 (1131-304)	국내여비 (220-01)
전용 (2024.8.2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1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일반수용비 (210-01)
			2		임차료 (210-07)
			12		국내여비 (220-01)
			70		국외업무여비 (220-02)
전용 (2024.8.29.)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8	기본경비 (1111-251)	국외교육여비 (220-03)
전용 (2024.10.30.)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61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업무여비 (220-02)
전용 (2024.10.30.)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60	기본경비 (1111-251)	임차료 (210-07)
전용 (2024.11.28.)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75	기본경비 (1111-25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합계			514	-	

자료: 감사원

셋째,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감사원이 마련한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가 의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이므로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는 위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기 이전의 조치로서 2024년에는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19][20]

따라서 감사원은 재심의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 외의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감사활동경비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9)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시정)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감사원은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24년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평균 처리기간: '23년 474일→'24년 407일) - 향후에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ㅇ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19) '3. 감사활동경비 사업: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검토의견 관련

20)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각 사건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사항 처리안이 심의안 내용과 동일한 경우 심의안 결재와 중복되는 결정문에 대한 사무처 결재를 생략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2025.5.)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를 통하여 기대되는 예상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은 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원(35.1%)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134	134	-	-	181	181	47
총수입	-	-	134	134	-	-	181	181	47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4억 600만원(△11.6%)이 적은 18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300만원(18.2%)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7,683	17,683	15,461	△2,222	20,680	20,680	18,274	△2,406	2,813
총지출	17,683	17,683	15,461	△2,222	20,680	20,680	18,274	△2,406	2,81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1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181	181	-	-
합 계	-	-	-	-	181	181	-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206억 8,000만원으로, 이 중 182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4%)되고 1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2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0,680	20,680	-	-	-	20,680	18,274	123	2,283
합 계	20,680	20,680	-	-	-	20,680	18,274	123	2,283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산은 전년 대비 11억 9,800만원이 증가한 144억 8,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0억 6,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34억 6,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2,600만원으로 유동부채 3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44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82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4,484	13,286	1,198	9.0
		유동자산	112	2,174	△2,062	△94.8
		투자자산	63	61	2	3.3
		일반유형자산	2,651	2,854	△203	△7.1
		무형자산	11,658	8,197	3,461	42.2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26	23	3	13.0
		유동부채	26	23	3	13.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4,458	13,263	1,195	9.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184	6,454	△270	△4.2
	재정운영순원가		18,211	18,455	△244	△1.3
	재정운영결과		18,211	18,455	△244	△1.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15일 시행된 이후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기관의 목적으로, 총 7개 세부 사업에서 공수처 정보화 시스템 구축,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수사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수처는 차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예산 편성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신규 사업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사업(ISMP)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및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신규):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수행 부적정

가. 개 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사업은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

[2024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3,851	3,851	-	107	3,958	3,933	-	25	9,788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	-	-	-	110	110	11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은 특정 소프트웨어(SW) 개발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비즈니스(업무)와 정보기술(IT)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제안요청서(RFP)와 구축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임

2) 일반회계-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수사과)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차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예산 편성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증)하여 신규 사업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사업(ISMP)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및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 심의·통제를 받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2021. 7.~2022. 6.), 2단계(2024. 5.~12.)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공수처가 2025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동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목표·범위·전략 도출 및 사업비 산정 등 준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공수처는 2025년 추진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산 편성을 위한 ISMP 사업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4년 2월 기획재정부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 협의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수처는 신규 사업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용(증)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사업(2024. 5. ~ 9.)을 추진하였음.

[2024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사업을 위한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4.1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국내여비 (220-01)	110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정보화) (1031-300)	일반연구비 (260-0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ISMP 사업 추진 예산 필요로 전용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수처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필요

가. 개 요

'정책연구' 사업은 공수처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6,500만원이 집행되고(집행률 29.5%) 4,5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1,000만원은 불용되었음.[4)]

[2024년도 정책연구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51	2,551	-	-	2,551	2,001	115	435	2,573
정책연구비	220	220	-	-	220	65	45	110	2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공수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선정 후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연구용역 절차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는 '2024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2024. 2. 15.)에 따라 정책연구 과제 4건을 선정하였으나, 과제 3건은 연구수행 계약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져 모두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과제 1건은 연말에 계약 공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2회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특히 공수처는 신임 검사(수사관)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교재가 필요하여 '공수처 검사, 수사관 교육 모델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 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연말(2024. 11.)에야 공고를 실시하여 유찰 2회 등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 1억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음.

4) 일반회계-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동 연구용역의 추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024년 11월에 수립하여 1차 입찰공고(2024. 11. 7.)와 2차 입찰공고(2024. 12. 9.)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결국 2025년 2월에 2025년도 예산으로 다시 공고하여 4월에 계약이 되었음.

[2024년 정책연구비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명	발주금액	낙찰액	계약기간	계약유형
공수처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정책연구비 (260-02)	220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안	30	30	2024.6 ~ 2025.1.	제한경쟁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검토	30	29.6	2024.11. ~ 2025.2.	수의 (단일입찰 및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공수처 수사에 특화된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50	50	2024.7 ~ 2025.2.	제한경쟁
		공수처 검사, 수사관 교육 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	100	-	-	(유찰 2회)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 계약이 체결된 정책연구사업 3건 모두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용역 규모 등에 비해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 연구과제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수처 검사, 수사관 교육 모델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 사례와 같이 기본계획을 연도 말에 수립하여 충분한 공고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합한 연구수행자를 찾기 어려워 연구용역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연구용역 과제선정 후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계약 등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시정요구 1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8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8	-	10
합계	-	-	-	2	8	-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정요구사항 10건에 대해 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0.0%)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	7	70.0	3
합계	10	7	70.0	3

헌법재판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900만원(6.1%)이 많은 6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원(1,797.7%)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	39	36	△3	641	641	680	39	644
총수입	39	39	36	△3	641	641	680	39	644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3억 4,800만원(△4.1%)이 적은 544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600만원(1.2%)이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4,492	54,492	53,752	1,740	56,766	56,766	54,418	2,348	666
총지출	54,492	54,492	53,752	1,740	56,766	56,766	54,418	2,348	66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억 4,1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41	641	-	641	680	680	-	-
합 계	641	641	-	641	680	680	-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7억 6,600만원으로, 이 중 544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23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6,766	56,766	-	-	-	56,766	54,418	-	2,348
합 계	56,766	56,766	-	-	-	56,766	54,418	-	2,348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헌법재판소 자산은 전년 대비 2억 700만원이 감소한 2,139억 1,1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6억,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 4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3억 4,900만원, 무형자산이 6억 6,1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한 37억 4,900만원으로 유동부채 7,4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억 3,7000만원이 감소한 2,101억 6,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92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91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7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3,911	214,118	△207	△0.1 %
		유동자산	268	617	△349	△56.6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06,427	205,827	600	0.3 %
		무형자산	7,006	7,667	△661	△8.6 %
		기타비유동자산	210	6	204	3,400.0 %
	부 채		3,749	3,819	△70	△1.8 %
		유동부채	1,339	1,413	△74	△5.2 %
		장기차입부채	2,410	2,406	4	0.2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10,162	210,299	△137	△0.1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9,216	56,245	2,971	5.3 %
	재정운영순원가		59,136	56,209	2,927	5.2 %
	재정운영결과		59,136	56,209	2,927	5.2 %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헌법재판소는 소통을 통한 심판지원체계 발전 도모, 인적 역량 강화,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행정, 국제 활동을 통한 지식의 교류와 축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13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 업무의 효율적 지원, 대국민 재판서비스 제고, 해외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공보관 등 직위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인건비: 조속한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등

가. 개 요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5억 3,300만원 중 322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되고 1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33,533	33,533	-	-	33,533	32,202	-	1,331	34,692
보수	31,760	31,760	-	-	31,760	30,465	-	1,295	32,793
기타직보수	1,539	1,539	-	-	1,539	1,504	-	35	1,661
연가보상비	234	234	-	-	234	233	-	1	23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공보관 등 직위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인건비(1001-150)(행정관리국)

지난 5년간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인건비 불용액이 22억원에서 8.6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13억 3,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24년도 인건비 불용액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휴직 및 퇴직 등 결원에 따른 8억 1,300만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2억 6,000만원 및 헌법연구관 겸임으로 2억 5,700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인건비 불용액 세부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헌법연구관 겸임	휴직·퇴직 등 결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고위직 보수동결	기타	합계
2020	29,578	27,377	250	1,409	67	285	190(국외연수과다편성)	2,201
2021	31,280	29,535	274	1,664	17	100	58(연가보상비)	2,113
2022	31,280	29,813	257	957	-	153	57(연가보상비)	1,424
2023	31,860	30,995	257	566	-	-	42(연가보상비)	865
2024	33,533	32,202	257	813	260	-	1(연가보상비)	1,33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임에 따른 불용액은 비서실장과 공보관 직위를 겸임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데, 두 직위 모두 헌법연구관을 임명이 가능한 보직으로 규정(「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11항[3] 및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7조[4])하고 있음.

인사관행으로 지속되어온 비서실장과 공보관 직위를 헌법연구관이 겸임하는 것은 헌법연구관 본연의 업무 수행(헌법 사건의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서실장과 공보관 업무에 해당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 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국가공무원법」제43조에 따라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나, 헌법연구관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024년 휴직자 22명 중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휴직자는 15명이며, 이 중 일반직 공무원 휴직자 11명 전원이 보충되었으나, 헌법연구관 휴직자 중 6개월 이상인 4명에 대해서는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와 같이 헌법연구관의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상으로도 인건비 불용액 증가를 가져오게 됨.

[2024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현황]

구분	직급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부	비고
1	헌법연구관	24.1.2.~24.3.17.	X	6개월 이하
2	행정주사	24.1.2.~24.10.24.	O	
3	서기관	24.1.5.~24.4.30.	O	
4	**헌법연구관**	**24.1.21.~25.4.30.**	**X**	
5	헌법연구관	24.2.19~24.5.12.	X	6개월 이하
6	행정주사	24.3.1.~24.12.31.	O	
7	청원경찰	24.3.4.~24.9.3.	X	6개월 이하
8	전산주사	24.5.1.~25.4.30.	O	
9	행정주사	24.5.7.~24.12.31.	O	
10	헌법연구관	24.5.16.~24.6.18.	X	6개월 이하
11	전산주사	24.5.24.~25.5.23.	O	
12	경위서기	24.6.1.~25.12.24.	O	
13	행정주사	24.7.1.~24.12.31.	O	
14	행정사무관	24.7.8.~25.8.7.	O	
15	보안서기	24.8.1.~24.10.30.	X	6개월 이하
16	헌법연구관	24.8.3.~24.11.1.	X	6개월 이하
17	**헌법연구관**	**24.10.10.~26.4.9.**	**X**	
18	**헌법연구관**	**24.10.14.~25.9.30.**	**X**	
19	**헌법연구관**	**24.12.18.~25.6.27.**	**X**	
20	행정주사	24.9.23.~25.12.31.	O	
21	행정주사	24.12.2.~25.8.29.	O	
22	법원사무관	24.12.11.~24.12.31.	X	6개월 이하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수시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연도 결원 인원 및 차년도 인력 증원분을 감안하여 연 1회 정기채용만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특히 헌법연구관은 신규 지원자가 적어 대체인력의 수시채용 시 지원인력의 중복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어 양질의 지원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수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장기 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에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신규채용 외에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9항[5]에 따른 파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인력 충원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결원의 장기화로 인한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선대리인 보수 등: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가. 개 요

'국선대리인 보수 등' 사업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과 관련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변론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술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2,7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4%)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국선대리인 보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선대리인보수 등	127	127	-	-	127	111	-	16	12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1,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의 대부분이 기각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처리건수는 5,014건이나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700건으로 국선대리인 신청에 의한 평균 선임률은 14%로 나타났고, 2024년의 경우에는 선임률은 12.7%(선임신청 1,001건 대비 선임건수 127건)로 최근 5년 평균 선임률보다 저조하였음.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연례적으로 1,000여건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6) 일반회계-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심판지원실)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2020~2024년]

연도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직권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2항)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2020	1,233건	159건	-
2021	1,030건	157건	-
2022	916건	152건	1건
2023	834건	105건	1건
2024	1,001건	127건	1건
합계	**5,014건**	**700건**	**3건**

자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미선임 요건 현황: 2020~2024년]

구분	각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접수	각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처리	국선대리인 선임된 사건 수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 수 (A+B)	무자력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미충족 A	심판청구 부적법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B
2020	1,233건	1,227건	159건	1,068건	21건(2%)	1,047건(98%)
2021	1,030건	999건	157건	842건	18건(2%)	824건(98%)
2022	916건	934건	152건	782건	13건(2%)	769건(98%)
2023	834건	816건	105건	711건	9건(1%)	702건(99%)
2024	1,001건	997건	127건	870건	8건(1%)	862건(99%)
소계	5,014건	4,973건	700건	**4,273건**	**69건(2%)**	**4,204건(98%)**

자료: 헌법재판소

이러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단서[7]에 따라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 대부분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기각된다는 설명임.

7)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약 1,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의 대부분이 기각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8.9%)이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12.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헌법재판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단의 구성 등으로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6년간 국선대리인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8.9%로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 12.3%에 비해 3.4%p 낮게 나타났으며, 2024년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고 건수 115건 중 인용된 사건은 12건으로 인용률은 10.4%로 나타났음. 이는 2024년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 12% 보다 1.6%p 낮은 수준임.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중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 현황: 2019~2024년]

연도	국선대리인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
	선고(건)	인용(건)	인용률(%)	
2019	116	6	5.2	9.5
2020	116	13	11.2	14.3
2021	115	11	9.6	11.7
2022	99	9	9.1	15.1
2023	144	11	7.6	10.9
2024	115	12	10.4	12.0
평균	118	10	8.9	12.3

자료: 헌법재판소

이러한 인용률의 차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선대리인은 법률적 쟁점이 비교적 뚜렷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데 비해 국선대리인은 사회적 약자 및 변호사 선임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인용률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헌법재판소 설명과 같이 사건의 선별 수임 가능 여부에 따른 차이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국선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임에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전체 평균의 70% 수준에 머무는 것은 동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을 확보 등을 통하여 국선대리인 인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1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1	10	-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1	1	10	-	12

헌법재판소는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모두 조치완료(조치율 100.0%)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12	100.0	-
예비비	-	-	-	-
합계	12	12	100.0	-

대법원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428억 9,700만원(△14.2%)이 적은 8,639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9억 1,200만원(10.9%)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32,516	932,516	673,378	△259,138	806,653	806,653	716,748	△89,905	43,370
기 금	168,193	168,193	105,653	△62,540	200,187	200,187	147,195	△52,992	41,542
총수입	1,100,709	1,100,709	779,031	△321,678	1,006,840	1,006,840	863,943	△142,897	84,912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5억 5,900만원(△0.5%)이 적은 2조 1,63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4억 6,900만원(4.5%)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013,406	2,013,406	1,999,506	△13,900	2,100,921	2,100,921	2,091,976	△8,945	92,470
기 금	75,244	75,244	70,173	△5,071	72,899	73,786	71,172	△2,614	999
총지출	2,088,650	2,088,650	2,069,679	△18,971	2,173,820	2,174,707	2,163,148	△11,559	93,46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936억 4,000만원으로, 7,759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536억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7.1%)되고 223억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610,500	610,500	-	610,500	494,626	488,602	6,012	11
등기특별회계	383,140	383,140	-	383,140	281,359	265,046	16,313	-
합 계	993,640	993,640	-	993,640	775,985	753,648	22,325	11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674억 5,500만원으로, 이 중 2조 1,086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0%)되고 172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1,415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864,618	1,864,618	17,198	-	-	1,881,816	1,858,601	14,840	8,375
등기특별회계	383,140	383,140	2,499	-	-	385,639	250,033	2,424	133,181
합 계	2,247,758	2,247,758	19,697	-	-	2,267,455	2,108,634	17,264	141,55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313억 6,900만원으로, 1,801억 8,3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783억 5,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0%)되고 18억 9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1,369	231,369	180,183	178,359	1,809	14
합 계	231,369	231,369	180,183	178,359	1,809	14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342억 4,000만원으로, 이 중 1,783억 5,900만원이 지출(집행률 76.1%)되고 25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9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1,369	231,369	2,871	234,240	178,359	2,568	2,918
합 계	231,369	231,369	2,871	234,240	178,359	2,568	2,91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대법원의 자산은 전년 대비 1,145억 4,900만원이 증가한 8조 9,303억 9,3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609억 7,700만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601억 1,7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이 각각 59억 7,000만원, 94억 3,9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85억 4,800만원 증가한 735억 5,2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42억 4,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60억 200만원이 증가한 8조 8,568억 4,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59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4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6,999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9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8,930,393	8,815,844	114,549	1.3
		유동자산	374,443	214,326	160,117	74.7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8,398,586	8,459,563	△60,977	△0.7
		무형자산	50,243	44,273	5,970	13.5
		기타비유동자산	107,120	97,681	9,439	9.7
	부 채		73,552	55,004	18,548	33.7
		유동부채	23,142	19,148	3,994	20.9
		장기차입부채	49,729	35,480	14,249	40.2
		장기충당부채	681	376	305	81.1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8,856,841	8,760,839	96,002	1.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59,842	476,375	83,467	17.5
	재정운영순원가		1,842,096	1,703,453	138,643	8.1
	재정운영결과		1,699,963	1,602,062	97,901	6.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대법원 결산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개 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대법원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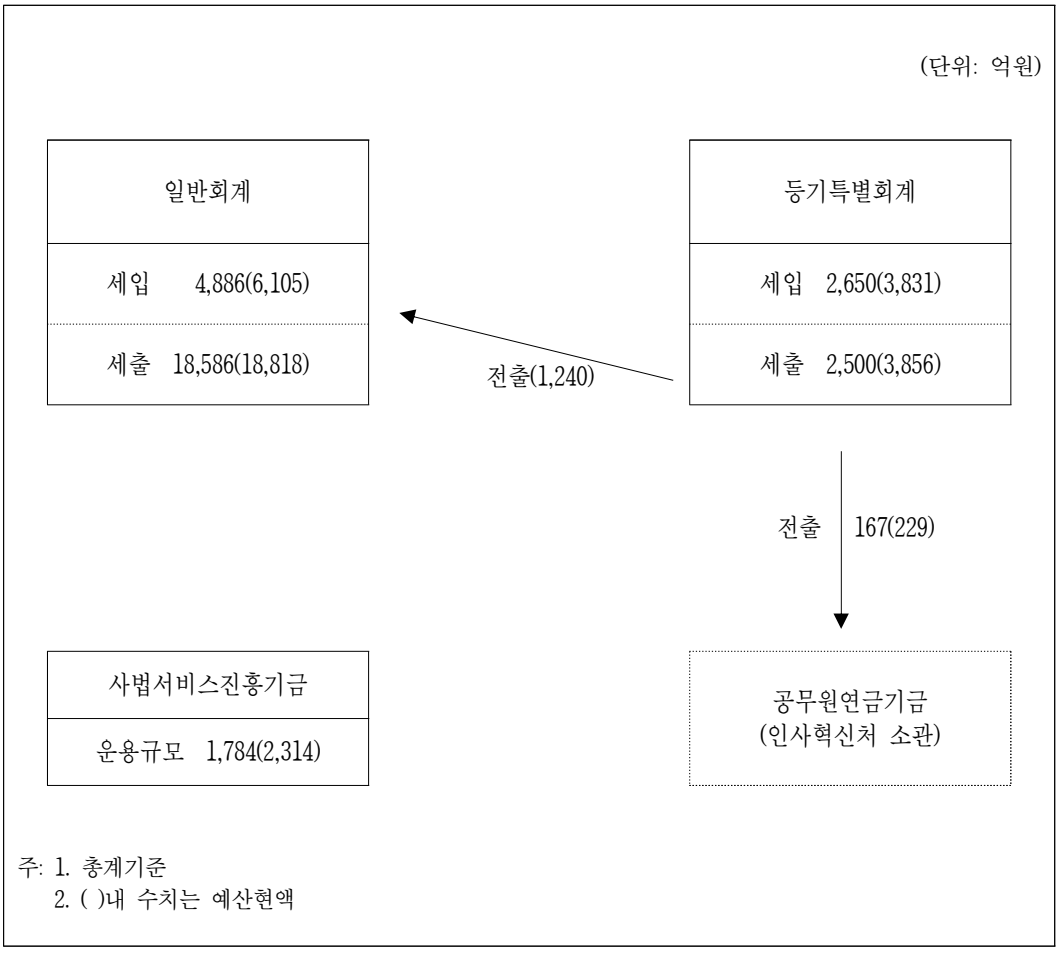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대법원은 국민을 중심에 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총 51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실질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국민의 인권 보장,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4년 부산지방법원 공탁금 횡령사건으로 변상금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변상금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국선변호료의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변호료를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선변호료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선변호료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 측면에서도 미래등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개선으로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가금: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가금' 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을 한 경우 그 액수에 대한 부가금 납부를 수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0억 6,200만원 중 1,1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되었음.[2)]

[2024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가금	-	-	1,062	11	1,045	7	1.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수납률이 5% 미만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징수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징계부가금(56-564)(기획조정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3]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징계처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이득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임.

징계부가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이 전액 미수납되었고,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10억 6,200만원 중 1,100만원만 수납(수납률 1%)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함.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예결산 현황: 2021~2024]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1,110	10	-	0.9	1,100	-
2022	-	-	-	-	1,109	49	-	4.4	1,060	-
2023	-	-	-	-	1,060	-	-	-	1,060	-
2024	**-**	**-**	**-**	**-**	**1,062**	**11**	**-**	**1.0**	**1,045**	**7**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부의무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징계부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국세 체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700만원이 불납결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5년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와의 행정적인 처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4]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불납결손의 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4년 징계부가금 불납결손액 처분 현황]

(단위: 원)

법원	납부 의무자	결의일	불납 결손액	세부내역	불납결손액처분 사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	2016.02.23.	7,000,000	징계부가금	시효완성
합계			7,000,000		

자료: 대법원

2. 변상금: 미수납액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변상금' 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수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54억 7,500만원 중 5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되었음.[5)]

[2024년도 변상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변상금	247	247	5,475	546	4,924	4	10.0	24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4년 부산지방법원 공탁금 횡령사건으로 변상금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변상금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49억 9,800만원이 증가한 54억 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5억 4,600만원은 수납되고 49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최근 4년간 변상금 예결산 현황: 2021~2024]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35	235	-	235	470	68	28.9	14.5	402	-
2022	247	247	-	247	518	106	42.8	20.4	412	-
2023	247	247	-	247	477	50	20.2	10.5	428	-
2024	**247**	**247**	**-**	**247**	**5,475**	**546**	**221.1**	**10.0**	**4,924**	**4**

자료: 대법원

5) 일반회계-변상금(57-571)(기획조정실)

2024년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부산지방법원의 공무원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8억원의 공탁금을 횡령함에 따른 횡령액 전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변상 책임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또한 2024년에는 변상금 4건에 대한 불납결손액으로 44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 처분의 사유는 모두 시효완성으로 나타남.

[2024년 변상금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원)

구분	납부 의무자	결의일	불납 결손액	세부내역	불납결손액처분 사유
대구지방법원	김○○	2018.7.17	765,00	변상금(소송비용 국고대납금)	시효완성
	○○종합건설	2010.3.11	3,300,000	변상금(소송비용 국고대납금)	시효완성
	김○○	2015.10.19	1,000,000	변상금(소송비용 국고대납금)	시효완성
	신○○	2011.11.23	24,240	변상금(소송비용 국고대납금)	시효완성
합계			4,400,740		

자료: 대법원

변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변상금 징수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납부고지 및 독촉, 강제징수 조치(체납 시 압류·공매 등),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변상금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관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국선변호료 지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698억 8,400만원 중 698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 국선변호료 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선변호료 지원	69,884	69,884	-	-	69,884	69,872	-	12	53,4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국선변호료의 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변호료를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선변호료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선변호료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선변호 수요는 전년 대비 13,424건이 증가(증가율 11.3%)하여 국선 변호료의 부족액(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변호료를 예산부족으로 다음연도에 지급하게 된 금액)이 94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3년 국선변호료 부족액 28억 1,5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부족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6) 일반회계-국선변호료 지원(1143-409)(형사지원심의관실)

대법원은 부족액 발생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변호료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제3조[7]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을 위반하는 것임.

[국선변호인 처리 사건 수 및 국선변호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선변호료 예산	60,024	61,343	61,567	61,000	65,329	69,884
국선변호료 결산(집행액)	59,028	58,579	58,133	60,586	65,285	69,872
국선변호인 처리 사건수 (일반 국선변호인 처리건수)	108,217	105,023	98,209	102,604	118,491	131,915
당해연도 부족액	**247[1)]**	**391**	**497**	**476**	**2,815**	**9,486**

주) 2018년 지급의뢰되었으나, 2019년 예산으로 지출된 일반국선변호료. 이하 동일
자료: 대법원

지난 6년간 일반 국선변호인 처리 사건수는 2019년 108,217건에서 2024년 131,915건으로 23,698건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이월집행액도 2019년 2억 4,700만원에서 2024년 94억 8,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임 수요의 증가와 함께 기 구속된 사람이 별건 기소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 대상 범위는 확대되고 있어 국선변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국선전담변호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변호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임.[8]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은 534억원으로 2024년 471억원 대비 63억원 증액에 그쳐 2023년 부족액 94억 8,600만원과 2024년 일반국선선정사건 수가 2023년 118,491건 대비 131,915건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부족액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8) 대법원은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 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 경제적 여력에 관한 소명자료 심사 강화를 하고 대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선변호인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대법원에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2026~2030년 연 40명 증원 계획)하여 증가하는 국선변호사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국선변호 수요의 증가에 대하여 각 법원의 국선변호료의 소요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선변호료 집행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족액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49억 7,400만원 중 81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6%)되고 66억 9,800만원이 이월되어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2,585	12,585	2,389	-	14,974	8,177	6,698	99	7,198
시스템 개발	6,910	6,910	2,221	-	9,131	4,279	4,830	22	2,186
감리	448	448	150	-	598	438	126	34	214
개인정보영향평가	11	11	18	-	29	29	-	-	25
HW 및 상용 SW 구입	5,216	5,216	-	-	5,216	3,431	1,741	43	4,274
시스템 운영	-	-	-	-	-	-	-	-	484
기타 운영지원	-	-	-	-	-	-	-	-	1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2024년 예산을 거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동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일반회계-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4)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2023년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지연(계약일: 2023. 7.)되면서 2023년 구축 예산 36억 3,700만원 중 13억 8,700만원만 집행(집행률 38.1%)되어 집행 잔액 23억 8,900만원은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2024년 시스템 구축 예산 69억 9,100만원 중 20억 6,500만원(집행률 29.5%)만 집행되어 48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세부사업</th><th>예산</th><th colspan="2">전년도 이월액</th><th colspan="2">집행</th><th colspan="2">이월</th><th>불용</th></tr>
<tr><td rowspan="5">개발</td><td rowspan="5">6,910</td><td rowspan="5">1차년도 2차 선금 및 잔금</td><td rowspan="5">2,221</td><td>1차년도 2차 선금</td><td>1,146</td><td>2차년도 2차 선금</td><td>2,697</td><td rowspan="5">21</td></tr>
<tr><td>1차년도 잔금</td><td>1,074</td><td>2차년도 잔금</td><td>2,023</td></tr>
<tr><td>2차년도 1차 선금</td><td>2,023</td><td rowspan="2">법무부 KICS등 연계채널 구축 등 수의계약</td><td rowspan="2">110</td></tr>
<tr><td>2차년도 조달수수료</td><td>35</td></tr>
<tr><td>합계</td><td>4,278</td><td>합계</td><td>4,830</td></tr>
<tr><td rowspan="6">감리</td><td rowspan="6">448</td><td>1차년도 선금</td><td>105</td><td>1차년도 선금</td><td>105</td><td rowspan="6">2차년도 잔금</td><td rowspan="6">126</td><td rowspan="6">34</td></tr>
<tr><td>1차년도 잔금</td><td>45</td><td>1차년도 잔금</td><td>45</td></tr>
<tr><td rowspan="4">합계</td><td rowspan="4">150</td><td>2차년도 선금</td><td>284</td></tr>
<tr><td>2차년도 조달수수료</td><td>4</td></tr>
<tr><td>합계</td><td>438</td></tr>
<tr><td rowspan="5">개인정보 영향평가</td><td rowspan="5">11</td><td>1차년도 선금</td><td>13</td><td>1차년도 선금</td><td>12</td><td colspan="2" rowspan="5">-</td><td rowspan="5">-</td></tr>
<tr><td>1차년도 잔금</td><td>5</td><td>1차년도 잔금</td><td>5</td></tr>
<tr><td rowspan="2">합계</td><td rowspan="2">18</td><td>2차년도 선금</td><td>11</td></tr>
<tr><td>합계</td><td>28</td></tr>
<tr><td>HW 및 상용SW 구입</td><td>5,216</td><td colspan="2">-</td><td>상용SW 구입 및 조달수수료</td><td>3,431</td><td>장비도입 사업 등</td><td>1,741</td><td>43</td></tr>
<tr><td>합계</td><td>12,585</td><td colspan="2">2,389</td><td colspan="2">8,177</td><td colspan="2">6,697</td><td>98</td></tr>
</table>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이 2023년 계약 지연으로 인한 개발 일정 조정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 일정이 1차 조정되었고(구축 완료일 2026년 7월), 2024년에도 법무부 KICS 연계기관과의 연계 등 추가 개발기간 확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2개월을 연장하는 2차 조정이 이루어졌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일정 변경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개발	기존	2023. 7. 31. ~ 2024. 5. 1. (9개월, 275일)	2024. 5. 2. ~ 2025. 5. 1. (12개월, 365일)	2025. 5. 2. ~ 2026. 3. 31. (11개월, 334일)
	변경	2023. 7. 31. ~ 2024. 6. 30. (11개월, 335일)	2024. 7. 1. ~ 2025. 8. 31. (14개월, 427일)	2025. 9. 1. ~ 2026. 7. 31. (11개월, 427일)
			2024. 7. 1. ~ 2025. 10.31. (16개월, 488일)	**2025. 11. 1. ~ 2026. 9. 30. (11개월, 427일)**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존	2023. 12. 5. ~ 2024. 5. 31.	2024. 6. 1. ~ 2025. 5. 31. (12개월, 365일)	2025. 6. 1. ~ 2026. 4. 30. (11개월, 427일)
	변경	2023. 12. 5. ~ 2024. 7. 31.	2024. 8. 1. ~ 2025. 9. 30. (14개월, 395일)	2025. 10. 1. ~ 2026. 8. 31. (11개월, 427일)
			2024. 8. 1. ~ 2025 11. 30 (.16개월, 457일)	**2025. 12. 1. ~ 2026. 10. 31. (11개월, 427일)**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2023. 7.)이 지체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2024년에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오픈 연기(기존 오픈일 2024. 9. → 실제 오픈일 2025. 1.)로 인해 일정이 연속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시스템 계약과 동시에 개발 및 감리 일정등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차연도 구축 일정부터 지연이 발생하여 2차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일정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스템 개발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음.

특히 대법원은 동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인「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 10. 20.)과 맞추어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전 총사업비 조정 변경 없이 내역변경을 통한 관리용역비 집행 주의

가. 개 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 재판사무·전자소송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 및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8억 3,900만원 중 117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9%)되고 58억 4,8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278	13,278	9,353	△4,792	17,839	11,753	5,848	240	23,000
관리용역비 (210-15)	7,287	7,287	-	△4,792	2,495	2,304	-	191	19,59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된 재판사무·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도입을 통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동 시스템 구축으로 ①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제출, 판결문 조회, 사건 진행상황 확인 등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② AI 기반의 유사판결을 추천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재판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③ 전자법정을 통해 전자문서 열람, 실물화상기, 대형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재판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④ 법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고 종이 문서 사용량 축소 등으로 소송 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시스템 사업기간은 2020~2030년(11년간, 구축: 2020~2025년, 유지·보수: 2025~2030년)이며, 사업 규모는 2,130억 8,900만원임.

10) 일반회계-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사법정보화실)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시스템 오픈 지연의 사유로 내역변경을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하는 관리용역비를 공식적인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4년 관리용역비는 당초 시스템 오픈 일정(2024. 9.)을 고려하여 2024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인 4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시스템 오픈일정이 2025년 1월 31일로 미뤄지면서 2024년 편성된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관리용역비 예산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오픈(2024년 9월말)에 따라 당초 2024년 8월까지만 운영 예정이었던 기존 시스템 등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내역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10.2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31-303)	210-15	445	사법업무전산화 (정보화) (1331-302)	210-15	관리용역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4.10.2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31-303)	210-15	4,347	전자소송(정보화) (1331-302)	210-15	관리용역비 내역변경

자료: 대법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오픈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면 기획재정부와 공식적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기간 변경 및 관리용역비 등 연차별 관련 예산을 변경 조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업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내역변경을 통하여 관리용역비를 집행하였음.[11]

11)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2025. 1. 23.에 완료하였음.

결국 대법원은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시스템 오픈 지연의 사유로 내역 변경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하는 관리용역비를 공식적인 총사업비 변경 조정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법정 통역 지원 언어의 사전 수요 파악으로 사업효과 제고 필요

가. 개 요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사업은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어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7,9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7%)되고 1억 3,700만원이 이월되어 6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판일반 경비지원	41,610	41,610	86	615	42,311	41,977	202	132	46,158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	279	279	-	-	279	136	137	6	35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법정 통역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히 하고, 사업수행방식 개선을 통해 각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적시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신뢰도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항[13)]에 따라 2024년 7월 법정통역센터를 설치하였음.

---

12) 일반회계-재판일반 경비지원(1143-404)(사법정책심의관실)

1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⑬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2024년 법정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법정 통번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통역인 5명을 1년 계약으로 고용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수어 등 3개 언어에 대한 수요는 저조하였고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통번역 수요가 증가하여 2025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해당 언어를 추가할 계획임.[14)]

[2024년 법정통역센터 월별·언어별 이용실적]

(단위: 건)

월별 이용실적		언어별 이용실적	
구분	통번역 건수	구분	통번역 건수
2024. 07.	26	중국어	84
08.	36	베트남어	40
09.	44	러시아어	87
10.	50	영어	40
11.	54	수어	9
12.	50		
합계	260	합계	260

자료: 대법원

이러한 언어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통역센터의 운영방식이 용역업체를 통한 1년 단위의 위탁계약 방식으로서 전담 통역인을 채용하게 되면, 다른 언어 통역인 채용은 다음 계약 시점인 1년 후에 가능하게 되어 필요한 언어 수요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다양한 언어 통역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채용방식 외에 수시로 필요한 통역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법정 통역서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통번역 지원 언어에 대한 수요 파악을 면밀하게 하여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4) 2024년도 법정통역센터 운영 방식은 위탁운영업체가 상근 통역인(지정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각 1인)을 채용하여 원거리 영상통역 및 법원출장용역 등을 지원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7.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사업 일정 준수 필요

가. 개 요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은 법원도서관의 심사·승인으로 저작물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DB업데이트 파일 생성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적용 및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음.[15)]

[2024년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482	2,482	-	△13	2,469	2,252	217	-	6,453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150	150	-	-	150	5	145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계획변경 등을 거치며 사업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는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5) 일반회계-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1333-304)(법원도서관)

대법원은 2024년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사업[16]을 계획하면서 사업 내용으로 ① ‘저작물 사용 동의 회원 간 지식공유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② 판례 및 문헌 요약 기능 구현, ③ 사법정보 공개포털 등 他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를 정하였으나, 이 중 판례 및 문헌 요약 기능 구현의 개발은 AI 학습에 적합한 텍스트 데이터 확보 및 요약 기능 구현 등 기술적 문제와 AI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에서 제외하여 추진하였음.

[2024년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내용 변경]

변경전		변경후
· ‘저작물 사용 동의 회원 간 지식공유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	· ‘저작물 사용 동의 회원 간 지식공유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 판례 및 문헌 요약 기능 구현		**· 주요 판결, 영문·중문 판례 및 해외판례 서비스 등**
· 사법정보 공개포털 등 他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사법정보 공개포털 등 他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자료: 대법원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당초 판례 및 문헌 요약기능까지 포함하여 조달청 입찰 공고를 3회 진행하였으나,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었음(유찰 2회, 무응찰 1회).

이에 대법원은 사업내용 중 ‘판례 및 문헌 요약 기능 구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업 내용을 수정한 후 사업을 재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계약(2024. 12. 16.)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었음.

이는 대법원이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과업 범위 조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추진을 면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는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온라인 법고을시스템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로서 대법원 판례, 특허법원 주요판결, 전국 법원 주요 판결 등 판례와 법령, 문헌의 원문 등 최신 데이터를 상호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법률정보검색 플랫폼임.

8.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임차대상 건물 선정 지연 등 사업준비 미흡

가. 개 요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8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17]

[2024년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50,479	2,707	△3,042	50,144	46,668	384	3,092	64,162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2,806	2,806	-	-	2,806	-	-	2,806	40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임차료(210-07)	1,133
공사비(420-03)	1,181
시설부대비(420-05)	181
자산취득비(430-01)	311
합 계	2,806

나. 검토의견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사업은 임차 건물의 선정 지연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수행시 면밀한 임차대상 후보지 조사, 건물 적합성 평가 등 사전준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7) 일반회계-법원시설관리(1253-411)

대법원은 동 사업을 통해 구속 피고인 호송 등 보안 문제가 있는 형사부를 제외한 민사부 2개, 가사부 1개 등 3개의 재판부를 의정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적합한 임차대상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

당초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CRC)[18]의 경우 오염물질 발견에 따른 정화문제 등으로 국방부에서 수용 곤란 입장(2024. 8. 20.)을 밝혀 온 이후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추진되지 못하였음.

이에 대법원은 2024년 임차대상 후보 건물을 검토하였으나, 교통접근성・안전성・주변환경 및 면적 등 입지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확정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다는 설명임.[19]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적합한 임차 건물의 선정과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된 측면이 있음.

또한 대법원은 향후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사업에 있어 의정부 지방법원이 노후화되고 공간 부족으로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정부 원외재판부의 임차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설치 규모, 활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8)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주한미군 1군단 사령부, 2사단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주둔하였던 의정부 가능동 83만 5,000㎡(약 25만평) 부지로 2022년 의정부시로 반환됨.

19)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도 동 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4억 100만원도 현재(2025. 6.)까지 임차대상 건물 선정이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 출>

9. 일반회계 전출: 등기특별회계 재원확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 전출' 은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39억 6,5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20]

[2024년 일반회계 전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전출	123,965	123,965	-	-	123,965	-	-	123,965	30,59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 측면에서도 미래등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개선으로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등기특별회계는 국가가 등기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서 세입은 등기 수수료,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기타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등기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등기업무 수입금 2,239억 1,3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368억 9,900만원, 기타 수입금 37억 1,700만원 및 등기소 매각대금 5억1,800만원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세입액이 크게 감소한 항목은 등기소 매각대금(93억 5,800만원 감소)이며, 이월금도 약 50%가 감소되었음.

20) 등기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8010-800)

세출항목을 살펴보면, 등기소 설치경비는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2024년 96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등기업무경비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4년에는 2,19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음.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2020년 779억원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2023년 369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19억원이 감소한 150억원으로 나타났음.

[등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 잉여금 (C=A-B)
	등기소 매각 대금	등기 업무 수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입 금	합계	등기소 설치 경비	등기 업무 경비	차입금 예수금 상환·이자 등	합계	
2019	3,094	241,730	42,283	236	287,343	20,401	188,735	37,540	246,676	40,667
2020	**14,547**	**262,761**	**40,666**	**891**	**318,865**	**26,855**	**195,342**	**18,774**	**240,971**	**77,894**
2021	11,315	262,652	77,897	1,582	353,446	22,772	205,905	51,085	279,762	73,684
2022	**12,416**	**230,725**	**73,685**	**481**	**317,307**	**16,446**	**207,170**	**25,640**	**249,256**	**68,051**
2023	9,876	222,011	68,050	1,165	301,102	15,227	217,457	31,519	264,203	36,899
2024	**518**	**223,913**	**36,899**	**3,717**	**265,047**	**9,609**	**219,557**	**20,868**	**250,034**	**15,013**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등기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1월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음.[21] 미래등기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등기 업무를 자동화 및 지능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행정비용 및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고려할 때 대법원은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 측면에서도 미래등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개선으로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미래등기시스템 개통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에 대한 총사업비는 2,223억 6,400만원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축 사업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2030년 3월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운용되며, 이후에는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에 통합될 예정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　출〉

1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계약지연으로 인한 과다 이월액 발생 문제

가. 개　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4억 3,000만원 중 700만원(집행률 1.6%)이 집행되고 4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음.[22)]

[2024년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6,450	-	6,450	5,489	423	537	9,207
	가정법원종합 지원센터 신축	430	430	-	430	7	423	-	-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설계비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사법서비스진흥기금-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사법지원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5개년(2024~2028년)간 총 37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여주에 지상 5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대법원은 2024년에 기본설계비 4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700만원이 집행되고 편성액의 98.5%인 4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음.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430	430	-	430	7	423	-	3,161
- 건설보상비(410-00)	-	-	-	-	-	-	-	2,518
- 기본설계비(420-01)	425	425	-	425	7	418	-	309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319
- 공사비(420-03)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5	5	-	5	-	5	-	15
합 계	430	430	-	430	7	423	-	3,161

자료: 대법원

2024년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된 것은 기본계획 수립(2024. 7. 2.)이 지연되고, 설계용역 공고(2024. 7. 30.) 후 설계용역 계약(2024. 11. 20.)이 연말에나 이루어져 기본설계를 수행할 기간 부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23]

특히 동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인정(공익사업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상절차(실태조사,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협의 보상 등)가 시작되므로, 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보상절차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어 전체 공사 일정이 늦어지게 될 수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계약 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4. 5. 8. 신축 건축기획 수립(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 2024. 5. 17.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4. 7. 2. 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24. 7. 30. 설계용역 공고 → 2024. 11. 26. 설계용역 계약 체결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사업비
ㅇ토지매입비	-	2,518	3,357	2,518	-	8,393
ㅇ공사비	-	-	7,819	10,426	7,820	26,065
ㅇ시설부대경비	430	643	934	814	614	3,435
- 기본설계비	425	309	-	-	-	734
- 실시설계비	-	319	318	-	-	637
- 감리비	-	-	601	802	601	2,004
- 시설부대비	5	15	15	12	13	60
총 계	430	3,161	12,110	13,758	8,434	37,893

자료: 대법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11.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한 임차료 증액의 부적정

가. 개　요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은 「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2019. 2.)에 따른 위탁개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51억 2,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24]

[2024년도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	9,419	35,121	-	35,121	35,121	-	-	12,8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용현황〉

- 건물현황(2019년 완공): 지상 1~19층(19개층), 지하 1~3층(지하주차장 포함)

구분	청사시설 (수원고등, 지법,회생)	부대시설(전용면적)						합계
		전기차 충전소	1F ATM	1F 은행	1F 우체국	1F 카페테리아	3F 식당	
면적 (㎡)	87,142.41	2.897	1.674	275.23	142.50	92.48	1,783.87	89,441.06
비고	대법원 유상사용	민간임대			대법원 유상사용			

자료: 대법원

24) 국유재산관리기금-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1331-617)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임차료 지급에 있어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으로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증액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적정 규모의 임차료를 편성하여 임차료 증액을 위한 기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방식으로 신축되어 대법원은 신축일로부터 25년간(2019~204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음.

2024년도 임차료 지급 계획액은 94억 1,900만원이나 기금변경을 통하여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257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총 895억원을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기금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0.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21,707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217억 7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2.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10,020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100억 2,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3.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32,071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320억 7,1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4.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25,702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257억 2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합 계				89,50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수원법원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2043년까지 임차료 및 관리비를 한국자산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부납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기금 집행률 제고 등의 목적으로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계획액을 증액하여 임차료로 납부하고 있음.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집행내역: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1	11,268	11,268	-	11,268	11,268	100.0	100.0	-	-
2022	9,883	19,903	-	19,903	19,903	100.0	100.0	-	-
2023	9,890	41,971	-	41,971	41,971	100.0	100.0	-	-
2024	9,419	35,121	-	35,121	35,121	100.0	100.0	-	-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임차료 집행내역: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사용면적(연면적)	연 차	연 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89,161.26㎡ (1층 은행, 전기차충전소, ATM 사용분 279.801㎡ 제외)	1년	2019	11,879
	2년	2020	33,590
	3년	2021	11,268
	4년	2022	19,903
	5년	2023	41,971
	6년	2024	35,121
	7년	2025	32,800
	8년	2026	36,771
	합 계		186,532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관리비 집행내역: 2019~2024년]

(단위: 천원)

기 관 명	사용면적(연면적)	연차	연도	관리비(연액) (부가가치세 포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89,161.26㎡	1년	2019	2,810,708
		2년	2020	7,296,300
		3년	2021	6,900,000
		4년	2022	5,521,000
		5년	2023	4,967,000
		6년	2024	4,967,000
		7년	2025	4,967,000
		8년	2026	미정
		합계		37,429,008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에 따른 임차료 지급액을 연례적으로 타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을 기금변경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은 조기상환을 통해 향후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임차료 지급에 있어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으로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적정규모의 임차료를 편성하여 임차료 증액을 위한 기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유자산관리기금 개발사업과 위탁개발 사업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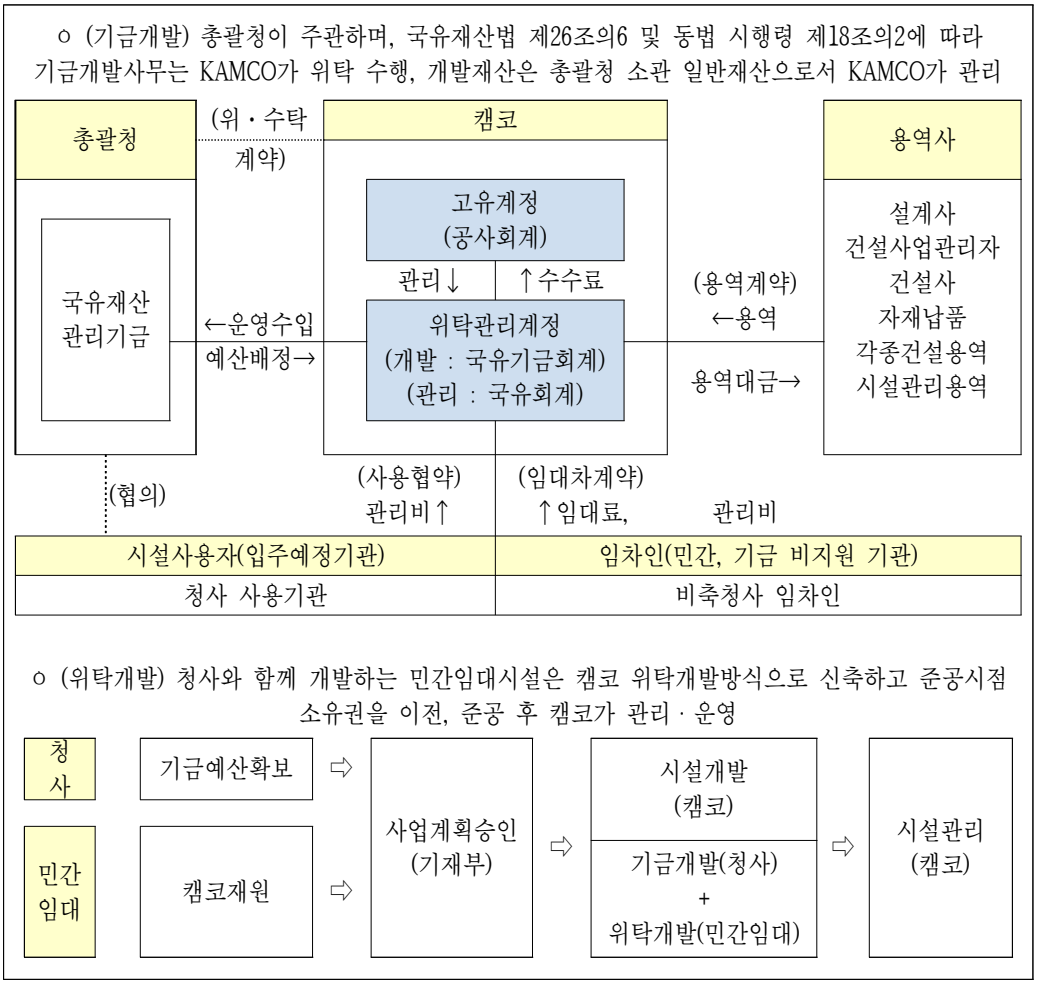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법원에 대해 시정요구 29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주의 9건·제도개선 19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	9	19	1	29
예비비	-	-	-	-	-	-	-
합계	-	-	2	9	19	1	29

대법원은 시정요구사항 29건에 대해 20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9.0%)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9	20	69.0	9
예비비	-	-	-	-
합계	29	20	69.0	9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대법원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대법원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해당사항 없음
2023회계연도 결산	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본예산	(1) 대법원은 토지대여료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대법원은 변상금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대법원은 건물매각대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국가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적정규모의 등기특별회계전입금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확정한 세입예산 규모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대법원은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사건의 기록 등 스캔 사업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스캔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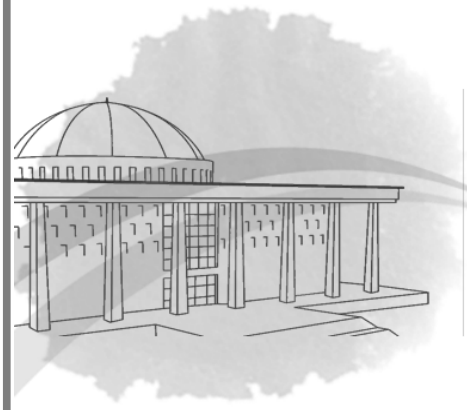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900만원(256.5%)이 많은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0만원(△70.8%)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	23	281	258	23	23	82	59	△199
총수입	23	23	281	258	23	23	82	59	△199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56억 1,600만원(△3.9%)이 적은 6,349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8,900만원(△2.7%)이 감소함.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76,615	676,615	652,823	△23,792	660,550	660,550	634,934	△25,616	△17,889
총지출	676,615	676,615	652,823	△23,792	660,550	660,550	634,934	△25,616	△17,88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200만원이 수납(수납률 100%)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3	23	-	23	82	82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투자계정	-	-	-	-	-	-	-	-
합 계	23	23	-	23	82	82	-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23억 5,600만원으로, 이 중 6,349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6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7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48,919	648,919	45	660 △660	1,761	650,725	623,978	654	26,09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631	11,631	-	-	-	11,631	10,956	-	675
- 투자계정	11,631	11,631	-	-	-	11,631	10,956	-	675
합 계	660,550	660,550	45	660 △660	1,761	662,356	634,934	654	26,768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 대비 46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83억 4,1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 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43억 4,600만원 증가하고 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각각 3억 7,300만원, 3억 4,0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 증가한 19억 2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의 2억 9,7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3억 1,900만원이 증가한 4,164억 3,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162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39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4,5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18,341	413,664	4,677	1.1
		유동자산	1,181	808	373	46.2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407,001	407,384	△383	△0.1
		무형자산	9,074	4,728	4,346	91.9
		기타비유동자산	1,085	745	340	45.6
	부 채		1,902	1,544	358	23.2
		유동부채	62	-	62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841	1,544	297	19.2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16,439	412,120	4,319	1.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16,276	540,515	△24,239	△4.5
	재정운영순원가		639,547	660,892	△21,345	△3.2
	재정운영결과		639,547	660,892	△21,345	△3.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 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 1억 5,400만원이 전출되었으며, 재정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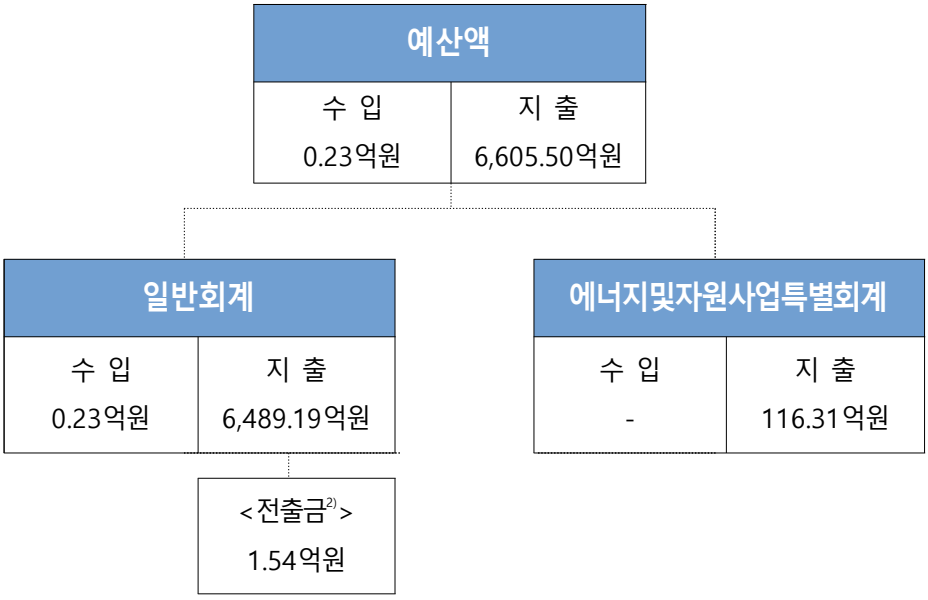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전출)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납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 · 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 · 갈등의 관리,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1개 세부사업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총괄 조정 · 지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관련 운영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심판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선처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심판 접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능률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급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연구기관별 대외활동의 상한시간 및 상한액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대외활동과 본연의 업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장기 미이행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예산액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예산의 우회적 사용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사업은 비정규직 보수·특근매식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를 집행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8억 9,500만원 중 27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고, 1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3)]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은 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집행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3억 1,800만원 중 54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0%)되고 2,000만원이 이월되어 7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955	2,955	-	41 △101	2,895	2,775	-	120	2,950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365	6,365	-	241 △288	6,318	5,499	20	799	6,525
계	9,320	9,320	-	282 △389	9,213	8,274	20	919	9,4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 일반회계-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7011-200)(총무기획관실)

4) 일반회계-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총무기획관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55호, 2024. 7. 23. 제정)에 따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였음.

또한 국무조정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73호, 2024. 9. 20. 제정)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 · 운영하였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개요]

구분	주요 업무	인원 구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사업 결정,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지원 등	민간위원: 80명 이내 실무진: 1국 5과 22명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파견 등)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인구부 설립의 원활한 추진, 인구 위기 대응 중 · 장기 전략 및 홍보방안 수립, 인구정책 운영 방안 마련 등	단장 1명, 부단장 1명, 실무진: 3과 16명 (각 부처 파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은 2026. 6. 30. 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이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훈령에 따라 설치된 후 1년 동안(~2025. 9.) 효력을 가질 예정임.

나. 검토의견

첫째,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대신,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등 약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관련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명	비목	금액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210-05)	451,300
		기타운영비(210-16)	1,800,000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25,966,82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076,257
		임차료(210-07)	143,615,610
		국내여비(220-01)	4,111,510
		사업추진비(240-01)	5,540,820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34,600
		공사비(420-03)	42,251,000
		자산취득비(430-01)	271,450
	소계		239,719,367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210-05)	419,190
		기타운영비(210-16)	1,080,000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	22,288,55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19,450
		임차료(210-07)	6,792,360
		국내여비(220-01)	3,940,700
		관서업무추진비(240-02)	6,780,150
		공사비(420-03)	20,678,000
		자산취득비(430-01)	271,450
	소계		65,969,850
계			305,689,217

자료: 국무조정실

별도 세부사업으로 해당 경비를 편성 및 집행하지 않은 결과,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운영에 소요된 경비의 존재 유무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해당 경비에 대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의 우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직 운영 경비로 집행된 금액의 비목별 규모를 간명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조직의 출범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조직 관련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

며, 법적 근거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본경비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같이 사업의 시작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세부사업의 편성 없이 예비비 또는 기본경비를 활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집행 사례라 할 것임.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처럼 사업의 시작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금번과 같이 필요한 예산을 기본경비 등의 사업에서 우회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예산 집행 여부 및 규모 등을 사업설명자료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사업계획 확정이 2025년 7월 말에야 이루어진 결과 범부처 총괄 및 조정 역할의 공백이 장기화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사업계획 보완 및 중장기 과제 발굴 등의 후속작업을 조속히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이 필요한 기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약 487억원 규모(추산)의 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총괄 및 조정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각 부처로부터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실행 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범부처협의체 등을 통해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애로사항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음.[5)]

그러나 기념사업 계획에 따르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2024년 내에 출범 후 1개월 내에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2개월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2025. 7. 21. 에야 비로소 출범 후 7. 31. 계획이 확정되는 등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음. 광복 60주년(2005. 2. 2. 출범), 광복 70주년(2015. 3. 4. 출범) 등 이전 기념사업 추진 과정과 비교하여도 출범이 상당히 지연된 실정임.

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월 1회 개최 및 수시 개최 예정이었던 위원회는 2회, 소위원회 및 범부처협의회는 각각 2회 및 1회 개최되는데 그쳤음. 이에 위원회

5) '광복 80년 특별전시관 건립(~2027년)'과 같은 일부 기념사업은 2025년 광복절 행사 이후에도 진행되므로, 위원회는 광복절 행사 이후에도 해당 사업들의 수행을 위해 부처와의 협의 및 지원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민간 제안 사업 검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사업 추진, 위원회 신규 사업 제안 및 예산 확보 노력 등의 과제 수행도 지연된 측면이 있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계획	실제 개최 횟수
위원회	광복절 경축식 개최 전까지 월 1회 개최 및 수시 개최	2회
소위원회	수시 개최	2회
범부처협의회	수시 개최	1회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기획단 구성(2024. 8. 20.) 후 위원회의 당해연도 출범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출범을 준비하던 중 정국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연기하였으며, 2025. 7. 21. 출범 이후 신속한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집중 심의 과정을 거쳐 7. 31.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역할의 공백이 장기화된 결과 광복절 행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보완·중장기 과제 발굴 및 심의 등 후속 업무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므로, 국무조정실은 후속작업을 조속히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이 필요한 기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처리기간 단축 필요 등

가. 개 요

조세심판은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적 전치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관련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6)]

조세심판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사업은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등 4개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1억원 중 139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조세심판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610	11,610	-	64 △64	11,610	11,543	-	66	12,24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	715	672	-	43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1,342	-	-	1,342	1,300	22	20	1,440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33	433	-	-	433	412	-	22	303
계	14,100	14,100	-	64 △64	14,100	13,927	22	151	14,70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세심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또한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

6)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7) 일반회계-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조세심판원)

라 조세심판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이 법원에서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기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려는 심판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8)]

나. 검토의견

첫째, 매년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소송절차에 앞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은「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제기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따라서 조세심판의 처리가 지연되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후속 권리구제절차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그런데 동법에 따른 조세심판의 결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함에도 매년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2024년의 경우 전체 10,178건 중 처리기간이 90일 이내인 심판 건수는 3,596건(35.4%)에 불과하였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185일에 달하였음. 2020~2023년의 경우도 연도별 조세심판 평균처리일수가 172~234일에 달하는 등 법정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8)「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2020-2024) 조세심판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1,048	8.5	7,452	60.7	3,782	30.8	12,282	178
2021	4,149	34.2	2,445	20.1	5,553	45.7	12,147	196
2022	656	5.6	5,156	44.6	5,753	49.7	11,565	234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0,178	185

자료: 조세심판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과세관청 답변서 독촉시스템 마련, 우선처리제도 활성화, 처리직원 중 우수직원들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경우 총 심판 건수가 대폭 감소(16,485건 → 10,178건)하였는데도 평균 처리일수(172 → 185)와,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건의 비중(50.0% → 64.6%)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함.

이는 국민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다투기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려는 조세심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마련한 방안들이 내실화되었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선처리제도는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최대한 조속히 구제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원은「조세심판원 운영규정」제4조의2에 따라 ① 심판청구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②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서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처리제도(fast-track)'를 활용하여 특별히 조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건을 선별하고 있음.[9)]

9)「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

우선처리 사건 수는 2024년 기준 19건으로 전체 사건(10,178건)의 약 0.2%를 차지하였음. 2020~2023년의 경우에도 연도별 우선처리 사건 수는 8~29건으로 전체 사건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압류·출국금지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 전체 처리사건 대비 우선처리 사건 비중]

(단위: 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처리 사건(A)	12,282	12,147	11,565	16,485	10,178
우선처리 사건(B)	8	5	29	20	19
비율(B/A)	0.0	0.0	0.3	0.1	0.2

자료: 조세심판원

그런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4조의2[10]에 따르면,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우선처리제도를 신청한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우선처리대상임에도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우선처리사건은 압류·출국금지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최대한 조속히 구제하고자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내에, 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해당 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은 8건으로 전체(19건)의 42.1%에 불과함.

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 · 결정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지정되기 전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담당심판관이 지정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 · 결정한다.

[최근 5년간(2020-2024) 우선처리사건 처리 기간 현황]

(단위: 건, %)

구분	청구시 우선처리사건 신청의 경우				조사 중 우선처리사건 신청의 경우				합계	
	80일 이내		80일 초과		45일 이내		45일 초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3	37.5	5	62.5	-	-	-	-	8	100.0
2021	2	40.0	3	60.0	-	-	-	-	5	100.0
2022	14	50.0	14	50.0	1	100.0	-	-	29	100.0
2023	13	65.0	7	35.0	-	-	-	-	20	100.0
2024	8	42.1	9	47.4	-	-	2	10.5	19	100.0

자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우선처리제도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에서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준수에 약 8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11)]

그러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일반사건과 우선처리사건의 처리 기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성이 핵심인 우선처리제도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기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여지가 없는지 검토함으로써 우선처리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12)]

셋째, 국선대리인제도 등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제도가 조세심판제도의 보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라 ① 청구인이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②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중 영세납세

1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준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시 처분청 답변(10일) + 배정(7일) + 청구인 항변(14일) + 사건조사 및 회의(14일) + 결정서 작성(14일) + 조정검토(20일) + 결정서 발송(1일) = 대략 80일의 시간이 소요됨.

12) 조세심판원은 2022년 납세자가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대해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항변서를 다시 납세자와 처분청이 제출하는 표준처리절차를 사건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폐지하여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단축시킨 바 있음.

자인 경우 그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2015. 4. 6. 부터 운영하고 있음.[13)]

그러나 제도 운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22~2024) 국선대리인 수임실적은 국선대리인 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가 매년 0.75~1.54건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국선대리인 수임실적]

(단위: 명, 건, %)

구분	인력 구성				수임건수(B)	1인당 평균 수임건수(=B/A)	전체 조세심판 건수(C)	전체 심판에서의 비중(=B/C)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합계(A)				
2022	6	7	7	20	15	0.75	11,565	0.13
2023	8	8	8	24	31	1.29	16,485	0.19
2024	8	8	8	24	37	1.54	10,178	0.15

자료: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수임 건수뿐만 아니라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사건 중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사건의 비중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청구금액이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사건 중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의 수는 2024년 기준 총 354건인데, 이중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건은 37건에 불과함.[14)15)]

13)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 본래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음(2024.2.29.).

15)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 수에 국선대리인 제도 대상이 아닌 사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도, 국선대리인의 선정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2022-2024)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근사치)]

(단위: 건)

연도	기준금액 이하 사건 수	기준금액 이하 사건 중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 수(A)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 중 국선대리인 선정 건수(B)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 (=B/A)
2022	4,170	205	15	15/205(7.3%)
2023	6,631	342	31	31/342(9.1%)
2024	3,401	354	37	37/354(10.5%)

주 1)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에는 청구금액뿐만 아니라 소득 또는 매출액도 포함되나,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인 관계로 본 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음. 따라서 실제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은 표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다소 높을 수 있음

2)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 수의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 대상이 아닌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자료: 조세심판원

전체 국세사건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선대리인의 선정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국세사건에서 대리인 선임 비율은 매년 90% 전후 수준이지만, 국선대리인의 선정 비율(근사치)은 2024년 기준 10.5% 수준에 불과하였음.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근사치)과 전체 국세사건에서 대리인 선임 비율 비교]

(단위: 건, %, %p)

구분	국세심판 사건 수(A)	대리인 선임 사건 수(B)	전체 국세사건에서 대리인 선임비율(C=B/A)	국선대리인 선정 비율 근사치(D)	차이(=C-D)
2022	6,035	5,384	89.2	7.3	81.9
2023	10,887	10,017	92.0	9.1	82.9
2024	8,291	7,310	88.2	10.5	77.7

주) 국선대리인 선정은 국세사건에서만 가능하며, 관세 및 지방세 사건에서는 불가함

자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제도의 낮은 이용 실적과 관련하여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선대리인 선정이 가능한 사건이 많지 않다는 입장임.[16]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정이 가능한 사건이 전체 사건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하여도, 상기하였듯 기준금액 이하 사건 중 대리인이 없었던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 비율이 전체 사건의 대리인 선임 비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16)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준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시 처분청 답변(10일) + 배정(7일) + 청구인 항변(14일) + 사건조사 및 회의(14일) + 결정서 작성(14일) + 조정검토(20일) + 결정서 발송(1일) = 대략 80일의 시간이 소요됨.

전체 납세자에 비해 두텁게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제도가 조세심판의 보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전자심판 접수 비율이 여전히 5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전자심판 접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원은「국세기본법」제60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전자심판은 기존과 같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지 않아도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음.[17]

그런데 연도별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접수 비율은 2024년 기준 44.2%(9,811건 중 4,341건)으로, 전년(22.9%)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2021~2024년 조세심판원 전자심판 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연도	총 접수 건수	전자심판 접수 건수	전자심판 비율(=B/A)
2021	13,025	3,214	24.7
2022	10,373	3,235	31.2
2023	16,781	3,842	22.9
2024	9,811	4,341	44.2

자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의 낮은 이용률의 원인을 일반행정심판 대비 복잡한 조세심판의 특성으로 인한 청구인의 낮은 선호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꾸준한 제도 홍보 및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18]

---

17)「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18) 참고로, 유사 사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2020년 이용률이 39.7% 수준이었으나 매

전자심판제도는 납세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전자심판 접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기준 68.7%에 이르렀음.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가. 개 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경상비 절감분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음. 2024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결산잉여금 등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은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구성됨.

결산잉여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 이상이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의무 적립된 후, 잔여분이 '능률성과급'으로 지급됨. 능률성과급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서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 외에 결산잉여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임.

[2024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A)	이자수입등(B)	기타수입(C)	경상비 절감분(D)	결산잉여금(E=A+B+C+D)	연구개발적립금 등 처분액(F)	능률성과급 실지급액 (=E-F)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149	29	183	-	63	63	-
국토연구원	3,918	△25	16	-	3,909	2,475	1,434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85	△33	55	-	△63	-	-
산업연구원	△530	9	63	-	△458	-	-
에너지경제연구원	1,142	114	40	-	1,296	772	524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584	446	△16	-	1,014	723	291
통일연구원	△45	76	△29	-	2	2	-
한국개발연구원	2,526	329	△36	-	2,819	1,576	1,243
한국교육개발원	2,101	404	△0.4	-	2,505	1,455	1,050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5,046	422	269	-	5,737	3,506	2,231
한국교통연구원	5,725	137	92	-	5,954	4,586	1,368
한국노동연구원	△825	71	-	-	△753	-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569	35	43	-	△491	-	-
한국법제연구원	877	26	105	-	1,008	570	438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347	39	13	-	399	226	173

(단위: 백만원)

기관명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A)	이자수입등(B)	기타수입(C)	경상비 절감분(D)	결산잉여금(E=A+B+C+D)	연구개발적립금 등 처분액(F)	능률성과급 실지급액 (=E-F)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19	12	△390	-	41	21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80	119	△32	-	667	377	29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91	43	11	-	1,145	600	5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00	5	△5	-	1,200	716	48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972	197	124	-	3,293	1,881	1,413
한국행정연구원	342	91	8	-	441	270	17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9	34	19	-	△206	-	-
한국환경연구원	1,191	166	13	-	1,370	776	595
건축공간연구원	48	5	55	-	108	85	24
KDI국제정책대학원	762	271	264	-	1,297	915	381
육아정책연구소	895	32	-	-	927	658	269

주 1) 2024년 결산 기준
2) 2024년 결산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으로, 최종 능률성과급 지급액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현행 능률성과급 지급 체계 하에서는 자체수입의 과소계상을 통한 성과급의 과다 지급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구성되고, 능률성과급의 재원이 결산잉여금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이 증가할수록 능률성과급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즉, 수입예산 편성 단계에서 간접비 목표수입을 과소 설정함으로써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을 증가시켜 성과급을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매년 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년 통일화된 자체수입 산정기준(3개년 가중평균)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자체수입을 3개년 가중평균으로 통일

화한 이후 수탁연구 수요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와 직 · 간접비 불균형으로 인한 수입-지출 구조의 기형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2019년 가중평균제도를 폐지하고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 목표예산액을 산정하는 한편 능률성과급 한도 규모를 설정(월보수액의 100%)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음.

그런데 능률성과급 규모와 관련하여 가중평균제도 폐지 전 6개년(2013~2018) 평균과 폐지 후 6개년(2019~2024) 평균을 비교하면,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양자 간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

[2013~202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24 평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401	-	732	-	-	-	188.8	587	211	498	295	365	-	326.0
국토연구원	1,043	-	1,267	-	-	790	**516.7**	682	1,121	1,271	1,103	1,247	1,434	**1,143.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	142	-	-	-	23.7	-	-	109	-	-	-	18.2
산업연구원	-	-	-	-	-	-	0.0	-	238	845	786	621	-	415.0
에너지경제연구원	518	717	348	280	-	414	379.5	621	475	204	-	339	524	360.5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133	830	264	-	-	-	371.2	818	551	737	485	263	291	524.2
통일연구원	-	-	76	50	-	-	21.0	-	-	-	-	-	-	0.0
한국개발연구원	316	100	-	76	377	210	**179.8**	-	1,804	593	604	1,556	1,243	**966.7**
한국교육개발원	994	897	945	950	575	-	726.8	1,598	921	795	884	1,446	1,050	1,115.7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384	-	2,872	1,862	1,902	1,371	1,565.2	1,919	563	1,909	2,047	2,128	2,231	1,799.5
한국교통연구원	341	-	571	734	-	-	**274.3**	499	781	817	860	989	1,368	**885.7**
한국노동연구원	55	189	153	239	351	364	225.2	39	-	203	304	178	-	120.7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364	946	1,027	97	-	273	451.2	434	681	440	497	575	-	437.8
한국법제연구원	158	28	104	309	190	509	**216.3**	-	626	644	516	620	438	**474.0**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593	-	402	-	812	458	377.5	700	364	365	560	870	173	505.3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32	-	45	-	-	-	**12.8**	-	-	74	323	76	20	**82.2**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	-	99	-	203	-	**50.3**	-	450	98	-	-	290	**139.7**
한국직업 능력연구원	930	917	1,246	1,415	-	-	751.3	573	790	640	594	889	545	671.8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24 평균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321	334	210	-	-	245	**185.0**	225	196	507	432	424	484	**378.0**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	1,501	748	505	192	-	**491.0**	-	1,140	1,315	1,387	1,373	1,413	**1,104.7**
한국행정연구원	320	380	305	18	-	-	170.5	78	122	237	146	84	170	139.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6	167	32	107	46	91	81.5	-	-	-	-	14	-	2.3
한국환경연구원	647	39	271	514	615	590	**446.0**	1,000	1,490	1,520	1,327	1,377	595	**1,218.2**
건축공간연구원	123	136	200	329	145	149	**180.3**	334	505	546	555	576	24	**423.3**
KDI국제정책대학원	915	889	119	222	-	-	429.0	177	448	546	481	591	381	437.3
육아정책연구소	95	-	14	-	38	-	**24.5**	134	38	34	33	2	269	**85.0**

주 1) 2024년 결산 기준
2) 2024년 결산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으로, 최종 능률성과급 지급액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능률성과급 재원의 대부분이 자체수입(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임을 고려하면, 가중평균제도 폐지 전후로 연평균 능률성과급 지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은 각 연구기관이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능률성과급의 재원을 마련할 유인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함으로써 능률성과급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연구기관들이 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연구기관은 성과급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19] 에서는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지

19)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p.9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동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부여라는 성과급 제도의 일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지침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2017. 10. 13.)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은 연구수행실적 등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반드시 차등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업적평가 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② 최상 ·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을 전체 인원의 10% 이상으로 하며, ③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함. 또한 ④ 최상 · 최하 등급 간 지급률은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충분한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런데 연구기관별 능률성과급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6개 기관에서 업적평가 등급 수가 5개 미만이었고, 7개 기관에서 최상 또는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 미만이었으며, 13개 기관에서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하였고, 15개 기관에서 최상 등급의 지급률이 최하 등급의 2배 미만으로 설정되는 등 상당수 기관들의 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등급 간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차등화 정도가 부족한 연구기관]

구분(기관 수)	해당 기관명
업적평가 등급 수가 5개 미만(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최상 또는 최하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 미만(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문연구직, 행정직),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특정 등급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최상 등급의 지급률이 최하 등급의 2배 미만(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등급 간 차등화 정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방향

으로 능률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차등화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차등 등급 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등급별 인원 비율	최고 등급은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등급별 지급 비율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 대외활동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외에서 강연, 발표, 평가, 자문 등의 ‘대외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서는 대외활동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외에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중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출강’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모든 직원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외활동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함.[20]

2024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직원은 56,148건의 대외활동에 대해 약 191억 9,527만원의 사례금 등을 신고하였는데, 이중 자문활동이 18,979건 및 55억 2,1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유형별 대외활동 현황]

구분	출강	강연	발표	토론	평가	집필활동 성격의 대외활동			계
						자문	기고	기타	
건수	375	3,252	3,342	4,573	16,493	18,979	1,736	7,668	56,418
인원(명)	220	1,118	1,293	1,381	2,189	2,195	682	1,528	10,522
금액(천원)	752,321	1,345,612	1,019,850	1,030,395	4,396,501	5,521,498	1,228,863	3,900,224	19,195,266

주 1) ‘계’ 항목 중 ‘인원’은 복수의 외부활동을 한 인원이 존재하여 실제 수행 인원보다 과다 계상됨
2) 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서면 심의 등 구분이 어려운 일부 기관의 활동은 제외됨(130건, 26,311천원)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제2절 인사관리분야
(7) 대외활동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대외활동’이라 함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외에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출강’이라 함은 국내의 대학,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의미함.
기관장은 모든 직원(휴직자, 휴직자 대체인력, 안식년 등 모두 포함)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외활동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사례금 상한액, 신고기한 등)을 참고하고, 다음의 직원 대외활동 유형 및 유형별 관리기준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나. 검토의견

연구기관별 대외활동의 상한시간 및 상한액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대외활동과 본연의 업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받음.[21]

한편 같은 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강의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하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외활동이 이에 포함됨.[22]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강의등 대외활동의 사례금에 대해 시간당, 건당 상한액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연간 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대외활동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은 연구기관마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대외활동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23][24]

---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연구기관별 집필활동에 대한 규정상 상한시간 및 상한액을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원이 제한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음.

[예시: 연구기관별 집필활동에 대한 규정상 상한시간 및 상한액]

구분	상한시간(또는 횟수)	상한액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국토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간 600만원
산업연구원	-	건당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무 시간 중 집필 불가	5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통일연구원	-	연구원 대외활동규칙 제10조에 따른 금액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	5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	건당 4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개 이상 외부사업 참여시 인사위원회 심의	4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월 3회 제한(단, 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300만원
한국노동연구원	-	1,00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	-	건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4회 이내	건당 700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부 공동연구 상한액은 연간 1,500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건당 800만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 1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행정연구원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한국환경연구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함	
건축공간연구원	-	건당 40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
육아정책연구소	-	-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24)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매뉴얼'에서도 법 제10조에서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또한 대외활동에 대한 내부규정상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간 101회 이상 대외활동을 수행한 36명의 직원이 103회에 걸쳐 회당 100만원 이상의 사례금 2억 8,355만원을 수령하였음. 특히 산업연구원의 경우 6명의 직원이 35회에 걸쳐 8,294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하여 횟수 및 금액이 가장 많았음.

[예시: 2024년 101회 이상 대외활동을 한 직원 중, 회당 100만원 이상의 사례금 수령 현황]

기관명	구분	출강	강연	평가	집필활동성격의대외활동			계
					자문	기고	기타	
소계	건수	3	6	6	23	28	39	103
	인원(명)	2	1	5	11	4	15	36
	금액(천원)	6,360	12,370	19,400	52,368	69,170	126,486	283,554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건수	1	-	3	3	-	7	14
	인원(명)	1	-	2	3	-	3	9
	금액(천원)	1,840	-	10,200	3,500	-	25,000	40,540
국토연구원	건수	-	-	-	1	-	3	4
	인원(명)	-	-	-	1	-	2	3
	금액(천원)	-	-	-	3,400	-	4,000	7,400
산업연구원	건수	-	-	-	10	25	-	35
	인원(명)	-	-	-	3	3	-	6
	금액(천원)	-	-	-	16,768	66,170	-	82,938
한국교육 개발원	건수	-	-	-	6	3	5	14
	인원(명)	-	-	-	1	1	1	3
	금액(천원)	-	-	-	23,700	3,000	15,750	42,450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건수	-	-	1	-	-	7	8
	인원(명)	-	-	1	-	-	2	3
	금액(천원)	-	-	1,800	-	-	34,353	36,153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건수	-	-	-	-	-	2	2
	인원(명)	-	-	-	-	-	2	2
	금액(천원)	-	-	-	-	-	8,000	8,000
한국행정 연구원	건수	-	-	-	-	-	15	15
	인원(명)	-	-	-	-	-	5	5
	금액(천원)	-	-	-	-	-	39,383	39,383

주) '계' 항목 중 '인원'은 복수의 외부활동을 한 인원이 존재하여 실제 수행 인원보다 과다 계상됨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연구기관별 대외활동에 대한 내부규정상 한도가 기관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상이한 수준으로 규정되는 경우, 국책연구활동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대우가 형성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상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관장의 재량 또는 포괄적 규정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경시한 채 무제한적으로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직원이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의 취지 및 연구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활동의 상한시간 및 상한액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대외활동과 본연의 업무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기존 사업과 상이한 목적으로의 예산 집행 지양 필요

가. 개 요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 국정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4,7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177	-	120 △50	247	235	-	12	19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추진실적 및 이행 현황 등을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파악, ② 온나라 시스템, 전문가 대면 및 서면 자문 등을 활용하여 과제의 추진 상황 관리, ③ 매년 성과보고회 실시 등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의 예산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기존 국정과제 점검과 수행주체, 참여자, 목적 등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

25) 일반회계-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정부업무평가실)

른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횟수를 연 1회 → 2회로 확대’ 하였다는 사유로 전용과 세목조정을 통해 1억 2,000만원의 일반용역비(210-14목)를 확보 · 집행하였음.[26]

[2024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이·전용 등 세부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 · 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전용 (2024.4.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10-01	7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국정과제 점검회의 횟수 확대 (연 1회 → 2회), 추가 필요한 위탁운영 재원 확보
세목조정 (2024.4.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01	5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0-14	

자료: 국무조정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 해당 예산액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아니라 이른바 ‘민생토론회’의 행사 용역비로 지출되었음. 국무조정실은 해당 용역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긴급한 행사)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PPT 제작비용 등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하였음.

그러나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민생토론회와 수행주체·참여자 및 목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예산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사용한 것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우선 수행주체 및 참여자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 사업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제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임에 반해,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실 주관으로 토론회 주제와 관련된 정부 사업담당자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추가로 참석하여 의견을

26)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본 사업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쳐 기존 사업의 예산으로 민생토론회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음.

차수(일자)	주제	세부사업	비목	금액(백만원)
5차(1.22)	생활규제 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용역비	79
13차(2.21)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37
			일반용역비	184
17차(3.5)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임차료	10
			일반용역비	146

자료: 국무조정실

개진하고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사업인 점에서 양자 간 차이가 있음.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

구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민생토론회
주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진행 방식	서면 진행, 현장 진행, 회의 진행 등	회의 진행(온/오프라인 병행)
참여자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 사업담당자	대통령, 관계 부처 사업담당자, 국민, 전문가 등
사업 목적	정부 **'국정과제'** 의 추진 실태점검	정부 **'업무보고'** 를 민생 주제별로 실시하고,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

자료: 국무조정실 사업설명자료 및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정부업무보고를 토론회 형식으로 대체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등 업무보고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이 주된 목적이므로,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의 주 목적인 국정과제의 추진 실태 점검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경우 민생토론회와 달리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의 참석 없이 대통령실과 정부 사업담당자만 참석하였으며,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정책과제 후속조치 관련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로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가 대부분 민생 관련 국정과제에 해당하기에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를 위한 행사라는 입장임.

그러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성격은 본 토론회에서 개진되었던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민생토론회와 별개인 활동이 아니며 오히려 민생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본 사업의 예산은 ① 국정과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 ② 전문가 대면 및 서면 자문비, ③ 성과보고회 실시에 필요한 인쇄비 등과 같이 국정과제의 추진 실태 점검에 필요한 비용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생토론회와 같이 광범위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필요한 행사용역비는 계상되지 않았음.

따라서 민생토론회 관련 행사용역비는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바와 다소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액이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등

가. 개 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7억 2,400만원 중 26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운영	2,724	2,724	-	40 △40	2,724	2,638	-	86	2,84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중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경우 국무총리가 주요사업 및 현안시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등으로 구성됨.

특정평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에 더하여 2024년부터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가된 협업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등급을 산정함.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평가결과는 부문별 우수 등급 기관만 공개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제3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

27) 일반회계-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정부업무평가실)

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28]

그러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결과 중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평가 결과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발표할 것을 결정(2024. 4. 11.)하면서, 그 사유로 ① 지나친 기관 서열화 지양 및 평가에 따른 부담 경감의 필요성, ②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음.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정부업무 평가자 및 피평가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 평가 결과 및 사유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과 같이 정부업무평가 세부 결과를 평가자 및 피평가자 간에만 공유하는 것은 평가 부담 경감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할 피평가자가 국민이 아닌 평가자의 평가 기준만을 중요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더해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기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관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을 고려하여 업무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수행자가 업무평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및 성과연봉 등 반영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평가 결과를 보수체계에 충분히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음.[29]

그러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및 성과연봉 등 반영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 과정에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허청의 경우 과장급 미만 직급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및 성과연봉 등 반영비율이 4.48%,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2%에 불과하였음.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체평가 결과를 보수체계에 정성적으로 반영하였다고만 답변하였으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반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 결과의 보수체계 반영비율이 낮은 중앙행정기관 현황]

(단위: %)

기관명	직급	자체평가 결과 반영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6급 이하	7.2
국세청	전 직급	미반영
금융위원회	전 직급	정성적으로 반영
특허청	과장급 미만	4.48

주)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국무조정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보수체계에 충분히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 · 인사 등에의 연계 ·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 예산 ·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 사업 · 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 · 예산 · 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7. 대테러센터 운영: 일반 국민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은 테러 관련 교육 · 홍보 · 실제 훈련 등을 통해 대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테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7,400만원 중 6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4년도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테러센터 운영	674	674	-	6 △6	674	644	-	30	7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테러센터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2016. 3. 3.)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31]

한편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32]에서는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안전대책 수립 및 대테러훈련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 홍보 ·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였음.

---

30) 일반회계-대테러센터 운영(7032-303)(대테러센터)

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 ·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직무) ①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 ·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나. 검토의견

국무조정실은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테러센터의 직무에는 대테러훈련 등을 통해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국민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테러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은 4,400만원의 일반용역비를 지출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한 것이 유일하며, 해당 영상의 조회수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5. 7. 기준 기획 영상 및 숏폼 영상 중 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뿐이었음. 또한 '테러 상식 안내 여행 경보 제도' 등의 일부 숏폼 영상은 조회수가 100회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홍보 실적이 저조하였음.

[2025. 5. 7. 기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홍보 영상의 조회수]

구분	제목	조회수
기획 영상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3만회
	파리0림픽 테러 위협요인과 행동요령(더 테러 라이브 토크 1부)	2.1천회
	해외 대형 테러사건으로 알아보는 소프트타겟 테러	2.3천회
	대한민국 테러 정세와 위험성, 그리고 우리의 자세	2.7천회
숏폼 영상	드론비행규정 불법 드론 신고	169회
	테러 상식 안내 여행 경보 제도	38회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안보위해물품 직구금지	72회
	테러 선전·선동물 게시글 신고요령	61회
	테러상식안내 테러경보제도	60회
	드론테러 대응요령	719회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 대응요령	573회
	사제폭탄, 총기제도 처벌규정	1.3천회
	택배, 우편물 테러 대응 행동요령	628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소개	1.1천회
	차량 돌진 테러 대응 행동요령	807회

주) 기획 영상 제목 중 '파리0림픽' 부분은 '파리올림픽'을 제목에 포함한 채로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올'을 '0'으로 대체한 것임

자료: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유튜브채널 영상 게시 내역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국무조정실은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동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튜브 이외에도 TV,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 실적 부진 등

가. 개 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3억 7,800만원 중 49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6%)되고, 4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4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154	5,154	45	226 △47	5,378	4,925	-	453	3,79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9호, 2022. 6. 22. 제정)을 설치 근거로 하며, 3년간 존속 예정임. 추진단은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 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거나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총리를 추진단장으로 하여 경제 · 사회 2개 분과 및 지원국으로 구성됨.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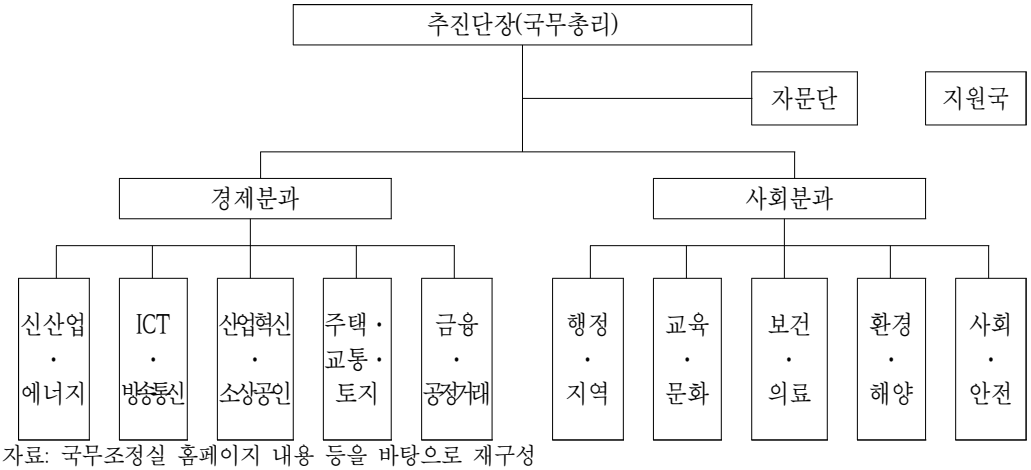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33) 일반회계-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규제혁신추진단)

나. 검토의견

첫째, 규제혁신추진단이 도출한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이행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 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의 업무프로세스는 ① 덩어리 규제 발굴 → ② 개선안 논의 → ③ 개선방안발표 → ④ 집행상황 점검(필요시) 등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단계에 해당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 및 ② ~ ④단계에 해당하는 '발굴 규제 검토 · 개선 · 조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이후 각 덩어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였는데, 2024. 12. 31.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183개(45.7%)에 불과함.

특히 2022년 개선 과제 중 2024년 말까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과제 수는 12건으로, 2022년 전체 과제 중 35.3%를 차지함. 2023년 개선 과제 중 2024년 말까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과제 수도 32건(2023년 전체 과제 중 32.7%)에 달하였음.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 이행 현황]

(단위: 건)

과제개선 발표연도	이행완료(비중)	미이행(비중)	계(비중)
2022	22(64.7%)	12(35.3%)	34(100.0%)
2023	66(67.3%)	32(32.7%)	98(100.0%)
2024	95(35.4%)	173(64.6%)	268(100.0%)
계	183(45.7%)	217(54.3%)	400(100.0%)

주) 2024. 12. 31.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2022~2023년 개선 과제 중 2024년 말까지 이행되지 않은 세부 과제 4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 없이 개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입법 또는 규칙, 기준, 정관 등의 개정으로 이행 완료가 가능한 과제도 20건 존재하였음.

예컨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과제의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 세부과제의 경우 관련 훈령 개정만으로 이행 완료가 가능함에도 개선발표일(2023. 4. 17.) 이후 1년 8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고,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과제의 '출연연구기관 현금출자 절차 유연화' 세부과제의 경우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만으로 이행 완료가 가능함에도 개선발표일(2023. 5. 2.) 이후 1년 7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음.

[미이행된 세부과제 중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20개 과제 현황]

개선과제 (개선발표일자)	개선과제 내 세부과제명	미이행 사유
인증규제 개선방안 ('22.12.21.)	인증 유효기간 연장추진(12개)	우수물류기업 인증,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등 7개 과제는 시행령/규칙 개정 사항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23.4.1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범위 기준	규제기준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인력 운영가이드 마련 중
	위험성 컨설팅 지원 기준	50인 미만 위험성평가 안착 후 업종별 지원 기준 변경 추진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추진 중
국가연구개발 (R&D) 성과 제고 ('23.5.2.)	임직원 휴직 · 겸직 · 파견 규정 정비	다부처 과제로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시행 완료, 중기부 추진 중
	출연(연) 현금출자 절차 유연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추진 중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다부처 과제로 과기부, 중기부 시행완료, 산업부, 교육부 추진 중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23.5.15.)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친환경에너지 인수 · 저장 · 보관 · 유통시설 근거 마련	항만법 시행령 정비 중
	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업 등록기준 조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정비 중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 합리화 ('23.8.24.)	사내 하도급시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도급인에게는 수급인과 협력, 조정, 지원, 지도, 관리 등의 의무만 부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무 등 중복규제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중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23.9.20.)	외국인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교육부·법무부 공동 추진 사항으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 개편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여건 개선 추진
그림자 규제 혁파('23.11.8.)	산업환기설비 덕트 기술지침 보완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추진 중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근거 마련	가설건축물 명의이전 관련 지침 마련 중
패자부활 창업지원 ('23.12.19.)	상각 후 장기간 경과한 특수채권의 출자전환 허용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간 협의 중

주) 과제 개선 발표일자가 2023. 12. 31. 이전인 과제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과제의 '임직원 휴직 · 겸직 · 파견 규정 정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등의 세부과제는 다부처 과제로, 복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총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개별 부처에서 오랜 시간 이행되지 않은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다부처 과제에 대해서도 복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과제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이후 일부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 편성시 예산액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덩어리규제 발굴' 내역사업은 2023년 예산액 중 23.1%, 2024년 예산액 중 31.5%만 집행되었고, '발굴 규제 검토 · 개선 · 조정' 내역사업은 2023년 예산액 중 54.9%, 2024년 예산액 중 29.5%만 집행되었음.

[덩어리규제 발굴 및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덩어리규제 발굴	130	30	23.1	130	41	31.5
발굴 규제 검토 · 개선 · 조정	226	124	54.9	190	56	29.5

주) 2024. 12. 31.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사례 검토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자문료 및 회의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① 국무조정실의 설명대로라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사례 검토의 비대면 진행은 2023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예산액이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점, ②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회의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회의용 다과 및 음료비(2,458만원)가 자문료 및 회의수당(290만원)의 8배를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실제 소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및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무조정실은 동 사업의 예산액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청년위원의 활동 기관 다양화 필요

가. 개 요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청년정책 관련 총괄 · 조정, 분석 및 이행상황 평가, 청년정책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9억 8,400만원 중 81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4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8,984	-	-	8,984	8,191	353	440	7,034
청년 참여 확대	1,274	1,274	-	-	1,274	1,174	-	100	1,20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청년 참여 확대’** 사업은 청년정책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추진 · 점검을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함으로써 정책 반영 ·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억 7,400만원 중 11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2%)되고, 1억원이 불용되었음.

청년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 주관부처로 하는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2019. 5. 2.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 추진단이 출범하였음. 한편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2021. 6. 15.)하였고,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음.

34) 일반회계-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청년정책조정실)

나. 검토의견

청년인재DB의 목적은 청년참여의 전국적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활동 기관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청년인재DB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인재DB는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 DB에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 담당자가 필요한 청년을 검색 또는 공모하여 찾는 구조로 운영됨. 청년인재DB를 통해 선임된 청년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평가·모니터링, 간담회, 기자단 등의 활동을 수행함.

청년인재DB는 직접검색과 공모형태(청년을 찾습니다)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각 기관에서 청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4년 청년인재DB를 통해 선임된 청년위원의 활동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경우 비교적 기관별로 고루 분포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 97명의 청년위원이 선임되어 중앙행정기관(347명) 및 위원회(136명)에 비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97명 중 34명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등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음.

[2024년 기관 유형별 청년인재DB 청년위원 활동 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위원 수)	주요 활동 기관(위원 수)
18개 중앙행정기관(347)	국토교통부(37), 국무조정실(34), 해양수산부(26), 국가보훈부(25) 등
8개 위원회(1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49), 금융위원회(22), 국민권익위원회(19) 등
18개 지방자치단체(97)	경기도 성남시(34), 경기도 화성시(11), 충청남도(9), 전라북도(8) 등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청년인재DB 서비스를 개시한 목적은 청년정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에 확대함으로써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나, 이와 같이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편중되어 활동하는 것은 청년인재DB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무조정실은 청년인재DB 시스템을 통해 선임한 청년위원이 다양한 활동기관에 선임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DB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운영 기한의 만성적인 연장 중단 필요 등

가. 개 요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감시가 소홀하거나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으로 부패 · 부조리를 시정 · 예방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900만원 중 7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709	-	38 △38	709	705	-	4	70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70호)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 고질적 부패 ·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설립된 후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국무조정실은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훈령 개정을 통해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을 사실상 상설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부패예방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국무총리훈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임시조직이며, 당초 훈령에서 설정된 존속기간 1년이 7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상설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음.

[부패예방추진단 존속기간 연장 및 명칭 변경 현황]

구분	제 · 개정일자	존속기한	연장된 기간	명칭
제정	2014. 8. 13.	2015. 7. 31.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차 연장	2015. 7. 23.	2016. 12. 31.	1년 5개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차 연장	2016. 12. 7.	2017. 12. 31.	1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3차 연장	2017. 8. 4.	2019. 12. 31.	2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4차 연장	2019. 12. 31.	2020. 3. 31.	3개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차 연장	2020. 3. 9.	2022. 6. 30.	2년 3개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6차 연장	2022. 1. 21.	2024. 12. 31.	2년 6개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7차 연장	2024. 7. 2.	2027. 12. 31.	**3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자료: 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서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 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감사원 또한 국무조정실 정기감사(2022. 6.)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이를 2회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 · 운영 중인 임시조직은 폐지할 것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오히려 2024년 훈령 개정을 통해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최장 기간(3년) 연장하였음.

국무조정실은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훈령 개정을 통해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을 사실상 상설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패예방추진단이 수행하는 업무가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부패예방추진단은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부패예방추진단은 기존 수사 · 감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패에 대해 제도개선 등 정책을 통한 예방 위주로 활동하는 것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사업추진 내용은 부패예방추진단의 협력 없이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시스템 하에서 단독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았음.

예컨대 2024년 부패예방추진단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점검은 산림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점검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부패예방추진단 사업추진 실적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

실적 내용	소관 기관	관계 법률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합동)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점검(합동)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보조금 지원실태 점검(합동)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점검(합동)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합동)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합동 점검을 통해 부패 · 부조리의 실태를 파악하면 시정조치, 행정제재, 징계, 수사, 제도개선 등을 진행하는데, 이 역시 모두 소관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기존 수사 · 감사 시스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비리 예방을 위한 부처의 적극적 정책 노력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 간 소관이 중복되지만 협업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패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을 통한 예방 위주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반부패 제도개선 관련 총괄 업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므로, 부패예방추진단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에서 부패예방추진단 고유 역할의 부재 및 타 기관 업무와의 유사 · 중복이 문제됨.[35]

이에 부패예방추진단은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해 시정요구 53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25건・제도개선 2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21	27	-	49
예비비	-	-	-	4	-	-	4
합계	-	-	1	25	27	-	5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정요구사항 53건에 대해 4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1.1%)하고 1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9	39	79.6	10
예비비	4	4	100.0	-
합계	53	43	81.1	10

국가보훈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283억 8,500만원(△60.6%)이 적은 83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100만원(△8.7%)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709	9,709	3,674	△6,035	10,027	10,027	6,156	△3,871	2,482
기 금	197,765	197,765	87,797	△109,968	201,828	201,828	77,314	△124,514	△10,483
총수입	207,474	207,474	91,471	△116,003	211,855	211,855	83,470	△128,385	△8,001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6억 400만원(△0.1%)이 적은 6조 4,000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0억 2,500만원(3.9%)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955,048	5,955,048	5,924,713	△30,335	6,179,113	6,179,113	6,166,881	△12,232	242,168
기 금	243,302	243,302	232,348	△10,954	226,577	226,577	233,205	6,628	857
총지출	6,198,350	6,198,350	6,157,061	△41,289	6,405,690	6,405,690	6,400,086	△5,604	243,02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2,700만원으로, 98억 8,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1억 5,600만원이 수납(수납률 62.3%)되고 35억 9,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4,1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851	9,851	-	9,851	9,770	6,040	3,589	1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	67	-	67	18	15	3	-
- 투자계정	67	67	-	67	18	15	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9	109	-	109	101	101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9	109	-	109	101	101	-	-
합 계	10,027	10,027	-	10,027	9,889	6,156	3,592	141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3,086억 5,800만원으로, 이 중 6조 2,595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06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84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256,190	6,256,190	21,516	9,782	5,596	6,293,084	6,248,134	10,656	34,29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259	13,259	-	-	-	13,259	9,083	-	4,176
- 투자계정	13,259	13,259	-	-	-	13,259	9,083	-	4,1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15	2,315	-	-	-	2,315	2,315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15	2,315	-	-	-	2,315	2,315	-	-
합 계	6,271,764	6,271,764	21,516	9,782	5,596	6,308,658	6,259,532	10,656	38,47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7,491억 4,400만원으로, 5,455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263억 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5%)되었고 186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5억 7,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보훈기금	600,414	600,414	344,862	325,626	18,661	575
순국선열및애국지사사업기금	148,730	148,730	200,692	200,682	10	-
합 계	749,144	749,144	545,554	526,308	18,671	575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7,491억 4,400만원으로,5,263억 800만원이 지출(집행률 70.3%)되고 834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보훈기금	600,414	600,414	-	600,414	325,626	-	5,469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48,730	148,730	-	148,730	200,682	-	292
합 계	749,144	749,144	-	749,144	526,308	-	83,47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보훈부 자산은 전년 대비 8,601억 500만원이 증가한 3조 1,009억 1,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95억 7,6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8,989억 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억 9,400만원 증가한 575억 8,3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2,4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6,9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593억 1,100만원이 증가한 3조 433억 3,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조 1,595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3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조 2,67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42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100,919	2,240,814	860,105	38.4
		유동자산	332,871	362,447	△29,576	△8.2
		투자자산	50,556	57,324	△6,768	△11.8
		일반유형자산	2,697,864	1,798,956	898,908	50.0
		무형자산	13,705	14,420	△715	△5.0
		기타비유동자산	5,923	7,667	△1,744	△22.7
	부 채		57,583	56,789	794	1.4
		유동부채	3,103	2,779	324	11.7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3,019	2,550	469	18.4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0	-
	순자산		3,043,336	2,184,025	859,311	39.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159,574	5,925,223	234,351	4.0
	재정운영순원가		6,296,265	6,041,376	254,889	4.2
	재정운영결과		6,267,771	6,013,493	254,278	4.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는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27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보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00억원을 예탁하고, 1,500억원의 예탁금과 55억원의 예탁이자가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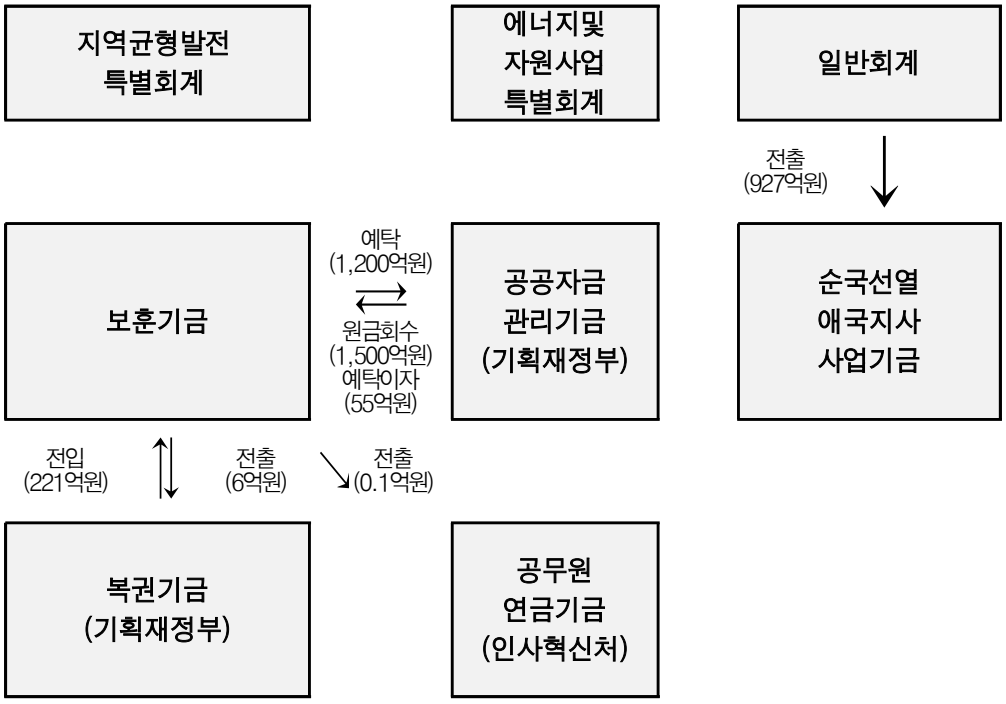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문화사업 추진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며, 총 129개 세부사업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의료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병원 운영 효율화 및 보훈병원 특성화 등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상금 사업은 부정확한 지급인원 추계로 인하여 매년 % 규모로서는 작지만 과다한 금액의 이·전용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사업 포기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사용자 만족도 외에도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훈문화관·보훈요양원 건립 등의 사업은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불일치하므로, 국가보훈부는 조속히 매각 여부를 확정 후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가. 개 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등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가보훈부는 공단의 의료사업 및 복지사업 등의 지원 목적으로 2024년 일반회계 7,692억 3,900만원을, 보훈기금 113억 4,700만원 등 총 7,805억 8,6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기준)하였음.

[국가보훈부의 202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일반회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병원진료	392,031	392,031	-	60,908	452,939	452,939	-	-	442,138
위탁병원진료	256,315	256,315	-	36,819	293,134	293,130	-	4	283,686
보철구 지급	5,845	5,845	-	-	5,845	5,845	-	-	5,845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65	-	-	2,365	2,365	-	-	2,365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3,223	3,223	-	-	3,223	3,223	-	-	2,678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3,211	3,211	-	-	3,211	3,061	-	150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1,130	1,130	-	-	1,130	1,127	-	3	4,490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478	478	-	-	478	478	-	-	1,068
고엽제환자검진	2,664	2,664	-	-	2,664	1,975	-	689	2,664
보훈문화조성	5,096	5,096	-	-	5,096	5,096	-	-	5,096
계	672,358	672,358	-	97,727	770,085	769,239	-	846	750,030

주 1)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경우 이·전용 등, 집행액에 예비비(55억 9,600만원)가 포함되었음

[국가보훈부의 2024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보훈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A)							
중상이자편의 시설 공급	3,294	3,294	-	-	3,294	3,294	-	-	2,228
보훈요양원 건립	3,365	3,365	-	-	3,365	3,365	-	-	3,783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4,599	4,599	-	90	4,689	4,688	-	1	5,005
계	11,258	11,258	-	90	11,348	11,347	-	1	11,016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의료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병원 운영 효율화 및 보훈병원 특성화 등 장단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2~2024년에 매년 4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영업수익(A)	영업비용(B)	영업외수익(C)	영업외비용(D)	법인세비용(E)	당기순이익 (=A-B+C-D-E)
2020	1,030,209	1,100,520	35,092	4,639	△11,542	△28,317
2021	1,071,886	1,158,222	78,662	4,497	△1,180	△10,991
2022	1,060,264	1,177,938	82,060	4,376	1,983	△41,973
2023	1,176,032	1,252,415	32,000	6,494	-	△50,877
2024	1,252,909	1,338,779	44,107	5,423	△14	△47,17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료사업 수익 및 비용으로, 매년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매년 의료사업에서의 손실(= 의료사업수익 - 의료사업비용)의 규모가 당기순손실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음.

예컨대 2024년의 경우 의료사업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91.6%, 의료사업비용이 전체 영업비용의 90.4%를 차지하였으며, 의료사업에서의 손실은 약 6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약 472억원) 규모를 상회하였음.

[최근 5년간(2020-20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사업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의료사업수익		의료사업비용		의료사업이익 (=A-B)	당기순이익
	금액(A)	영업수익에서의 비중	금액(B)	영업비용에서의 비중		
2020	960,287	93.2	999,028	90.8	△38,741	△28,317
2021	995,702	92.9	1,049,879	90.6	△54,177	△10,991
2022	975,562	92.0	1,060,889	90.1	△85,327	△41,973
2023	1,078,512	91.7	1,129,909	90.2	△51,397	△50,877
2024	1,147,982	91.6	1,210,806	90.4	△62,824	△47,17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에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사업 손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단은 의료사업 손실의 원인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낮은 병상가동률로 제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연도별 6개 보훈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병상가동률은 매년 90%에 육박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80.7%)을 제외하면 매년 80%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6개 보훈병원 병상가동률 현황]

(단위: %)

연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상가동률	90.8	89.9	87.7	78.0	80.7	70.2	78.6	78.1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병상가동률이 8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공단의 설명대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오히려 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진료대상의

감소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의료사업비용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가상승 및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공단은 병상가동률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훈의료사업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장단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기존 수익사업 규모의 확대, 인건비 및 재료비의 효율적 사용 등 병원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보훈병원을 특성화하는 등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2024년 위탁병원 수 및 진료인원 현황]

(단위: 개소, 천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위탁병원 지정 수	518	582	702	893
위탁병원 진료인원 수	3,629	3,567	4,014	4,162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2~2024년 6개 보훈병원 진료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중앙보훈병원	1,457,853	1,525,352	1,473,169
부산보훈병원	662,888	650,960	659,265
광주보훈병원	570,436	626,494	663,384
대구보훈병원	586,639	561,934	550,949
대전보훈병원	470,789	478,088	454,749
인천보훈병원	164,555	177,612	192,156
계	3,913,160	4,020,440	3,993,67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특히 연도별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 수 및 인원 수를 살펴보면,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의 대부분이 의원급에 해당하였으나 병원 당 진료인원 수는 요양병원급과 의원급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예컨대 2024년의 경우 연내 최초 계약한 201개의 위탁병원 중 188개가 의원급이었으나, 병원 당 진료인원 수는 요양병원급(1,189.4명)이 의원급(196.5명)보다 많았음.

[2021~2024년 신규 지정된 위탁병원 및 진료인원 수]

(단위: 개, 명)

구분	신규지정 위탁병원			진료인원			병원 당 진료인원	
	요양병원	의원	계	요양병원	의원	계	요양병원	의원
2021	5	124	129	17,702	34,675	52,377	3,540.4	279.6
2022	7	34	41	31,059	17,288	48,347	4,437.0	508.5
2023	5	113	118	20,743	32,628	53,371	4,148.6	288.7
2024	13	188	201	15,462	36,940	52,402	1,189.4	196.5

주) 당해연도에 최초 계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경미한 질병이나 반복적 투약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 지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상기한 병원 당 진료인원 수를 고려하면 위탁병원 지정 확대 과정에서 위탁병원 간 역할분담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와 공단은 위탁병원 수의 양적 성장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신규 지정 병원의 적정성 분석 등 질적 측면에서의 사업관리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교육비 및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환수액·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86억 5,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45억 3,700만원이 수납(수납률 55.1%)되었음.[2)]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8,652	8,652	8,233	4,537	3,554	141	55.1	8,65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등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국가보훈부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및 행정착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2021~2024년 세입 예산 대비 수납률은 7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2024년 수납률은 전년(계획현액 기준 33.6%, 징수결정액 기준 39.6%)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0% 미만 수준에 그쳤음.

2)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재정담당관실)

[2021~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B-C)	불납결손액
2021	7,851	9,760	3,454	44.0	**35.4**	6,112	**194**
2022	8,155	11,065	5,430	66.6	**49.1**	5,479	**156**
2023	8,400	7,131	2,821	33.6	**39.6**	4,102	**208**
2024	8,652	8,233	4,537	52.4	**55.1**	3,554	**141**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수납률이 23.1%로 가장 낮았으며, 미수납액도 30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음.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4,100**	949	**23.1**	141	**3,00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963	2,910	98.2	-	53
교육비 지원 과오급금	76	73	96.1	-	3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542	206	38.0	-	336
의료지원비 과오금 등 기타	551	399	72.4	-	152
계	8,233	4,537	55.1	141	3,554

자료: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항목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환수사유는 ① 범죄, 사망,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상변동신고를 지연·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②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미숙, 담당자 변경 및 실수로 인하여 행정착오가 발생한 경우, ③ 소관기관에서 군 기록 정정, 범죄경력 통보 등을 누락하여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분류됨.[3)]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24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급금 건수는 218건, 금액은 26억 7,000만원으로 전체 과오급금(430건, 41억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20~2023년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급금의 건수 및 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0~2024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착오		군기록 정정·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357	3,048	182	2,261	56	350	119	437
2021	486	5,879	216	3,625	74	726	196	1,528
2022	415	5,854	192	3,252	61	677	162	1,925
2023	483	4,700	313	3,139	67	735	103	826
2024	**430**	**4,100**	**218**	**2,670**	69	667	143	763

주: 당해연도 발생분 및 전년도 이월분이 포함되었음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4)]

그러나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매년 꾸준히 과오급금이 발생되는 것은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점, 담당자 변경 및 실수 또한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체계의 철저한 확립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및 행정착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4) 예컨대 부정수급 및 군기록 정정·기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급금의 경우, 범죄 등과 같은 신상변동 발생 등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사정, 정보전달 방식 등에 따라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세 출>

3. 보상금: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보상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조 3,969억 4,100만원 중 3조 3,968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보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상금	3,468,124	3,468,124	-	△71,183	3,396,941	3,396,879	-	62	3,562,81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수당 등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함.

한편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상이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전물순직군경유족·상이군경유족 등을 대상으로 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지급되고 있음. 2024년 보상금 내 세부항목별 지급 인원 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상이군경이 가장 많은 인원 수 및 지급액을 차지하였음.

5) 일반회계-보상금(1132-300)(보상정책국)

[2024년 보상금 내 세부항목별 지급 인원 수 및 지급액]

(단위: 명, 천원, 백만원)

구분		지급 인원 수	지급 단가	지급액
독립유공자 및 유족		6,575	889 ~ 7,188	124,667
상이군경		114,982	426 ~ 3,681	1,798,760
상이군경유족		53,274	410 ~ 1,952	841,014
재일학도의용군		3	1,612	51
전몰순직군경유족		14,231	1,335 ~ 2,249	312,658
부가수당	중상이부가수당	1,067	814 ~ 2,761	23,250
	고령수당	104,085	97 ~ 149	151,351
	전상수당	57,151	90	61,594
	무의탁수당	11,071	149 ~ 274	36,341
	부양가족수당	34,346	100 ~ 200	44,311
	양육수당	91	50 ~ 370	118
	기타수당	916	149 ~ 274	2,764

주) 대상 및 급수별 지급 단가의 차이, 보훈대부금 공제 등으로 인하여 지급액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상금 사업은 부정확한 지급인원 추계로 인하여 매년 % 규모로서는 작지만 과다한 금액의 이·전용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이·전용하여 제대군인전직지원금·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진료 등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규모 또한 2021년 246억원, 2022년 352억원, 2023년 642억원, 2024년 71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4년도 보상금 사업 이·전용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규모	이・전용 규모	이・전용액이 활용된 세부사업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6・25 자녀수당	그 외 사업
2021	3,059,336	24,565	1,284	9,508	13,773	-	-
2022	3,197,518	35,153	915	-	-	14,946	19,292 (생활조정수당 7,164백만원, 참전명예수당 8,640백만원 등)
2023	3,325,248	64,247	3,000	25,300	-	34,431	1,516 (사망일시금 1,404백만원 등)
2024	3,468,124	71,183	4,283	46,900	20,000	-	-

자료: 국가보훈부

연례적인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추계하는 지급 계획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 간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예산액은 항목별 지급 계획 인원에 결정된 지급단가를 곱연산하여 결정되는데, 지급 계획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 간 불일치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 인원(18만 9,065명)과 지급 계획 인원(19만 1,448명) 간에 2,383명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보상금 지급 계획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 간 차이]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지급 계획 인원(A)	실제 지급 인원(B)	차이(=A-B)	보상금 집행잔액
2021	191,866	190,226	**1,640**	24,575
2022	192,964	189,894	**3,070**	70,464
2023	190,906	189,186	**1,720**	67,158
2024	191,448	189,065	**2,383**	71,245

자료: 국가보훈부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보상금 지급대상자 현황 파악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이・전용 규모는 2021년 246억원, 2022년 352억원, 2023년 642억원, 2024년 712억원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였음.[6)]

6) 특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의 경우 매년 지원금 단가 및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금 사업의 집행잔액이 현재와 같이 꾸준히 발생하고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 관행이 지속된다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으로의 이・전용 규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가보훈부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급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73억 8,200만원으로 2024년 집행액(119억 2,300만원) 규모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4. 생활조정수당: 지급 계획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생활조정수당' 사업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95억 2,600만원 중 821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7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활조정수당	89,526	89,526	-	-	89,526	82,171	-	7,355	84,754
생계지원금	11,958	11,958	-	-	11,958	8,260	-	3,698	4,24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참전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9억 5,800만원 중 82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1%)되고, 36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외 수당을 의미하며,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2024년 기준 1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임.

나. 검토의견

생계지원금 사업은 부정확한 지급 인원 추계로 인하여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하여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예산액이 적정 수준

7) 일반회계-생활조정수당(1133-302)(보상정책국)

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급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 사업은 지급 개시연도인 2022년 이후 매년 지급대상자 추계의 낮은 정확성으로 인해 면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지급 계획 인원에 지급단가(월 10만원)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국가보훈부가 2022~2024년 지급 계획 인원 산정 과정에서 전년도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전년도 예산 편성 당시 추계된 지급 인원을 반영한 결과 실제 지급 인원 수가 지급 계획 인원 수를 하회함에 따라 부정확한 추계가 반복되고 있음.

2024년 지급 계획 인원은 지급 요건 완화를 고려하여 전년(6,670명) 대비 3,195명 증가한 9,965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 인원은 6,863명에 불과하는 등 3,102명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생계지원금 산출내역]

(단위: 명)

연도	지급 계획 인원	산출근거	실제 지급 인원	비고
2022	5,728	= (411×7.9%) + (437×6.2%) + (83,333×6.8%) + (106×3.4%)	3,490	80세 이상 보훈대상인원 중 2020.3. 기준 기초수급자 비율을 보훈대상별로 각각 곱연산하여 추계
2023	6,670	= (5,728 + 1,042)	3,505	지급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인원(1,042명) 반영
2024	9,965	= (6,670 + 3,195)	6,863	지급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인원(3,195명)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지급 인원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본 사업은 지급 개시연도인 2022년 이후 매년 7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 2024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119억 5,800만원 중 집행액은 82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1% 수준에 불과하였음.

[연도별 생계지원금 내역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이·전용 등(B)	예산현액(C=A+B)	집행액(D)	집행률(=D/C)
2022	6,874	-	6,874	3,851	56.0
2023	8,124	△1,430	6,694	4,204	62.8
2024	11,958	-	11,958	8,260	69.1

자료: 국가보훈부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본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로 답변하였음.[8)]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조치 내용에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인 '추계의 정확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상기한 대로 국가보훈부는 2024년 생계지원금 지급계획 인원 산정 과정에서도 이전과 같이 전년도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추계된 지급 인원을 관성적으로 반영하였고, 실제 지급 인원 수가 지급 계획 인원 수를 하회하였음. 국가보훈부의 답변 내용과 달리 집행률도 69.1% 수준으로, 2023년(62.8%)과 마찬가지로 70% 미만 수준에 그쳤음.

지급 인원의 부정확한 추계는 2025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5년 예산액은 연례적 과다 추계에 따른 집행 부진 실적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 조정되었는데(119억 5,800만원 → 42억 4,200만원), 연도별 지급 실적 및 지급 요건 완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과소 편성이 우려됨. 실제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생계지원금의 집행액은 38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91.7%가 집행되어 연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임.[9)]

8) 생계지원금은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4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지급 요건이 점차 완화되었음. 특히 2024년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것임.

9)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2~23년 인원 규모와 증감률을 반영하여 2025년 생계지원금 지급 인원을 3,535명으로 추계 후 예산액을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나, 2024년 지급 요건 완화에 따라 지급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2025년에 지급 요건이 축소된 바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액을 추계한 측면이 있음.

5.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의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보훈회관 건립 재원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 중 32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7%)되고, 5억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방보훈회관 건립	3,750	3,750	-	-	3,750	3,250	-	500	2,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지방비 및 부지 확보 상황 등이 반영되어 차년도 건립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가보훈부로 건립 사업계획서가 제출됨. 이후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건립 필요성·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부를 작성 후 정부예산안에 이를 반영함.

본 사업의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비율은 광역시·도 기준 최대 50%(최대 15억원 이내), 시·군·구 기준 최대 30%(최대 5억원 이내)로, 실제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비율은 2024년 기준 약 8.9%임.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사업 포기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사용자 만족도 외에도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본 사업의 2024년 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소 중 8개소만 정상 추진되었고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취소되었

10) 일반회계-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보훈단체협력담당관)

으며, 3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전부 또는 일부 이월 처리되었음.

[2024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교부 현액(A)	실집 행액(B)	실집행률 (=B/A)	불용	이월	특이사항
속초시	250	500	500	100.0	-	-	
강진군	250	487	487	100.0	-	-	
진천군	250	500	500	100.0	-	-	
김포시	250	500	500	100.0	-	-	
고창군	250	250	250	100.0	-	-	
인천 연수구	250	250	250	100.0	-	-	
동해시	500	500	500	100.0	-	-	
화순군	500	500	500	100.0	-	-	
안동시	250	250	34	13.6	-	216	사업 지연 (연약 지반 보강공사)
진안군	250	250	91	36.6	-	159	사업 지연 (위치 변경으로 재설계)
대구 달서구	250	250	-	-	-	250	사업 지연(BF예비인증 지연)
서울 송파구	250	-	-	-	250	-	사업 포기 (지방비 미확보 등)
대구 동구	250	250	-	-	250	-	
합계	**3,750**	**4,487**	**3,612**	**80.5**	**500**	**625**	

주) 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구체적으로, 안동시는 지반이 연약함에 따른 보강공사로 인해 2025. 4. 준공되었고(4개월 지연), 진안군은 당초 사업대상지에 준공 시 주차난 심화 우려에 따라 군유지로 사업구역을 변경 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재심의함에 따라 설계가 중지 및 재착수되었으며(11개월 지연), 대구 달서구는 BF예비인증 지연 및 당초 계획에 없었던 대구광역시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공사가 순연되었음(6개월 지연).

또한 서울 송파구는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2024. 4.)하였고, 대구 동구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사업계획 재변경 등의 사유로 포기(2024. 11.)하였음.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가보훈부로 하여금 향후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선정할 때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요건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잘 준비된 지역을 선정

하도록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 후 시행(2024. 4. 17.)하여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포기하였을 경우 3년간 신청을 제한하였다는 입장이나,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 포기 지역이 발생하였음.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포기 시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지침 개정 이후에도 사업 포기 지역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1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건립 필요성·추진 가능성·사용자 만족도·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1~3순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 예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1~3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음.[11]

[2024년 지방보훈회관 지원 기준 항목별 배점표]

(단위: 점)

구분	내용	배점
건립 필요성	회관 확보 여부, 확보한 회관의 노후화 정도 등	30
추진 가능성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여부,** 공유재산관리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50
사용자 만족도	주변과의 호응도, **접근성** 등	10
추진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등	10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주차난 심화 우려 등 따른 사업구역 변경·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정은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서를 고려한 지역 선정 과정에서 연내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건립 필요성, 사용자 만족도 외에도 추진 가능성 및 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 2024년 지방보훈회관 지원이 신규 추진된 5개 지역 중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곳은 존재하지 않았음.

6. 교통시설이용지원: 민간카드사 미지급금 문제 해결 필요

가. 개 요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은 고령의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3억 2,900만원 중 107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7%)되고, 5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1,329	-	-	11,329	10,730	533	66	10,729
	시내버스이용지원	7,200	7,200	-	△20	7,180	7,180	-	-	7,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 고령의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버스·고속철도 및 내항 여객선 등의 이용을 지원하며, 민간카드사(시내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고속 및 시외버스)·한국철도공사(고속철도)·㈜SR(고속철도)·내항여객선사(내항여객선)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특히 내역사업인 ‘시내버스 이용 지원’의 경우, 민간카드사가 교통복지카드 버스 이용금액을 청구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카드사가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본 사업 내용 중 시내버스 이용 지원의 경우 매년 국가보훈부가 실제 이용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민간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미지급금 문제가 심화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일반회계-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복지증진국)

2022년 이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사업은 무임 및 할인이용 계약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무임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버스 할인 이용 계약 대상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보조금 증액 요구에 따른 갈등, 무임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상이유공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2023년 시내버스 이용 지원 사업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주관사인 민간 신용카드사(신한카드)가 이용금액을 청구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매년 이용금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미지급금이 발생되었음.

구체적으로 2023년의 경우 이용금액(111억 5,400만원)이 보조금(71억 3,700만원)을 초과하여 부족분(40억 1,700만원)만큼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4년에 정산하였으나 다시 이용금액(130억 8,800만원)이 보조금(31억 6,300만원)을 초과하여 부족분(99억 2,500만원)만큼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2023~2024년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이용 지원 관련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금액(A)	당해연도 보조금(B)	부족분(=A-B)	전년도 미지급금 정산(C)	미지급금 누계
2023	11,154	7,137	4,017	-	4,017
2024	13,088	3,163	9,925	4,017	9,925

주) 연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민간카드사는 2024년 미지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한 바 있으나, 2025년 예산액 중 시내버스 관련 보조금 예산(72억원)은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미지급금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됨.

또한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버스 이용액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시내버스 보조 예산을 3년간 72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보철구지급: 예산액의 과다 계상 지양 및 불용 규모 축소 필요

가. 개 요

‘보철구지급’ 사업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0억 2,600만원 중 59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보철구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철구지급	6,026	6,026	-	-	6,026	5,919	-	107	6,026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175	175	-	-	175	68	-	107	1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게끔 보철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7,500만원 중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38.9%)되고,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은 시행 이후 매년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액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불용액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의 연도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집행 실적이 24.8%(2023년), 38.9%(2024년) 등으로 저조하였음.

13) 일반회계-보철구지급(2150-371)(복지증진국)

[연도별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내역사업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집행실적			지원 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23	250	62	24.8	0	5	9	7	21
2024	175	68	38.9	4	5	10	8	27

주) 2025년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원이며, 1/4분기에 7건을 지원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본 내역사업이 2023년 1월에 시작된 관계로, 사업 초기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신청자가 저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뉴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내용을 각 1회씩 게재하고 보훈제도 안내 책자에도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3년차인 2025년에도 여전히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오히려 본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은 낮은 인지도 문제라기보다는 2023년 사업의 신규 편성 이후 보철용 차량의 내용연수(5년)가 아직 도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 이상으로 예산액을 과다 산정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사업의 예산액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단가는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에 따라 차량개조 지원금액 최대 한도인 1,5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되었는데, 위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 모두 평균 지원금액은 300만원을 하회하였는바 단가를 1,500만원 기준으로 예산액을 산출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본 내역사업의 예산액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불용액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지원 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등 학습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4]

[2024년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등)	1,241	1,241	-	239	1,480	1,480	-	-	1,24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의 경우 중·고 및 대학 재학자, 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자,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등이며, 연간 최소 12만 4천원(중학교)부터 최대 71만 8천원(중·고등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지원됨.

[2024년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특수교육	
		인문	전문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연간)	124	144	186	236	534	718

주) 2016년 이후 지급 단가 동결

14) 일반회계-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2241-453)(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본 사업은 부정확한 대상자 추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액 부족분이 매년 이·전용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지원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전용(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2021년 3,300만원, 2022년 5,500만원, 2023년 1억 5,100만원, 2024년 2억 3,9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매년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일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본 사업은 매년 예산액을 실제 소요 대비 과소 편성한 결과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분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2021~2024)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B)	예산현액(C=A+B)	집행액(D)	집행률(=D/C)
2021	1,411	33	1,444	1,444	100.0
2022	1,377	55	1,432	1,432	100.0
2023	1,306	151	1,457	1,457	100.0
2024	1,241	239	1,480	1,480	100.0

자료: 국가보훈부

예산액 과소 편성 원인은 지급 단가가 매년 동결 상태에서 지급 인원의 과소 추계로 볼 수 있음. 최근 4년간 본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이 과소 추계된 결과 만성적 이·전용(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의 경우 실제 지원인원은 9,448명으로 계획인원(8,079명)을 1,369명 초과하여,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2021~2024)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계획 대비 실제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인원			금액		
	계획(A)	지원(B)	차이(=B-A)	예산액(C)	집행액(D)	차이(D-C)
2021	8,908	9,065	157	1,411	1,444	33
2022	8,722	9,025	303	1,377	1,432	55
2023	8,390	9,144	754	1,306	1,457	151
2024	8,079	9,448	1,369	1,241	1,480	239

자료: 국가보훈부

지원 인원의 추계 방식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실제 지원 인원이 아닌 전년도 계획 인원에 최근 3년간 증감율을 적용하여 지원 인원을 추계하고 있음.

그러나 전년도 계획 인원과 전년도 실제 지원 인원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 인원이 아닌 계획 인원에 증감율을 적용한 결과 매년 인원의 과소 추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연례적으로 학습보조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과 동일한 12억 4,100만원으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연도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계획 인원 산출 내역]

(단위: 명)

연도	지급 계획 인원	산출근거	실제 지급 인원	비고
2022	8,722	= 8,908 × (100% - 2.4%)	9,025	지급단가 동결, 지급인원은 최근 3년간 증감율(△2.4%) 적용 (2018년 10,204, 2019년 9,861, 2020년 9,722)
2023	8,390	= 8,722 × (100% - 4.1%)	9,144	지급단가 동결, 지급인원은 최근 3년간 증감율(△4.1%) 적용 (2019년 9,861, 2020년 9,722, 2021년 9,065)
2024	8,079	= 8,390 × (100% - 3.7%)	9,448	지급단가 동결, 지급인원은 최근 3년간 증감율(△3.7%) 적용 (2020년 9,722, 2021년 9,065, 2022년 9,025)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정확한 추계 방식으로 인해 학습보조비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고 불필요한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보훈문화조성: 보훈교육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 등

가. 개 요

‘보훈문화조성’ 사업은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을 위해 각종 체험활동 운영, 보훈교육연구원 운영,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및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4억 700만원 중 146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되고, 7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4년도 보훈문화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문화조성	15,407	15,407	-	-	15,407	14,693	-	714	14,104
보훈교육연구원	5,110	5,110	-	-	5,110	5,110	-	-	5,110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1,394	1,394	-	-	1,394	760	-	634	2,29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보훈교육연구원’** 사업은 보훈교육연구원에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영역 주제별 프로그램의 편성과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1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보훈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장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9,400만원 중 7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5%)되고, 6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보훈교육연구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연수교육,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보훈정책 연구, 공무원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의 공직가치 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기관(현원 31명)으로, 2001년 보훈연수원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15) 일반회계-보훈문화조성(3145-401)(보훈문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본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교육사업 시행 주체가 불분명한 결과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상호 유사한 내용의 교육사업을 실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2024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훈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일반 국민 대상 교육사업 내용 중 일부는 국가보훈부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사업의 경우 국가보훈부에서는 학습책자(2억원)를, 보훈교육연구원은 보훈잡지(2억원)를 각자 발간하고 있음. 보훈학습 콘텐츠 및 교육 플랫폼 또한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사업을 각자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사업 중 유사성이 높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보훈부(2024 사업액)	보훈교육연구원(2024 사업액)
청소년 대상 발간물 제작	청소년 학습책자 개발・보급(200)	청소년 대상 보훈잡지 발간(200)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제작(1,477) 디지털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216)	보훈학습 콘텐츠 개발(442)
교육 플랫폼 운영	나라사랑 배움터 웹사이트 운영(30)	온라인 보훈교육 플랫폼 개발・운영(320)

자료: 국가보훈부

이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직무 중 수행 주체가 분명한 연수교육과 달리, 기타 교육사업은 기관 간 역할분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양측이 유사한 교육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임.

연수교육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5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산하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함이 분명하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 등의 교육은「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2항에서 국가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16)]

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상기한 보훈교육연구원의 일반 국민 대상 보훈교육사업은 국가보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님에도, 보훈교육연구원의 업무에는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직무 수행 범위가 중첩되는 문제가 존재함.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내역사업은 사업 1년차부터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 창원시·포항시 및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동 내역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2024년 창원시는 2억 2,800만원, 포항시는 5억 3,200만원, 평택시는 6억 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창원시와 포항시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2024년 창원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4.	2024. 7.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방비 편성 및 건립부지 매입(2025. 5.) 필요에 따른 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7.	2024. 9.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2.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년 포항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 부지 확정	2024. 2.	2024. 2.	지방비 추경 편성 등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 6.	2024. 6.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 7.	2024. 10.	
지방비 추경 편성	2024. 7.	2024. 10.	
설계 용역 착수	2024. 12.	2025. 5.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같이 사업 1년차부터 지방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국가보훈부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0. 보훈기념행사: 행사 비용 지출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11개 정부기념일 행사 및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1억 5,000만원 중 41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보훈기념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196	4,150	4,139	-	11	3,954
정부기념일행사	2,967	2,967	-	196	3,163	3,158	-	5	2,9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 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11개 정부기념식 추진을 통해 국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국민에 알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억 6,300만원 중 31억 5,800만원(99.8%)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정부기념일행사’ 사업은 매년 행사비 부족을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증)이 발생하였고 행사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므로, 국가보훈부는 행사 비용 수준을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정부기념일행사’ 내역사업은 매년 행사비 부족을 이유로 일반수용비의 이·전용(증)이 발생하였으며, 본예산은 매년 3억 8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이·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특히 2024년에는 본예산액(3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전용

17) 일반회계-보훈기념행사(3147-411)(보훈문화정책실)

이 발생(4억 8,800만원 증)하였음.

[2021~2024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이·전용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본예산액(A)	이·전용 등 규모(B)	예산현액 (=A+B)	이·전용 등 사유
2021	일반수용비	392	161	553	행사비 부족
2022	일반수용비	392	191	583	행사비 부족
2023	일반수용비	380	170	550	행사비 부족
2024	일반수용비	380	488	868	행사비 부족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제약을 크게 상회하는 행사 비용 수준은 체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사 내에서도 연도별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용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순국선열의날 기념식의 경우 일반수용비 집행액이 최소 385만원(2022년)에서 최대 6,575만원(2021년)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120만원 수준으로 행사 진행이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일반수용비를 지출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2024년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행사명	2021	2022	2023	2024
2·28민주운동 기념식	51,660	28,372	23,655	39,923
3·8민주의거 기념식	15.880	32,025	14,450	30,726
3·15의거 기념식	14,956	56,134	40,164	48,66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87,625	68,022	45,690	62,378
4·19혁명 기념식	31,286	29,434	41,250	30,230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	-	171,472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6,148	125,925	123,700	102,210
현충일 추념식	25,816	89,995	80,508	104,150
6·10만세운동 기념식	23,479	27,200	43,784	43,522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29,750	4,032	5,398	31,300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65,747	3,847	15,258	43,123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매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대응·인건비·물가 등의 인상 및 행사 컨텐츠의 전문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를 매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도 2024년 본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용 등으로 충당한 것은 그 규모가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이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제약을 크게 상회하는 행사 비용 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행사 비용 수준을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행사 비용을 이·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참전기념행사: 사업계획의 현실화 등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참전기념행사’ 사업은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6·25전쟁영웅 선양 및 홍보,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호국영웅 귀환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6억 6,600만원 중 23억원이 집행(집행률 86.2%)되고, 2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참전기념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참전기념행사	2,677	2,677	-	△11	2,666	2,300	298	68	2,177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53	653	-	-	653	344	298	11	353
호국영웅 귀환행사	100	100	-	-	100	71	-	29	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따라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학교 등과 연계하여 호국영웅 명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 3억 4,400억원이 집행(집행률 52.7%)되고, 2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본 내역사업은 2016년부터 초·중·고교 및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대학교 명비 건립 예산을 반영하였음.

---

18) 일반회계-참전기념행사(4161-420)(제대군인국, 보훈문화정책관)

19)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호국영웅 명비사업 지원 절차]

지원 대상 결정 및 예산 배정	▶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	▶	부지·명비 형태 등 협의 진행	▶	업체 선정 및 세부 협상	▶	명비 제작	▶	준공 및 제막식 개최

또 다른 내역사업인 **'호국영웅 귀환행사'** 사업은 6·25전쟁 시 미수습된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 호국영웅 귀환패와 함께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0%)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9년 10월부터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격상된 바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의 경우, 대학교 명비 각인 대상 명단 확인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6억 5,300만원 중 3억 4,400만원(52.7%)만이 집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학교 명비 건립(3개교 대상 각 1억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기 때문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 대학교 모두 각인대상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적부 명단과 보훈부 참전유공자 명단을 대조하는 등의 작업, 학내 의견 수렴, 학사 일정과의 조율 등으로 인해 계획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결과 사업액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임.

[대학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

구분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각인대상 명단 확인	2024. 7. ~ 9.	2024.7. ~ 25. 4.	2024. 9. ~ 11.	2024. 9. ~ 25. 3.	2024. 9. ~ 11.	2024. 9. ~ 25. 2.
부지·명비 형태 등 협의	2024. 9. ~ 10.	2024. 9. ~ 11.	2024. 12. ~ 25. 1.	2024. 12. ~	2024. 11. ~ 12.	2024. 11. ~ 12.
건립 업체 선정 및 세부내역 협상 등	2024. 11. ~ 12.	2024. 12. ~ 25. 4.	2024. 12. ~ 25. 2.	2024. 12. ~	2024. 12. ~ 25. 2.	2024. 12. ~ 25. 4.
건립	2024. 12. ~	2025. 5. ~	2025. 3. ~ 6.	-	2025. 3. ~ 6.	2025. 4. ~
준공	2024. 12.	-	2025. 6.	-	2025. 6.	-

자료: 국가보훈부

대학교 명비는 기존 학교 명비에 비하여 확인 대상이 많고, 법인 이사회, 건립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 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하는 등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계획 시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역사업인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매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전용 절차 없이 자체활용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호국영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호국영웅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족에게 유해와 유품을 전달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관련 예산(1억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2024년 관련 예산(1억원) 중 일부(7천만원)는 동 내역사업이 속한 세부사업 중 '참전기념행사'에 이·전용 절차 없이 자체활용되었으며, 나머지는 불용되었음.

[2023~2024년 호국영웅 귀환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100	-	-	100	-	-	100
2024	100	-	-	100	71	-	29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연 4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참석 대상 유가족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귀환행사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주관 하에 유가족 자택 방문 및 신원확인 통지서 전달 등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호국영웅 귀환행사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호국영웅 귀환행사	0	0	0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행사	23	21	8

주: 2025. 5. 14.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유해발굴사업은 전사한 호국영웅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호국영웅에 대해 예우를 다함으로써 전쟁과 호국의 의미를 상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유족이 없는 호국영웅의 경우 유가족 자택 방문 및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해 별도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우를 다할 필요성도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유족이 대규모 귀환행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예산을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자체활용하는 대신,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호국영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신규):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인한 집행 부진

가. 개 요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은 월남전 참전 60주년 계기로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증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3억 4,5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1%)되고, 24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60주년계기)	21,889	21,889	-	△1,544	20,345	17,919	-	2,427	-
제복 증정	21,013	21,013	-	△1,544	19,469	17,919	-	1,550	-
모자 증정	876	876	-	-	876	-	-	876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 2023년(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에 이은 단년도 의복 증정 사업이며, 제복(예산액 기준 단가 12만원) 및 모자(예산액 기준 단가 5천원) 등을 증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제복 증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94억 6,900만원 중 179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모자 증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8억 7,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증정 항목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 일반회계-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계기)(4161-423)(제대군인국)

첫째, 제복 증정사업의 경우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의 발생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지급률이 저조하였음. 국가보훈부는 2024년 대상자를 175,114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2024. 1. 1. 기준 실제 대상자는 174,513명으로 추계치와 유사하였음.

그러나 예산 추계 과정에서 2024년 사망자 및 미신청자 발생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 결과 실제 대상자 174,513명 중 사망, 본인 불희망, 미신청 등의 사유로 25,432명(14.6%)이 제복을 지급받지 않았고, 관련 예산액이 불용되었음.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사업 관련 현황]

(단위: 명)

예산상 추계인원	실제인원 (A)	지급인원 (B)	지급률 (=B/A)	미지급인원			
				소계(=A-B)	사망	불희망	미신청
175,114	174,513	149,081	85.4%	25,432	6,316	7,248	11,868

자료: 국가보훈부

둘째, 모자 증정사업의 경우 관련 보훈단체에서 희망하지 않아 발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불용되었음.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가입하였는데, 이들 단체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자가 이미 존재하여 희망자가 없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모자 예산액을 계상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증정 항목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보훈정책개발: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보훈정책개발' 사업은 중장기적 정책개발을 위해 보훈정책 연구용역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보훈정책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500만원 중 17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2%)되고,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4년도 보훈정책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훈정책개발	2,078	2,078	117	-	2,195	1,716	416	62	1,27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보훈부는 2014년부터 국가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등을 조사하고 보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보훈정책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연구용역 사업액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응답률 저조에 따른 연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훈정책개발 사업은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에는 예산현액 20억 9,100만원 중 4억 1,600만원(19.9%)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21) 일반회계-보훈정책개발(7167-425)(정책기획관)

[2021~2024년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연구용역 이월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연구용역 이월 현황						기간 연장 사유
	전체건수 (A)	이월건수 (B)	비중 (=B/A)	예산현액 (C)	이월액 (D)	비중 (=D/C)	
2021	10	3	30.0	1,572	151	9.6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연, 대면조사 지연에 따른 일정 순연 등
2022	14	1	7.1	915	19	2.1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용역내용 보완 필요 등
2023	24	5	20.8	1,193	117	9.8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데이터 구축 및 반출 승인에 따른 지연, 기초자료 수집으로 인한 추가 소요시간 필요 등
2024	25	4	16.0	2,091	416	19.9	유찰에 따른 재공고 실시, 면접조사 협조율 저조로 현장조사 지연 등

자료: 국가보훈부

이월 원인을 살펴보면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져서 용역이 연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연구용역을 위해 일부 연구의 경우는 과제가 현시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과제는 예기치 못한 과제라 볼 수 없음.

예컨대 2022년 '호국보훈공원 기본구상 연구', 2023년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등의 경우 10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음.

2024년의 경우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 의 경우 11~12월에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제대군인센터 조직 체계 및 운영개선 연구'의 경우 12월에 연구용역이 착수되었음.

[2024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추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1. ~ 12.	2024. 11. ~ 12.	
연구용역 착수	2024. 12.	2024. 12.	
중간보고	2025. 2.	2025. 3. ~ 2025. 4.	보훈병원별 진료비 기초 자료 취합 및 DB 구축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구기간 지연
최종보고	2025. 5.	2025. 6.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보고 순연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 제대군인센터 조직 체계 및 운영 개선 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024. 10. ~ 11.	2024. 10. ~ 12.	제안서 평가 등 계약처리절차에 따른 지연
연구용역 착수	2024. 11.	2024. 12.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중간보고	2025. 2.	2025. 3.	계약지연에 따른 순연
최종보고	2025. 4.	2025. 6.	과업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간 연장

자료: 국가보훈부

한편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2025년 5월에서야 이월액 집행이 완료되었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생활실태조사 표본가구 수는 1만 가구였는데, ① 고령자의 경우 건강 등의 문제로 많은 수의 문항에 응답할 여력이 없었던 점, ② 제대군인의 경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관계로 주간 대면조사에 응답하기 곤란한 점, ③ 그 외에 재산 등의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였고, 그 결과 4천 가구 가량의 표본이 부족하여 조사가 지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연구보고서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 조사표의 문항 수와 난이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거부와 항목 무응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3년 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 시작 시기를 앞당기고, 항목의 간소화 및 행정자료 대체, 비대면 조사 비중 증대 등 응답률을 제고함으로써 연구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4.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실제 LPG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가. 개 요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중 LPG 차량에 대해 석유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5억 2,500만원 중 85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9%)되고, 40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도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LPG차량세금 인상분지원	12,525	12,525	-	-	12,525	8,505	-	4,020	9,85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가 추계한 LPG 개별소비세 지원 단가와 실제 지원 단가 간 매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결과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법령상 탄력세율에 따른 실제 LPG 지원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LPG의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액은 275원이나,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책정되었음.[23)]

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2158-380)(복지증진국)

23) 「개별소비세법」

LPG 개별소비세의 리터당 지원 단가는「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킬로그램(kg) 단위로 규정된 총 세액을 리터(L) 단위로 환산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총 세액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판매부과금의 합이므로, LPG의 단위 당 개별소비세 규모가 클수록 LPG 지원 단가 또한 커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24)]

그러나 LPG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예산 편성 시 석유 가격구조 개편 이전 개별소비세 규모를 고려하여 리터 당 지원 단가를 추계하였음(리터당 220원). 그 결과 예산 편성 시 추계된 지원 단가(리터 당 220원)와 실제 지원 단가(리터 당 150~190원) 간 차이가 발생하였음.

[석유 가격구조 개편 이후 LPG 개별소비세 및 실제 LPG 지원 단가]

기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LPG 개별소비세	예산 편성 시 추계된 지원 단가	실제 LPG 지원 단가
2019. 9. 1. ~ 2021. 11. 11.	275원/kg	220원/l	220원/l
2021. 11. 12. ~ 2022. 4. 30.	220원/kg	220원/l	180원/l
2022. 5. 1. ~ 2022. 6. 30.	193원/kg	220원/l	160원/l
2022. 7. 1. ~ 2024. 6. 30.	176원/kg	220원/l	150원/l
2024. 7. 1. ~ 2024. 10. 31.	193원/kg	220원/l	160원/l
2024. 11. 1. ~ 2025. 4. 30.	212원/kg	220원/l	170원/l
2025. 5. 1. ~	234원/kg	220원/l	190원/l

주) 석유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는 2021. 11. 12.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국가보훈부

본 사업의 최근 3년간(2022~2024)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66.3%, 2023년 60.9%, 2024년 67.9%로 매년 7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본예산과 집행액 간 상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별표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24) LPG 리터 당 지원금액 = (LPG 킬로그램 당 개별소비세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 판매부과금 - 40원) × (킬로그램-리터 환산계수(=0.5848)) × 부가가치세(물품가액의 10%이므로 1.1을 곱연산)

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2022-2024)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집행액(B)	차이(=A-B)	집행률(=B/A)
2022	16,174	10,726	5,448	66.3
2023	14,715	8,964	5,751	60.9
2024	12,525	8,505	4,020	67.9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LPG 개별소비세 지원액을 추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LPG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275원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시적 인하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리터당 지원 단가를 220원으로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2. 5. 1. 이후 킬로그램당 세율이 234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음에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계속 킬로그램당 275원의 세율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그 결과 2024년에도 40억 2,0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연례적인 불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향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탄력세율에 따른 실제 LPG 개별소비세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보훈기금】

<수 입>

1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이자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를 실시하고, 상환기간 동안 대부금의 융자원금과 이자를 징수하고 있음.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사업은 대부 상환기간 동안 대부금의 융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426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66억 8,600만원을 수납(수납률 62.6%)하였음.[25]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은 대부 상환기간 동안 대부금의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52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0억 2,500만원을 수납(수납률 38.3%)하였음.[26]

[2024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25,376	25,376	42,662	26,686	15,579	397	62.6	24,715
기타민간 이자수입	1,507	1,507	5,284	2,025	3,081	178	38.3	1,611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5) 보훈기금-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복지증진국)

26) 보훈기금-기타민간이자수입(54-544)(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두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각각 70% 미만 수준(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0% 미만 수준(기타민간이자수입)에 그쳤으며,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하였음.

2024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사업의 수납액은 266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426억 6,200만원) 대비 62.6%의 수납률을 보였으며 3억 9,7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음.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의 수납액은 20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52억 8,400만원) 대비 38.3%의 수납률을 보였으며 1억 7,8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함.

[2021~2024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구분	계획 현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021	29,953	45,156	30,186	100.7	**66.8**	14,547	**423**
	2022	31,222	42,623	27,417	87.8	**64.3**	15,032	**175**
	2023	27,920	43,027	26,975	96.6	**62.7**	15,347	**705**
	2024	25,376	42,662	26,686	105.2	**62.6**	15,579	**397**
기타민간 이자수입	2021	2,376	5,752	1,899	79.9	**33.0**	3,561	**292**
	2022	2,274	5,445	1,866	82.1	**34.3**	3,525	**54**
	2023	1,539	5,473	1,827	118.7	**33.4**	3,252	**394**
	2024	1,507	5,284	2,025	134.4	**38.3**	3,081	**178**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미수납액은 국가보훈부가 직접 저신용자에게 대부를 지원한 채권이 부실화되거나, 대부를 위탁받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국가보훈부가 양수함에 따라 발생함. 또한 불납결손액은 채무자 무재산 사망 후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채무자가 면책됨에 따라 발생함.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부와 관련하여 매년 채권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부분 승소하였으나, 실제 수납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27)]

동 사업은 자립기반이 불안정한 저신용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대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미수납액

27) 2022~2024년 국가보훈부 대부채권 소송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이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 대부액 및 이자를 성실히 상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수납률 제고 및 불납결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소송		승소	패소	패소 사유
	건수	금액			
2022	96	940	96	-	-
2023	115	1,279	115	-	-
2024	102	952	101	1	각하(소익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1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 운용계획의 신뢰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사업은 「보훈기금법」 제4조에 따른 '각종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기금운용수익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1,247억 5,300만원을 계획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없었음.[28][29]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124,753	124,753	-	-	-	-	-	132,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 88골프장 매각대금 총 3,727억원을 3개년으로 분할(1,180억원, 1,227억원, 1,320억원)하여 매년 계상하고 있음. 88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개장한 골프장으로, 2008년 방만경영 소지를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매각이 결정되었음.

나. 검토의견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불일치하므로, 국가보훈부는 조속히 매각 여부를 확정 후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8) 보훈기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복지증진국)

29)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010년 이후 보훈기금수입에 연례적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매각이 실현되지 않아 수입결손이 초래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기능조정과제 심의 이후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2025년 2월에서야 비로소 매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음.

[88골프장 매각 관련 추진 경과]

구분	시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및 매각방침 결정	2008. 8.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침에 따라 88골프장 매각 민영화 결정	2008. 10.
88골프장 매각심사위원회 구성	2008. 12.
88골프장 매각공고(1차) (1개 기관 입찰로 인해 유찰)	2009. 9.
88골프장 매각공고(2차) (입찰자가 없어 유찰)	2010. 3.
88골프장 매각공고(3차) (입찰자가 없어 유찰)	2010. 7.
88골프장 매각공고(4차) (입찰자가 없어 유찰)	2011. 8.
88골프장 매각 방침 재확인	2015. 2.
기획재정부, 기능조정과제에 대한 심의 실시	2018. 2.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1차)	2025. 2.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2차)	2025. 5.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3차)	2025. 6.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25. 11. 21.)	2025. 7.

자료: 국가보훈부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① 골프장 운영은 보훈기금의 유일한 자체수입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복지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② 보훈단체들은 골프장을 보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각추진 시 반대가 예상되는 점, ③ 골프장 종사자 또한 고용불안 및 실직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88골프장 매각을 재검토하였다는 입장임.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보훈기금에는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30]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88골프장 매각 관련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매각 여부를 확정하는 한편, 그에 따라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0) 2024년 보훈기금 전체 수입결산은 계획액 6,004억원, 수납액 3,256억원으로 양자 간 2,748억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항목(계획액 2,290억원, 수납액 780억원)을 제외하면 보훈기금 내 수입사업 중 계획액과 수납액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지 출>

17. 보훈요양원 건립: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보훈요양시설 추가 건립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초과요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권역별로 균등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3억 6,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31)]

[2024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보훈요양원 건립	3,365	3,365	-	3,365	3,365	-	-	3,783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자금을 교부하고, 국가보훈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민간대행사업 주체로 하여 보훈요양원의 건립·증축을 감독하는 구조로 수행되고 있음.[32)]

2024년에는 수원보훈요양원 증축(계획액 30억 1,800만원)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계획액 3억 4,700만원) 등을 추진하였음.

---

31) 보훈기금-보훈요양원 건립(2161-443)(복지증진국)

32)「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비목별·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비목별 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원 증축 (2022~2026)	건설보상비	-	-	-	-	-	-
	설계비	949	487	324	138	-	-
	공사비	18,447	-	2,000	2,446	2,694	11,307
	감리비	2,391	-	-	286	842	1,263
	시설부대비	1,419	8	15	148	247	1,001
	합 계	23,206	495	2,339	3,018	3,783	13,571
충북 건립 (2023~2026)	건설보상비	2,372	-	2,372	-	-	-
	설계비	2,120	-	2,084	36	-	-
	공사비	32,690	-	-	-	-	32,690
	감리비	2,755	-	-	156	-	2,599
	시설부대비	2,810	-	44	155	-	2,611
	합 계	42,747	-	4,500	347	-	37,900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추가 교부 없이 이월금만으로도 2024년 사업 수행이 가능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사업비를 교부한 결과 이월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수원 보훈요양원 입소율은 96.0%(213/222), 입소대기자 수도 620명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수도권 초과요양수요 해소를 위해 보훈요양원의 신속한 증축·건립이 필요함. 남양주 보훈요양원의 경우에도 입소율이 98.5%(203/206), 입소대기자 수도 654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 보훈요양원 초과요양수요 문제가 두드러졌음.

[2024년 보훈요양원별 정·현원 및 입소대기자 수]

(단위: 명, %)

구분	정원(A)	현원(B)	입소율(=B/A)	입소대기자 수
수원	222	213	95.9	620
광주	200	198	99.0	31
김해	200	190	95.0	40
대구	200	180	90.0	49
대전	200	192	96.0	68
남양주	206	203	98.5	654
원주	200	194	97.0	72
전주	200	157	78.5	47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4년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계획현액 52억 6,400만원 중 1억 2,000만원(2.3%)만이 집행되었고,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계획현액 48억 4,700만원 중 19억 8,600만원(41.0%)만이 집행되는 등 2023년에 이어 연례적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2023~2024년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기 이월	계획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수원 증축	2023	2,339	490	2,829	583	20.6
	2024	3,018	2,246	5,264	120	2.3
충북 건립	2023	4,500	-	4,500	-	-
	2024	347	4,500	4,847	1,986	41.0

자료: 국가보훈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은 사업계획 보완 및 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른 추가 행정 소요가 발생하였고, 2024. 4. 중간설계 완료 후 공사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지연(2024. 5. ~ 2024. 12.)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2022. 5.	2022. 5.	
건립 계획	2022. 10.	2022. 10.	
조달청 약정 체결	2022. 11.	2022. 11.	
건축기획 심의	2022. 12.	2022. 12.	
설계 공모	2023. 1. ~ 3.	2023. 4. ~ 8.	사업계획 보완 시간 소요
설계	2023. 4. ~ 12.	2023. 8.~ 2025. 7.	중간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경 협의 시간 추가 소요
인·허가	2024. 1.	2025. 4.	

자료: 국가보훈부

충북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건립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결정(2023. 5.)한 이후 영동군 내 적합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2023. 11.), 이후 사유지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재차 지연(~2024. 7.)되었음.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사유 등)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2023. 12.	2023. 12.	
부지 매입	2023. 12. ~ 2024. 1.	2023. 5. ~ 2024. 12.	건립 후보지 선정 시간 소요
건립계획	2024. 1.	2024. 12.	부지매입 시간 소요에 따라 순연
조달청 약정 체결	2024. 2.	2025. 2.	상동
건축기획 심의	2024. 3.	2025. 5.	상동

자료: 국가보훈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에서는 전기 이월액(22억 4,600만원)보다 실집행액(1억 2,000만원)이 더 작았고, 충북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에서도 전기 이월액(45억원)보다 실집행액(19억 8,600만원)이 더 작았음.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2024년에 사업비의 추가 교부 없이 이월금만으로 2024년 사업 수행이 가능하였음에도 2024년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고, 그 결과 이월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대행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보훈원 입주율 제고 등

가. 개 요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은 보훈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등을 지원하고 노후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86억 5,300만원 중 86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4년도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7,694	8,653	-	8,653	8,616	-	37	8,372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본 사업은 ① 저소득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60~80%)를 지원하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②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60~80%)를 지원하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③ 보훈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식주 비용 등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훈원 양로지원’, ④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지원’, ⑤ 복지시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시설 개보수’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으로 편성된 ‘보훈복지시설 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내역사업은 전액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되었음.

33) 보훈기금-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복지증진국)

나. 검토의견

첫째, 연도별 보훈원 입주율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보훈원 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보훈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기관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상이자인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및 그 유족(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입소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연도별 보훈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을 의미하는 입주율이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2024년 입주율은 53.5%(=115/21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2020~2024년 보훈원 정·현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계획액	정원(A)	현원(B)	입주율(B/A)
2020	3,417	215	143	66.5
2021	3,417	215	135	62.8
2022	3,417	215	123	57.2
2023	3,417	215	119	55.3
2024	3,417	215	115	53.5
2025. 4.	3,543	215	102	47.4

자료: 국가보훈부

앞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보훈원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재건축·리모델링 및 용도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국가보훈부는 복지시설 입소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개보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024. 5. 31. 자로 ‘조치완료’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실제 조치완료된 것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원에 입소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을 확대한 것과 재건축 등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 외 실제 시설이 개선된 바는 없으며, 입주율은 오히려 2025년 4월 기준 47.4%까지 하락하였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입소대상 확대 이외에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보훈원 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훈원 양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타 내역사업과 달리 기관 단위로 지원비를 일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기타보전금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훈복지시설 개보수' 내역사업을 제외한 4개 내역사업 보전금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및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시 국가유공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반해, '보훈원 양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보훈요양원 또는 보훈원에 지원비를 일괄 교부 후 정산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보전사업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음.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보전금 지급 방식]

구분	보전금 지급 방식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계좌이체)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선감면)
보훈원 양로지원	보훈원에 양로지원비를 교부 후 정산(매월)
자원봉사 활동지원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에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를 교부 후 정산(반기별)

자료: 국가보훈부

즉,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및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내역사업은 실제로 국가유공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구조인 반면, '보훈원 양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내역사업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보훈요양원 또는 보훈원에 지급하는 구조임.[34]

'보훈원 양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내역사업의 추진체계 또한 국가유공자의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생활수준조사 내용 등의 확인 없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비를 교부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비 교부 후 집행 및 정산보고를 거치는 체계를

34) 보훈원 양로지원 내역사업의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자체 부담금	소계
재료비	385,069	33,895	418,964
인건비	1,837,981	1,074,003	2,911,984
경비	1,193,950	57,765	1,251,715
계	3,417,000	1,165,663	4,582,663

자료: 국가보훈부

이루고 있음.

이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비목을 보전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9.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보훈부에 대해 시정요구 58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7건・주의 21건・제도개선 3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7	21	30	(2)	58
예비비	-	-	-	-	-	-	-
합계	-	-	7	21	30	(2)	58

국가보훈부는 시정요구사항 56건에 대해 4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9%)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6	47	83.9	9
예비비	-	-	-	-
합계	56	47	83.9	9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가보훈부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가보훈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7) 국가보훈부는 천안함 장병 생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72억 4,000만원(△61.6%)이 적은 1,729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1억 900만원(△68.9%)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1,696	421,696	556,031	134,335	450,162	450,162	172,922	△277,240	△383,109
총수입	421,696	421,696	556,031	134,335	450,162	450,162	172,922	△277,240	△383,109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8억 1,500만원(△1.8%)이 적은 1,556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00만원(△1.7%)이 감소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9,603	159,603	158,320	△1,283	158,429	158,429	155,614	△2,815	△2,706
총지출	159,603	159,603	158,320	△1,283	158,429	158,429	155,614	△2,815	△2,70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01억 6,200만원으로, 7,511억 6,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729억 2,200만원이 수납(수납률 23.0%)되고 5,778억 4,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9,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50,162	450,162	-	450,162	751,162	172,922	577,844	396
합 계	450,162	450,162	-	450,162	751,162	172,922	577,844	396

주) 총계 기준

한편,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03억 900만원으로, 이 중 1,556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1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4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58,429	158,429	1,880	±1,197	-	160,309	155,614	199	4,497
합 계	158,429	158,429	1,880	±1,197	-	160,309	155,614	199	4,49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082억 2,900만원이 증가한 2,894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이 871억 2,6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6억 7,100만원 감소한 152억 1,800만원으로, 이는 장기충당부채 150억 100만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18억 7,000만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임.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2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46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4억 3,7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9,413	181,184	108,229	59.7
		유동자산	177,914	160,112	17,802	11.1
		투자자산	309	291	18	6.2
		일반유형자산	5,239	4,600	639	13.9
		무형자산	16,176	13,532	2,644	19.5
		기타비유동자산	89,775	2,649	87,126	3,289.0
	부 채		15,218	27,889	△12,671	△45.4
		유동부채	461	-	461	-
		장기차입부채	1,870	-	1,870	-
		장기충당부채	12,888	27,889	△15,001	△53.8
	순자산		274,195	153,295	120,900	78.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2,183	84,013	△1,830	△2.2
	재정운영순원가		346,258	217,821	128,437	59.0
	재정운영결과		346,258	217,821	128,437	59.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 1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총 55개 세부사업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세목인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패소하여 과징금의 수납 후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각종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G-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디지털포렌식 교육 사업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하여 내부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사업 목적과 달리 훈련 후 디지털포렌식 현업부서(조사총괄담당관실)에 배치되지 않아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위탁교육 후 보직배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은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과징금 중 신고포상금 관련 징수비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실효적인 신고포상금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세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과징금' 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법 위반 관련 매출액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제재금 등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7,351억 8,200만원 중 1,696억 2,700만원이 수납(수납률 23.1%)되고 5,651억 5,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억 9,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2)]

[2024년도 과징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징금	445,557	445,557	735,182	169,627	565,158	396	23.1	534,8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태료' 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사방해·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2024년 징수결정액 38억 1,2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3%)되고 20억 8,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3)]

2) 일반회계-과징금(56-565)

3) 일반회계-과태료(56-563)

[2024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2,705	2,705	3,812	1,729	2,083	-	45.3	2,70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산금' 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벌로, 2024년 징수결정액 101억 8,4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되고 99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4)]

[2024년도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가산금	473	473	10,184	274	9,910	-	2.7	49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세목인 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된 체납 세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세입과목인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각각 23.1%, 45.3%, 2.7%로 저조한 상황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먼저 과징금의 2024년 수납액은 1,696억 2,700만원으로 2023년 5,521억 40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5,651억 5,800만원으로 2023년 2,851억 5,1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4) 일반회계-가산금(58-581)

[최근 5년간 과징금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394,884	394,884	394,884	1,313,976	785,931	59.8	527,683	361
2022	387,907	387,907	387,907	1,203,120	669,885	55.7	533,030	204
2023	417,067	417,067	417,067	837,557	552,104	65.9	285,151	302
2024	445,557	445,557	445,557	735,182	169,627	23.1	565,158	396
2025	534,811	534,811	534,811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과태료의 2024년 수납액은 17억 2,900만원으로 2023년 21억 6,5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8,300만원으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877	2,877	2,877	5,150	3,474	67.5	1,676	-
2022	1,887	1,887	1,887	3,733	1,976	52.9	1,757	-
2023	2,665	2,665	2,665	4,031	2,165	53.7	1,866	-
2024	2,705	2,705	2,705	3,812	1,729	45.3	2,083	-
2025	2,705	2,705	2,705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으로 가산금의 2024년 수납액은 2억 7,400만원으로, 2022년 6억 5,300만원, 2023년 3억 2,600만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약 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4,015	4,015	4,015	10,194	193	1.9	10,001	-
2022	391	391	391	10,645	653	6.1	9,992	-
2023	415	415	415	10,245	326	3.2	9,919	-
2024	473	473	473	10,184	274	2.7	9,910	-
2025	496	496	496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과태료의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일시적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납액의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특이사항으로, ① 플랫폼 A사의 자사 PB 상위 노출 알고리즘 조작 관련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불공정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 1,356억 8,700만원의 경우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인해 2024년 내 납기가 미도래되었고, ②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B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 510억 400만원에 대해 다수 사업자에게 공동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징수유예액은 실제 81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합 1,530억 1,200만원으로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특이사항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과징금 체납액은 총 249건 787억 4,100만원으로, 2020년부터 해마다 체납 건수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과징금 미수납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체납
2020	금액	310,937	256,200	18,419	36,318
	건수	447	217	51	179
2021	금액	527,682	475,644	8,370	43,668
	건수	487	290	14	183
2022	금액	533,030	431,013	37,263	64,754
	건수	555	271	65	219
2023	금액	285,151	177,679	29,465	78,006
	건수	532	269	31	232
2024	금액	565,158	302,845	183,572	78,741
	건수	714	369	96	24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의 경우 전체 미수납액에서 납기미도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2024년 체납건수는 711건, 체납액은 19억 8,000만원으로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과태료 미수납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미수납건	주요 미수납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체납
2020	금액	2,851	1,371	-	1,480
	건수	574	120	-	454
2021	금액	1,676	231	-	1,445
	건수	532	34	-	497
2022	금액	1,757	121	-	1,635
	건수	579	31	-	548
2023	금액	1,865	116	-	1,749
	건수	596	6	-	590
2024	금액	2,083	102	-	1,980
	건수	717	6	-	71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과징금과 과태료의 체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징수조사·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과징금 징수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은 직전 4년 평균과 비교할 때 비교적 소극적인 징수활동인 재산조회만 증가하였고, 납부독촉이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인 징수조사·압류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징수활동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연도	과징금 징수활동(건)				
	납부독촉 등	재산조회	징수조사	압류	계
2020	287	97	30	40	454
2021	284	308	65	70	727
2022	387	352	30	55	824
2023	43	939	20	41	1,043
2024	47	738	20	18	823
2020~2023년 평균	250	424	36	52	7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징수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은 직전 4개년 평균과 비교할 때 비

교적 소극적인 징수활동인 납부독촉·재산조회만 증가하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인 징수조사와 압류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유형별 과태료 징수활동 및 실적 현황]

(단위: 건)

연도	과태료 징수활동(건)				
	납부독촉 등	재산조회	징수조사	압류	계
2020	211	-	-	-	211
2021	122	21	-	20	163
2022	134	320	-	27	481
2023	80	2,010	73	75	2,238
2024	146	1,974	59	24	2,203
2020~2023년 평균	137	784	73	41	773

주) 2020~2023년 징수활동 유형이 중간에 새롭게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유형이 개시된 이후기간에 한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납된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증가하고 있음.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징금은 287억 5,3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태료는 11억 7,7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59.4%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과징금과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산금도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5)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체납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과징금	5,147	13,563	17,308	10,887	3,083	21,283	7,470	78,741
과태료	260	142	113	175	113	1,107	70	1,9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세목인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수납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 수납 후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패소 시 과징금 재부과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승패소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징금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자진신고 감면; Leniency)하고,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재결에서의 신청 인용에 따른 직권취소,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과징금 환급액은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 「국고금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해당연도의 징수결정액 및 결산상 수납액에서 차감됨.[7][8]

---

7)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감면을 받을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간의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져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속성이 있고, 경쟁당국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법은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니언시 제도의 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그 제도 설계상 담합가담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경쟁당국의 담합 적발과 조사를 보다 쉽게 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 리니언시를 신청할 상당한 유인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업자측에서도 리니언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리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과징금 3,015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처분 패소로 인해 1,244억 900만원, 자진신고 감면 등으로 인해 75억 3,100만원을 각각 환급하여 총 1,319억 4,000만원을 환급하고 128억 1,700만원을 다시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1,82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음.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과징금 중 최종적으로 징수한 비율은 60.5%에 그침.

[연도별 과징금 수납액 및 환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납액(A)	환급액(B)				재부과 금액(C)	최종 환급액 (D=B-C)
			행정소송	직권취소	자진신고 감면 등 기타		
2019년	300,061	251,558	187,562	63,992	4	116,684	134,874
2020년	276,389	13,221	12,839	66	316	4,823	8,398
2021년	796,353	10,422	9,850	-	572	3,178	7,244
2022년	816,962	147,078	81,440	61,031	4,606	49,851	97,227
2023년	628,369	76,266	65,625	-	10,641	19,788	56,478
2024년	301,567	131,940	124,409	-	7,531	12,817	119,12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확정판결 기준으로 전부승소 75건 82.4%, 일부승소(패소) 8건 8.8%, 패소 8건 8.8%으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확정된 과징금액 기준으로 98.2%를 전부승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9)]

언시를 신청함으로써 얻는 혜택이나 담합 적발에 따르는 위험의 감소 부분을 계산하게 되며, 나아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하게 보유해야 하는데, 담합에 단순 가담한 업체들보다는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관련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공정위로부터 받을 제재의 수준 및 어려 뒤따르는 타법상의 규제를 고려한 총량적인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상 재량의 여지가 많아서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핵심이 '리니언시를 통해 부당공동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한 기회를 갖는 것'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도자의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 클지 아니면 감면을 제한하는 경우에 클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합주도자의 리니언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담합주도자가 자진신고의 배후에 부정한 의도나 변칙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최난설현, 「리니언시 제도의 딜레마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방안」, 상사판례연구 37권 3호, 2024., p.507~508.)

9)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5.2.6.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승패소 현황]

(단위: 백만원, 2024.12.31. 확정판결 기준)

기준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패소	계
건수	75건	8건	8건	91건
	82.4%	8.8%	8.8%	100.0%
과징금액*	447,445	-	8,054	455,499
	98.2%	-	1.8%	100.0%

주)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5.2.6.

[2024년 및 최근 5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승패소율 현황]

(단위: 백만원, 2024.12.31. 확정판결 기준)

기준	확정연도	전부승소	일부승소(패소)	전부패소	계
건수	2024년	75건(82.4%)	8건(8.8%)	8건(8.8%)	91건(100%)
	2020~2024년 평균	335건(76.0%)	66건(14.9%)	40건(9.1%)	441건(100%)
과징금액	2024년	447,445(98.2%)	-	8,054(1.8%)	455,499(100.0%)
	2020~2024년 평균	2,267,435(95.0%)		120,184(5.0%)	2,387,619(100.0%)

주)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5.2.6.

이는 일부승소(패소) 확정판결 중 판결취지에 따른 과징금의 재산정 및 재부과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전체 취소하였다가 재부과되는 과정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과징금이 재부과됨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은 연도에서 순환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승소(패소)의 과징금은 해당 연도의 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징금액 기준 승소율이 당초 수치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2024년의 경우 일부승소(패소) 중 실제로는 재산정 집행 중으로 표기한 과징금액 중 일부승소(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당해연도 수납액의 40%를 넘을 정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환급규모가 큰 상황임.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특정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5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패소 647억 8,000만원 등 2024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패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액 기준 승패소율 산정 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과징금 재부과가 완료되는 경우 이를 포함한 2024년 과징금액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은 앞서 공표된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의 패소는 이미 확정된 세외수입을 감소시키고 연 3.5%의 환급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과징금 부과처분 후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집행부진 유의 필요

가. 개 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억 3,300만원 중 8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4%)되고, 1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화 기반확충		3,472	3,472	-	-	3,472	3,239	155	78	3,259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33	1,033	-	-	1,033	820	155	58	6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 중 노후 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누리집(홈페이지) 등 성능이 저하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5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10) 일반회계-정보화 기반확충(7032-501)(기획조정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노후 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 사업 집행 내역]

ㅇ 노후 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3억 7,200만원) - G-클라우드 전환 사업 : 1억 3,000만원(일반연구비) - G-클라우드 전환 사업 감리용역 : 2,300만원(일반연구비) - 키보드보안 솔루션 : 800만원(자산취득비) - 웹로그 분석 4식*770만원 : 3,100만원(자산취득비) - DB 암호화 솔루션 : 59식*200만원(다량납품 5%할인): 1억 1,100만원(자산취득비) - DRM 연동 모듈 : 1식: 1,300만원(자산취득비) - 웹문서뷰어 : 8식*570만원: 4,600만원(자산취득비) - 형상관리 : 6식*155만원 : 900만원(자산취득비) - 조달수수료 : 100만원(자산취득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검토의견

정보시스템의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9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누리집(홈페이지)을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전·재구축하기 위해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부에서 사용할 정보자원(HW·SW)을 일괄 구매해 통합구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표누리집을 개발하고 기존 누리집에서 G-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것임.[11]

각 부처의 G-클라우드 전환사업은 당해연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됨에 따라 사업 수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타 부처의 소요를 모두 반영하여 통합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구조적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DBMS, Web서버, WAS 등) 구입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 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함(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6.)

인 문제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구축 사업 일정에 위원회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사업의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인해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예산의 절반을 차년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G-클라우드 전환사업은 매년 추진될 예정이므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경과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업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존재함.

[2024년 공정위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사업 등 개요]

◦ 사업명: 공정위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사업 및 감리용역 ◦ 사업목적: 노후화된 대표누리집 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이전·재구축 하여 안전성 개선 ◦ 사업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국문·영문·어린이·해외경쟁)의 G-클라우드 재구축 - 행정안전부의 G-클라우드 시스템에 맞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모든 서비스 기능을 이전하여 재구축 - 공공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등 웹 표준·기준을 반영하여 화면 및 메뉴 재구성 - 누리집 서비스 이전에 따른 관련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시 DB 표준화 등을 준수하여 이관 - 누리집 검색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Fair Data 시스템의 통합검색과 연계되도록 재개발 ◦ 사업기간: 2024.6.17.~2025.1.10.(계약일로부터 207일) ◦ 계약금액: 전환사업 2억 6,000만원, 감리용역 4,56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결과 적정 사업기간이 207일로 산정되고, 조달청 입찰결과 계약기간이 계약일(2024.6.17.)로부터 207일 후인 2025년 1월 1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기간 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사업종료 후 잔금 50%를 집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공정위 G-클라우드 전환 사업 추진 일정]

◦ 사전 행정절차(2024.3월)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일상감사, 보안성검토 등 ◦ 계약의뢰(2024.4.19.) -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 도입 예상시기와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한 의뢰 일정 * 행안부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공고(2024.5.30), 계약체결(2024.7.30) ◦ 조달청 경쟁입찰 실시 및 계약 체결 - 공고게시(2024.5.2.) → 개찰(2024.5.28.) → 기술협상(2024.6.7.) → 계약체결(2024.6.17.) ◦ 사업 수행 및 대금집행 - 선금지급*(2024.7.15.) → 사업종료(2025.1.10.) → 잔금지급(2025.1.17.) * 선금과 잔금은 각각 계약금액의 50%로 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범정부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위원회 소관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작성하였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이후에도 기존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G-클라우드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신규 정보시스템의 경우 G-클라우드 또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구축할 예정이므로, G-클라우드 전환 시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12)]

[2025년 ThinkFair G-클라우드 전환사업]

◦ 추진현황 - (ThinkFair G-클라우드 전환) 노후된 업무포털 시스템을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G-클라우드 전환 추진 * (예산) 2억 7,600만원 / (사업기간) 2025.1.~2025.12. - (대표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공정위 대표홈페이지 시스템을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로 서비스 개시 * (예산) 5억 8,400만원 / (사업기간) 2024.1.~2024.12. (2025.2월 서비스 개시)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포털 기능개선) 협약평가시스템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를 통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 및 G-클라우드로 서비스 * (예산) 5억 1,200만원 / (사업기간) 2024.1.~2024.12. (2025.1월 서비스 개시) -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위해정보 플랫폼을 자체 클라우드로 구축 * (예산) 19억원 / (사업기간) 2025.1.~2025.12. * 보안성, 비용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검토(국정원 협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2) 참고로,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의 경우 「2025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내 자체 하드웨어(GPU 서버, 스토리지 등)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제안요청한 바 있음.

3. 포렌식 교육: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

가. 개 요

'포렌식 교육' 내역사업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3)]

[2024년도 포렌식 교육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디지털포렌식 운영(정보화)	969	969	-	-	969	956	-	13	961
포렌식 교육	30	30	-	-	30	30	-	-	3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1,600만원과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야 지도자 양성 외부기관(서울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1,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탁교육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인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학위 과정(2년)에 대해 2년에 1인을 선발하여 매년 1400만원씩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예산편성 세부내역]

ㅇ2024년도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 예산편성 금액: 1,400만원
- 산출내역: 정규학기 등록금 지원금 560만원×2회 +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금 280만원×1회
※ 등록금: 정규학기 800만원, 계절학기 35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3) 일반회계-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조사관리관실)

나.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자를 디지털포렌식 현업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있으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한 내부전문가가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보직배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격년에 1인을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개요]

◦ 개요
- 훈련기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계약학과) - 디지털포렌식 전공(석사)
- 훈련기간: 2년 야간 교육과정(총 29학점)
- 훈련인원: 2025년 기준 1인 선발

◦ 지원요건
- 공정위 3년 이상 실근무한 4~9급 경력직 공무원
- 만 53세 이하, 어학요건(teps 256점 이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선발절차
- ① 내부추천서 등 제출・지원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1인)* ③ 고정위원장 명의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 근무경력 및 평정, 포렌식부서 경력 등 고려

◦ 훈련비
- 정규학기 560만원(등록금의 70%), 계절학기 280만원(등록금의 80%) 지원

◦ 훈련 후 보직
- 교육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교육훈련 후 보직은 인사팀과 협의하되, 인사상황에 따라 조사총괄담당관실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타 부서 배치도 고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실시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포렌식부서 경력 등을 고려하고, 훈련 이후에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 3년 동안 근무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디지털 포렌식 조사분야 위탁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2인(2021~2022년, 2023~2024년 교육)의 경우 포렌식부서 경력이 없었고,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4)]

[최근 4년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및 부서배치 현황]

구분	2021~2022년 위탁교육	2023~2024년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간	2021.3.~2023.2.	2023.3.~2025.2.
교육 당시 직급 및 재직기간	사무관(5급) 20년 9개월	전산주사(6급) 7년 4개월
교육 이전 재직부서 (최근 10년)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8.1.~2023.12.)
전체 재직기간 중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 경력	-	-
교육 이후 재직부서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2013.1.~현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2023.12.~현재)

주) 공정거래위원회 내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서는 디지털포렌식 TF(2010.4.~2017.9.), 디지털조사분석과(2017.9.~2023.4.), 조사총괄담당관실(2023.4.~현재)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는, 최근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2인은 모두 기획조정관실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는 정보화사업의 구축·운영 등으로 디지털포렌식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음.[15][16]

또한 위탁교육 계획은 훈련 후 보직배치에 관하여 교육 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교육을 완료한 2인은 각각 정보화담당관실, 소비자안전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후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에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가 없어 관련예산을 불용하고, 2026년도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임.

15)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정보화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지식정보 운영 및 정보화자원의 관리
-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관리
- 위원회 사건조사 지원
-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1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는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을 수행한 이래로 포렌식 전문 부서인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는 동 위탁교육 사업을 이수한 내부직원이 전무한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야 위탁교육 후 부서배치 시 원칙적으로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여야 하나 인사상황에 따라 타부서 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나, 위탁교육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완료된 직후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요 급증 및 디지털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위탁교육이 종료된 후 일부 교육 이수자를 관련성이 낮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건부서 등에서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배치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의 교육 후 실제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배치에 유의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내역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17]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0억 5,000만원 중 14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3%)되고 15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신고포상금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20	3,320	9	△3	3,326	1,738	-	1,588	3,470
신고포상금	3,050	3,050	-	-	3,050	1,465	-	1,585	3,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4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과징금 중 신고포상금 관련 징수비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실효적인 신고포상금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수의

17) ① 부당공동행위,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 부당지원행위, ⑤ 부당고객유인행위, ⑥ 사원판매행위, ⑦ 미등록다단계, ⑧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 하도급법 위반행위, ⑪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 대리점법 위반행위, ⑭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18) 일반회계-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시장감시국)

담합·불공정행위의 경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신고포상금을 통해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유형]

관련법률	행위유형	시행시기
공정거래법	① 부당한 공동행위	2005.4.
	②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③ 부당한 지원행위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10.5.
	⑥ 사원판매행위	
	⑦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2017.10.
	⑧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2021.5.
방문판매법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 판매	2012.11.
	⑩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⑪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5.8.
하도급법	⑫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6.12.
대리점법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8.7.
가맹사업법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201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2024년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내역사업의 포상금(310-03목) 30억원 중 14억 1,500만원만 집행되고 15억 8,500만원은 불용되어, 당초 계획 대비 50%도 집행하지 못하였음. 또한 2024년 신고포상금 지급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460억 4,700만원으로, 2023년 3,211억 2,000만원의 14.3%에 불과함.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① 신고포상금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21~2023년 100%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47.2%로 크게 하락하여 신고포상금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② 신고포상금 지급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의 배수는 2024년 32.5배로, 2023년 95.5배보다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신고포상금이라는 비용 투입 대비 과징금 부과실적이 낮아진 것을 의미함. 고액사건의 경우 신고 포상금의 과징금액 대비 지급비율이 하향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19] 이는 신고포상금 지급행위가 줄어들거나 증거수준이 저조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비용 효율성이 일부 반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③ 총 과징금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의 비중은 2024년 10.9%로 2023년 81.9%에 비해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주요 지급 기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신고포상금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처벌보다는 신고포상금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 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처벌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조사·처벌 유인 효과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과징금 부과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포상금 당초 예산(A)		2,130	3,130	3,350	3,000
신고포상금 지급액(B)		2,354	3,158	3,362	1,415
신고포상금 지급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C)		295,678	149,023	321,120	46,047
총 과징금 부과액(D)		1,313,976	822,374	391,567	422,600
	신고포상금 집행률(B/A)	110.5	100.9	100.4	47.2
	신고포상금 지급액 대비 포상금 지급건의 과징금 부과액(C/B)	125.6	47.2	95.5	32.5
	총 과징금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 비중(C/D)	22.5	18.1	81.9	10.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 기준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과징금 사건 한도액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50억원 이하 → 과징금의 10%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	30억원
	과징금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징금의 5%		
	과징금 200억원 초과 → 과징금의 2%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5억원 이하 → 과징금의 20%		20억원
	과징금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징금의 10%		
	과징금 50억원 초과 → 과징금의 2%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 → 5억원 미고발 → 누락 계열사 당 100만원		고발 시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은 매년 신고 접수 건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신고 후에도 사건의 조사·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집행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신고포상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가능액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견임.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 및 리플랫 배포, 배너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매체별 광고집행에 활용하였음.

[2022~2024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현황]

연도	홍보시기	홍보수단
2022년	2022.10.15.~12.20.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 내 신고포상금 배너광고 및 경기도 G버스 내 영상 송출
2023년	2023.11.6.~12.5.	지하철 내부 홍보배너 게시 및 블라인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2024년	2024.12.1.~12.31.	포스터·리플릿 배포, 배너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의 블라인드 앱, 유튜브 등 매체별 광고 집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2022~2024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포스터·리플릿 배포, 매체별 광고로 구성되었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더욱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 피해예방 및 법 위반 방지교육,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간담회·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맹·대리점·하도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경우 동 제도의 홍보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전문관 보직 임용 개선 노력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2건·제도개선 1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2	14	-	26
예비비	-	-	-	-	-	-	-
합계	-	-	-	12	14	-	2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26건에 대해 2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8.5%)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6	23	88.5	3
예비비	-	-	-	-
합계	26	23	88.5	3

나. 검토의견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전문관 보직 임용이 부진하다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관 보직 임용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2024년 8월 기준 공정위는 72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나,[20] 23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장급 5개 전문직위는 모두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았음.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2020년 및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한 바 있음.[21][22]

[인사제도 개선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2)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공정위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전문직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정기전보 또는 비정기적 휴직 등으로 인한 전문직위 결원 발생 시 추가 전문관 보임을 통해 전문직위 운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 공정위는 2023. 4. 14. 조직개편에 따라, 전문직위 신설·해제 수요를 반영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에 맞추어 2023년 6월 전문직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 결과, 조직개편 이전 71개 전문직위에서 1개 늘어난 72개 전문직위를 운영 중임 * 전문직위 8개 신설, 7개 해제, 11개 직무내용 변경 - 또한, 전문관 선발 비율도 조직개편 이전 62% 수준에서 현재 68%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 2022년 12월(조직개편 이전): 전문관 선발 비율 62.0%(44/71) 2024년 12월(현재, 조직개편 이후): 전문관 선발 비율 68.1% (49/72) ㅇ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11일

20)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설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년(과장급 3년)간 전보가 금지됨.

21)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관 선발비율이 낮고, 전문직위 취지에 맞지 않는 자를 보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관련 보직인사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2)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문직위 운영을 하면서, 전문관 선발 비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관 직위에 전문관 보임 의사가 없는 자를 보직하게 하는 등 전문관 인사관리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직위 지정 및 선발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심사 시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를 검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된 2024년 8월과 비교할 때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전문관 보직실적은 오히려 악화(49명→47명)된 상황임.[23][24]

[공정거래위원회 기능별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

(단위: 건)

구분(기능)	2024년 8월			2025년 5월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정책	12	6(50%)	6(50%)	12	7(58%)	5(42%)
조사	42	28(67%)	14(33%)	42	26(62%)	16(38%)
심판・행정 등	18	15(83%)	3(17%)	18	14(78%)	4(22%)
합계	72	49(68%)	23(32%)	72	47(65%)	25(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직급별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

(단위: 건)

구분(기능)	2024년 8월			2025년 5월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과장급	4	0(-)	4(100%)	4	0(-)	4(100%)
4급~5급	15	12(80%)	3(20%)	15	11(73%)	4(27%)
5급	31	23(74%)	8(26%)	31	20(65%)	11(35%)
5급~6급	1	1(100%)	0(-)	1	1(100%)	0(-)
6급이하	21	13(62%)	8(38%)	21	15(71%)	6(29%)
합 계	50	35(68%)	15(82%)	50	47(65%)	25(3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3) 정무위원회,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 2024.8., p.50~53.

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 보임율이 하락한 것은 타 부처에 비해 소규모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보인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며, 전문직위 보임률 확대를 위해 전문직위 인센티브 확대와 매년 정기전보시 전문직위 보임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전문직위 운용을 활성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국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직위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950억 3,000만원(22.5%)이 많은 5조 4,17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377억 6,900만원(102.2%)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2,325	72,325	77,381	5,056	89,629	89,629	144,616	54,987	67,235
기 금	2,618,351	2,618,351	2,601,997	△16,354	4,332,488	4,332,488	5,272,531	940,043	2,670,534
총수입	2,690,676	2,690,676	2,679,378	△11,298	4,422,117	4,422,117	5,417,147	995,030	2,737,769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1억 4,100만원(△0.3%)이 적은 1조 4,99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 2,700만원(△6.2%)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603,709	1,603,709	1,598,292	△5,417	1,503,566	1,503,566	1,499,429	△4,137	△98,863
기 금	80	80	5	△75	145	145	141	△4	136
총지출	1,603,789	1,603,789	1,598,297	△5,492	1,503,711	1,503,711	1,499,570	△4,141	△98,727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96억 2,900만원으로, 2,228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46억 1,600만원이 수납(수납률 64.9%)되고 781억 5,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9,629	89,629	-	89,629	222,817	144,616	78,150	51
합 계	89,629	89,629	-	89,629	222,817	144,616	78,150	51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35억 6,600만원으로, 이 중 3조 9,994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003,018	4,003,018	548	±525	-	4,003,566	3,999,429	40	4,096
합 계	4,003,018	4,003,018	548	±525	-	4,003,566	3,999,429	40	4,09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4조 9,719억 9,900만원으로, 51조 6,389억 8,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3조 6,338억 9,700만원이 수납(수납률 65.1%)되고 16조 6,528억 9,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조 3,521억 8,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10,889,253	10,940,754	9,327,316	9,327,316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9,636	2,019,636	4,477,604	2,057,450	2,362,610	57,54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4,109	63,115	110,257	110,257	-	-
신용보증기금	11,470,275	11,470,275	24,269,400	11,921,589	11,301,320	1,046,49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641,030	5,581,030	5,443,234	5,443,233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7,189	4,897,189	7,816,771	4,579,651	2,988,968	248,152
합 계	33,981,492	34,971,999	51,638,982	33,633,897	16,652,898	1,352,18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4조 9,721억 8,400만원으로, 이 중 33조 6,338억 9,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2%)되고 105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8,050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적자금상환기금	10,889,253	10,940,754	-	10,940,754	9,521,716	-	1,063,52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9,636	2,019,636	-	2,019,636	2,057,450	-	15,93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4,109	63,115	-	63,115	110,257	-	1
신용보증기금	11,470,275	11,470,275	-	11,470,275	11,921,589	9,757	694,51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641,030	5,581,030	-	5,581,030	5,443,234	-	3,88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7,189	4,897,189	185	4,897,374	4,579,651	829	27,241
합 계	33,981,492	34,971,999	185	34,972,184	33,633,897	10,587	1,805,096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4,408억 2,500만원이 감소한 33조 64억 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997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나 투자자산이 9,666억 6,7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조 2,054억 3,800만원 감소한 26조 7,396억 6,300만원으로 만기도래 정부내예수금 감소로 인한 유동부채 7조 6,110억 8,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조 7,646억 1,200만원이 증가한 6조 2,667억 4,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조 804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20억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조 3,20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04억 3,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3,006,404	33,447,229	△440,825	△1.3
		유동자산	26,518,136	26,118,385	399,751	1.5
		투자자산	5,010,798	5,977,465	△966,667	△16.2
		일반유형자산	536,235	548,158	△11,923	△2.2
		무형자산	15,694	22,123	△6,429	△29.1
		기타비유동자산	925,540	781,098	144,442	18.5
	부 채		26,739,663	33,945,101	△7,205,438	△21.2
		유동부채	848,576	8,459,661	△7,611,085	△90.0
		장기차입부채	20,611,176	20,420,276	190,900	0.9
		장기충당부채	5,175,776	4,917,385	258,391	5.3
		기타비유동부채	104,135	147,779	△43,644	△29.5
	순자산		6,266,741	△497,871	6,764,612	1,358.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080,427	2,418,406	662,021	27.4
	재정운영순원가		2,243,114	2,486,782	△243,668	△9.8
	재정운영결과		△3,320,238	△2,849,804	△470,434	△16.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는 1개 회계(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5,000억원 전출되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315억원이 출연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5조 2,000억원이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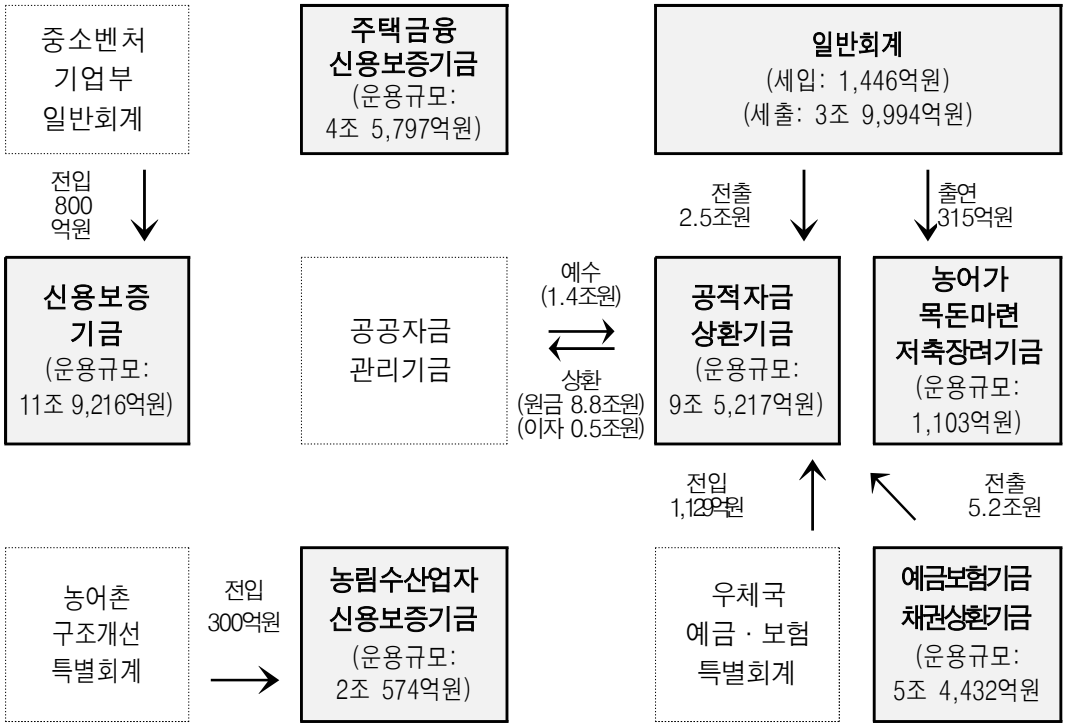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 금융위원회는 신뢰받는 금융, 튼튼한 금융, 역동적인 금융의 3대 핵심 목표를 통한 '국민의 삶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06개 세부사업에서 청년 자산형성, 서민금융 및 산업금융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핀테크 지원 사업은 최근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독창성과 혁신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양한 창의적인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되고 나아가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추계를 면밀히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다수 사업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자펀드 운용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결성시한 내 자펀드 미결성 시 모펀드 운용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역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어 투자실적이 여전히 부진하고 프로젝트 자펀드의 민간자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의 내용 및 실적이 부진하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수입 확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선정 기준 및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주신보IT·주연보IT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핀테크 지원 사업: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필요 및 D-테스트베드 경쟁률 저하 문제

가. 개　요

‘핀테크 지원 사업’ 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3억 3,000만원 중 122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핀테크 지원 사업	12,330	12,330	-	-	12,330	12,252	-	78	12,93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핀테크(Fin-tech)란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3)]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하고 테스

2) 일반회계-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디지털금융정책관)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 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

트베드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클라우드나 핀테크 보안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이후 법령 등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4] 지정기간(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동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 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혜택을 부여 받게 됨.

2024년 혁신금융서비스는 256건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2021년 48건, 2022년 52건, 2023년 5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2024년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31건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와 관련된 것으로 과반(51.2%)을 차지함.

[2019~2024년 혁신금융서비스 등 지정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혁신금융서비스	77건	60건	48건	52건	56건	256건	549건
지정대리인	18건	6건	3건	-	1건	-	28건
위탁테스트	3건	2건	-	1건	11건	21건	38건
합 계	98건	68건	51건	53건	68건	277건	615건

주) 혁신금융서비스 및 위탁테스트 지정 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출함(당해연도 신청 건이 해를 넘겨 지정된 경우, 당해연도 지정 건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인공지능 등 관련 서비스 131건 중 91건은 인공지능이 일부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순 업무개선에 불과함.

[2019~2024년 클라우드 기반 SaaS 도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등 지정 사례]

연번	신청일	지정일	기업명	서비스명	회사분류
1	2024-02-06	2024-03-20	A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인 M365의 내부망 이용	금융회사
2	2024-02-06	2024-03-20	B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기반의 업무 협업 솔루션	금융회사
3	2024-06-28	2024-09-27	C	임・직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도구 서비스(M365,SaaS)내부망이용	금융회사
4	2024-06-28	2024-09-27	D	클라우드(SaaS)기반임직원협업도구(M365)의내부망이용	금융회사
5	2024-06-28	2024-09-27	E	클라우드를활용한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내부망이용(M365)	금융회사
6	2024-02-02	2024-03-20	F	INHR+SaaS서비스를통한임직원성과관리	금융회사
7	2024-05-03	2024-05-29	G	MFS360(클라우드기반SHL사의인사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SaaS))	금융회사
8	2024-05-03	2024-05-29	G	SuccessFactors(클라우드기반SAP사의인사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SaaS))	금융회사
9	2024-05-03	2024-05-29	G	myHR(클라우드기반servicemow사의인사관리플랫폼소프트웨어서비스(SaaS))	금융회사

주) 2024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업무에 활용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생성형 AI를 외부망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예외(특례)가 필수인 만큼 서비스의 혁신성 이외에 신청기관의 위험관리 방안 등을 심사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특례 부여)했다고 설명함.

다만 Microsoft 365 등 AI가 포함된 구독형 SaaS를 내부적으로 도입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당초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혁신금융서비스로서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금융사가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여 지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

5)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중개서비스(5건, 1.31. 선정), 저축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업상 신용 연계대출 서비스(30건, 7.24. 선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7건, 10.30. 선정), 일반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신설

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지정이 이루어져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례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이후 총 3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 이 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것은 5건, 제도개선 중은 17건에 불과한 상황임.[6)]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 단순히 기간 내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법령 등의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D-테스트베드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개 유형의 경우 경쟁 없이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실효적인 혁신금융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D-테스트베드' 내내역사업은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

을 통한 상장거래서비스(34건 11.31. 선정),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17건, 12.24. 선정) 등의 경우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여 동일한 날짜에 지정되었음.

6) [2022년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건 중 실제 법령 등 제도개선 사례]

서비스 명(혁신서비스 지정일)	건수	진행상황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2.2.)	9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5.9. 시행 예정)
포인트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2022.3.)	1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계정 연결 직불카드 발급 허용하도록 법령해석(2024.4.)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조각투자)(2022.9.)	1건	(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5.6.) (유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2025.9. 시행 예정)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2.9.)	4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선불충전금과 금융사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2022.90~2024.9.)	3건	개정안 마련중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방안」 보도자료 배포, 2025.4.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2022.11.)	4건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2022.12.)	1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2023.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2023.4월)	1건	정보통신망법 개정(2024.7월), 관련 시행령 개정(2025.5.)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2023.6.)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2025.1.)

주)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외화선불지급수단 타인양도 서비스 등 54건은 테스트 진행중으로, 충분한 실증결과 누적 이후 규제개선을 추후 검토할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1~2024년 D-테스트베드 내내역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안	결산	예산안	결산	예산안	결산	예산안	결산
금액	-	1,200	429	429	1,010	1,010	1,010	1,010

주) 2021년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인 D-테스트베드 사업을 자체 추진하였고, 2021년에 플랫폼 구축비 9억5,600만원, 상금 등 운영비용 1억 3,200만원 및 인프라 운영비용 1억 1,100만원 등 총 12억원을 집행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범사업, 2022년도 정규사업(예산액 4억 2,900만원) 편성에 이어 2023년도(예산액 10억 1,000만원)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의 상시운영을 목표로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오프라인 상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금융 데이터 이외에도 비금융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D-테스트베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하게 편성・집행되었음.

그런데 사업규모가 확대된 2023년부터 D-테스트베드 경쟁률이 2023년 1.10:1, 2024년 1.13: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익과제형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모두 신청자 전원이 선정되었고, 협업과제형의 경우 2023년에는 13건 중 1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5건 중 5건이 모두 선정되었음.

[D-테스트베드 선정 현황]

(단위: 건)

모집 부문	2021년도 (시범운영)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건수	선정건수	신청건수	선정건수	신청건수	선정건수	신청건수	선정건수
자유제안형	25	6	37	22	18	15	29	23
협업과제형[1)]	15	7	8	5	13	12	5	5
공익과제형[1)]	20	7	12	4	12	12	12	12
총합	60	20	57	31	43	39[2)]	46	40[2)]
경쟁률	3:1		1.84:1		1.10:1		1.13:1	

주 1) 2024년 하반기부터 사업연계형은 협업과제형으로, 과제도전형은 공익과제형으로 명칭 변경

2) 상・하반기 연속 참여자 존재(2023년: 3개팀, 2024년: 5개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수행계획서 미제출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부적격 신청된 건수가 각각 7건, 11건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홈페이지 신청단계에서 필수서류 미첨부 시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보완하여 부적격건이 미접수됨에 따라 실제 경쟁률의 차이는 적다고 설명함. 다만 부적격건을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경쟁률이 하락한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7)]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의 테스트,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등 혁신금융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테스트 과제 간 경쟁이 없는 경우 성공가능성·혁신성 높은 과제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 없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실효적인 혁신금융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경쟁을 통한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연도별 D-테스트베드 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

구분	신청 팀수 (부적격 신청 제외)	선정 팀수	경쟁률
2021년	53	20	2.65:1
2022년	46	31	1.48:1
2023년	43	39	1.10:1
2024년	45	40	1.13:1

자료: 금융위원회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사업 종료 후 만기 미해지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신속한 출연금 정산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은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지급을 주관하고 적금실적을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657억 3,800만원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로부터의 전용액 560억 5,000만원을 더한 2024년도 예산현액 2,217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165,738	165,738	-	56,050	221,788	221,788	-	-	-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저축장려금(1년차 2%, 2년차 4%)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2022년 2~3월 중 총 12개 은행에서 상품 가입신청을 접수하였음.

8)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금융소비자국)

[청년희망적금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청년층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1년차 납입액에 대해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50만원, 2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출시 은행별 상이, 최대 6.0%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은행 자체금리: 기본 5%, 우대 0.0~1.0%p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만기 해지 시점이 도래한 이후 미해지·미수령한 고객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독려가 필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해 차년도로 이월된 22억 8,000만원을 조속히 정산하고 진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기간(2022.2.22.~2022.3.4.) 동안 286만 8,000명이 가입을 완료하였고, 가입 후 2년 만기까지 총 201만 9,000명이 가입을 유지하였음.

[분기별 청년희망적금 계좌 유지현황]

(단위: 천좌,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최초 가입 (3.4.)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5월 말
계좌 수	2,868	2,844	2,701	2,567	2,414	2,285	2,173	2,087	2,034	61	27	19	13	10	9
해지계좌 수	-	24	167	302	454	583	695	782	835	2,808	2,841	2,850	2,855	2,859	2,860
해지율	-	0.8	5.8	10.5	15.8	20.3	24.2	27.3	29.1	97.9	99.1	99.3	99.5	99.7	99.7
월평균 납입액	-	410	413	416	419	421	425	428	432	339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적금 만기가 도래한 기간(2024.2.22.~2024.3.4.)에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9] 하거나 적금을 해지하고 적금 및 이자를 수령하도록 하였음.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이후 계좌 해지 현황]

(단위: 억원, 천좌)

구분		2024년											202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만기도래 적금	금액	169,511	42,977	-	-	-	-	-	-	-	-	-	-	-	-	-	-
	건수	1,589	431	-	-	-	-	-	-	-	-	-	-	-	-	-	-
-해지 후 수령	금액	165,829	41,368	1,971	844	465	354	260	166	221	132	109	97	96	64	46	34
	건수	1,548	411	20	9	5	4	3	2	3	2	1	1	1	1	0.6	0.4
-청년도약계좌 이관	금액	10,477	14,504	4,020	545	-	-	-	-	-	-	-	-	-	-	-	-
	건수	96	138	39	6	-	-	-	-	-	-	-	-	-	-	-	-
-미해지자	금액	3,683	5,292	3,322	2,478	2,013	1,659	1,399	1,234	1,013	881	771	675	579	514	468	434
	건수	41	61	41	32	27	23	20	19	16	14	13	12	11	10	9	9

주) 이자 및 저축장려금을 제외한 납입금액 기준이며, '청년도약계좌 이관'은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금액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청년 저축 증대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201만 9,000명 중 청년도약계좌로 실제 일시납입한 인원은 27만 9,000명으로 연계실적이 저조함.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현황]

(단위: 천좌, 억원)

구분	연계완료건수		연계완료액 (일시납입)
	일반납입	일시납입	
2024년 2월	35	96	10,477
2024년 3월	122	138	14,504
2024년 4월	53	39	4,020
2024년 5월	31	6	545
합계	241	279	29,546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2024년 말 기준으로 1만 3,000명은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미수령한 상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 중 22억 8,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9) 청년도약계좌 특약 개정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에 대한 일시납입 허용(2024.1.25.)

[2024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원 내역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주)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165,682	360,000	525,682	633,773	221,732	219,452	2,280	-	132

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560억 5,000만원 내역변경과 청년희망적금 정부 출연금 누적 운용수익 91억원을 합산하여 집행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5월 말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 중 8,700명은 아직 미해지한 상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적금 납입액 434억에 대한 저축장려금 약 13억원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미해지자 추이]

(단위: 천좌, %)

구분	2024년										202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미해지자	60.8	40.8	32.0	27.0	23.2	20.4	18.5	15.8	14.3	13.0	11.8	10.5	9.7	9.1	8.7
미해지 비율	3.0	2.0	1.6	1.3	1.1	1.0	0.9	0.8	0.7	0.6	0.6	0.5	0.5	0.5	0.4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미해지자에 대한 저축장려금은 가입자의 해지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하여야 할 자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할 필요성은 있음. 다만 해당 재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유휴자금(idle money)으로서 당초 목적인 청년 자산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다른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기회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만기 해지 시점이 도래한 이후 미해지·미수령한 고객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독려가 필요함.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취급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만기경과 안내(콜센터) 및 알림메시지 발송을 통해 고객에 안내하고 있고,[10] 향후 미해지자 대상으로 안내문자발송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기경과를 안내할 예정이

10)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만기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및 취급은행 만기해지 안내 협조요청

* 2024.9월말 18,869명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안내문자 발송

(취급은행) 경과기간별 만기경과 푸시메시지(앱) 발송, 관리지점 수기관리(만기경과 안내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객 안내 시행

라고 설명함.

이와 같은 안내·독려에도 불구하고 만기 해지 후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장기 미해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해지 사유를 점검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해 이월된 출연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진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 비율의 과소추계로 인해 2024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으므로, 향후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까지의 가입유지 비율을 65.0%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추계와 달리 2024년 만기 도래시까지 실제 가입유지 비율은 70.4%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2024년 저축장려금 지급예산은 실제 필요액보다 과소하게 편성되어 부족하였음.[11)]

[2022~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실집행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1)]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47,550	-	47,550	1,948	45,589	13	4.1%
2023년	360,168	45,589	405,757	519	405,221	17	0.1%
2024년	165,738	405,221	636,109[2)]	633,829	2,280	-	99.6%

주 1) 교부현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2) 청년도약계좌 전용액(560억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 자금운용수익(91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 560억 5,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으로 전용(증)하였음.

11) [2024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예산 산출내역]

○ 총 저축장려금 지원액 5,712억 8,200만원
- (1년차) 가입자(287만명) × 가입유지 비율 65% × 2023.6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42.5만원) × 12개월× 2% = 1,904억 2,700만원
- (2년차) 가입자(287만명) × 가입유지 비율 65% × 2023.6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42.5만원) × 12개월× 4% = 3,808억 5,500만원
○ 2024년 저축장려금 예산안 1,656억 8,200만원 = 총 저축장려금 지원액(5,712억 8,200만원) - 旣편성액 4,056억원 (’22년 456억원, ’23년 3,6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2024. 4.18.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청년 희망적금)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청년 희망적금)	56,050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청년 도약계좌)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청년 도약계좌)	△56,050	(전용)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추계 오류로 인해 목적과 대상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청년도약계좌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효과 및 추계정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21억 6,100만원 중 3,121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8,211	368,211	-	△56,050	312,161	312,120	40	1	347,01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2023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11개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목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
상품내용	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12)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금융소비자국)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지원내용</td><td>①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table>
<tr><th colspan="2">개인소득</th><th colspan="3">정부기여금 지급구간 I</th><th colspan="3">정부기여금 지급구간 II</th></tr>
<tr><th>총급여 기준</th><th>종합소득 기준</th><th>기준금액</th><th>지급 비율</th><th>월 최대 기여금</th><th>기준금액</th><th>지급 비율</th><th>월 최대 기여금</th></tr>
<tr><td>2,400만원</td><td>1,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작은 금액</td><td>6.0%</td><td>2.4만원</td><td>4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 rowspan="3">3.0%</td><td>9,000원</td></tr>
<tr><td>3,600만원</td><td>2,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작은 금액</td><td>4.6%</td><td>2.3만원</td><td>5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6,000원</td></tr>
<tr><td>4,800만원</td><td>3,6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작은 금액</td><td>3.7%</td><td>2.2만원</td><td>60만원 초과 월 납입원금</td><td>3,000원</td></tr>
<tr><td>6,000만원</td><td>4,800만원</td><td>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작은 금액</td><td>3.0%</td><td>2.1만원</td><td colspan="3">미지급</td></tr>
<tr><td>7,500만원</td><td>6,300만원</td><td colspan="6">미지급</td></tr>
</table>
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혜택</td></tr>
<tr><td>금리</td><td>취급 은행별 상이, 최대 6.0%</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만기일시지급</td></tr>
<tr><td>취급은행</td><td>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td></tr>
</table>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참고로 2025년 5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는 202만 1,000명, 5월 기준 적금액은 12조 6,146억원임.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 및 누적 적금액]

(단위: 천명,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가입자수	-	-	-	-	-	-	253	378	422	454	478	511
	금액	-	-	-	-	-	-	1,335	3,244	5,306	7,512	9,708	11,977
2024	가입자수	550	704	1,059	1,226	1,305	1,325	1,400	1,438	1,459	1,526	1,544	1,572
	금액	14,420	27,553	45,448	53,321	58,387	62,855	67,706	72,610	77,731	82,990	87,990	92,989
2025	가입자수	1,657	1,734	1,870	1,966	2,021	-	-	-	-	-	-	-
	금액	98,643	104,678	111,478	118,711	126,146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 예산 3,590억 4,300만원 중 당초 목적대로 연내에 실집행된 것은 사실상 전무하여 결과적으로 2024년 동 내역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안 편성 시 추계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59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실제 기여금 집행액은 2,843억 2,900만원으로, 2023년도로부터의 이월액 3,008억 1,600만원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59,043	359,043	359,043	359,043	300,816	603,809	284,329	302,993	-	319,480	-	0

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으로 3,590억 4,300만원을 교부한 후,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으로 560억 5,0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내역]

(단위: 천명, 억원)

가입시기		1인당 월 정부기여금	지급 개월	대상 인원	기여금 소요액	기초 기여금 유보액 (A)	당해연도 교부 현액 (B)	기중 중도해지자 환수액 (C)	서금원 기여금 집행액 (D)	기말 기여금 유보액 (E=A+B+C-D)
연도	월									
2023년	7~12월	2.1만원	1~6개월	511	925	3,008	2,448	242	2,843	3,195
2024년	연중 (청년희망적금 무관)	2.1만원	1~12개월	782	1,130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37.3만원	3~32개월	279	1,030					
2024년 누적 기준				1,572	3,085					

주)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서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590억 4,300만원 중 560억 5,000만원은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부족에 융통하기 위해 사용되었고,[13] 나머지 잔액은 차년

도로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로 전액 이월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편성 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당해연도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의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제 사용되지 못할 예산이 출연기관에 유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부 대출, 중도 부분인출을 허용제도는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는데 기여하나, 저축 강제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도모하려는 정책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목적과 사용자 편리성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의 저축에 대해 정부 저축 장려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납입기간(5년)을 설정하고 중도 해지·수령 시 혜택을 포기하도록 함. 이는 청년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저축을 사실상 강제하도록 유도하여 자산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청년 가입자가 긴급한 자금수요가 필요한 경우 자금 융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납입원금을 담보로 한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담보부 대출의 경우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후부터 개시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으로 적금 담보부 누적 대출은 14만 6,210건, 누적 대출액은 2,782억 8,500만원임.

13)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2024. 4.1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56,05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56,050	(전용)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부 대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5월 말
신규 계좌수	4,004	9,623	14,022	22,069	25,985	31,939	32,289	22,374
누적 계좌수	3,652	12,301	24,603	44,140	66,919	95,537	123,836	146,210
신규 대출액	3,417	10,537	23,325	37,128	45,928	66,097	68,513	47,498
누적 대출액	2,481	11,623	32,758	66,610	108,644	169,000	230,788	278,285

주 1)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부 대출은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한 한시대출과 일시대출을 합한 것임
2) 신규 계좌수(대출액)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신규 취급된 계좌수(대출액)이고 누적 계좌수(대출액)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의 누적 합산 계좌수(대출액)를 의미함. 가입자가 담보부 대출 상환 후 다시 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 계좌수에는 일부 중복값이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를 재가공

이와 같은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담보부 대출은 청년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담보로 다시 여신을 제공하여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있고,[14] 금융위원회가 새로이 도입한 부분인출 서비스와 도입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직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음.

14) [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금리 현황]

(단위: %)

은행	기본금리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대출한도 (납입원금 기준)
		일시상환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NH농협	4.50	0.90	0.90	90
신한	4.50	1.00	1.00	100
우리	4.50	1.00	1.00	95
하나	4.50	1.00	1.00	100
IBK기업	4.50	0.60	0.60	100
KB국민	4.50	1.25	1.75	95
iM뱅크	4.00	1.00	-	95
BNK부	4.00	1.00	1.50	95
광주	3.80	1.20	1.20	95
전북	3.80	1.20	1.70	90
BNK경남	4.00	1.20	1.50	100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서비스 개요]

구분	내 용
이용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자로 한정
인출가능액	◦ 납입원금(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
이자	◦ 부분인출분에 대하여 약관상 중도해지이율 적용
이자소득세	◦ [가입 3년 미만] 부분인출분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 [가입 3년 이상] 부분인출분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부기여금	◦ [가입 3년 미만] 부분인출분 해당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 [가입 3년 이상] 부분인출분 해당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40% 환수)
서비스 시기	◦ 2025년 7월부터 가능

주)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서비스의 이자,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은 전액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이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 시 자금 융통을 용이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저축 강제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에는 배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긴 납입기간(5년) 동안의 저축 유도 효과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음.

청년도약계좌가 이미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이주, 사망,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적금 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 유도를 통한 자산형성이라는 정책목적에 배치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정책목적과 가입자의 수요 간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 서비스 출범 후에는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 담보 대출한도의 축소 등을 포함하여 동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저축 강제를 통한 자산형성 유도와 사용자 편리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햇살론15 사업의 보증부실 및 금융권 출연 등을 고려한 햇살론 체계 개편 검토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5)]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90,000	90,000	-	-	90,000	90,000	-	-	9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햇살론15는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당초 1,400만원이나 한도 상향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까지 15.9%의 이자율로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에 따라 대출을 공급하는 서민금융 제도임.

햇살론15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행복기금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증 공급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의 재원부족으로 2024년 7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되 기존의 국민행복기금 보증과 지원요건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국민행복기금 재원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 운영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24년 900억원, 2025년 900억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국민행복기금의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위변제율은 2023년부터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2/4분기에는 24.6%에 이르렀고, 신규보증액은 2022년 4/4분기 6,521억원을 공급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2/4분기에는 1,756억원을 공급하였음.

15)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국민행복기금의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보증잔액	1,306,593	1,281,707	1,464,924	1,909,903	2,150,165	2,181,341	2,114,025	2,095,948	2,038,072	1,912,444
- 신규보증액	191,516	190,121	396,718	652,095	476,166	306,540	237,698	288,182	236,994	175,622
- 보증해지액	194,866	215,007	213,501	207,117	235,903	275,363	305,015	306,259	294,869	301,250
대위변제액[2]	403,406	468,672	537,297	602,194	677,219	794,550	948,306	1,107,097	1,235,492	1,381,334
대위변제율[3]	15.2	16.5	16.6	15.5	15.5	17.0	19.3	21.3	22.7	24.6

주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월말 누적 기준)
3)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재정 출연을 전제로 한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4분기 2,390억원 4/4분기 4,339억원이 신규 공급되었고, 연말 보증잔액은 6,240억원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공급이 이제 개시함에 따라, 대위변제율은 2024년 말 0.8%로 낮은 상황이나 2025년 1/4분기 기준으로 2.2%까지 높아진 상황임.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1]	2024년		2025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보증잔액	228,829	624,030	972,452
- 신규보증액	238,962	433,903	423,546
- 보증해지액	10,133	38,702	75,124
대위변제액[2]	-	5,349	24,506
대위변제율[3]	-	0.8	2.2

주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월말 누적 기준)
3)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기존 햇살론15의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이 소진되어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이래, 연이어 이 사업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등 향후

햇살론15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및 햇살론15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식을 종전과 같이 민간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08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초과회수에 의한 금융회사 배분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신용회복기금(21개 금융기관 출자금, 총 6,970억원)과 2013년 이를 이어받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 사업에 대해 기금재원 소진을 이유로 2024년과 2025년에 연이어 정부출연금 900억원을 편성・집행하였음.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 은행권이 연간 특별출연금 2,00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1,000억원씩 3년간 출연하도록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특별출연금을 반영하여 여러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되었던 '햇살론 15'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규모나 재원조달 등에 대한 계획 변경은 없었음.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햇살론15'가 아니라 '햇살론119' 및 '소상공인 성장촉진(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은행권에서 매년 각각 연간 약 1,000억원을 3년간 출연하도록 하였음.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은행권 출연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출시일
햇살론 119	■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 (지원) 최대 2천만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원 • 금리: 연 6~7% (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95% • 상환: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4.30. (수)
소상공인 성장촉진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2025.8월 중 출시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024.12.23.)」은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 촉진(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은행권 특별출연금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만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권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5.4.2.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5년 2월 말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119를 6,000억원 신설하고, 복권수입 증가에 따른 법정 분배금 확대를 고려하여 햇살론 유스 1,000억원을 확대하며, 대출 원리금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1,000억원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4년 정책서민금융 지원현황 및 2025년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공급실적	2025년		
		당초 공급계획	수정안	증감
근로자햇살론	28,087	33,300	33,300	-
햇살론유스[1]	1,856	2,000	3,000 재정(복권기금)	+1,000
햇살론15	10,853	10,500	10,500	-
서금원(2024.7~)	6,729	10,500	10,500	-
행복기금(~2024.6)	4,126	-	-	-
최저특례	1,935	1,700	2,800	+1,100
햇살론뱅크	8,810	12,000	12,000	-
햇살론카드	345	500	500	-
(신설)햇살론119[2]	-	-	6,000 금융권(은행출연)	+6,000
보증 소계	51,886	60,000	68,100	+8,100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983	1,000	서금원 2,000	+1,000
미소금융	3,493	4,000	4,000	-
대출 소계	4,476	5,000	6,000	+1,000
서금원 소계	**56,362**	**65,000**	**74,100**	**+9,100**
새희망홀씨	35,165	41,000	은행 42,253	+1,253
사업자햇살론	1,309	1,500	지신보 3,000	+1,500
정책서민금융 합계	**92,836**	**107,500**	**119,353**	**+11,853**

주 1) 연중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복권기금 150억원 추가출연 추진

2)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2024.12.23.) 중 '상생 보증'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성실상환자에게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서금원 보증을 통해 자금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2025.2.28. 및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공급계획 수정 반영

이처럼 2025년 은행권 특별출연금은 햇살론15 정부출연금 900억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일단 정부재정이 투입된 햇살론15가 아니라

2025년 4월 출시한 신규상품인 햇살론 119에 민간 출연금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임.

이로 인해 종전에 금융회사의 재원을 기초로 운영하다가 재원이 부족해진 햇살론 15 대신 신규 사업에 은행권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기존의 햇살론15은 한시적 재정사업이 아니라 영구적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

햇살론 상품의 당초 취지는 제도권 금융사의 여신 행위로부터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16] 참고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다른 햇살론 상품은 복권기금(햇살론유스, 근로자 햇살론), 금융회사 출연금(근로자 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사행성 사업에서의 기금 수입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환원 차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햇살론15의 재정투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재정투입)과 햇살론15(국민행복기금→재정투입) 모두 재정투입을 통한 저신용자 보증공급 프로그램이라는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사업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6) 참고로, 국내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 10개사의 순이익은 2021년 21조 2,000억원, 2022년 21조 4,500억원, 2023년 21조 5,200억원, 2024년 23조 8,500억원으로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제도 비교]

구 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목적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당초 1,400만원이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햇살론15 사업은 ① 당초 민간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왔다가 한시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었다는 점, ② 다른 햇살론 상품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③ 정부재정의 지속적 투입 시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④ 은행권 등이 예대 마진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 창출을 하고 있고[17] 이 중 일부를 특별 출연금으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재정사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및 햇살론15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식을 종전과 같이 민간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중앙일보, “예금·대출금리차 역대 최대... 관치가 은행 이자장사 도왔다”, 2025.5.5.
이데일리, “정치권 상생 요구 커질라... 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긴장”, 2025.4.20.

5.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채무자 대리인·관계인 지원 사업의 실적 부진 부적정

가. 개 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인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억 5,5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0%)되고 6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1,255	-	-	1,255	628	-	627	1,55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대리인[19] 및 소송대리인[20]으로서 피해자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업이 채무당사자만 지원하여 지인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채무자의 관계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등)까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2025년부터 본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음.

---

18) 일반회계-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금융소비자국)

19)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등록·미등록대부업 채권자는 대리인(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임.

관계인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고, 채무자 관계인 역시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추심행위 대응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1]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및 채무자 관계인에 대한 사업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계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채무자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 선임지원 예산만 반영하여 이 사업 예산을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특히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내역사업 예산은 1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1~2022년 채무자대리인 평균 선임건수 4,610건에 더해, 전년도 동기 대비 2023년 상반기 선임건수 증가율(34%)과 전년 대비 2023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상담 접수건수 증가(24.4%)을 고려한 증가율 29.4%를 고려하여 5,965건으로 예상하여 추산한 것임.

[2024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확정예산(2024.1.) 세부내역]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억 4,100만원 = 5,965건×20.8만원(변호사 보수 및 실비) ○ 부수사건 소송대리: 1,400만원 = 28건×49.7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당초 예산안 편성 시의 추계와 달리, 2024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건수는 2,924건으로 당초 계획 5,965건의 49.0%에 불과하였고, 집행액은 5억 5,893만원으로 당초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12억 4,100만원의 45.0%만 집행되었음.

21)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선임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 안내,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절차 안내 등을 의미함.

[2024년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세부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건수	198	133	210	425	244	261	344	204	171	270	298	556	3,314
	지원 건수	120	127	150	455	162	261	348	154	150	278	271	448	2,924
	총 지원액**	0	0	87	28	90	37	47	70	28	26	50	97	559
채무자 관계인 지원*	신청 건수	-	-	-	-	-	-	0	0	3	2	5	1	11
	지원 건수	-	-	-	-	-	-	0	0	3	2	5	0	10
	총 지원액	-	-	-	-	-	-	0	0	0	0	0.8	0.8	1.6
부수 사건 소송 대리	신청 건수	0	2	3	0	2	0	0	2	8	61	81	5	164
	구조 건수	0	2	3	0	2	0	0	2	8	61	81	3	162
	구조 금액	0	0	2.5	0.4	0.3	0	0	0.5	0	0.8	0	62.2	66.7

주1) 2024년 7월부터 채무자 관계인 지원이 운영됨

2) 매월 말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지방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건을 취합하여 금융위로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어 지원 비용은 익월 처리함(단, 매년 12월의 경우는 회계마감을 위해 12월 당월에 처리)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세부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소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건수	630	423	513	969	870	3,405
	지원건수	463	442	412	736	902	2,955
	총 지원액**	0	124	85	88.2	129.6	426.8
채무자 관계인 지원*	신청건수	3	0	0	0	0	3
	지원건수	3	0	0	0	0	3
	총 지원액	0	0.2	0	0	0	0.2
부수 사건 소송 대리	신청건수	0	42	0	0	2	44
	구조건수	0	42	0	0	1	43
	구조금액	0	0.3	1.03	0	0.55	1.88

주) 매월 말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지방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건을 취합하여 금융위로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어 지원 비용은 익월 처리함(단, 매년 12월의 경우는 회계마감을 위해 12월 당월에 처리)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7월 채무자 관계인까지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변경한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비교하더라도, 변경된 계획 4,430건의 66.0%에 불과하고, 변경된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9억 2,200만원의 60.6%만 집행된 것임

[2024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자체변경, 2024.7.) 세부내역]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9억 2,200만원 = 4,430건×20.8만원(변호사 보수 및 실비)
○ 채무자 관계인 지원: 3억 1,900만원 = 4,560건×7만원(변호사 최저보수 비용)
○ 부수사건 소송대리: 1,400만원 = 28건×49.7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에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관계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기존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 없이 연도 중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관계인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4,560건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 하반기 관계인 지원 시범사업의 실제 신청건수는 총 11건, 지원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였고, 2025년 5월까지의 신청·지원실적은 3건에 불과함.

금융위원회는 2024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의 부진 사유로, 2023년 채무자대리인 예산이 축소 편성(8억 8,600만원)되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입증자료가 명확히 구비된 사건 위주로 선별 지원하였고, 그 영향이 2024년 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함.[22]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의 각종 애로사항(피해 입증사실 증명, 불법추심자 전화번호 입력 등)에 대해 ① 피해 입증부담 최소화(2024.2.),[23] ② SNS 불법추심 피해 지원(2024.11.),[24] ③ 신청양식 개선 및 신청서류 점검 간소화(2025.4.),[25]

22)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 조기 소진 이전(~8월)까지 월 평균 지원건수는 368건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았다면 약 4,400건 지원했을 것으로 추산함.

[2023년 1월~2024년 3월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연도	2023.1	2023.2	2023.3	2023.4	2023.5	2023.6	2023.7	2023.8	2023.9	2023.10	2023.11	2023.12	2024.1	2024.2	2024.3
지원 건수(건)	357	389	512	534	472	285	164	228	168	80	7	52	120	129	153

자료: 금융위원회

23)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에게 불법추심 등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입증자료 없이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4) 기존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여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 피해자는 신

④ 서민금융진흥원 오프라인 신청창구 확대(2025.4.)[26] 등을 통해 신청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매년 전년도 실적만을 고려하여 편성되어 감액과 증액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27]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의 지원건수를 면밀히 산정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2025년 7월부터 초고금리 불법 대부,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소송대리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신청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청이 불가하였으나, SNS, 오픈채팅방 등의 불법추심업자 아이디(ID)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함.

25) 기존에는 신청서가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오류·누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모든 신청건을 점검한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여, 점검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신청서 양식을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용어 등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금감원에서 다시 점검하는 절차 없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할 수 있도록 함.

26)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청창구를 서민금융진흥원(오프라인)으로 확대함.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은 2026년 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임.

27) [최근 5년간 채무자대리인 예산 및 지원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1.50억원 (-)	6.04억원 (감액)	11.44억원 (증액)	8.86억원 (감액)	12.55억원 (증액)	12.05억원 (감액)
지원 현황	919건	4,841건	4,510건	3,249건	3,096건	1,362건(1분기)

자료: 금융위원회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 지연 문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8]

[2024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펀드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됨.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고,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 자본금 등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규모는 제한이 없음.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사업 및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의 제외 사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29]

28)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18)(금융정책국)

2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단, 분양수익이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공공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시 예외 적용),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외사업에 해당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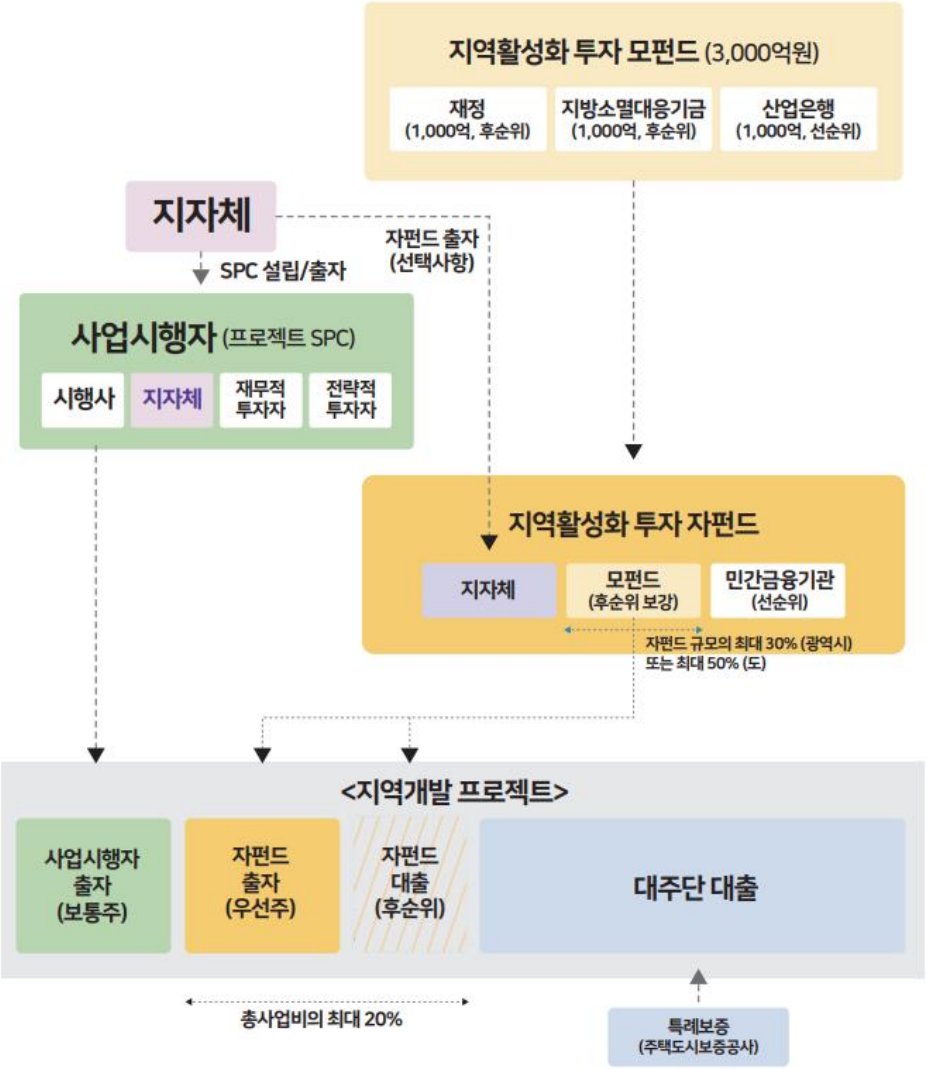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2025년 6월 현재 ①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680억원 규모), ②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876억원 규모), ③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④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 규모), ⑤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1,300억원 규모) 등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2025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4월 모펀드 운용사 선정완료 이후 5월 현재 자펀드 운용사 선정 중임.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 조속히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결성시한 연장 시 제재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처음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를 선정하였다고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나,[30] 실제 2025년 5월 기준으로 여수 프로젝트 펀드 1건만 투자금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2025. 5. 31. 기준)

지역	모펀드 약정총액	심사일	1차 연장기간	2차 연장기간	결성일 (계약 체결 기준)	투자금액 집행액
단양	(1차) 113억원 (2차) 68억원	(1차) 2024.2.16. (2차) 2024.11.26.	2024.6.16. ~9.19. 2025.3.28.~6.27.	2024.9.19.~12.19. 2025.6.28.~9.29.	-	-
구미	(1차) 89억원 (2차) 89억원 (3차) 39억원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2024.6.22.~9.24. 2025.3.28.~6.27. 2025.5.27.~8.25.	2024.9.24.~12.24. 2025.6.28.~9.29. 2025.8.26.~11.24.	-	-
여수	1,435억 5,000만원	2024.8.29.	2025.1.3.~4.2.	-	2025. 2.28.	2.5억원
경주	771억 5,700만원	2024.11.26.	2025.3.28.~6.27.	2025.6.28.~9.29.	-	-
서산	130억원	2024.12.24.	-	-	-	-

주 1)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심사 이후 내부결재 등 사유로 인하여 심사일과 선정통보일이 일부 상이
3) 서산 프로젝트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규 운용사가 2025년 상반기 중 재신청 예정임
4) 투자금액 집행액은 자펀드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결성시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이

30)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 개최,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 본격화”, 2024.3.26.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2024.9.12.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2024.11.28.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5호 프로젝트 선정”, 2024.12.26.

가능한데, 단양·구미·여수·경주의 경우 자펀드 결성시한을 계속 연장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양 및 구미 프로젝트 펀드는 총사업비 조정, 일부 투자조건 변경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실시(단양 1회, 구미 2회)하여 결성시한이 신규로 부여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변경사항이 자펀드 운용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운용사 페널티 없이 재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여수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1차례, 경주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협의를 통해 2차례 자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한 상황이고, 서산 프로젝트의 경우 자펀드 운용사의 내부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 재심사할 예정임. 이 중 여수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2억 5,000만원의 투자금만 집행되었음.

즉,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프로젝트 펀드는 대부분 자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하여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자펀드 결성시한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결성시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결성시한이 연장된 상황임.

이는 현재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계획 공고에 펀드 결성시한 내 미결성 페널티 규정이 자펀드 위탁운용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중 자펀드 결성 페널티 규정]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자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민간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가 아니라 펀드 결성 지연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 면제사유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규정만 마련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결성시한 내 자펀드 미결성 시 모펀드 운용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역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31]

31)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투자실적 홍보 등을 위해 명확한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사업설계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을 위해 준비가 완비되지 않은 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신청할 유인이 있음.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결성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신청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부

둘째, 현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매년 2,000억원씩 민간 위탁운용사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민간 모펀드·자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 사업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모펀드 출자기관(정부, 산업은행)은 관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자금의 위험부담은 강조하면서도 펀드 투자 집행계획 대비 실적 등에 대한 보고·평가·제재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상응하는 면밀한 관리 및 평가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모펀드 내에서 정부자금은 산업은행 출자보다 후순위 출자되고, ② 자펀드 내에서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며, ③ PF 대출의 경우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이 가중되어 있는 반면에,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신탁사·대주단 및 보증기관 등 민간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절차만이 규율되고 있을 뿐임.[32]

이 사업은 매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1,000억원 출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모펀드 위탁운용사가 출연받은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펀드를 제대로 선정하였는지, 선정한 프로젝트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된 경우 자펀드 선정과정에서 미연에 점검할 수 있었던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프로젝트 펀드의 결성 이후에도 해당 SOC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계획서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각의 과정마다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재원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족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임.

32)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모펀드 출자기관)는 일상적인 명령, 지시, 요청 및 직접적인 자금관리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전적인 명령, 지시, 요청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금 운용 및 투자 실적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 주요 특징]

□ 모펀드 조성 ◦ (조성 규모) 20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추진 - 정부자금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 -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 최소 10배 레버리지(3조원) 예상 ◦ (위탁운용사) 공모 방식으로 2024년 1월 내 선정 ◦ (투자 결정)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 - 모펀드 출자기관(정부, 산업은행)은 관여 불가 ◦ (투자 규모) 제한 없음
□ 자펀드 결성 ◦ (결성 재원)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 가능 ◦ (모펀드 출자비율) 광역시 프로젝트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모펀드의 위험부담 역할)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보강(손실 발생 시 우선 부담) ◦ (투자 방식) 프로젝트 SPC 자본금에 우선주로 출자 ◦ (투자 한도)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 (투자 규모) 제한 없음

자료: 관계 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7.12.) 후속조치 주요내용", 2023.8.31.

참고로, 이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및 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가 정부 재정 출자분 및 산업은행의 자체재원 출자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등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주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모펀드 위탁운용사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로서 정부 자금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묻기 다소 어려운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 조속히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자펀드 운용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33] 민간 모펀드·자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부동산·인프라 개발 특성 상 사업계획 및 인허가 변경 등 변수가 많아 장기간 소요되나 기획재정부 내 전담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기관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펀드 선정된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자금이 납입될 예정이고, 2025년 현재 2024년도 모펀드 잔여분 556억원에 대한 프로젝트 펀드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투자 집행 예상]

프로젝트	예상 소요 기간
충북 단양	· 2025년 하반기 중 전액 투자 예정
경북 구미	· 2025년 하반기 중 전액 투자 예정
전남 여수	· 2025년 4월 ~ 2028년 하반기에 걸쳐 전액 투자 예정
경북 경주	· 2025년 하반기 ~ 2028년 하반기에 걸쳐 전액 투자 예정
충남 서산	· 2025년 하반기 중 재심사 예정(아직 투자시기 미확정)

주) 투자 집행 예상 소요 기간은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7.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계획 대비 채권매입실적 부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00억원은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4]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330,000	-	-	330,000	330,000	-	-	1,20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35] 또는 부실우려차주[36]를 대상으로 원금 조정, 장기·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37]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이 있음.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

34)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구조개선정책관)

35)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를 의미함.

36)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함.

37)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의미함.

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한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 이후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내용) ① 원금조정(순부채 60~80%), ② 금리감면, ③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부동산담보 최대 20년), ④ 거치기간 부여(최대 1년, 부동산담보 최대 3년), ⑤ 추심중단 등

◦ (지원대상) 2020.4월~20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차주

◦ (지원방식)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 및 중개형으로 구분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캠코)으로 지원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복위)으로 지원

	매입형 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무	부실우려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지원내용	원금조정: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계층 90%) 금리조정: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조정 : 없음 금리조정 : 연체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만기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

(중개형) 신복위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수행주체) 2022.10.4～2026.12월까지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까지 ‘40조원+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2024.7.)한 바 있고,[38]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매입대상 차주 확대 및 원금감면율 상향 등에 따라, 예상부도율을 상향(29.5%→33.0%)하고 정부 출자분도 함께 확대(4.01조원→4.48조원)하였음. 참고로, 채무조정 규모와 채권 매입목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정부 출자분 확대에 따라 캠코채 발행 규모는 일부 축소(9.59조원→9.12조원)되었음.

38)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재원 조성 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당초 계획 (2022.10.~)	제1차 변경계획 2025년 예산안(2024.9.)	제2차 변경계획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2025.6.)
채무조정 전체 규모	30조원	40조원+α	40조원+α
채권 매입 규모	30조원	33.4조원 = 40조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33.4조원 = 40조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원 = 30조원 × 60% (예상매입가율: 60%)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매입가율: 40.7%)
정부 출자	3.6조원 = 18조원 × 20% (예상부도율: 20%)	4.01조원 = 13.6조원 × 29.5% (예상부도율: 29.5%)	4.48조원 = 13.6조원 × 33.0% (예상부도율: 33.0%)
캠코채 발행 규모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의 원리금 감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매입실적 및 신청 추이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실적은 4조 2,303억원으로, 당초 계획액(2022.10. 기준) 9조원의 47.0%이고 변경된 계획액(2024.9. 기준)의 56.0%에 불과함. 2024년 채권매입가액은 1조 9,204억원, 채권매입가율은 45.4%로, 예상매입가율 40.7%를 상회하였음.

2022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2개월 동안 채권매입액 누적 실적은 9조 8,021억원으로 변경된 계획액 33조 4,000억원의 29.3%에 그침.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조 4,000억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진도비가 29.3%에 머물고 있음.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4년 실적의 3배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말까지 19개월 간 총 23조 5,979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채권매입 필요액은 1조 2,420억원 이상으로, 2024년 월평균 채권매입실적 3,525억원의 3배를 넘는 규모임.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5.	2025	2026(예상)	합 계
채무 조정 계획	당초 (30조원)	60,000	90,000	90,000	60,000	60,000	-	300,000
	변경 (40조원)	217	20,696	94,200	144,300	144,300	141,300	400,713
	매입규모	2,952	26,145	75,603	115,850	115,850	113,450	334,000
채권매입액 실적		2,952	26,145	42,303	26,621	-	-	98,021
채권매입가액 실적		863	11,309	19,204	11,953	-	-	43,329

주) 채무조정계획은 2025년 말 예상치이고,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은 2025년 5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월별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 및 예상치]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2022	채권 매입액	(2022.10. 새출발기금 출범)									-	750	2,202	2,952
	채권 매입가액										-	364	500	863
2023	채권 매입액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26,145
	채권 매입가액	406	611	826	947	976	796	311	1,432	1,410	1,320	1,119	1,155	11,309
2024	채권 매입액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4,148	3,506	3,008	3,975	42,303
	채권 매입가액	1,209	1,158	1,350	1,306	1,596	1,861	2,313	1,830	2,004	1,284	1,481	1,812	19,204
2025	채권 매입액	4,007	5,099	5,748	4,717	7,050	-	-	-	-	-	-	-	26,621
	채권 매입가액	1,770	2,231	2,408	2,187	3,357	-	-	-	-	-	-	-	11,953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재가공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캠코채 발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 출연금을 통한 현금 출자 이외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새출발기금은 당초 사업 설계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의 현금출자금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었음.

새출발기금 초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채권매입규모가 적어 사업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캠코채 발행 필요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캠코채가 계획보다 적게 발행되었음. 다만 2024년 2월 코로나19의 피해 입증 요건이 사라지면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가 증가하고 캠코채 발행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캠코채 발행액이 2023년 3,600억원에서 2024년 1조 5,6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현 황					
	당 초 (2022.10.)	변 경 (2024.9.)	2022	2023	2024	2025.5.	2022 ~2025.5. (누적)	변경계획 대비 투입비율
정부출자금(예산)	36,000	40,058	6,000*	2,800	3,300	5,000	17,100	42.7%
캠코채 발행액	144,000	96,105	-	3,600	15,600	8,000	27,200	28.3%
합 계	180,000	136,163	6,000	6,400	18,900	13,000	44,300	32.5%

주) 현물출자 5,000억원 별도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기준으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소요액 1조 8,900억원 중 정부 출자금은 3,300억원이고, 캠코채 발행액은 1조 5,600억원이며, 정부 재원 비중은 17.5%로 당초 예상 부도율 29.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입채권에서 발생하는 예상손실 대비 정부출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출발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계획대로 캠코채를 발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즉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액 규모가 확대되고 캠코채 발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앞으로 캠코채 발행을 통해 자체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213.7%로 이미 200%를 초과하였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조 1,000억원의 현금출자를 반영하더라도 2025년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13.2%로 예상되는 상황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재원 조달 방식		자본 (A)	부채 (B)	부채비율 (B/A)
	재정(현금출자)	캠코채 발행			
2022년 (결산)	새출발기금 출범(2022.10.)		34,289	58,470	170.5
	6,000	-	40,289	58,470	145.1
2023년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3,760	73,741	218.4
	2,800	3,600	42,560	77,341	181.7
2024년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4,811	81,061	232.9
	3,300	15,600	46,911	100,261	213.7
2025년 5월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4,811	84,961	244.1
	5,000	8,000	51,911	112,161	216.1
2025년 말 (추경 미반영)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4,811	81,068	232.9
	5,000	41,947	51,911	142,215	274.0
2025년 말 (추경 반영)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9,311	81,068	206.2
	12,000	34,947	63,411	135,215	213.2

자료: 금융위원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재정투입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9]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50,000	-	-	50,000	50,000	-	-	5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모펀드를 구성하고, 자펀드 운용사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임. 정부재정은 펀드의 후순위(10%) 출자로 손실보전의 성격이 있음.

자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40] 및 투자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성되고,[41] 투자집행은 투자 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후적 구조조정 절차에 있지는 않으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인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

39)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2432-304)(구조개선정책관)

40) 프로젝트 펀드란,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통상적으로 투자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단일 기업에 투자함. 운용사의 구체적 투자제안서를 모펀드에서 심사하므로,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조건이 중요한 요소임. 모펀드 출자 이전에 투자대상 및 출자조건 협의 등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펀드 결성 이후 1~2개월 이내 신속한 투자집행이 가능함.

41)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펀드를 결성한 후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로서, 통상적으로 투자기간 4~5년 동안 자금을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함. 투자대상 결정, 투자규모 등 펀드 운용에 있어 자펀드 운용사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므로 상대적으로 운용사의 역량이 중요함.

시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인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임.

[기업구조혁신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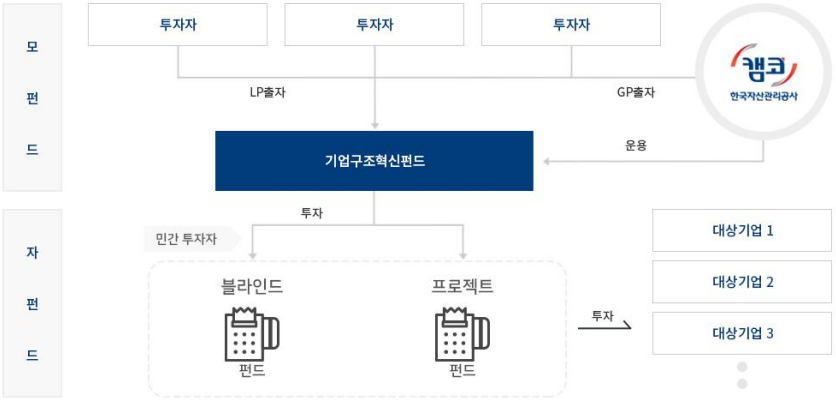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참고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42] 1~3차 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전담 운용하였고, 4~6차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담 운용하고 있음.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기준: 2025.5.)

연도	차수	정부재정 투입액	모펀드 약정총액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민간출자액	자펀드 결성액	투자액
2018년	1차	-	5,415	11,026	16,441	15,995
2020년	2차	750	5,015	10,836	15,851	15,130
2021년	3차	675	4,510	13,283	17,793	16,112
2023년	4차	-	5,000	6,190	11,190	3,668
2024년	5차	500	5,000	7,862	12,862	1,855
2025년 (제1차 추경)	6차	500	5,000*	5천억원 이상	1조원 이상	-

주)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금융기관 출자 협의 중임
자료: 금융위원회

42) 제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 정부재정 투입 없이 1조 6,441억원이 조성되었고,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0년 정부재정이 750억원 출자되어 1조 5,851억원이 조성되었음. 제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1년 정부재정이 675억원 출자되어 1조 7,793억원,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3년 정부재정 투입 없이 1조 1,19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4년 정부재정이 500억원 출자되어 1조 2,862억원이 결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어 조기투자 유인 효과가 부족하고 프로젝트 자펀드의 민간자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가용 가능한 민간재원 및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블라인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는 5월 2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6월 2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의 결성은 6개월 후인 12월 27일에야 완료되었음.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추진일정]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실행
▸ 모펀드 조성기관간 MOU 체결	2023.2분기	2023. 4. 11.
▸ 모펀드 설립	2023.2분기	2023. 6. 26.
▸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2023.2분기	2023. 5. 2.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선정	2023.2분기	2023. 6. 28.주)
▸ 자펀드 1조원 조성	~2023.12월	~2023. 12. 27.

주) 프로젝트펀드는 민간 운용사로부터 출자를 수시로 제안 받아 심사 및 출자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블라인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는 6월 24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8월 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의 조성은 12월 31일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자펀드 결성은 2025년 4월 30일에서야 모든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음.[43][44]

43) 자펀드 조성은 자펀드 운용사가 유한 책임투자자(LP) 등으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하여 모펀드 운용사에 제출한 것을 의미하고, 자펀드 결성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바로 투자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44)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모펀드GP)는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자(LP) 모집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추가 모집을 위한 LOC발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자펀드 결성을 늦춘 경우들이 있으나, 4호와 동일하게 5호 펀드도 연내 첫 투자를 개시하였다고 설명함.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추진일정]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실행
▸ 재정모펀드 설립	2024.1분기	2024. 3. 20.
▸ 정책모펀드 설립	2024.2분기	2024. 7. 30.
▸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2024.2분기	2024. 6. 24.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선정	2024.2분기	2024. 8. 8.주)
▸ 자펀드 1조원 조성	~2024.12월	2024. 12. 31.

주) 프로젝트펀드는 민간 운용사로부터 출자를 수시로 제안 받아 심사 및 출자
자료: 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는 블라인드 펀드 중 루키리그 2개 자펀드는 2024년 11월, 12월에 결성이 완료되었으나, 소형펀드 3개 펀드는 각각 2025년 1월, 2월, 4월에 결성되었고, 중형펀드 1개 펀드는 2025년 3월에서야 결성이 완료되었음.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기준: 2025.5.)

운용사명			조성현황			
			모펀드	민간	합계	결성연월
블라인드	중형	A사	1,250	980	2,230	2025.3.
	소형	B사	500	3,877	4,377	2025.1.
		C사	500	680	1,180	2025.2.
		D사	500	250	750	2025.4.
	루키	E사	300	200	500	2024.11.
		F사	300	25	325	2024.12.
	블라인드 소계		3,350	6,012	9,362	
프로젝트	미정		1,650	1,850	3,500	-
	프로젝트 소계		1,650	1,850	3,500	
총 계			5,000	7,862	12,862	

자료: 금융위원회

자펀드 결성이 연말 또는 이듬해까지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자펀드 결성을 통한 조기투자 유인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4차(2023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정부재정 투입 없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출자액을 합하여 8개 자펀드 총 1조 1,190억원이 결성되었는데, 2025년 5월까지 3,668억원이 투자되고 7,522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은 상황임.

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정부재정(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출자액을 합하여 6개 자펀드 총 1조 2,862억원이 결성되었는데, 2025년 5월까지 6개 기업에 대해 1,855억원이 투자되고 1조 1,007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은 상황임.

[제4차(2023년)·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개, 억원, 2025.5. 기준)

연도 (회계연도기준)	정부 출자액 (a)	정책금융 기관 출자액 (b)	민간 출자액 (c)	자펀드 결성액 (a+b+c)	자펀드 결성 수	주목적 투자비율	2025년 5월 기준		미투자액 (a+b+c-d)	약정 상 자펀드 투자기간
							투자액 (d)	투자 건수		
2023년	-	5,000	6,190	11,190	8	블라인드 60% 프로젝트 100%	3,668	15	7,522	4~5년
2024년	500	4,500	7,862	12,862	6		1,855	6	11,007	4~5년

주) 자펀드 결성액과 관련하여, 블라인드펀드는 실제 모집액을 반영하였으나,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제안접수 방식으로 최소 결성 목표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프로젝트 펀드를 살펴보면,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공고 이듬해인 2024년 8·10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1개의 프로젝트 펀드가 결성되었는데, 민간자금의 신청 부족으로 인해 4차 펀드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재공고를 내기도 하였음.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재원의 순차 소진을 위해 공고 이듬해인 2025년 5월 현재 아직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2025년 5월 현재 두 펀드를 합쳐 6,341억원의 펀드 재원이 아직 투자되지 못한 상황임.

[제4차·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단위: 억원, 2025.5. 기준)

차수	프로젝트 펀드명	조성현황			결성연월	투자액	미투자 잔액	회수액 (모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모펀드	민간	합계					
제4차 (2023년)	A 펀드	120	120	240	2024.8.	240	-	-	사전적 구조조정
	B 펀드	220	682	902	2024.10.	902	-	-	사전적 구조조정
	C 펀드	250	767	1,017	2025.4.	1,017	-	-	사후적 구조조정
	미정	1,610	1,231	2,841[1)]	-	-	2,841	-	-
	프로젝트 펀드 소계	2,200	2,800	5,000		2,159	2,841	-	-
제5차 (2024년)	미정	1,650	1,850	3,500	-	-	3,500	-	-

(단위: 억원, 2025.5. 기준)

차수	프로젝트 펀드명	조성현황			결성연월	투자액	미투자 잔액	회수액 (모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모펀드	민간	합계					
	프로젝트 펀드 소계	1,650	1,850	3,500	-	-	3,500	-	-

주1) 제4차 펀드의 모펀드 잔여재원 1,610억원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841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임
2) 제5차 펀드의 모펀드 잔여재원 1,650억원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3,5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펀드 투자기간(4~5년)을 고려할 때 투자기간 대비 집행은 저조한 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블라인드 및 프로젝트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신속 투자 집행을 유도하여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미투자재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024~2025년 매년 기업 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을 이유로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투자수요를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의 정부재정 투입비율은 10%에 불과하나 정부재정은 후순위 출자분 10%에 대해 사실상 손실보전 성격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적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펀드의 집행실적 및 펀드 투자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규펀드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예산 500억원(전체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 5,000억원 이상 예상)이 편성된 만큼,[45]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사 펀드 사업 추진 시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45)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일정(안)]

2025년 3~4분기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9월)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12월)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10월~)
2026년~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개시(2026년~)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수 입>

9. 수입 총괄: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SPC 등으로부터의 배당금 및 처분이익 수입의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 기업의 주식·유동화회사보증 SPC[46] 등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을 통한 수익은 보유자산의 성질 및 처리방식 등에 따라 각각 정부출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고정자산매각익으로 계상되고 있음.

'정부출자수입' 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 및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유동화회사보증 SPC 등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수입'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5억 4,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02억 6,2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수납률 100.0%).[47]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정부출자수입	542	542	30,262	30,262	-	-	100.0	478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공탁금 회수액, 선급법인세 환입, '대물채권·대물주식의 회수액',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회수액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7,613억 2,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2,470억 7,200만원이며, 8,992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음(수납률 6.7%).[48]

46)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란, 대규모 자금 조달, 리스크 분산, 자산 유동화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를 의미함.

47) 신용보증기금-정부출자수입(52-521)(금융정책국)

48) 신용보증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금융정책국)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 수입	761,325	761,325	13,247,072	899,259	11,301,321	1,046,492	6.7	873,983

‘고정자산매각익’ 은 업무용 건물·토지, ‘보증연계투자 기업 주식’, 기타매도가능증권처분익, 출자전환주식 처분익 등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20억 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1억 2,300만원임(수납률 100.0%).[49]

[2024년도 고정자산매각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고정자산 매각익	2,062	2,062	20,123	20,123	-	-	100.0	2,160

나. 검토의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기업 및 유동화회사보증 SPC로부터의 배당금, 처분이익 등이 수입에서 과소계상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배당금 및 처분이익에 관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기금 수입을 보다 현실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정부출자수입에 계상된 배당금 수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유동화회사보증 SPC와 관련한 배당금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유동화회사보증 SPC 출자금은 6건에 대해 155억 7,800만원이 정부출자수입에 계상되었음. 이는 2023~2024년 유동화회사보증의 부실률이 크게 감소하였고,[50] 일부 SPC의 대위변제 미발생 및 잉여자산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함에 따른 것임.

49) 신용보증기금-고정자산매각익(69-695)(금융정책국)

50) [유동화회사보증 연도별 만기 도래 기초자산 부실률 추이]

[2021~2024년 정부출자수입 세부내역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배당금					정부출자 수입 전체
	출자회사주식	보증연계투자 주식	출자전환주식	유동화회사보증 SPC출자금	소계	
2021	468(3건)	22(2건)	-	456(1건)	945(6건)	1,530
2022	509(3건)	28(4건)	1(1건)	-	537(8건)	15,815
2023	531(3건)	71(5건)	1(1건)	14,850(2건)	15,453(11건)	44,974
2024	422(3건)	21(4건)	-	15,578(6건)	16,022(13건)	30,262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부실률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유동화회사보증 SPC의 낮은 부실률 추이를 고려하여 대위변제 계획액을 줄이고 잉여금에 따른 정부출자수입을 늘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금 수입에서 계획액 대비 징수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

다음,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대물주식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계획액을 68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7배 규모인 2,564억 7,400만원에 달하였고, 2021~2023년에도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2~3배 많은 상황임.

이는 HMM(주) 관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채무조정에 따른 현금변제 상환금액(대물채권 회수액) 1,402억원과[51]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4,876억원[52]이 회수됨에 따라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신규 3년 만기 기준,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실률	9.62	5.07	5.20	4.86	3.86	1.38	2.72

자료: 신용보증기금

51) HMM(주)의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 1,402억원(이자상환 267억원 제외)을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 매년 467억원 분할상환함.

52) HMM(주) 출자전환주식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하였으며, 총 회수금액은 4,876억원임(매도금액 4,888억원-세금·수수료 12억원).

[2021~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내역별 계획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실제 수납액	계획액	실제 수납액	계획액	실제 수납액	계획액	실제 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572,366**	**486,553**	**628,643**	**581,442**	**637,151**	**669,170**	**761,325**	**899,259**
- 유동화회사보증 대물채권·주식회수	20,399	54,657	70,843	140,698	64,168	179,406	68,871	256,475
- 구상채권 회수	420,395	357,894	366,617	324,186	366,159	254,133	344,372	267,528
- 공탁금 회수	49,921	32,702	74,940	27,260	70,162	27,138	70,940	31,993
- 선급법인세 환입	10,268	5,032	8,735	6,046	7,703	9,575	20,975	19,984
- 임차보증금 회수	16,648	15,130	14,607	7,768	17,875	6,320	9,661	8,963
- 매출채권 상환	39,750	13,592	79,500	57,890	99,375	73,225	149,456	147,395
- 각종반환금 등 (대여금 회수 포함)	14,985	7,546	13,401	17,594	11,709	119,373	97,050	166,921

자료: 신용보증기금

대출채권 및 대물주식의 회수는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5년에 걸친 계획 아래 집행됨에 따라 수입 발생이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마지막으로, 고정자산매각익 중 투자주식처분익을 살펴보면, 2023년 271억 7,600만원, 2024년 158억 8,800만원 징수되었고 당해년도 고정자산매각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고정자산매각익의 징수실적은 2023년 277억 5,800만원, 2024년 201억 2,300만원으로, 각각 계획액 대비 17배, 10배 규모로 수납되었는데, 이는 수입 계획액 편성 시에 투자주식처분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임.

[HMM(주) 출자전환주식 매각 현황]

구분	매도주식수	매도금액(비용 포함)	매각기간
1차	4,024천주	833억원	2023.4.7.~2023.10월말
2차	2,415천주	506억원	2023.12.21.~2024.2월말
3차	4,126천주	801억원	2024.4.12.~2024.6월말
4차	13,963천주	2,748억원	2024.9.30.~2025.2월말
계	24,528천주	4,888억원	-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0~2024년 고정자산매각익 세부내역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주식처분익	2,480	9,484	6,449	27,176	15,888
기타매도가능증권처분익	-	173	-	225	2,618
업무용건물 및 토지 유형자산처분익	-	-	293	-	729
프로젝트투자이익	-	-	-	52	466
출자전환주식처분익	598	1,935	-	305	422
소계	3,078	11,592	6,742	27,758	20,123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투자주식처분이익을 편성할 때 최근 3개년 보장수익률[53]을 기초로 한 예상치를 적용하여 2023년 17억원, 2024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은 각각 272억원, 159억원으로 대부분 IPO를 통한 시장매각(2023년 4개 업체 246억원, 2024년 2개 업체 130억원)에 따라 실현되었음.

신용보증기금은 신보의 투자사업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자본이득 예상 시 상장을 통한 매각이익이 아닌 보장수익률에 따른 상환이익을 적용하여 실제 수익에 비해 과소계상되었다는 의견임.

그러나 IPO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 투자업무를 상시화한 지 10년이 지나 앞으로도 기업공개・제3자주식매각 등을 통해 투자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유투자주식의 가치평가 및 처분계획을 면밀히 세워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SPC로부터의 배당금,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자체의 수입 추계를 부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증가능 재원을 축소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배당금 및 처분이익에 관한 추계정확성을 제고하여 기금 수입을 보다 현실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53) 보장수익률이란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기간 동안 적용하는 최저수익률을 의미함.

【신용보증기금】

〈지　출〉

10. 업무용건물 사업: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가. 개　요

‘업무용 건물’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자가점포 개설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업무용 건물에 대해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19억원 중 2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1%)되고, 95억 2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54]

[2024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업무용건물	11,900	11,900	-	11,900	2,396	9,502	2	14,294

2024년 동 사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의 대수선 공사 관련 예산 6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노후화된 광진지점을 일부 증축하고 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임.[55]

54) 신용보증기금-업무용건물(2431-305)(금융정책국)

55)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건물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0(구의동)	지하철역 도보 18분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	1~4층 업무시설
신축일	1992.12.21.	31년 경과
대지면적	2,154.40m^2 (652평)	공시지가 : 약 186억원
연면적	8,284.65m^2 (2,506평)	-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내용]

구 분	공사 前		공사 後		증축 등*
옥탑	물탱크실		창고		42.52㎡
6층	공조기실, 기계실, 옥상정원		회의실, 미화원휴게실, 옥상정원		70.96㎡
5층	농구장(제외)	샤워실, 휴게실	농구장(제외)	다목적 로비	38.81㎡
4층	이행전담팀, 임금피크직원		업무시설		38.81㎡
3층	동부채권관리단		업무시설		44.15㎡
2층	광진지점		로비 (신설)	업무시설	△16.32㎡
1층	기업은행, 동부신용보험1센터			업무시설	66.38㎡
지하1층	주차 25대		주차 27대		13.79㎡
지하2층	주차 16대	전기실, 기계실	주차 18대	전기실, 기계실	8.43㎡
연면적	8,284.65㎡ (2,506평)		8,265.51㎡ (2,500평)		총 307.53㎡
엘리베이터	1대		2대		1대 추가
주차대수	지하41대, 지상4대		지하45대(전기차 2대 포함)		차단기설치
비고	▪ 외장재 전면교체(기존 커튼월 존치) 및 일부 증축 ▪ 엘리베이터 1대 신설, 기존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전면 교체 등				

주) 증축 및 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실제 사용가능 면적 증가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검토의견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가 지연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등 사업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구축사업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노후화된 광진지점을 일부 증축하고, 기존 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내용으로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내용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사업 계획액 60억원의 10.6%인 6억 3,7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3억 6,3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
	당초	수정				
기본조사설계비	66	11	11	11	100	29
실시설계비	264	409	409	409	100	364
공사비	5,268	5,298	5,298	195	3.7	4,609
감리비	264	144	144	20	13.9	130
시설부대비	138	138	138	2	1.4	118
소계	6,000	6,000	6,000	637	10.6	5,103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안전 관련 필수 공사 규모 및 범위 증가, 지자체 각종 심의 등의 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기존 계획단계 대비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건물 노후화 진행정도가 높아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공사(스프링클러 증설, 방화구획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보강 등) 범위가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임.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일정이 당초보다 4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공사입찰·계약 등이 차례로 지연되었는데, 건물 노후화 정도의 파악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사항은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다소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25.6. 기준)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024.1월	20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024.1월	2024.2월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2024.2월 ~ 4월**	**2024. 8월**
인·허가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024.5월	2024.10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024.5월	2024.11월
시공	▪ 공종별 공사	2024.5월	2024.11월

(2025.6. 기준)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 2024.12월	~2025.11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024.12월	2025.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사업내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도 사업 내용	예산 현액	계약 체결액	2024년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추진 방식
기본조사	11	11	11	-	-	-	2024.3.1. ~2024.5.5.	제한경쟁
실시설계	409	409	409	-	-	-	2024.2.19. ~2024.8.30.	제안공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83	156	63	120	-	-	2024.9.25. ~2025.11.19.	제한경쟁
건축공사	3,909	3,582	114	3,777	-	278	2024.10.17. ~2025.11.28.	제한경쟁
소방공사	658	576	-	658	-	-	2024.10.22. ~2025.11.28.	제한경쟁
전기공사	471	399	-	471	-	-	2024.11.13. ~2025.11.28.	제한경쟁
통신공사	77	67	-	77	-	-	2024.11.14. ~2025.11.28.	제한경쟁
감리	144	143	21	124	1		2024.10. ~2025.11.	공종별 수의계약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점 사무실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 사업을 100억원 이상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이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1. 보증연계투자 사업: 보증연계투자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문제

가. 개 요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하여 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675억 4,000만원 중 659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15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56]

[2024년도 보증연계투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보증연계투자	67,540	67,540	-	67,540	65,980	-	1,560	67,540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부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57] 구체적으로는,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에게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주식·사채 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기간 종료 후 기업 상장 등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함.

56)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2431-308)(금융정책국)

57)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의2. 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 (지원대상)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 다만, 채무불이행기업 및 경영정상화 진행기업 제외 ◦ (지원내용) - 투자한도: 개별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 투자종류: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인수 - 투자기간: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이내로 하되, IPO 가능성 및 투자기업의 업력 등에 따라 투자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다만,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 후 17년 이내) ◦ (기대효과) 벤처기업 확인, 재무구조 개선, 후속투자 유인, 경영권 간섭 최소화, 컨설팅 우대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나. 검토의견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보증연계투자를 재개한 이후 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부진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수입 확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선정 기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로 78개 기업 및 14개 프로젝트투자 건에 대해 658억원을 투자하였고, 매각차익 159억원과 배당금 등 6억원을 포함한 165억원의 투자수익을 수취하였으나, 99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66억원의 투자손익이 발생하였음. 보증연계투자 투자수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1.92%, 누적 투자수익률은 3.81%에 불과함.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기업수	62	61	85	62	110	112	110	78
- 창업기업	47	51	69	40	91	99	86	57
- 일반기업	15	10	16	22	19	13	24	21
프로젝트투자 건수	-	-	-	-	-	4	12	14
지원규모(투자액)	400	394	590	591	591	557	664	658
- 창업기업	278	320	423	375	446	381	414	423
- 일반기업	122	74	167	216	146	146	215	205
- 프로젝트투자	-	-	-	-	-	30	35	30
투자수익(A)	61	12	30	34	103	64	275	165
- 매각차익	56	3	19	25	95	65	272	159
- 배당금 등	5	9	11	9	8	△1	3	6
감액손실(B)	51	33	54	71	60	85	123	99
- 업체수	6	4	11	11	9	16	30	23
회수기업수[1]	3	4	9	14	20	13	19	13
투자손익(C=A-B)	10	△21	△24	△37	43	△21	152	66
직전연도말 투자잔액(D)	837	1,148	1,467	1,899	2,283	2,677	3,030	3,460
연간투자수익률(C/D)	1.21	△1.86	△1.65	△1.97	1.87	△0.79	5.04	1.92
누적투자수익률[2]	3.61	1.97	0.67	△0.56	0.60	0.06	3.01	3.81

주1) 회수기업수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기업만 포함(일부회수는 제외)
2) 누적투자수익률 = 누적 투자손익 / 누적 투자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특히 동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와 비교할 때, 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2024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관련 투자액은 741억원, 투자기업 수는 92건이며, 투자수익률은 연간 기준 15.13%, 누적 기준 39.19%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투자실적 비교]

(단위: 억원,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액	신보	591	591	557	664	658
	기보	255	394	493	981	741
투자기업수	신보	62	110	112	110	78
	기보[1]	52	50	57	97	92
연간 수익률	신보	△1.97	1.87	△0.79	5.04	1.92
	기보	△0.90	42.32	4.49	22.91	15.13
누적 수익률	신보	△0.56	0.60	0.06	3.01	3.81
	기보	12.53	33.29	31.61	35.88	39.19

주)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업 수는 기존 투자기업에 추가 투자 시 각 연도에 중복으로 실적이 계상됨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의 유사사업과 대비할 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음.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혁신선도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 등급이 TI 8등급' 인 기업에 한정하여 보증연계투자를 수행하나, 신용보증기금은 구체적인 기술평가 기준 없이 투자 대상 사업을 심사·선정하고 있음.

다음,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 기업 중 손실발생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해당 상품이 투·융자 복합지원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융자에서도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과의 부진이 두드러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기업 대비 손실 기업의 비중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7% 수준인데, 기술보증기금은 2023년 10%, 2024년 12% 수준으로 차이를 보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유사사업 대비 투자의 성과 및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기업평가를 체계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연계투자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계정)】

〈지　출〉

12. 대위변제: 대위변제 계획액의 추계정확성 제고 및 전세 보증 및 PF 사업자 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가. 개　요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대신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6,694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006억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8,700억원 중 8,578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12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58]

[2024년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위변제	669,400	870,000	-	870,000	857,857	-	12,143	1,335,400

나. 검토의견

첫째, 주택신용보증계정의 대위변제가 연례적으로 과소추계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연중에 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대위변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계획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액을 보면, 2020년 2,487억 6,700만원에서 2024년 8,578억 5,7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으로 6,69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증가한 대위변제 집행소요에 대응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006억원을 증액하였음.

5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대위변제(2631-303)(금융정책국)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C)	집행액 (D)	집행률 (D/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A)	수정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0년	240,000	253,130	13,130	5.5	-	253,130	248,767	98.3	-	4,363
2021년	281,000	281,000	-	-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년	291,200	320,000	28,800	9.9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년	306,100	594,445	288,345	94.2	-	594,445	589,067	99.1	-	5,378
2024년	669,400	870,000	200,600	30.0	-	870,000	857,857	98.6	-	12,143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 계정의 대위변제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액의 94.2%인 2,883억 4,500만원 증액, 2024년 당초 계획액의 30.0%인 2,006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계획액의 과소 추계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반복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으로 인한 전세보증 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대위변제 집행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대위변제 사업의 계획변경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목-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4.10.2.	710-03	대위변제	200,600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세・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집행소요 증가
합 계				200,600	

자료: 금융위원회

대위변제 사업의 계획액 추계는 단순히 해당 사업의 적정 예산을 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 재무건전성 및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편성 규모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공급액,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인한 전세자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공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의 대위변제액이 확대된 것은 주로 전세보증자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 및 사고발생액 증가에서 기인함.

2024년도 총 보증잔액 130조 9,777억원 중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잔액은 83조 6,030억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63.8%를 차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잔액은 15조 4,110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함.

2024년 총 대위변제액은 8,579억원으로, 2022년 3,168억원, 2023년 5,891억원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중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119억원(71.3%)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275억원(26.5%)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위변제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61억원, 2023년 840억원에서 2024년 2,27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세자금 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24년 0.99%로 2022년 0.34%, 2023년 0.81%에 비해 상승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율은 1.48%로 2022년 0.15%, 2023년 0.87%에 비해 증가하였음.

부동산 경기의 지역별 불균형 및 변동성이 심화되고, 역전세·전세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으며, 예대금리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자금보증을 중심으로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임.

한편 사업자 보증의 경우에도 PF 사업장의 미분양 증가 및 분양수입 감소로 사업비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발생 금액이 증가하였는데, 2024년에는 1건 136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원인으로, ① (개인보증) 개인보증의 대위변제 중 전세보증의 비중이 최근 3년간 9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 계층 중심으로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고, ② (반환보증)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59] 이에 따라 2022년 반환보증 공급 건의 임대차계약(통상 2년)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추세로 전환하여 역전세 발생가능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60]

---

5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규모: (2021년) 1.1조원 → (2022년) 3.1조원 → (2023년) 6.8조원 → (2024년) 9.3조원

60) 대위변제율 : (2023년 0.87%) → (2024년 1.48%) → (2025년e 1.15%)
사고발생율 : (2023년 1.05%) → (2024년 1.64%) → (2025년e 1.13%)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유형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전세 자금 보증	보증공급액	506,948	493,353	546,800	529,299	525,881	218,597
	보증잔액	784,650	857,191	888,598	879,913	836,030	815,917
	대위변제액	2,386	2,166	3,053	4,983	6,119	3,206
	대위변제율	0.30	0.25	0.34	0.57	0.73	0.39
	보증사고액	3,061	3,244	4,909	7,100	8,250	3,584
	보증사고율	0.39	0.38	0.55	0.81	0.99	0.4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공급액	2,941	10,700	30,650	68,298	92,666	42,592
	보증잔액	2,928	13,384	41,849	96,557	154,110	170,492
	대위변제액	-	-	61	840	2,275	774
	대위변제율	0.00	0.00	0.15	0.87	1.48	0.45
	보증사고액	-	-	109	1,013	2,524	781
	보증사고율	-	-	0.26	1.05	1.64	0.46
사업자 보증	보증공급액	42,291	51,370	57,488	68,196	53,951	13,241
	보증잔액	58,904	78,599	92,192	124,586	125,819	110,399
	대위변제액	27	45	7	16	136	-
	대위변제율	0.05	0.06	0.01	0.01	0.11	-
	보증사고액	237	35	55	1,791	2,026	2,486
	보증사고율	0.40	0.04	0.06	1.44	1.61	2.25
총계[1]	보증공급액	646,593	650,943	729,907	755,260	762,576	300,359
	보증잔액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1,283,442
	대위변제액	2,488	2,286	3,168	5,891	8,579	4,020
	대위변제율	0.24	0.20	0.26	0.45	0.65	0.31
	보증사고액	3,829	3,631	5,450	10,594	13,995	7,922
	보증사고율	0.36	0.31	0.44	0.81	1.07	0.62
	운용배수	13.3	13.4	13.7	12.6	11.2	10.82
	기말기본재산	79,175	86,654	88,993	100,176	110,595	112,8722
	기본재산증감	△2,519	7,478	2,339	11,183	10,419	2,277

주1) 총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전체를 의미함
2) 운용배수 및 기말 기본재산은 2025년 2월 말 기준임
3) 대위변제 및 사고발생은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2025년 5월의 경우 5개월간의 누적값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의 상승추세는 다소 제한적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61]

6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처리 현황]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전세자금보증의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인상 등을 통해 엄격히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나,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규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62]

셋째, 비수도권 PF 사업장 부실화를 막기 위한 PF 특례보증상품이 신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 부실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사업자보증에 더해 2024년 4월부터 '시공사 부실사업자 정상화 특례보증'을, 2024년 7월부터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시공사 부실사업자 정상화 특례보증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총사업비의 70~90%→100%)하고 자금지원시기를 연장(입주자모집공고까지→준공 시까지)하려는 것이고,[63]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상향(총사업비의 70~90%→총사업비의 90%, 필요사업비의 100%), 자금지원시기 확대(입주자모집공고까지→준공 시까지), 건축공사비 추가 지원(보증상품의 자금용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임.

[2024년 신규 공급된 PF 관련 특례 보증 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2025년 4월 기준)

구 분	승인건수	승인금액	대위변제건수	대위변제액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	10	13,307	-	-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2	1,080	-	-
합 계	12	14,387	-	-

자료: 금융위원회

(단위: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제외	이의신청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5,550	30,400	8,268	4,345	2,537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1,064	997	67	-	-

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2025.6.1.

62) 5월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효과를 주시하면서도 필요시 '핀셋 규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일보,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전 막차... 가계부채 급증에 당국 추가 규제?", 2025.6.1.)

63)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2024.4.11.

2025년 6월까지 부동산PF 대출부실 23조 9,000억원 중 52.7% 12조 6,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되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성공하였다는 의견도 있으나,[64] 금융위원회는 잔여 부동산 PF 대출부실 및 정리·재구조화된 부동산 PF에 대한 신규 PF 특례보증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PF 관련 사업자 보증의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4) 금융감독원, "전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경과 및 그간의 실적", 2025.5.21.

[부동산 PF 대출부실 정리·재구조화 추진 실적]

구분	정리·재구조화 대상 (1차+2차 평가)	정상화 실적						미완료예상 (2025.6월말)
		24.3Q	24.4Q	25.1Q	[소계]	25.2Qe	[합계]	
정리	15.3	1.5	2.9	2.1	[6.5]	2.7	[9.2]	6.1
재구조화	8.6	1.6	0.5	0.5	[2.6]	0.8	[3.4]	5.2
합계	23.9	3.1	3.4	2.6	[9.1]	3.5	[12.6]	11.3

자료: 금융감독원

13. 사업수수료: 사업수수료 계획액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사업수수료' 사업은 개인보증 취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와 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업 수수료 비용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16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9억 9,200만원을 자체 변경(감)한 계획현액 109억 7,500만원 중 96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0%)되고 13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65)]

[2024년도 사업수수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업수수료	16,967	10,975	-	10,975	9,654	-	1,321	15,278

나. 검토의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필요한 사업 수수료가 과다추계되어 사업수수료의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56.9%에 불과하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보증공급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수수료 사업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매년 7만건 이상 신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전년도 당초 계획 98억 3,400만원의 172.5% 수준인 16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3~2024년 사업수수료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내역]

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인보증 위탁수수료	○ 개인보증 위탁수수료: 84억 1,500만원 - 119조 612억원(2022년말 예상 보증평잔 ×0.109%(2020년 보증료수익 실현요율)	○ 개인보증 위탁수수료: 80억 8,300만원 - 120조 8,004억원(2023년말 예상 보증평잔) ×0.083%(2022년 보증료수익 실현요율)

6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수수료(2631-304)(금융정책국)

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80.2%(2021년 보증료율 인하 반영) ×93.2%(개인보증비율) ×8.70%(최근 5개년(2018~2022) 평균보증료 수익대비 위탁수수료 지급률)	×92.2%(개인보증비율) ×8.70%(최근 5개년(2018~2022) 평균 보증료 수익대비 위탁수수료 지급률)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 10억 5,400만원 - 취급수수료 : 6억 7,600만원 [9,380건(2022년 공급예상건수) × 0.5 + 9,932건(2022년 공급건수) × 0.5] × 7만원(건당수수료) - 관리수수료 : 1억 4,300만원 6,056건(정산대상 신규공급건수) × 1.83만원(건당수수료) + 3,738건(정산대상 연장공급건수) × 0.87만원(건당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 2억 3,500만원 141건(정산대상 아파트 감정평가건수) × 0.11만원(건당수수료) + 499건(정산대상 비아파트 감정평가건수) × 47.08만원(건당수수료)	○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 83억 3,300만원 - 취급수수료 : 51억 6,400만원 [74,177건(2023년 공급예상 건수) × 0.5 + 73,366건(2024년 공급예상 건수) × 0.5] × 7만원(건당수수료) - 관리수수료 : 19억 2,900만원 70,221건(정산대상 신규공급건수) × 2.7만원(건당수수료) + 3,348건(정산대상 연장공급건수) × 1만원(건당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 12억 4,000만원 734건(정산대상 아파트 감정평가건수) × 0.11만원(건당수수료) +2,049건(정산대상 비아파트 감정평가건수) × 60만원(건당수수료)
신용정보이용수수료	○ 신용정보이용수수료 : 3억 6,500만원 - 2억 8,500만원(2022년 예상 수수료) ×(1+27.9%(최근 수수료 증가율))	○ 신용정보+사기대출 예방솔루션 수수료 5억 5,100만원 - 신용정보, 대안정보: 3억 2,900만원 - 사기대출 예방솔루션: 2억 2,2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신규 보증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수수료 사업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2023년 공급건수는 3만 5,567건, 2024년 공급건수는 4만 5,359건으로 당초 계획(2023년 7만 4,177건, 2024년 7만 3,366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계획액 169억 6,700만원의 56.9%인 96억 5,400만원만 집행되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급금액	2,491	10,700	30,650	68,298	92,666
공급건수	1,597	5,904	15,519	35,567	45,359

자료: 금융위원회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중 관리수수료의 경우 정산대상 신규 보증공급건수를 7만 221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만 9,000건에 그쳐 당초 계획액 19억 2,900만원 중 11

억원만 집행되었고,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정산대상 아파트·비아파트 감정평가 건수를 당초 734건과 2,049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211건과 408건에 그쳐 계획액 12억 4,000만원 중 2억 4,500만원만 집행되었음.

게다가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뿐만 아니라 개인보증 위탁수수료의 경우에도 과다추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수수료 사업 추계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음. 개인보증 위탁수수료는 보증평잔(예상 120.8조원→실제 109.5조원), 보증료수익 실현요율(예상 0.0765%→실제 0.065%), 개인보증비율(예상 93.2%→실제 83.1%) 등이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액 80억 8,300만원 중 51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수수료 집행액이 2024년 계획 수립 시 예상했던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면서 반환보증 위탁수수료의 당초 계획액 83억 3,300만원 대비 집행액은 41억 7,700만원으로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금융위원회는 의무지출 항목 지출 증가 등을 위해 사업수수료 예산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정보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말 보증료환급 사업으로 계획변경한 20억원 중 82%에 해당하는 16억 3,900만원을 불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024년 사업수수료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기재부협의 변경 (2024.6.14)	210	01	사업수수료	△992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개편으로 사업수수료 감액 및 주신보IT운영 예산 증액
자체변경 (2024.10.22)	210	01	사업수수료	△3,000	보증료 환급 소요 증가(구입자금보증·PF보증)로 관련 예산증액을 위해 사업수수료 감액
자체변경 (2024.12.13)	210	01	사업수수료	△2,000	PF대출 중도 상환 및 보증해지 증가로 사업자보증의 보증료환급이 증가함에 따라 주신보 보증료환급 예산 증액 필요
합 계				△5,992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보증공급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사업수수료 예산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변경한 금액의 대부분을 불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14. 주신보·주연보 IT운영(정보화) 사업: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지양

가. 개 요

‘주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과 **‘주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각각 주택신용보증계정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기금계정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통산망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임.

‘주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2024년도 당초 계획액은 48억 4,8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해 14억 5,600만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63억 400만원 중 57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4%)되고 4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66]

‘주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2024년도 당초 계획액은 16억 2,9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해 3억 2,300만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19억 5,200만원 중 16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7%)되고 2억 9,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67]

[2024년도 주신보·주연보 IT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신보 IT 운영	4,848	6,304	-	6,304	5,701	429	174	4,034
주연보 IT 운영	1,629	1,952	-	1,952	1,615	298	39	1,629

나. 검토의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등 국회 심사를 우회하여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연이은 자체변

6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주신보IT운영(2632-301)(금융정책국)

6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IT운영(2632-301)(금융정책국)

경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사업과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4년 연도 중 자체변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먼저,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사업은 PF 사업에 대한 신규 심사평가모형을 반영하는 등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 8,200만원, 정보시스템 감리 1억 4,7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주택신용보증계정에서 9억 9,200만원(사업자보증) 관련, 나머지 2억 8,100만원(정책모기지 관련)은 고유계정에서 전액 집행하였음.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PF 평가체계의 단일화 및 표준화로 심사속도를 향상하여 신속한 업무체계 구축 - 신규 심사평가모형 구축 등 PF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선별적 보증지원으로 기금건전성 제고 - 주택금융 제도개선 필요 시 적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상품·금리 관리시스템 고도화 ◦ (주요 내용) - 사업자 보증 신청·심사·보증서 발급 등 전체 프로세스 재구축을 통한 상품체계 전면 개편안 반영 - 새로운 심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 - 인터넷 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 - 정책모기지 상품·금리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예산 및 사업기간) - 총사업비: 12억 7,314만원(구축사업: 10억 8,174만원, 감리 1억 4,666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4,391만원) - 사업기간: 2024.8.20. ~ 2024.12.16.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개정 국가회계 기준을 반영하여 기금회계 재무제표를 개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통해 1차 사업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차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임.

본 구축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까지의 사업으로 6억 3,500만원이 계약되었고, 2차 사업은 신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

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5년 중 자체변경을 통해 4억 5,500만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예정임.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1차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9,200만원에 계약되었음.

다만 2024년 시스템 구축 1차 사업 및 감리사업은 조달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주택신용보증계정에서는 2024년 계획현액 4억 6,4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00만원을 불용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는 2024년 계획현액 3억 2,3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회계 결산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개편된 국가결산체계를 적용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의 연계시스템을 재구축
◦ (주요 내용)
- 개편된 국가결산체계에 맞추어 분류체계 개편, 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체계 변경
- 전기 데이터 이행 및 외부연계 결산 업무 수행 등
◦ (예산 및 사업기간)
- 총사업비: 11억 8,500만원 (장기계속계약 방식)
(구축사업: 10억 9,300만원 *1차(2024.12.~2025.7.) 6억 3,500만원, 2차(2025.8.~2026.2.), 감리 9,200만원)
- 사업기간: 2024.12. ~ 2026.2.(장기계속계약 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계획에 없던 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계정의 IT 운영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마련하였음.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연도 중에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주신보·주연보 IT운영 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정명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주택신용보증계정	2024. 6.14.	기재부 협의	주신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992	사업수수료 (2631-304)	일반수용비 (210-01)	△992
	2024. 9.25.	기재부 협의	주신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46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46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024. 9.25.	기재부 협의	주연보IT운영 (2632-301)	일반연구비 (260-01)	323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1-97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70-02)	△323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금의 자체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기금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및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 개편' 사업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 등 급격한 사업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 사업의 통합발주가 개별 연계성 측면보다는 공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단순개발사업으로서 조달수수료·원가계산의뢰비용 등 부대비용 및 계약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하여 발주하였다고 설명함.

하지만 동 사업 추진 시 PF 시장과 관련 있는 사업자보증 심사시스템에 더하여 타 계정인 고유계정의 정책모기지 상품관리시스템까지 합쳐 사업을 추진한 것은 회계적 책임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다소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다음,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4년 기획재정부 주도로 44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한 국가결산체계개편협의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 받은 바 있고,[6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계획안 편성을 승인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의 연도 중 변경을 통해 사업수행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하지만 국가결산체계 개편사업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확보한 사업 예산 중 당해연도에는 조달수수료만 1,000만원 지급하고 선급도 지출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예산(7억 2,700만원)이 다음연도에 지출되어 연도 중 기금계획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았음.[69]

---

68) [국가결산체계개편협의체 개요]

◦ 개요
- 2024년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외부연계기관 대상인 44개 회계·기금(17개 부처,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결산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단장으로 하여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함

◦ 협의체 회의 내용
- (1차, 2024.7.2.) 국가결산체계 개편 관련 기재부 추진상황 공유(재무제표 신설·변경) 및 예산 확보 가능 여부 점검
- (2차, 2024.8.7.) dBrain+-외부연계기관 송수신 자료 설명 및 배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요청
- (3차, 2024.9.25.) dBrain+ 고도화 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외부연계기관 시스템 개편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청
- (4차, 2024.12.12.) 2025년 dBrain+ 테스트 및 시범결산·가결산 운영방안 안내

또한 2차년도 사업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장기계속계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므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없이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의 리스크도 높아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재정당국은 기금운용계획의 연도 중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 편성 시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신규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명시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9)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체계 개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주관 부처의 사업일정에 맞춘 개발이 필요하고, 2025년 사업 착수 시 계약행정에 따라 약 3개월이 소요되어 국가사업 일정에 맞춘 전산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당시(2024.9.)에는 연내 일정부분의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착수계획 등의 서류제출이 지연되었고, 선금지급시기가 제반 서류의 제출 및 검토가 완료된 2025년 1월로 늦어졌다고 밝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 재고자산매각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지분 매각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재고자산매각대'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출자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수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조 331억 7,200만원 중 2,166억 2,600만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70][71]

[2024년도 재고자산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재고자산 매각대	1,033,172	1,033,172	216,626	216,626	-	-	100.0	525,330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 IPO 이후 잔여지분을 시장 충격 없이 조속히 매각하고 한화생명 보유지분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보채상환기금의 잔여 보유 주식을 조속히 매각하고 재고자산매각대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신속히 상환할 필요가 있음.

예보채상환기금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출자·출연한 이후 보유한 주식등의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예보채상환기금의 출자금융회사는 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 및 수협중앙회(만기보유증권) 등임.

---

7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재고자산매각대(73-731)(금융정책국)

71)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2024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지분 현황]

(2024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회사명	총지원액	회수액	보유자산 평가액(지분율)	
			2023년	2024년
서울보증보험	102,500	48,091	1,361(93.85)	1,361(93.85)
한화생명	35,500	25,201	2,458(10.00)	2,137(10.00)
우리금융지주	127,663	130,223	1,217(1.24)	매각완료
수협중앙회	11,581	5,607	5,907(만기보유증권)	5,364(만기보유증권)

주) 보유자산의 평가방법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으로 감액평가함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24년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2025.3.27.

이 중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미상환잔액 상환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국채를 수령하고, 2027년까지 연도별 국채 만기 시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고,[72] 2024년 3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935만 7,960주(지분율 1.24%)를 1,366억원에 매각하여 우리금융지주 관련 공적자금 상환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였음.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 보유지분에 대해 동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완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임.

2023년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 및 소수지분(10%) 구주매출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시장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상장이 무산된 바 있고, 2024년 기업공개를 재추진하여 2025년 3월 상반기 소수지분(10%)에 대한 기업공개 및 구주매출에 성공하였음.[73]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공모가격(26,000원)을 기준으로 우리사주 및 일반투자자 청약을 실시하였음. 공모대상 물량을 투자자별로 우리사주 14.3%, 일반투자자 29.9%, 기관투자자 55.8% 배정하였고,[74] 결과적으로 예보채상환기금 보유 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6,982,160주)을 매각하여 1,815억원을 회수하였음.[75]

72)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 4,374억원을 회수할 예정임.

73)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수정 및 IPO 재추진", 2024.3.19.

74) [각 투자자별 공모물량 배정 비중 및 주식 수]

구 분	비중(%)	주식 수(주)
우리사주	14.3	998,757
일반투자자	29.9	2,087,358
기관투자자	55.8	3,896,045
합 계	100.0	6,982,16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 및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매각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

방식	IPO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025년 상반기 이내	상장 완료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027년 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주1)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2) 의무보호예수 기간(1년) 설정에 따라,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2026.3.14. 이후 매각 추진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기업공개 이후 서울보증보험 주가는 IPO 공모가격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76] 소수지분 추가 매각은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Overhang)으로 인해 주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추가 매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 이후 잔여지분을 시장 충격 없이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 매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은 한화생명 잔여지분 8,685만 7,001주(지분율 10.0%)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 주식매각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여건·전략 등을 논의 중이나,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낮은 주가 수준과 공적자금 회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본격적인 매각이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향후 주가동향 등 매각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75) [IPO를 통한 서울보증보험 지원 및 회수액 변동 현황]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상장 이전	상장 구주매출	합계	
10조 2,500억원	4조 8,091억원	1,815억원	4조 9,906억원	48.7% (기존 46.9% 대비 1.8%p↑)

76) 2025년 5월 26일 현재 1주당 33,150원으로 공모가 26,000원을 상회하고 있음.

[한화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2025.3. 기준)

지원액 (A)	회수액 (B)				미회수액 (B-A)
출자	지분 매각	한화컨소시엄 매각 (2002.12월, 2,275원)	8,236억원	(51%)	△1조 299억원
		콜옵션 행사 (2008.9월, 2,275원)	2,584억원	(16%)	
		상장공모시 구주매출 (2010.3월, 8,200원)	1,586억원	(2.7%)	
		1차 블록세일 (2015.3월, 7,680원)	1,334억원	(2.0%)	
		2차 블록세일 (2015.10월, 7,987원)	5,203억원	(7.5%)	
		3차 블록세일 (2017.8월, 7,280원)	1,739억원	(2.8%)	
		4차 블록세일 (2017.11월, 7,330원)	1,591억원	(2.5%)	
		소 계	2조 2,273억원	-	
	배 당 금		2,928억원		
3조 5,500억원	2조 5,201억원(회수율: 71.0%)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2025년 5월 26일 현재 한화생명 주식 1주당 가격은 2,830원으로 2010년 상장공모 이후 1~4차 블록세일 때의 주식가격인 7,280~8,200원에 못미치는 상황임.

하지만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법정기한인 2027년까지 해당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 방식 결정 및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한화생명 주식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7년 이후로 한화생명 주식 가격은 4차 블록세일 가격(1주당 7,33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화생명 주식가격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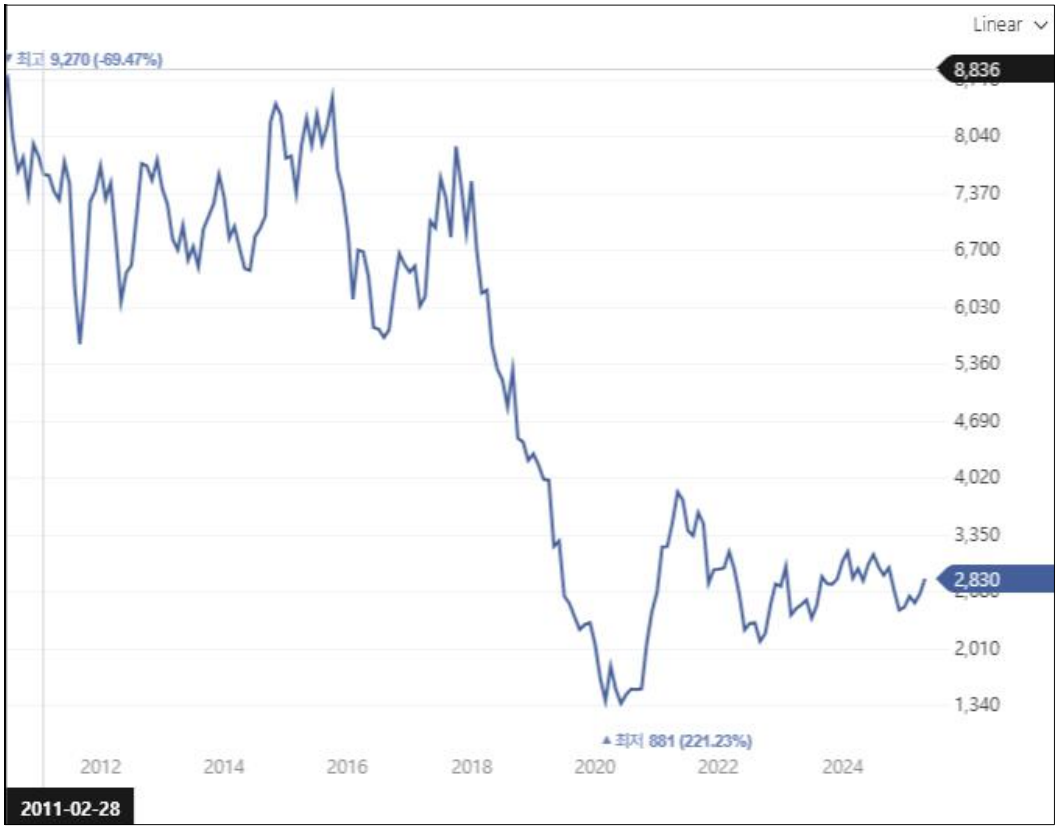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를 재가공(https://finance.naver.com/item/fchart.nhn?code=088350)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예보채상환기금의 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지분을 2027년까지 매각하여 공적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매각대금 발생 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77]

77)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국회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9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잔액 2,830억원에 더해 9,400억원을 추가 전출하는 등 총 5조 1,900억원을 전출하였음.

[2024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내역]

연번	연월일	예보채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액	비고
1	2024.3.8.	2조 5,000억원	당초 계획액(4.25조원) 일부 전출
2	2024.6.7.	1조 3,000억원	당초 계획액(4.25조원) 일부 전출
3	2024.9.9.	1,670억원	당초 계획액(4.25조원) 일부 전출
4	2024.12.9.	1조 2,230억원	국회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잔액(2,830억원) 및 추가 전출(9,400억원)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관련 부처협의 노력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7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25건·제도개선 48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25	48	-	74
예비비	-	-	-	-	-	-	-
합계	-	-	1	25	48	-	74

금융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74건에 대해 6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6.5%)하고 1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4	64	86.5	10
예비비	-	-	-	-
합계	74	64	86.5	10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금융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금융위원회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2)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19) 금융위원회는 202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우려)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20)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 및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코로나 피해 입증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2)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8)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PF의 연착륙에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대된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 및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금 충당 규모를 검토한다.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등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에 대한 기금폐지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금 수입의 99% 이상이 당해연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에 의존하고, 지출 총액의 99% 이상이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어 단년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유사한 집행 행태를 보이므로, 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국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된 바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28)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중
조치결과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 ㅇ 관계기관(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한국은행 등)간 쟁점을 조율하여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 ※ 금융위 검토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국조실,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한은, 금감원)과 논의(2024.1.15.) ㅇ 조치예정일 : 미정(관계기관 협의 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적정 재원조달 방안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29)적정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중
조치결과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 ㅇ 관계기관(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한국은행 등)간 쟁점을 조율하여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예정 ※ 금융위 검토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국조실,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한은, 금감원)과 논의(2024.1.15.) ㅇ 조치예정일 : 미정(관계기관 협의 필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관과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이견 조율을 지속하였으나 협의에 다다르지 못하였고,[78]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한 폐지 권고가 제기되었음.[79]

78) 금융위원회는 가장 이견이 있었던 한국은행 출연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임.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정부사업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은이 농어가기금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한은의 순이익금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이 한은 출연금만큼 증가하므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은의 순이익금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지 않으므로 한은 출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동 사업은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평가에서 2019년·2022년·2025년 모두 폐지권고를 받는 등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및 기금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79)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권고하였음(기획재정부, "기금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등 권고", 2025.5.28.).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800만원(△23.3%)이 적은 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18.7%)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23	823	841	18	892	892	684	△208	△157
총수입	823	823	841	18	892	892	684	△208	△157

문의 : 김국찬 예산결산조사관 gckim@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5억 9,600만원(△3.2%)이 적은 1,079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1,000만원(19.7%)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4,958	94,958	90,186	1,702	111,592	111,592	107,996	17,810	17,810
총지출	94,958	94,958	90,186	1,702	111,592	111,592	107,996	17,810	17,81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억 8,400만원으로 10억 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억 8,400만원이 수납(수납률 68.1%)되고 3억 2,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92	892	-	892	1,005	684	321	-
합 계	892	892	-	892	1,005	684	321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27억 8,800만원으로, 이 중 1,079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32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11,592	111,592	1,196	±2,102	-	112,788	107,996	3,236	1,555
합 계	111,592	111,592	1,196	±2,102	-	112,788	107,996	3,236	1,55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04억 7,500만원이 증가한 425억 3,4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67억 4,800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 105억 2,9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11억 2,000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 감소한 7,100만원으로 유동부채 3억 5,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8억 2,600만원이 증가한 424억 6,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40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40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1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2,534	32,059	10,475	32.7
		유동자산	12,972	2,443	10,529	431.0
		투자자산	170	50	120	240.0
		일반유형자산	21,520	21,700	△180	△0.8
		무형자산	6,748	7,863	△1,115	△14.2
		기타비유동자산	1,123	3	1,120	37,333.3
	부 채		71	422	△351	△83.2
		유동부채	4	363	△359	△98.9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67	59	8	13.6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2,463	31,637	10,826	34.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4,078	101,541	2,537	2.5
	재정운영순원가		104,051	101,540	2,511	2.5
	재정운영결과		104,051	101,540	2,511	2.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국민참여·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 고충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출납공무원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패·고충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행정심판의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개 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인건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음.[2)3)]

'인건비(대상)'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95억 1,100만원 중 494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32억 6,800만원 중 30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0%)되고, 2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44억 8,500만원 중 41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고, 2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대상)	48,817	48,817	-	694	49,511	49,476	-	35	52,132
기관운영기본경비 (대상)	3,160	3,160	-	108	3,268	3,008	-	260	3,595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687	4,687	-	△202	4,485	4,189	-	296	4,53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인건비(대상)',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사업은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대상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할당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3) 일반회계-인건비(대상)(1101-100)(운영지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1111-200)(운영지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청년인턴 보수 및 보험료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8억 7,700만원을 전용(증)하였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경비 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 사유	대상 사업		금액
		~에서	~으로	
전용(6.7.)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청년인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일반수용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일용임금)	185
전용(6.7.)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충당(청년인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일반수용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고용부담금)	21
전용(12.18.)	신규공무원 편성 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청렴권익국제교류(상용임금)	인건비(대상)(보수)	22
		종합상담창구운영(상용임금)		530
		청렴교육및의식확산(상용임금)		43
		행정심판운영(상용임금)		76
계				87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전용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경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각 기관의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4)]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및 동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예산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납공무원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관서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기존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5)]

이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등에서는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였음.[6)]

---

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5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범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07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세부사업명	지급내용	지급액
2024.5.10.	반부패기술지원 (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제12차 영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8,080,000
2024.9.25.	반부패기술지원 (ODA)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스페인어 과정) 강의실 임차료(210-07목) (SEOULGARDENHOTEL-112)	5,335,000
2024.12.10.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시스템 냉난방기 콤프레샤 교체(210-09목)	6,368,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하 경비에 한하여 기존 지급절차의 예외를 설정한 관서운영경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청렴권익민간협력: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은 민간단체 등과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5,500만원 중 4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455	-	-	455	453	-	2	31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소통·협력 등을 활성화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간 및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8)]

---

7) 일반회계-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기획조정실)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책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임의로 신규 편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기존 사업에서 충당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을 임의로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등에 할당된 예산액 전액(4,000만원)을 세목조정(감)하였고, 추가로 임차료 부족분 50만원을 세목조정(감)하였음.

[2024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날짜	사업명(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사유	금액
	~에서	~으로		
2024.1.9.	청렴권익 민간협력 (210-14)	청렴권익 민간협력 (210-01)	기존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	40
2024.12.23.	청렴권익 민간협력 (210-01)	청렴권익 민간협력 (210-07)	2030자문단이 신규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면회의 증가로 인한 임차료 부족분 발생	0.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대상 인원·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반면 2030자문단 운영 사업 참석 인원은 특정 세대에 속한 소수의 자문인원이 청년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고충처리 회의 및 위원회 정책 홍보 등에 참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의 비교]

구분	청렴정책 모니터링 용역(2022~2023)	2030자문단 운영(2024)
대상 인원	일반국민 및 전문가 470명	2030자문단 19명
프로그램 내용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후, 모니터단 의견을 취합하여 모니터링 사전의제를 설정.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모니터단 제안 활용	고충처리·제도개선 간담회 등 실제 정책개선 현장에 참여, 그 외 청년 의견 수렴 및 권익위 정책 홍보 등
사업 성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15건 제안, 2회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주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충처리 현장회의 6회, 제도개선 간담회 3회, 40건의 청년 제도개선 제안 및 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2030자문단이 2024년부터 확대 운영되고, 기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문단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 인원·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이 상이하며,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를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가급적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 내용을 준수하고, 금번과 같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나서야 뒤늦게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부패·고충제도개선: 장기간 미이행 과제의 신속 이행 필요

가. 개 요

'부패·고충제도개선' 사업은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행정제도 및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9)]

[2024년도 부패·고충제도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패·고충제도개선	92	92	-	7	99	99	-	-	8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은 국민생활에 실질적 불편·부담이 되거나 고질적으로 부패에 취약한 분야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이행이 필요함.

그러나 2020년 이후 부패·고충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기한이 도래한 186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 수는 82개에 불과함.

9) 일반회계-부패·고충제도개선(1134-340)(권익개선정책국)

[2020~2024년 부패·고충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현황]

(단위: 건, %)

연도	권고			이행			이행률 (=B/A)
	부패방지	고충예방	합계(A)	부패방지	고충예방	합계(B)	
2020	12	36	48	10	26	36	75.0
2021	18	18	36	12	10	22	61.1
2022	12	25	37	7	8	15	42.9
2023	7	25	32	2	7	9	36.0
2024	4	29	33	-	-	-	-
계	53	133	186	31	51	82	44.1

주)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행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도개선 권고(2022년 2건, 2023년 7건, 2024년 32건)는 제외되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개정 및 이해관계 조정 등에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근 연도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 수가 17건에 해당하고, 법률이 아닌 조례 및 규칙 등의 개정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과제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의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개선과제 목록]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조치기한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2021. 2. 28.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환경부, 국토교통부	2021. 7. 31.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2021. 9. 30.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3) -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2021. 4. 30.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행정안전부 등	2021. 12. 31.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체육·관광·휴양분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2021. 6. 30.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 권리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2020. 12. 31.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2020. 12. 31.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 방안	국토교통부, LH 등	2021. 2. 28.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조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기초지방자치단체	2021. 4. 30.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 사용 투명성 강화	교육부	2021. 5. 31.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 방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21. 12. 3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경찰청	2021. 12. 31.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경찰청	2021. 8. 31.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2021. 12. 31.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8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1. 11. 30.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49개 국공립대학	2021. 12. 31.

주) 2024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개선과제의 주요 미이행 사유]

과제명	미이행 사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국토부와 권익위 간 이견 존재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3)-국민불편 유발 행정절차 개선-	처분 규칙 개정안 검토 중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중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 권리 보호 강화	권고사항 추가 반영 검토 중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법령 개정 필요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 사용 투명성 강화	교육부와 권익위 간 이견 존재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 방안	음주 진료 처분기준 신설 검토 중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관련 과제의 경우 기관별 청렴도 평가, 고충 관련 과제의 경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별 기관에 대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미이행 과제를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고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권고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의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선 권고가 신속히 이행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관련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0억 6,900만원 중 30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렴도측정및 부패영향평가	3,066	3,066	-	3	3,069	3,001	-	68	2,98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2호 및 제28조 등에 따라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11)]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은 ① 제·개정법령, ② 행정규칙, ③ 자치법규, ④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등으로, 제·개정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기타 규정은 기관별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10) 일반회계-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부패방지국)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해 개선권고 후 이행 실태를 점검함.

그런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구체적으로 2022년 권고의 이행률이 제·개정법령은 91.7%, 자치법규는 70.6%로 양자 간 21.1%, 2023년 권고의 이행률은 제·개정법령은 82.9%, 자치법규는 46.2%로 양자 간 36.7%의 차이를 보였음.

[2022~2023년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실적]

(단위: 건, %)

구분		개선권고(A)	관리종결(B)	이행(C)	미이행(=A-B-C)	이행률 [=C/(A-B)]
제·개정법령	2022	324	22	277	25	91.7
	2023	158	18	116	24	82.9
구분		개선권고(D)	이행(E)	미이행(=D-E)	(불수용)	이행률(=E/D)
자치법규	2022	1,972	1,393	579	(18)	70.6
	2023	2,199	1,017	1,093	(82)	46.2

주) 2024년 권고에 대하여는 현재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도나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나,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단체의 불수용을 이유로 미이행된 권고의 경우 2022년 18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미이행 건수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불수용 항목별 사유]

세부 항목명	불수용 사유
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의원 징계에 대한 세부규정은 지자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이 없음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지방 여건 상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모든 사전심사에 외부위원 참석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과장급 관리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일반 국민에 대해 포상적격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중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등과 같이 지방 여건 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완료로 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태와 함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항목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주요 불수용 항목별 이행 현황]

세부 항목명	권고(A)	이행(B)	이행 중	불수용	이행률(=B/A)
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326	166	153	7	50.9
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337	161	171	5	47.8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240	74	143	23	30.8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321	207	90	24	64.5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328	140	177	11	42.7

주) 2022년 및 2023년의 권고 조치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이행 가능성 및 주요 불수용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공유, 관련 내용의 대국민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청렴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은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청렴교육시설을 운영하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9,600만원 중 21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2,239	-	△43	2,196	2,111	-	85	2,4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 중에 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자 위주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일반국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음.

12) 일반회계-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청렴연수원)

나. 검토의견

첫째, 일반국민의 청렴사이버교육 수료자 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 실적 저조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업 취지에 걸맞게 일반국민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프로그램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므로, 청렴 프로그램의 실적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교육 이수 실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연도별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횟수 및 수료자 수를 살펴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수료자 수가 2022년 36,079명, 2023년 20,698명, 2024년 14,74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일반국민 수료자 비중 또한 2022년 12.2%, 2023년 7.8%, 2024년 5.6%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수료자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2~2024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횟수 및 수료자 수]

(단위: 명, %)

구분	교육 대상	과정 및 운영 횟수	수료자 수(비중)	
2022	공무원	23개 과정, 과정별 11회	171,741	58.1
	공직유관단체	1개 과정, 상시 운영 / 2개 과정, 과정별 4회	87,810	29.7
	일반국민	2개 과정, 과정별 9회	**36,079**	**12.2**
	계		295,630	100.0
2023	공무원	27개 과정, 과정별 11회	153,518	58.1
	공직유관단체	5개 과정, 과정별 11회	90,036	34.1
	일반국민	3개 과정, 과정별 6회	**20,698**	**7.8**
	계		264,252	100.0
2024	공무원	27개 과정, 과정별 11회	141,120	54.0
	공직유관단체	5개 과정, 과정별 11회	105,605	40.4
	일반국민	3개 과정, 과정별 7회	**14,746**	**5.6**
	계		261,471	1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참여도가 일반국민의 청렴교육 참여도에 비해 높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반국민의 청렴교육 수료자 수 자체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이버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국민 교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과정 운영횟수 및 수료자 수]

(단위: 명, %)

구분	교육 대상	과정 및 운영 횟수	수료자 수(비중)	
2022	교사	27개 과정, 과정별 2,419회	1,257	0.3
	공무원		109,137	25.2
	일반 시민		**322,850**	**74.5**
	계		433,244	100.0
2023	교사	47개 과정, 과정별 2,741회	1,034	0.2
	공무원		174,500	29.9
	일반 시민		**408,251**	**69.9**
	계		583,785	100.0
2024	교사	47개 과정, 과정별 2,805회	932	0.1
	공무원		310,505	39.5
	일반 시민		**474,274**	**60.4**
	계		785,711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교육 실적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업 취지에 걸맞게 일반국민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프로그램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국·공립대학에 대해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대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교육 이수율은 2021년 62.7%, 2022년 75.0%, 2023년 75.9%로, 전체 이수율 평균이 95% 이상인 것과 비교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2023년 연도별 및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등	국·공립 대학	공직 유관단체
2021	대상자(A)	1,830,840	274,337	360,825	9,915	547,724	32,320	605,718
	이수자(B)	1,738,829	267,050	332,764	8,804	537,364	20,317	572,530
	이수율(=B/A)	95.0%	97.3%	92.2%	88.8%	98.1%	62.7%	94.5%
2022	대상자(A)	1,843,538	276,607	368,749	11,272	530,018	29,185	627,707
	이수자(B)	1,762,013	268,557	342,856	10,052	520,885	21,899	597,764
	이수율(=B/A)	95.6%	97.1%	93.0%	89.2%	98.3%	75.0%	95.2%
2023	대상자(A)	1,829,721	278,502	369,783	12,478	516,196	24,535	628,227
	이수자(B)	1,757,472	269,004	346,257	11,549	508,971	18,611	603,080
	이수율(=B/A)	96.1%	96.6%	93.6%	92.6%	98.6%	75.9%	96.0%

주) 2024년 교육 실적은 2026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부패방지교육의 낮은 이수율과 관련하여, 교수의 경우 학생 대상의 강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개별적 연구활동 등으로 인해 타 기관유형과 달리 집합교육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교수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등을 부여받으므로, 부패방지교육의 중요성이 타 기관유형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음.[13]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결과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요구의 범위에 국·공립대학 관련 평가는 존재하지 않음.[14]

---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교육의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심판운영: 법정 처리기간의 준수 필요

가. 개 요

‘행정심판운영’ 사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100만원 중 9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7%)되고,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4년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행정심판운영	1,177	1,177	-	△76	1,101	999	-	102	1,54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그 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함.

나. 검토의견

행정심판의 법정 최장 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임.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5) 일반회계-행정심판운영(1137-370)(행정심판국)

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 최장 처리기간은 90일임.[16)]

그런데 2022~2024년 연도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평균 재결기간은 꾸준히 감소(76 → 60 → 56일) 중이나,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른 법정 최장 처리기간(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도 상당한 수로 발생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전체 19,357건 중 재결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가 3,019건(15.6%), 90일을 초과한 경우가 2,775건(14.3%)에 달하였음.

[2022~2024년 연도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구분	평균 재결기간	재결기간별 건수(비중)			
		60일 이내	60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계
2022	75.83	13,570(64.1%)	2,677(12.7%)	4,912(23.2%)	21,159(100.0%)
2023	60.11	19,616(70.3%)	3,445(12.4%)	4,826(17.3%)	27,887(100.0%)
2024	55.60	13,563(70.1%)	3,019(15.6%)	2,775(14.3%)	19,357(1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기준 소관 과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법리적 쟁점이 드물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전담 소위원회를 운영 중인 운전면허사건의 경우 대체로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었으나,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재정경제, 국토해양, 환경문화 등의 재결사건은 평균 80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음.

특히 법정 최장 처리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전체의 약 14.3%를 차지하였는데, 재정경제심판과(35.4%), 국토해양심판과(36.5%), 환경문화심판과(44.3%) 등은 전체 평균보다 90일 초과 건수의 비중이 높은 등 영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16)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소관 과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및 처리 건수]

(단위: 일, 건)

구분	평균 재결기간	재결기간별 건수(비중)			
		60일 이내	60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계
행정심판총괄과	48.7	606(72.6%)	146(17.5%)	83(9.9%)	835(100.0%)
행정교육심판과	68.8	800(53.0%)	362(24.0%)	348(23.0%)	1,510(100.0%)
재정경제심판과	**80.0**	466(38.2%)	322(26.4%)	432(**35.4%**)	1,220(100.0%)
국토해양심판과	**81.3**	464(41.4%)	248(22.1%)	410(**36.5%**)	1,122(100.0%)
사회복지심판과	73.5	654(47.9%)	357(26.2%)	353(25.9%)	1,364(100.0%)
환경문화심판과	**89.1**	406(35.5%)	231(20.2%)	507(**44.3%**)	1,144(100.0%)
운전면허심판과	44.5	10,167(83.6%)	1,353(11.1%)	642(5.3%)	12,162(100.0%)
계	55.6	13,563(70.1%)	3,019(15.6%)	2,775(14.3%)	19,357(1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재결사건 위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15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주의 11건・제도개선 2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	11	2	1	15
예비비	-	-	-	-	-	-	-
합계	-	-	2	11	2	1	15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해 1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5	15	100.0	-
예비비	-	-	-	-
합계	15	15	1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4억 6,800만원(△20.7%)이 적은 32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1억 3,900만원(△73.8%)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44	4,244	123,505	119,261	40,834	40,834	32,366	△8,468	△91,139
총수입	4,244	4,244	123,505	119,261	40,834	40,834	32,366	△8,468	△91,139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억 1,400만원(△0.5%)이 적은 650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800만원(14.2%)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8,924	58,924	56,955	△1,969	65,377	65,377	65,063	△314	8,108
총지출	58,924	58,924	56,955	△1,969	65,377	65,377	65,063	△314	8,10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08억 3,400만원으로, 572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23억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9.3%)되고 248억 5,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 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0,834	40,834	-	40,834	57,266	32,366	24,851	50
합 계	40,834	40,834	-	40,834	57,266	32,366	24,851	50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2억 300만원으로, 이 중 650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11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5,377	65,377	826	-	-	66,203	65,063	-	1,140
합 계	65,377	65,377	826	-	-	66,203	65,063	-	1,14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01억 7,500만원이 증가한 380억 3,6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09억 2,6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92억 7,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5,400만원으로 유동부채 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301억 7,600만원 증가한 379억 8,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5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76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8,036	7,861	30,175	383.9
		유동자산	24,077	3,151	20,926	664.1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942	967	△25	△2.6
		무형자산	13,017	3,742	9,275	247.9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54	55	△1	△1.8
		유동부채	-	1	△1	1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54	54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7,982	7,806	30,176	386.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5,669	38,723	△3,054	△7.9
	재정운영순원가		57,623	53,087	4,536	8.5
	재정운영결과		57,623	53,087	4,536	8.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6개 세부사업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연되었음.

셋째,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2024년 중에 마련하지 못해 2024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운영 예산 중 실제 전문기관 심사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 부진

가. 개　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제도개선 및 활용실태 점검 등 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및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등 기술지원, 가명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억 2,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4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328	3,328	-	-	3,328	3,328	-	-	3,564
가명처리기술지원	2,537	2,537	-	-	2,537	2,537	-	-	2,137
가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00	400	-	-	400	400	-	-	1,03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중 ‘가명처리 기술지원’ 내역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수행하고, 서울·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며,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5억 3,700만원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 일반회계-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개인정보정책국)

또한 ‘가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원 또한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위원회는 가명처리 인프라 제공,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교육 및 실습, 사례발굴 및 공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두고 서울 외 지역 6개소에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두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지원하고 있음.[3)]

이 중 서울의 가명처리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지원 외에도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중 3개소(강원·부산·대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투입하고 있으며 3개소(인천·대구·전북)는 지방비만 투입하고 있음.

3) [가명처리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요]

구분	운영기관	위치	구축현황	인력현황	2024 예산	2025 예산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	가명처리공간 5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 사무실 1실	3인(KISA 1인, 운영지원·유지보수 2인)	4억 5,700만원 (국비)	4억 2,700만원 (국비)
강원	강원TP	원주 지식산업센터 2층	가명처리실 4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공용공간	6인	4.4억원 (국비, 지방비)	4억원 (국비, 지방비)
부산	부산TP	해운대구 센텀기술창업타운 CENTAP 5층	가명처리실 4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4인	3.6억원 (국비, 지방비)	4억원 (국비, 지방비)
대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보화교육관 2층	가명처리실 3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4인	4억원 (국비, 지방비)	4억원 (국비, 지방비)
인천	인천TP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지하1층	가명처리실 3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3인	3억원 (지방비)	3억원 (지방비)
대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수성구 SW융합테크비즈센터(DNEX) 2층	가명처리실 2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3인	1.52억원 (지방비)	1.2억원 (지방비)
전북	전북TP	덕진구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가명처리실 2실, 회의실 1실, 서버실 1실, 운영사무실 1실	3인	6억원 (지방비)	3억원 (지방비)

[서울 가명처리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요]

구분	가명처리 지원센터(서울 센터)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주요 기능	1. 가명처리 인프라 제공	1. 가명처리 인프라 제공
	2.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2.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3.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3.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4. 교육 및 실습	4. 교육 및 실습
	5. 사례발굴 및 공유	5. 사례발굴 및 공유
	6. 지역 지원센터 업무 총괄 *신규 지원센터 선정 공모·구축·평가 등 지원	-
운영 주체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탁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광역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지역 테크노파크 등 별도 수행기관)
운영 예산	o 국비	o 강원, 부산, 대전: 국비·지방비(1:1 매칭) o 인천, 대구, 전북: 지방비 1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은 353건, 5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은 총 303건에 불과함.

[가명정보 지원센터(서울)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지역)의 가명정보 지원실적]

(단위: 건)

지역 (구축일)	2023년					2024년					2025년(5.31.기준)				
	계	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계	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계	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서울 (2020. 11.2.)	293	16	3	13	261	353	25	15	38	275	55	11	1	16	27
강원 (2021. 7.28.)	87	6	15	35	31	131	10	22	74	25	13	1	4	8	0
부산 (2022. 8.29.)	49	8	3	17	21	70	9	10	34	17	19	0	0	16	3
인천 (2023. 7.18.)	13	2	1	10	0	26	3	2	14	7	3	0	0	1	2
대전	4	0	0	1	3	39	4	8	19	8	10	2	1	5	2

(단위: 건)

지역 (구축일)	2023년					2024년					2025년(5.31.기준)				
	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계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2023. 11.28.)															
대구 (2024. 7.18.)	-					21	7	1	11	2	20	3	1	10	6
전북 (2024. 11.26.)	-					16	0	0	7	9	5	0	0	0	5

주) 지역 구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가명정보 지원센터 또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운영비용의 50%를 국비 지원 받고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 및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연도별 운영비용과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대비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가명정보 지원센터(서울)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지역)의 연도별 운영비용 및 방문자 수]

(단위: 백만원, 명)

지역 (구축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5.31.기준)	
	운영 비용	방문자 수	운영 비용	방문자 수	운영 비용	방문자 수	운영 비용	방문자 수	운영 비용	방문자 수
서울 (2020.11.2.)	457	29	457	211	457	523	457	625	427	188
강원 (2021.7.28.)	199	57	600	244	600	409	440	171	400	26
부산 (2022.8.29.)	-	-	435	107	600	189	360	138	400	121
인천 (2023.7.18.)	-	-	-	-	300	130	300	84	300	50
대전 (2023.11.28.)	-	-	-	-	118	103	400	74	400	70
대구 (2024.7.18.)	-	-	-	-	-	-	152	266	120	50
전북 (2024.11.26.)	-	-	-	-	-	-	260	75	300	24

주) 지역 구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가명정보 지원센터 또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운영비용의 50%를 국비 지원 받고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 운영비용은 4억 5,700만원, 방문자 수는 625명이었고,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137만원이었음.

2024년 강원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257만원이고, 부산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261만원이며, 인천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357만원이며, 대전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541만원이고, 대구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57만원이며, 전북 센터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은 347만원이었음.

[2024년 가명정보 센터별 운영비용 및 방문자 수]

지역 (구축일)	2024년 센터 운영비용	2024년 센터 방문자 수	방문자 1인당 운영비용
서울 (2020.11.2.)	4억 5,700만원	625명	137만원
강원 (2021.7.28.)	4억 4,000만원	171명	257만원
부산 (2022.8.29.)	3억 6,000만원	138명	261만원
인천 (2023.7.18.)	3억원	84명	357만원
대전 (2023.11.28.)	4억원	74명	541만원
대구 (2024.7.18.)	1억 5,200만원	266명	57만원
전북 (2024.11.26.)	2억 6,000만원	75명	347만원

주) 지역 구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가명정보 지원센터 또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운영비용의 50%를 국비 지원 받고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6개소 중 센터 구축 시부터 국비가 투입된 3개소(강원·부산·대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의 50%를 국고 보조하고 있고, 센터 구축 시 전액 지방비로 구축된 나머지 3개소(인천·대구·전북)에 대해서는 운영비용 역시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부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운영비를 10%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차등지급 수

준을 확대하는 등 국비지원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비용 6억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시 사업수행자인 강원·부산 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비 지원금을 교부하는 단순 도관(pipeline)으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가 허브(hub)로서 각각의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추진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형식 및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실증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도 예산현액 59억 7,000만원은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

[2024년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7,650	-	-	7,650	7,650	-	-	6,050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	-	5,970	5,970	-	-	4,6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등 소극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가 개정되어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임.

4) 일반회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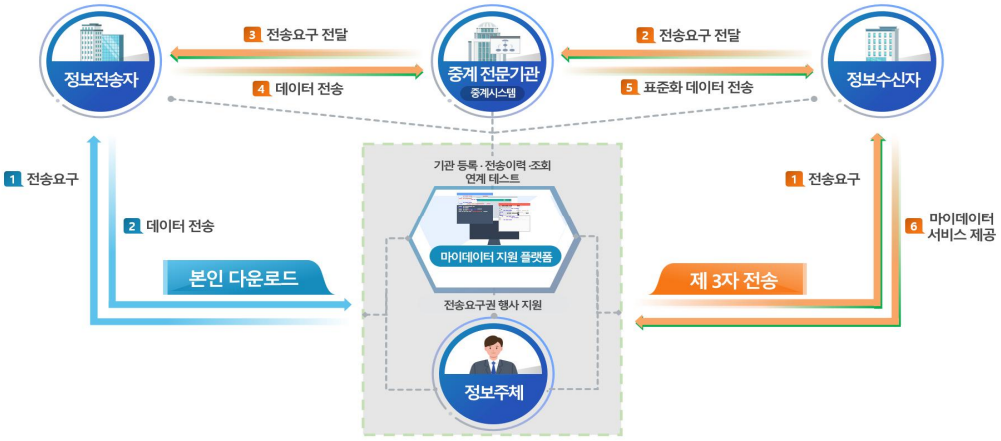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검토의견

2025년 3월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연되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및 행정부의 재량을 존중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은 2025년 2월에서야 개정되었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5)]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34호, 2023.3.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2.25.) 부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맞추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 및 실증하기 위해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25억원)을 추진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하였음.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2025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및 실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

◦ (지원규모) 총 25억원(총 5개 서비스×1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지원대상) 제3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의료(병의원)·통신(무선통신) 분야의 전송대상 정보 활용 및 자율 분야(34개 분야)의 표준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 (선정기준) 의료(의료기관) 분야, 통신(무선통신) 분야, 자율 분야 각 1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2개는 분야와 무관하게 고득점순으로 선정

공고 및 접수 (2024.8월말~10월초)		사업자 평가·선정 (10월 초~11월중)		사업 추진 (11월중~2025.6월)		사업 완료 (2025.6월)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등 · 총 사업비 심의 · 협약 체결	⇒	· 사업 수행 - 서비스 개발 등 · 중간·최종 평가	⇒	· 서비스 순차 출시 및 홍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8월 31일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모를 개시하였고, 10월 31일 사업자를 선정하여[6] 11월에서야 계약이 체결되었음. 2024년 연말까지 선금(70%)은 집행되었으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간(5~6개월)을 고려하여 나머지 잔금(30%)은 결국 이월되었고, 2025년 2월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3월 28일

제1조(시행일) ②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6)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선정 결과]

분야	주관기관	서비스 내용
의료	A의료원	일반인의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위험도 예측, 만성질환자의 신장질환 이환 예측, 대상자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서비스
	B사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국내 의료기록 연동 및 영문 번역 서비스
	C사	진료이력, 처방이력, 투약이력 등 기존 진료 정보조회 및 약물 관련 복약 지식 제공을 통한 안전한 약물 처방·복약 지원
통신	D연합회	통신서비스 사용량 및 사용자 이용패턴 기반의 맞춤형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제공
자율	E사	기존 여행기록(여행지, 숙박등) 통합조회, 여행지 추천, 여행경비 최적 설계, 여행크루 추천 등 맞춤형 여행서비스 제공

에서야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대상정보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야 공모에 지원하는 기업·기관들이 그 정보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상하고 공모할 수 있는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이해관계 추가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선도서비스 공모사업 공고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함.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함.

[2025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 개발 및 전문기관 지정 지원
◦ (지원규모) 총 19억원(4개 이상 사업 지원, 1개당 최대 5억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
◦ (지원대상)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정보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
◦ (사업기간) 2025년 7월 10일~ 12월 30일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사업 추진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내역사업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연구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마이데이터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도 예산현액 16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

[20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7,650	-	-	7,650	7,650	-	-	6,050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	-	1,680	1,680	-	-	1,380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980	980	-	-	980	980	-	-	7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중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내내역사업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 수신자 확인 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의 출연금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중 4억 8,500만원만 실집행하였음.

나. 검토의견

2024년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하위 시행령·고시를 연내 마련하지 못하여 2024년 개인정보관리 전

7) 일반회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문기관 지정심사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부적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분야의 점진적 확대 시 전문기관 지정심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3년 3월 개정되어 2024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거나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표준화 또는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수준·전문성·안전성 확보조치·재정능력 등을 갖추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함.[8)]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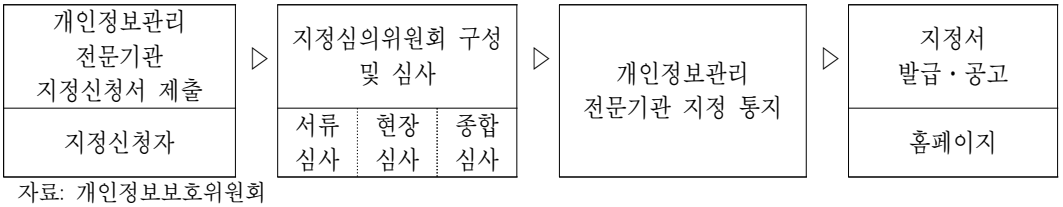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2024년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예산 9억 8,000만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9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제도 운영' 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공고하고 11월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 계약액 7억 1,700만원 중 지정심사제도 준비 관련 3억 1,500만원만 집행되고 전문기관 지정심사 운영 관련 4억 200만원은 불용되었음.[9)]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 · 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 · 관리 · 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제도 운영' 사업의 제안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제도 운영사업 개요]

◦ (사업목적) 안전한 마이데이터 처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및 일반 수신자 등록요건 확인 제도 운영
◦ (사업기간) 2024.11.13.(계약체결일)~2025.5.31.
◦ (사업금액) 7억 1,700만원
- 지정심사제도 준비: 3억 1,500만원(고정)
-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 4억 300만원(변동, 심사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
◦ (사업내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등의 사전준비 및 심사지원
-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세부 점검 항목에 따라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수행 지원
- 모의심사 및 기능적합성 심사항목 개발 등: 심사 희망 기업·기관 대상 모의 심사 운영, 안정적 서비스 및 사업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현 등 확인을 위한 기능적합성 심사 항목 및 취약점 점검 방안 마련
- 심사위원 구성 및 교육·간담회 등: 전문성 검증방안 수립 및 심사위원 풀 구성, 심사원 교육안 개발 및 운영,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심사제도 설명회 및 제도 홍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또는 일반수신자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제도 홍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내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내역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인터넷진흥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1,680	1,680	-	1,680	1,164	1,680	1,164	-	516	69.3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980	980	980	980	-	980	485	980	485	-	495	49.5
심사제도 운영 및 심사제도 준비	730	730	730	730	-	730	315	730	315	-	415	43.2
지정심사 안내서 등	250	250	250	250	-	250	170	250	170	-	80	68.0

주)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의 실집행단계에서의 불용액 4억 9,500만원은 심사제도 운영 및 심사제도 준비 사업의 불용액 4억 1,500만원과 지정심사 안내서 등에서 낙찰차액 등 8,000만원으로 구성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런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3이 2024년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정제도의 요건 및 절

청서 작성 시 과업 범위 중 '심사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심사실적(심사일x심사원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하고, 정산 범위는 심사 비용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제도 운영」, 2024.9.)

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를 2024년 중에 마련하지 못하였고,[10] 결국 시행령을 2025년 2월 25일, 고시를 2025년 3월 5일에서야 시행하게 되었음.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률 규정이 시행된 이후 1년 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심사 절차 관련 근거조항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었으므로, 지정심사 운영 관련 사업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임.[11]

지정심사 제도 설명회, 지정심사 안내서 개발 등 나머지 사업내용도 구체적인 전문기관 지정 고시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4년 체결한 사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2025년 3월 이후에서야 수행하게 되었음. 예컨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양식은 2025년 3월 26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는 2025년 3월 28일 개최되었음.[13]

마이데이터는 2025년 의료와 기간통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향후 통신판매·중개(유통)·부가통신 등 다른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분야에 관한 하위 법령 개정이 지연되어 전문기관 지정·심사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0)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대상 정보 등에 관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이해관계 추가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의견수렴,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과 규제심사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전면 수정과 재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통과 및 공포(2025.2.)까지 약 1년 4개월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특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분야별 관계부처,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약 100건(16개 기관)의 첨예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는 마이데이터 4개 추진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와 기간통신 분야만 우선 추진하고, 유통분야와 부가통신분야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10건의 권고가 나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과 선도서비스 사업계획 변경 등 제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였음. 이후 법제처 심사기간이 약 4개월 소요(2024.8.29.~12.23.) 되었고 그 후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 절차를 진행(2025.1.22.~2.25.)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내용이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는 난이도 높은 신규 제도이고, 내용의 복잡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C010030000&nttId=11090)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3.28.)’, 2025.3.25.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방식의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	6	10	-	20
합계	-	-	4	6	10	-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20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0.0%)하고 8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0	12	60.0	8
합계	20	12	60.0	8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다른 부처(과기부·방통위)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각 부처별 예산에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한 부처 내 세부사업에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라는 국회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회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용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시스템 등)과 자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소관 부처별 예산에 직접 편성하고, 각 위탁운영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되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집행액 19억 9,400만원 중 1억 7,33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에 각각 나누어 지출하였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을 집행하면서 다수의 출연사업에 쪼개어 집행하는 것은 ① 해당 유지관리 사업 지출이 각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고, ② 출연사업별로 유지관리 사업 지출을 배분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음.[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5)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소관 부처별 예산에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수행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중
조치결과	ㅇ 위원회 소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은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되어있음 -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 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출연금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그러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대금은 2024년 및 2025년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다수 출연사업에서 집행되고 있음.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1권, 2024.8., p.386~391.

[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지출건명	지출액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자산 유지보수 대금 「24년~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운영」 OA 유상수리	10,346,593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4,279,963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14,638,232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6,813,855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27,456,718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995,558
7	개인정보 침해방지		101,166,006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173,309,51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5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지급내역]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지출건명	지출액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지원	1~5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대금	2025년 직접수행 전환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357,156
3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2025년 직접수행 전환
4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351,689
5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7,667,451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14,249,136
7	개인정보 침해방지		23,107,425
8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
9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 지원		-
소계			48,732,85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 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2024~2025년까지 2개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각 부처별 예산에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임.

[2024~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개요]

❍ 사업명 : 2024~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 사업기간 : 2024. 1. 1. ~ 2025. 12. 31.(24개월) - 1차년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차년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예산 : 총 5,347,02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사업예산 : 2,727,500,000원, 2차년도 사업예산 : 2,619,520,000원 * 2차년도 계약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 ❍ 사업 목적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적정 성능을 상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본원 전산실 운영 전문성 강화 -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상으로 공유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각 부처별 유지보수 사업을 개별 계약·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 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각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회계적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